

ISSN 2384-3497

2019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2019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발 간 사

언론 관련 분쟁에 있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절차는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하는 경우 적은 비용으로 빠른 분쟁 종결을 가능케 하는 반면, 당사자의 의사 합치 없이는 분쟁을 종결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사자간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경우, 법원의 판결로 분쟁을 종결시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 법원이 제시하는 판결문에는 법률 해석의 기준과 구체화된 법리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분쟁해결절차 참여자들에게도 중요하고 실질적인 판단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는 매년 언론분쟁에 관하여 법원이 선고한 민사 판결들을 분석하고 중요 판결을 수록한 『언론관련판결분석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분석 대상은 2019년 각급 법원이 선고한 236건의 언론 관련 민사 판결입니다. 2019년 판결들을 분석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 언론사의 담당기자, 데스크, 대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언론사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감소(51.2% → 43.7%)한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상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이 유지될 확률은 92.5%로 높게 나타나 예년과 마찬가지로 1심의 결과를 번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낮은 구간 손해배상 인용액의 비중이 66%에 달했던 2018년과 달리 2019년에는 53.8%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용액 중앙값은 3,500,000원에서 5,000,000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2019년 손해배상 평균 인용액은 2018년과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2018년에는 4억 원이 넘는 고액의 손해배상 인용 사례가 평균 인용액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하면 법원은 언론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인용액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보아도 무방할 것이고, 이 결과에서 다양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년과 같이 이 보고서의 1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통계를 제시·분석하였고, 2부에서는 언론분쟁의 해결에 참고가 될 만한 판시사항이 포함된 중요 판결문들을 선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통계적 분석 대상판결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관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 판결 2건을 추가로 수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언론계, 학계, 법조계를 비롯하여 언론분쟁과 그 해결에 관심을 가진 모든 분들께 이 보고서의 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7월

언론중재위원회 교육본부

CONTENTS

제1부 언론 관련 판결 분석

제1장 분석 목적 및 내용

1. 분석 목적 / 3
2. 자료수집 방법 / 3
3. 분석 대상 / 4
4. 분석 내용 / 5
5. 분석을 위한 코딩 항목 및 코딩 방법 / 6

제2장 소송제기 현황

1. 심급별 소송건수 / 9
2. 상소율 / 10
3. 청구별 소송건수 / 10
4. 침해유형별 소송건수 / 12
5. 원고유형별 소송건수 / 13
6. 매체유형별 소송건수 / 14
7. 보도유형별 소송건수 / 15
8. 직위별 피고 분류 / 16

제3장 소송 결과

1. 심급별 결과 / 18
2. 상소심의 원심 판결 유지 여부 / 19
3. 청구별 결과 / 20
4. 침해유형별 결과 / 21
5. 원고유형별 결과 / 22
6. 매체유형별 결과 / 23
7. 보도유형별 결과 / 25
8. 소송기간 / 26

제4장 손해배상청구 사건

1. 손해배상청구 사건 소송 결과 / 27
2. 청구액 / 28
3. 인용액 / 29
4. 인용액 분포 / 30
5. 침해유형별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 31
6.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 32
7. 매체유형별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 33
8. 공동 피소된 언론인 승소 결과 / 34
9.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유 / 35

제5장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 사건

1. 정정보도청구 사건 소송 결과 / 36
2. 정정보도청구 기각 사유 / 37
3. 반론보도청구 사건 소송 결과 / 38
4. 반론보도청구 기각 사유 / 39
5. 판결 주문에 따른 정정보도등의 형식 / 40

제6장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과 법원 판결 비교

1. 조정경유 비율 / 43
2.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조정액과 인용액 비교 / 44
3. 조정을 거친 사건의 위원회 조정 결과와 법원 소송 결과 비교 / 44

표 목차

〈표 1〉 코딩 항목	6
〈표 2- 1〉 심급별 건수	9
〈표 2- 2〉 상소율	10
〈표 2- 3〉 청구별 건수	11
〈표 2- 4〉 청구별 건수(각 청구권별 합산)	11
〈표 2- 5〉 침해유형별 건수	12
〈표 2- 6〉 원고유형별 건수	13
〈표 2- 7〉 매체유형별 건수	14
〈표 2- 8〉 방송 매체의 보도유형별 건수	15
〈표 2- 9〉 방송 외 매체의 보도유형별 건수	15
〈표 2-10〉 직위별 피고 구성	16
〈표 2-11〉 직위별 피고 분류(언론사 및 언론인 직위별 합산)	17
〈표 3- 1〉 심급별 결과	18
〈표 3- 2〉 상소심의 원심 판결 유지여부	19
〈표 3- 3〉 청구별 결과	20
〈표 3- 4〉 침해유형별 결과	21
〈표 3- 5〉 원고유형별 결과	22
〈표 3- 6〉 매체유형별 소송 결과	23
〈표 3- 7〉 일간신문 유형별 소송 결과	24
〈표 3- 8〉 방송 유형별 소송 결과	24
〈표 3- 9〉 인터넷 매체 유형별 소송 결과	24
〈표 3-10〉 방송 외 매체의 보도유형별 소송 결과	25
〈표 3-11〉 방송 매체의 보도유형별 소송 결과	25
〈표 3-12〉 심급별 소송기간 분포	26
〈표 3-13〉 보도게재청구 사건의 심급별 소송기간 분포	26

〈표 4- 1〉 손해배상청구 사건 소송 결과	28
〈표 4- 2〉 손해배상 청구액	28
〈표 4- 3〉 손해배상 인용액	29
〈표 4- 4〉 손해배상 인용액 분포	30
〈표 4- 5〉 침해유형별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31
〈표 4- 6〉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32
〈표 4- 7〉 공적 인물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승소율 및 인용액	32
〈표 4- 8〉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매체유형별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33
〈표 4- 9〉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피고 언론인 승소 여부	34
〈표 4-10〉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유	35
〈표 5- 1〉 정정보도청구 사건 소송 결과	36
〈표 5- 2〉 정정보도청구 기각 사유	37
〈표 5- 3〉 반론보도청구 사건 소송 결과	38
〈표 5- 4〉 반론보도청구 기각 사유	39
〈표 5- 5〉 매체별 정정보도등의 인용건수	40
〈표 5- 6〉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보도지면(프로그램)	41
〈표 5- 7〉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위치	41
〈표 5- 8〉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보도제목	42
〈표 5- 9〉 인용된 정정보도문등의 본문 길이	42
〈표 6- 1〉 조정경유 비율	43
〈표 6- 2〉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44
〈표 6- 3〉 위원회와 법원 소송결과 비교	45
〈표 6- 4〉 자동 소 제기 사건의 위원회 조정액 및 법원 인용액 비교	45
〈표 6- 5〉 자동 소 제기 사건 중 손해배상 인용 동일 사건 비교	46
〈표 6- 6〉 조정을 거친 사건의 소송 결과 전체 목록	46
분석 판결 목록(민사 236건)	57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제1장 손해배상청구

명예훼손 사례

1.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일로 원고가 공판에 출석하는 사진을 게재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암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A vs 주식회사 뉴스1 외 1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7가소641572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9나6286 판결 67
2. 현직 기자의 트위터 게시물이나 칼럼을 보고 기사를 작성했다라도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A vs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7가단507291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9나8589 판결 82
3. 회사의 대표자와 회사가 동일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대표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가 바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볼 수는 없다
주식회사 케이티 vs A 외 1명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2. 12. 선고 2017가단220274 판결 96
4. 금품이 전달된 매체를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A vs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외 2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가합522268 판결 105
5. 제보자가 사건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관련 녹취록을 제공하며 자신의 실명을 밝혀도 된다고 했다 면 제보내용을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A vs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외 5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가합54834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1. 8. 선고 2019나2017049 판결 119

6.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다루는 기사에서 공인 아닌 식당 사장의 신원을 노출하였다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질 수 있다
A vs 주식회사 민중의소리 외 2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7. 선고 2018가합570427 판결 140

7. 만평에 묘사된 표현은 풍자적 외피 또는 은유로서 그 사실 자체를 적시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외 1명 vs B 외 1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가단5156041 판결 150

8. 범죄 혐의자의 일방적 진술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여 보도하였다면 보도의 공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A vs B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7. 12. 선고 2017가단70059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8나59235 판결 157

9. 조정절차에서 있었던 상대방의 진술을 소송절차에서 원용할 수 없다
장수군 vs 주식회사 전북금강일보
전주지방법원 2019. 5. 22. 선고 2018가합4351 판결 166

10. 다소 과장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들어 범행 의혹을 제기하였더라도, 당사자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반대되는 정황까지 함께 제시했다면 위법하지 않다
A vs B 외 2명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29. 선고 2017가합39160 판결 172

11. 병원이 최초 발급한 소견서가 추후에 수정, 재발행되었으나 이를 모른채 기존 소견서를 근거로 보도했다면 보도내용을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
학교법인 ○○학원 vs 주식회사 시사저널사 외 2명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29. 선고 2018가합33527 판결 190

12. 허위보도라도 기초가 된 사실관계를 잘못 표현한 것에 불과하며 그 비중이 전체 보도내용에 비추어 매우 낮다면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해산된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A vs 주식회사 머니투데이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72342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9. 10. 30. 선고 2019나24101 판결 202

13. 언론사 기사를 링크하며 기사의 제목과 본문 중 일부를 발췌하여 트위터에 게시했다면 해당 매체의 특성상 링크된 기사와는 달리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
A vs 주식회사 여성신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0. 선고 2017가단514746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8나47501 판결 215

초상권 침해 사례

14. 일반인의 얼굴이 담긴 제보영상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공개한 보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A vs B 외 2명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8. 9. 선고 2018가단215568 판결 231

사생활 침해 사례

15. 성희롱 피해사실을 공개하여 사생활을 침해한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필요최소한의 정보만을 공개하였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A vs 주식회사 SBS 외 1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8가합5527, 2018가합5534(병합) 판결 238
16. 공적 인물이라 할지라도 8년 전 결별한 내연관계까지 공개한 것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로 보기 어렵다
A vs B 외 1명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가합10320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1. 22. 선고 2019나2003743 판결 248

재산권 침해 사례

17. 의료 관련 기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언론사에서 의도적으로 특정 내용을 누락한 채로 중대한 약물 부작용이 발생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A 주식회사 vs 주식회사 엠케이그룹 외 1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가합54130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9. 20. 선고 2018나2037343 판결 257

18. SNS에 사진을 공개, 게시했다고 하여 언론사의 사용까지 허락한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
 A vs 국민일보 주식회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나57023 판결 280

제2장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1. 제척기간이 도과된 시점에서 반론보도청구가 추가되었더라도 소송계속 중이라면 언론중재법 제26조제2항에 의거,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조달청 vs 아시아투데이 주식회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8가합672 판결 288
2. 청구된 반론보도 내용이 원보도와 다르지 않거나 명백히 허위인 경우 또는 청구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A vs 주식회사 문화방송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8. 선고 2018가합1001 판결 295
3. 당사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과거 경영진’으로 표시했어도 사건 발생 당시 임원으로 재직한 사람이라면 보도와의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된다
 A vs 한국프로듀서연합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가합1330 판결 300
4. 공직자의 발언과 관련한 보도에서 정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요 부분’은 발언이나 영향력 행사의 유무일 뿐 발언 및 영향력 행사의 장소는 아니다
 A vs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2019가합821 판결 305

제3장 기사삭제청구 등

1. 공직자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은 이상 위법하다 할 수 없다
 A vs 주식회사 엠탐 외 1명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8가합3273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4. 12. 선고 2018나2057545 판결 310
2. 공기업의 부실투자에 대한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속하는 사항으로 문제제기와 공개토론을 허용하여야 한다
 A vs 제이티비씨 주식회사 외 2명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8가합35417 판결 318
3.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당사자의 반론을 충분히 취재하지 않고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이 라면 명예훼손에 따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A vs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외 1명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0. 31. 선고 2018가합3275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6. 14. 선고 2018나2068088 판결 329
4. 허위의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면 관련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
 주식회사 A vs 주식회사 시사저널사 외 2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6. 선고 2018가합545698 판결 354

제4장 기타 판결

1.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이나 교양·오락 프로그램의 객관성·공정성을 평가할 때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재단법인 시민방송(RTV) vs 방송통신위원회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361
2.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의 칼럼, 기고 등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6헌마90 결정 375

제1부

언론 관련 판결 분석

제1장 분석 목적 및 내용

제2장 소송제기 현황

제3장 소송 결과

제4장 손해배상청구 사건

제5장 정정 · 반론 · 추후보도청구 사건

제6장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과 법원 판결 비교

제1장

분석 목적 및 내용

1. 분석 목적

언론 관련 판결은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할 때 사법부가 어떠한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언론 관련 판결을 분석한 데이터는 언론분쟁의 양상과 추이를 파악하는 객관적 자료가 되며, 언론분쟁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위원회는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및 초상권·사생활의 비밀 등 기타 인격권 침해 관련 판결을 수집하여 통계적 분석을 시도했다. 구체적으로 소송 제기 현황, 소송 결과, 손해배상 인용액 등 판결 내용에 포함된 다양한 정보들을 계량화하여 양적 분석을 실시했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언론분쟁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 및 제도 개선이나 언론분쟁 예방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자료수집 방법

분석 대상 판결은 대법원 법원도서관에 마련된 판결문 검색·열람 특별창구를 통해 검색¹⁾하여 수집했다.

판결 검색 시 ①정정보도 ②반론보도 ③추후보도 ④보도&명예훼손&손해배상 ⑤보도&초상 ⑥보도&음성 ⑦보도&사생활 ⑧보도&성명 ⑨보도금지 ⑩언론중재위원회 등을 검색어로 사용했다. 형사판결 등을 제외한 민사판결이 분석대상이며, 판결 선고가 아닌 화해권고결정·강제조정·조정성립 등으로 종결된 사건은 분석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1) 법원은 2006년 5월 1일부터 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판결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분석 대상

가. 2019년도 분석 대상 언론 관련 판결은 민사 236건

분석 대상은 선고 일자를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중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한 법익 침해를 이유로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 방송사닷컴 등) 또는 언론인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 판결로서 총 236건이 수집되었다.

나. 분석 대상 판결은 심급, 확정 여부와 관계없어

심급 및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수집된 모든 언론 관련 판결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다만 선고일을 기준으로 2019년 한 해 동안 선고된 판결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상소심 없이 하급심만 존재하거나 하급심 없이 상소심만 존재하는 판결²⁾도 포함되어 있다.

다. 매체별 분석 대상 총 건수는 334건

다수 매체가 공동으로 피소된 사건의 경우, 매체별로 보도 내용이나 형식 등이 다르고 이에 따라 법원의 인용여부·인용내용·손해배상청구액 및 인용액 등이 다를 수 있다. 이 점을 감안하여 한 사건 이더라도 피고가 다수 매체인 경우 매체별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기도 했다. 비록 소송 건으로는 한 건이지만 통계분석의 목적상 매체 수에 따라 여러 건으로 분할한 결과 분석대상 총 건수는 334건이었다.

라. 청구권별 재분류 총 건수 543건

분석 대상 판결은 대부분 하나의 청구가 아닌, 정정보도청구+손해배상청구나 손해배상청구+기사삭제청구와 같이 여러 청구가 병합된 형태를 보였다. 이에 일부 분석 항목에서는 매체별 총 건수 334건을 청구권별로 재분류하여 분석을 시도했다. 이 경우의 청구권별 총 건수는 543건이다.

2) 2019년에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2020년 현재 상소심 사건이 진행 중인 사건을 의미하거나 2019년 이전에 하급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을 의미한다.

4. 분석 내용

본 보고서는 2019년도 언론 관련 판결의 소송제기 현황, 소송 결과, 손해배상청구 및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의 소송 결과, 위원회 조정과 법원 판결의 비교 분석 결과 등을 담고 있다. 항목별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송제기 현황

심급별 소송건수, 상소율, 청구별 소송건수, 침해유형별 소송건수, 원고유형별 소송건수, 매체유형별 소송건수, 보도유형별 소송건수, 매체별 피고구성

나. 소송 결과

심급별 처리 결과, 상소심의 원심판결 유지여부, 청구별 소송 결과, 침해유형별 소송 결과, 원고유형별 소송 결과, 매체유형별 소송 결과, 보도유형별 소송 결과, 소송기간

다. 손해배상청구 사건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청구액 및 인용액, 인용액 분포, 침해유형별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매체유형별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공동 피소된 언론인 승소 결과,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유

라.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 사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 소송 결과,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 기각 사유, 판결주문에 따른 보도문의 형식

마.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과 법원의 판결 비교

분석 대상 소송사건 중 위원회 조정을 거친 사건의 비율,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조정을 거친 사건의 위원회 조정 결과와 법원 소송 결과 비교

5. 분석을 위한 코딩 항목 및 코딩 방법

가. 코딩 항목

〈표 1〉 코딩 항목

구 분	코딩 항목	
일 반 사 항	01. 판결번호	04. 심급
	02. 접수일자 및 선고일자	05. 청구의 종류
	03. 법원명	06. 침해유형
원 고	07. 원고명	09. 공적인물 분류
	08. 대표 원고 분류	
피 고	10. 사건 피고명	13. 매체별 피고 분류
	11. 사건 피고구성	14. 피고 언론인 개인 승소 여부
	12. 매체명	
매 체 분 류	15. 매체분류	
보도내용 분류	16. 보도내용 분류	
	16-1. 방송 외 기사유형	16-2. 방송 프로그램 유형
청 구 별 처리결과	17. 청구별 처리결과	
	17-1. 정정보도	17-4. 손해배상
	17-2. 반론보도	17-5. 기사삭제
	17-3. 추후보도	17-6. 보도금지
원 · 상소심 결 과	18. 심급별 결과	
	18-1. 1심	18-4. 환송후심
	18-2. 2심	18-5. 재상고심
	18-3. 3심	
기 타	19. 원고 원심유지 여부	21. 조정신청 결과
	20. 조정청구명	22. 조정을갈음하는결정(직권조정) 결정액
손 해 배 상	23. 사건 청구액	26. 매체별 인용액
	24. 사건 인용액	27. 손해배상 기각사유
	25. 매체별 청구액	
정 정 보 도	28. 정정 기각사유	29. 정정 각하사유
반 론 보 도	30. 반론 기각사유	31. 반론 각하사유
판결주문에 따른 보도형식	32. 보도의 인용 여부	35. 보도위치
	33. 보도시기	36. 보도제목
	34. 보도지면(프로그램)	37. 보도본문 길이

나. 코딩 방법

수집된 판결을 코딩하는 과정에서 개념이 모호하거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은 기존 판결분석 보고서의 분석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하여 분류했다.

1) 대표 원고 분류

- ① 다수 원고 사건 중 개인 및 단체가 함께 청구한 경우에는 단체로 분류했다.
- ② 공인이란 고위 공직자와 공적 인물을 말한다. 판결에서 고위 공직자나 공적 인물이라고 직접 언급하거나 암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판례나 학설에서 꾸준히 공인으로 분류한 인물을 이 범주에 포함시켰다.
- ③ 고위 공직자는 판결에서 언급된 경우나「공직자윤리법」제3조 상의 공직자³⁾를 말하며, 공적 인물이란 정치인·전문인·언론인·기업인·연예인 등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물 또는 단체의 대표 등으로서 그 활동 사항이 공적 관심사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 ④ 공인 여부 판단에서는 현직뿐만 아니라 전직도 고려했다. 전직이라 함은 원고의 재직 당시 일어난 사건을 보도했지만 소송이 진행될 당시에는 그 직을 그만둔 경우를 말한다.
- ⑤ 일반인과 공인이 함께 신청한 경우 공인으로 분류했다.

2) 매체명 분류

- ① 오프라인과 별도로 언론사닷컴을 상대로 한 청구(기사삭제 등)가 있거나 오프라인과 함께 언론사닷컴 기사에 의한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언론사닷컴을 별도의 매체로 보고 코딩했다.
예) 사건 피고는 (주)A신문사 단독이나, 청구취지에 A신문, A신문 홈페이지를 상대로 각 정정보도 등을 청구했다면 2개의 매체로 각각 코딩함
- ② 피고가 언론인 개인인 경우 해당 언론인 소속 매체를 기준으로 코딩했다.

3) 매체별 피고 분류

- ① 소송에 연루된 언론인들을 직위별로 파악하고자 하는 항목이다.
- ② 피고의 직위가 대표이사나 부장 등이라도 기사를 직접 쓴 사람이라면 담당으로 분류했다.

4) 언론인 개인에 대한 판결 결과

언론인이라 함은 피고 중 언론사 대표, 기자, 프로듀서 등을 말한다. 언론사 소속이 아니거나 보도에 관여하지 않은 외주 제작사 직원 등은 언론인에 포함하지 않았다.

3) 국무위원·국회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4급 이상의 공무원, 법관 및 검사, 대령 이상의 장교 등

5) 방송 분류

- ① 지상파방송에는 지상파방송사의 지역방송총국 및 계열사를 포함했다.
- ② 고발 성격이 짙은 프로그램만을 시사·고발로 분류했다.
예) 「PD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등
- ③ 뉴스 프로그램 내의 고발 코너는 뉴스로 분류했다.
- ④ 다큐멘터리나 생활정보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교양·정보로 분류했다.
예) 「모닝와이드」, 「생방송 오늘아침」등

6) 청구별 처리결과

- ① 원고 승소 또는 원고 승소율에는 원고 일부승 사건을 포함했다.
(원고 일부승 사건 : 손해배상액 또는 정정보도문 등이 청구(항소)취지보다 금액 또는 감축된 경우, 여러 청구 중 일부만 인용된 경우, 1개의 사건에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여 손해배상만 인용되고 정정보도는 기각된 경우 등)
- ② 2심의 경우 그 처리결과는 항소기각 또는 원심취소의 형태로 나타나고, 3심의 경우 그 처리결과는 상고기각이나 원심파기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지 여부를 기준 삼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이라면 원고 승소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라면 원고 패소로 분류했다.

7) 원고 원심유지 여부

2심의 원심은 1심, 3심의 원심은 2심을 말한다. 상소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원심의 취지와 같다면 '승유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과 달리 상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면 '승변복' 등으로 코딩했다.

8) 매체별 청구액 및 인용액

- ① 피고가 다수인 경우 청구취지액 및 주문 인용액을 매체별로 구분하여 청구액 및 인용액으로 기재했다.
- ② 매체별로 별도 법인이 있거나 매체별로 각자(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 및 인용한 경우에는 매체별로 동일한 금액을 기재했다.
예) MBC - iMBC 연대하여 2,000만원 → MBC : 2,000만원 / iMBC : 2,000만원
- ③ 피고가 단일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매체분류상 2개로 나누어진 경우는 청구취지액 및 주문 인용액을 반액으로 나누어 청구액 및 인용액을 각각 기재했다.
예) 《경향신문사》에 2,000만원 청구한 경우, 경향신문 : 1,000만원 / 경향닷컴 : 1,000만원
- ④ 피고가 언론인인 경우 소속 매체에 대한 청구액 및 인용액에 합산했다.
- ⑤ 항소심과 상고심도 1심의 청구취지액을 기재하되, 상소심에서 청구취지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금액을 기재했다.

제2장 소송제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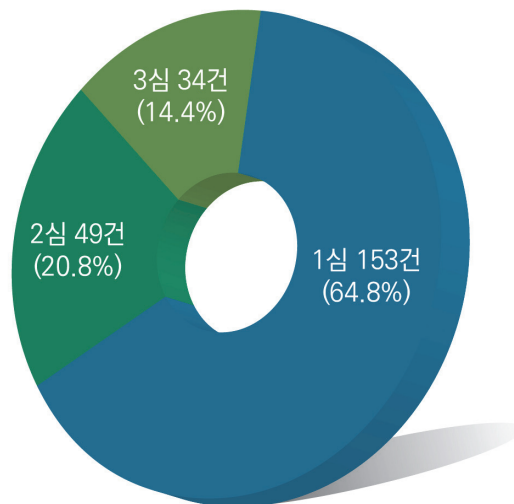
2019년도에 선고된 언론 관련 판결을 대상으로 심급별 소송건수, 상소율, 청구별·침해유형별·매체유형별 소송건수 등 소송 일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심급별 소송건수

1심 64.8%, 2심 20.8%, 3심 14.4%

분석 대상 판결의 심급별 소송건수를 살펴보면 1심 판결이 153건(64.8%), 2심(환송 후 심리 포함)이 49건(20.8%), 3심이 34건(14.4%)이다.

〈표 2-1〉 심급별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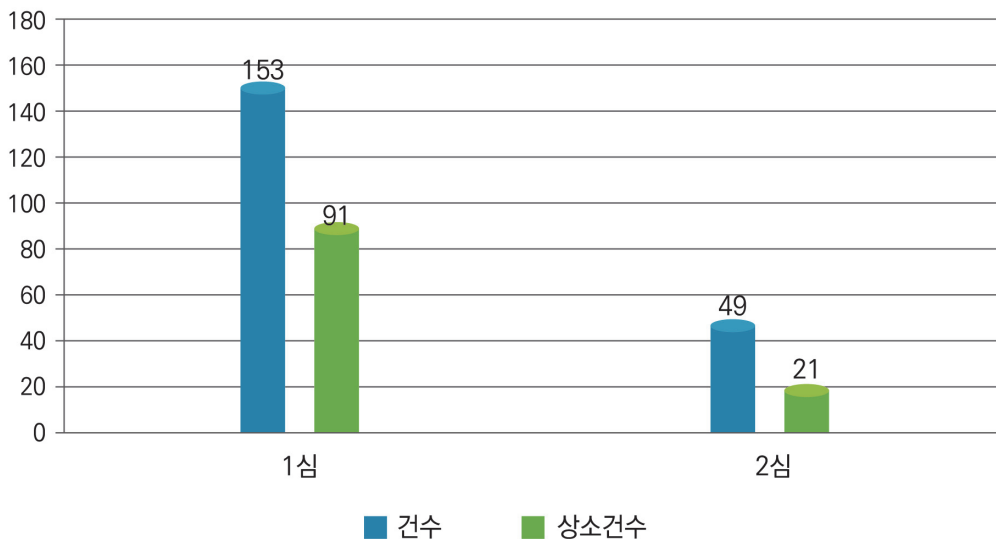


2. 상소율

항소율 59.5%, 상고율 42.9%

분석대상 판결 중 1심 사건과 2심 사건의 경우, 원고 또는 피고가 상소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그 비율을 살펴보았다. 1심 판결 153건 중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건은 91건으로 항소율은 59.5%로 나타났다. 2심 판결 49건 중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은 21건으로 상고율은 42.9%였다.

〈표 2-2〉 상소율



3. 청구별 소송건수

지난해에 이어 원고가 가장 선호하는 피해구제 방법은 손해배상

소송건수를 매체별로 나눈 후 각 매체별로 원고가 청구한 내용을 분석해 선호하는 피해구제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손해배상을 단독으로 청구한 경우가 120건(35.9%)으로 가장 많았고,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병합해 청구한 경우가 87건(26.0%)으로 뒤를 이었다.

〈표 2-3〉 청구별 건수

청구명	건수	비율(%)
정 정	27	8.1
정정/반론	9	2.7
정정/반론/추후	1	0.3
정정/반론/손배	25	7.5
정정/반론/손배/기사삭제	2	0.6
정정/손배	87	26.0
정정/손배/기사삭제	11	3.3
정정/기사삭제	3	0.9
반 론	11	3.3
반론/손배	6	1.8
추후/손배	4	1.2
손해배상	120	35.9
손배/기사삭제	15	4.5
손배/기사삭제/보도금지	1	0.3
손배/보도금지	1	0.3
기사삭제	4	1.2
기사삭제/보도금지	2	0.6
보도금지	5	1.5
합 계	334	100.0

한 사건에 여러 청구가 함께 제기된 사건을 청구권별로 나누어 재합산해 살펴본 결과, 손해배상청구가 272건(50.1%)으로 과반을 차지했고 정정보도청구 165건(30.4%), 반론보도청구 54건(9.9%), 기사삭제청구 38건(7.0%), 보도금지청구 9건(1.7%), 추후도보청구 5건(0.9%) 순으로 나타났다.

〈표 2-4〉 청구별 건수(각 청구권별 합산)

청구명	건수	비율(%)
정정보도	165	30.4
반론보도	54	9.9
추후보도	5	0.9
손해배상	272	50.1
기사삭제	38	7.0
보도금지	9	1.7
합 계	543	100.0

4. 침해유형별 소송건수

침해유형별 최다 소송 유형은 명예훼손

소송건수를 기준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침해 법익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사건이 195건(82.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밖에 명예훼손 및 모욕이 12건(5.1%),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이 7건(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5〉 침해유형별 건수

침해유형	건수	비율(%)
명 예	195	82.6
명예/신용	7	3.0
명예/신용/재산	1	0.4
명예/모욕	12	5.1
명예/모욕/초상	2	0.8
명예/초상	4	1.7
명예/초상/음성	2	0.8
명예/초상/성명	1	0.4
명예/초상/사생활	1	0.4
명예/음성	1	0.4
명예/성명	1	0.4
명예/성명/사생활	1	0.4
명예/사생활	3	1.3
명예/재산	2	0.8
초 상	1	0.4
재 산	1	0.4
저 작	1	0.4
합 계	236	100.0

5. 원고유형별 소송건수

언론소송을 가장 많이 제기하는 원고유형은 일반인

언론 관련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개인이 청구한 사건은 144건(61.0%), 단체가 청구한 사건은 92건(39.0%)이었다. 전체 원고유형 가운데 일반인이 74건(31.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위 공직자 41건(17.4%) 기업 30건(12.7%), 공적 인물 29건(12.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표 2-6〉 원고유형별 건수

원고유형		건수	비율(%)
개인	고위 공직자 ⁴⁾	41	17.4
	공적 인물	29	12.3
	일반인	74	31.4
	소 계	144	61.0
단체	언론사	16	6.8
	국가기관	3	1.3
	지자체	6	2.5
	기업	30	12.7
	공공단체	4	1.7
	종교단체	7	3.0
	시민단체	3	1.3
	교육기관	6	2.5
	일반단체	13	5.5
	정당	4	1.7
	소 계	92	39.0
합 계		23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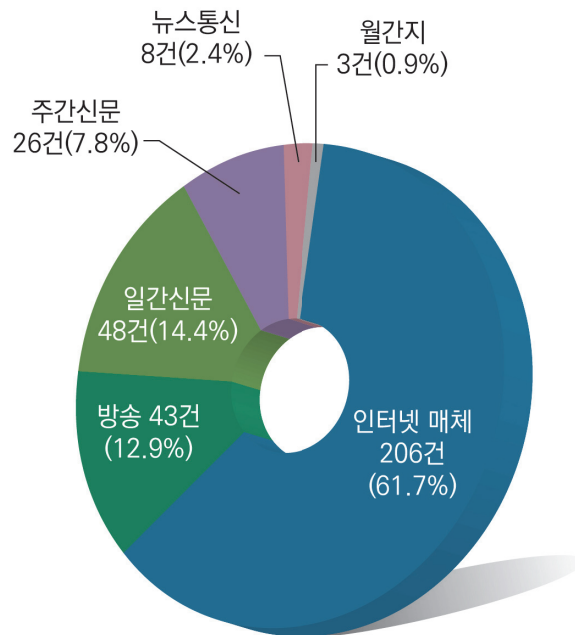
4) 판결에서 고위 공직자로 언급된 경우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공직자를 의미함

6. 매체유형별 소송건수

인터넷 매체, 특히 언론사닷컴에 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돼

소송건수를 매체별로 나눈 후 매체유형별 건수(총 334건)를 살펴본 결과, 인터넷 매체가 206건(61.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간신문 48건(14.4%), 방송 43건(12.9%), 주간신문 26건(7.8%), 뉴스통신 8건(2.4%), 월간지 3건(0.9%)의 순이었다.

〈표 2-7〉 매체유형별 건수



사건수가 가장 많은 인터넷 매체(206건)의 경우, 방송사 홈페이지를 비롯한 언론사닷컴이 136건(66.0%), 인터넷신문은 70건(34.0%)으로 파악됐다. 방송(43건)은 지상파방송 27건(62.8%), 종합편성채널 등 케이블방송 15건(34.9%) 외에 라디오 1건(2.3%)이 있었다. 일간신문(48건)은 중앙종합일간지 36건(75.0%), 지역종합일간지 10건(20.8%), 경제일간지 2건(4.2%)으로 집계됐다.

7. 보도유형별 소송건수

가장 많이 문제 된 보도유형은 뉴스(방송)와 스트레이트 기사(방송 외 매체)

소송건수를 매체별로 나눈 후 각 매체별로 문제가 된 보도유형을 살펴봤다. 방송 매체(43건)에서는 뉴스가 21건(48.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고발 14건(32.6%), 교양 5건(11.6%), 토론 3건(7.0%)이 뒤를 이었다.

〈표 2-8〉 방송 매체의 보도유형별 건수

보도유형	건수	비율(%)
뉴 스	21	48.8
고 발	14	32.6
교 양	5	11.6
토 론	3	7.0
합 계	43	100.0

방송을 제외한 매체에서는 스트레이트 기사가 266건(91.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표 2-9〉 방송 외 매체의 보도유형별 건수

보도유형	건수	비율(%)
스트레이트	266	91.4
스트레이트/사설	8	2.7
스트레이트/칼럼	3	1.0
칼 럼	10	3.4
만 평	4	1.4
합 계	291	100.0

8. 직위별 피고 분류

언론소송의 피고 구성 언론사 단독이 가장 많아

매체유형별로 분류한 334건의 피고들을 직위별로 분석한 결과, 언론사만 피소된 건이 146건(43.7%)으로 가장 많았고, 언론사와 담당 기자(또는 PD)가 함께 피소된 사건이 92건(27.5%)으로 그 뒤를 이었다.

〈표 2-10〉 직위별 피고 구성

직위별 피고 구성	건수	비율(%)
언 론 사	146	43.7
언론사/대표	2	0.6
언론사/대표/국장/부장/담당	2	0.6
언론사/대표/국장/담당	7	2.1
언론사/대표/담당	10	3.0
언론사/국장	1	0.3
언론사/국장/부장/담당	2	0.6
언론사/국장/담당	12	3.6
언론사/부장/담당	2	0.6
언론사/담당	92	27.5
언론사/기타	2	0.6
언론사/비언론	5	1.5
대 표	8	2.4
대표/국장/담당	1	0.3
대표/담당	8	2.4
국장/담당	3	0.9
부장/담당	3	0.9
담 당	27	8.1
담당/비언론	1	0.3
합 계	334	100.0

직위별 피고 분류를 다시 각 직위별로 나누어 합산한 결과를 살펴보면, 언론사 283건(53.0%), 담당 기자(또는 PD) 170건(31.8%), 대표이사 38건(7.1%) 등의 순으로 나타나 언론사, 담당자, 대표 순으로 청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표 2-11〉 직위별 피고 분류(언론사 및 언론인 직위별 합산)

직위별 피고 구성	건수	비율(%)
언 론 사	283	53.0
대표이사	38	7.1
국 장	28	5.2
부 장	9	1.7
담당 기자 및 프로듀서	170	31.8
비 언 론	6	1.1
합 계	534	100.0

제3장

소송 결과

이 장에서는 분석 대상 판결의 소송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했다. 구체적으로 심급별, 청구별, 침해유형별, 원고유형 및 매체유형별, 보도유형별, 소송기간으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심급별 결과

원고 승소율 46.6%로 절반에 못 미쳐

2019년도 전체 언론 관련 소송의 원고 승소율은 46.6%로 전년도 원고 승소율(46.4%)과 근접한 수치로 나타났다. 심급별로 원고 승소율을 살펴보면, 1심 원고 승소율 41.8%, 2심(환송후심 포함) 55.1%, 3심 55.9%로 1심의 승소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1〉 심급별 결과

심 급	원고승	원고패	계
1 심	64 (41.8)	89 (58.2)	153 (100.0)
2 심	27 (55.1)	22 (44.9)	49 (100.0)
3 심	19 (55.9)	15 (44.1)	34 (100.0)
합 계	110 (46.6)	126 (53.4)	236 (100.0)

※ ()안의 숫자는 %

2. 상소심의 원심 판결 유지 여부

상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유지되는 비율 92.5%

분석 대상 판결 236건 중 2심 46건(환송후심 3건 제외)과 3심 34건을 합산한 80건을 대상으로 원심 판결 유지 여부를 조사해 보았다. 원고의 청구취지가 인용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일부 인용 포함)으로 승패소를 분류한 결과, 상소심이 원심의 판결결과를 그대로 유지한 비율은 92.5%(74건)였다. 이를 심급별로 살펴보면, 항소심의 원심 판결 유지비율은 91.3%였고, 상고심(대법원)의 원심 판결 유지비율은 94.1%로 집계되어 상소심에서 원심 판결 결과가 반복될 확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 3-2〉 상소심의 원심 판결 유지여부

구 분	건 수	원심판결 유지		원심판결 반복	
		원고승소판결 유지	원고패소판결 유지	원고승소판결 반복	원고패소판결 반복
2 심	46 (100.0)	23 (50.0)	19 (41.3)	3 (6.5)	1 (2.2)
3 심	34 (100.0)	18 (52.9)	14 (41.2)	2 (5.9)	0 (0.0)
합 계	80 (100.0)	41 (51.3)	33 (41.2)	5 (6.3)	1 (1.2)
		74 (92.5)		6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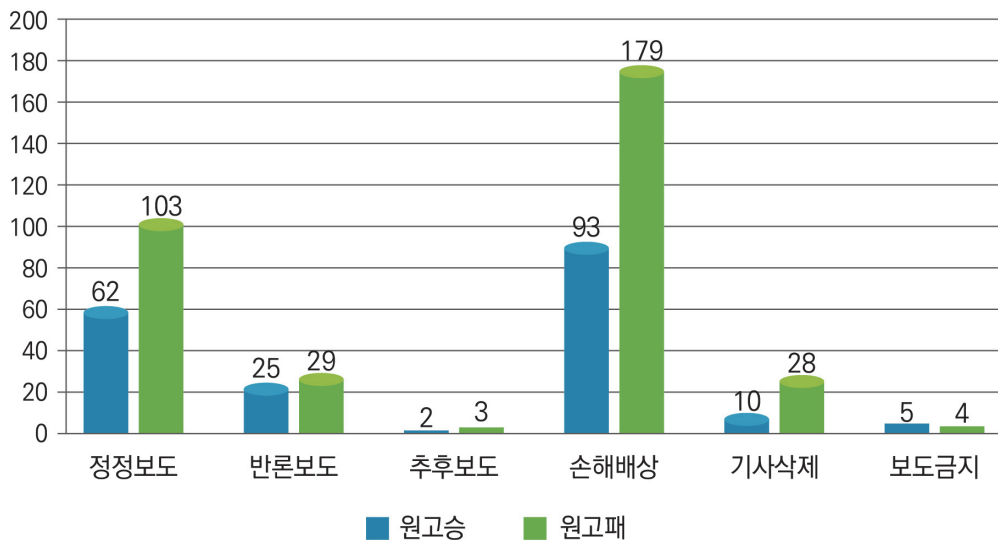
※ ()안의 숫자는 %

3. 청구별 결과

원고 승소율은 보도금지청구 사건이 55.6%로 가장 높아

236건의 소송건을 매체별로 우선 분류한 후, 이를 다시 청구권별로 재분류하여 청구별 원고 승소율을 살펴보았다. 재분류된 543건 중 보도금지청구 사건(9건)의 원고 승소율이 55.6%(5건)로 가장 높았고, 이어 반론보도청구 사건(54건)은 46.3%(25건), 추후보도청구(5건) 40.0%(2건), 정정보도청구(165건) 37.6%(62건), 손해배상청구(272건) 34.2%(93건), 기사삭제청구(38건) 26.3%(10건) 순으로 나타났다.

〈표 3-3〉 청구별 결과



4. 침해유형별 결과

명예훼손 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45.6%

원고의 청구취지를 토대로 원고가 주장했던 침해유형별 승소율을 분석한 결과, 언론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명예훼손에서의 원고 승소율은 45.6%로 나타났다. 그 외 침해유형에서의 원고 승소율은 표본이 적어 통계로서의 의미를 도출하기 어려웠다.

〈표 3-4〉 침해유형별 결과

침해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명 예	89 (45.6)	106 (54.4)	195 (100.0)
명예/신용	4 (57.1)	3 (42.9)	7 (100.0)
명예/신용/재산	1 (100.0)	0 (0.0)	1 (100.0)
명예/모욕	5 (41.7)	7 (58.3)	12 (100.0)
명예/모욕/초상	1 (50.0)	1 (50.0)	2 (100.0)
명예/초상	2 (50.0)	2 (50.0)	4 (100.0)
명예/초상/음성	2 (100.0)	0 (0.0)	2 (100.0)
명예/초상/성명	0 (0.0)	1 (100.0)	1 (100.0)
명예/초상/사생활	0 (0.0)	1 (100.0)	1 (100.0)
명예/음성	0 (0.0)	1 (100.0)	1 (100.0)
명예/성명	0 (0.0)	1 (100.0)	1 (100.0)
명예/성명/사생활	0 (0.0)	1 (100.0)	1 (100.0)
명예/사생활	2 (66.7)	1 (33.3)	3 (100.0)
명예/재산	2 (100.0)	0 (0.0)	2 (100.0)
초 상	1 (100.0)	0 (0.0)	1 (100.0)
재 산	0 (0.0)	1 (100.0)	1 (100.0)
저 작	1 (100.0)	0 (0.0)	1 (100.0)
합 계	110 (46.6)	126 (53.4)	236 (100.0)

※ ()안의 숫자는 %

5. 원고유형별 결과

지자체 · 공공단체의 승소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원고유형에 따른 승소율은 개인의 경우 일반인 51.4%, 공적 인물 44.8%, 고위 공직자 34.1%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체의 경우에는 지자체와 공공단체의 승소율이 100%로 집계됐지만 해당건수는 각 6건, 4건에 불과했다. 가장 승소율이 낮은 집단은 언론사와 정당으로, 언론사의 승소율은 18.8%, 정당의 승소율은 0%였다.

〈표 3-5〉 원고유형별 결과

원고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개인	고위 공직자	14 (34.1)	27 (65.9)	41 (100.0)
	공적 인물	13 (44.8)	16 (55.2)	29 (100.0)
	일 반 인	38 (51.4)	36 (48.6)	74 (100.0)
	소 계	65 (45.1)	79 (54.9)	144 (100.0)
단체	언 론 사	3 (18.8)	13 (81.3)	16 (100.0)
	국가기관	2 (66.7)	1 (33.3)	3 (100.0)
	지 자 체	6 (100.0)	0 (0.0)	6 (100.0)
	기 업	15 (50.0)	15 (50.0)	30 (100.0)
	공공단체	4 (100.0)	0 (0.0)	4 (100.0)
	종교단체	3 (42.9)	4 (57.1)	7 (100.0)
	시민단체	1 (33.3)	2 (66.7)	3 (100.0)
	교육기관	5 (83.3)	1 (16.7)	6 (100.0)
	일반단체	6 (46.2)	7 (53.8)	13 (100.0)
	정 당	0 (0.0)	4 (100.0)	4 (100.0)
	소 계	45 (48.9)	47 (51.1)	92 (100.0)
합 계		110 (46.6)	126 (53.4)	23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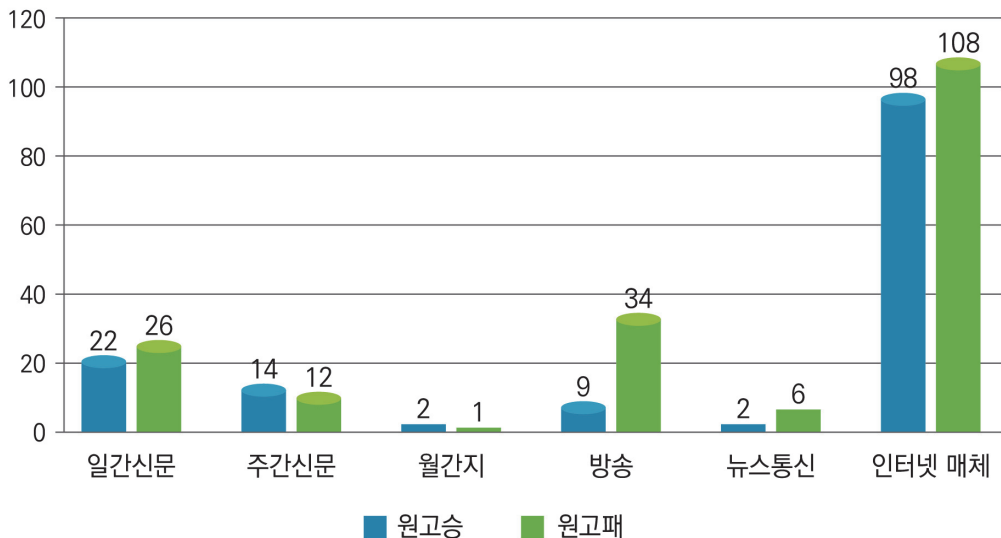
※ ()안의 숫자는 %

6. 매체유형별 결과

인터넷 매체 상대 사건의 원고 승소율 47.6%

소송건수를 매체별로 나눈 334건을 대상으로 매체유형에 따른 소송 결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사건 수가 가장 많은 인터넷 매체 관련 소송(206건)의 원고 승소율은 47.6%(98건)로 나타났다. 사건수는 적지만 월간지(3건)를 상대로 한 사건의 원고 승소율이 66.7%로 가장 높았고, 방송(43건)을 상대로 한 사건의 승소율이 20.9%로 가장 낮게 조사됐다.

〈표 3-6〉 매체유형별 소송 결과



세부 유형별로는 일간신문(48건)에 대한 원고 승소율은 중앙종합일간지 47.2%(17건), 지역종합일간지 50.0%(5건), 경제일간지 0%(0건)로 나타났다.

방송의 경우, 2019년에 전체적으로 원고 승소율이 낮게 나타나 지상파방송에 대한 원고 승소율은 25.9%(7건), 케이블방송은 13.3%(2건), 라디오는 0%(0건)로 집계됐다.

인터넷 매체를 대상으로 한 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인터넷신문 54.3%(38건), 언론사닷컴 44.1%(60건)로 각 조사됐다.

〈표 3-7〉 일간신문 유형별 소송 결과

일간신문 유형별	원고승	원고패	계
중앙종합	17 (47.2)	19 (52.8)	36 (100.0)
지역종합	5 (50.0)	5 (50.0)	10 (100.0)
경제일간	0 (0.0)	2 (100.0)	2 (100.0)
합 계	22 (45.8)	26 (54.2)	48 (100.0)

※ ()안의 숫자는 %

〈표 3-8〉 방송 유형별 소송 결과

방송 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지상파방송	7 (25.9)	20 (74.1)	27 (100.0)
케 이 블	2 (13.3)	13 (86.7)	15 (100.0)
라 디 오	0 (0.0)	1 (100.0)	1 (100.0)
합 계	9 (20.9)	34 (79.1)	43 (100.0)

※ ()안의 숫자는 %

〈표 3-9〉 인터넷 매체 유형별 소송 결과

인터넷 매체 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인터넷신문	38 (54.3)	32 (45.7)	70 (100.0)
언론사닷컴	60 (44.1)	76 (55.9)	136 (100.0)
합 계	98 (47.6)	108 (52.4)	206 (100.0)

※ ()안의 숫자는 %

7. 보도유형별 결과

스트레이트 기사(방송 외) 46.6%, 뉴스(방송) 상대 원고 승소율 19.0%

매체별로 분류된 334건을 방송 외 매체 291건, 방송 매체 43건으로 다시 나눈 후, 각 매체에 대한 보도유형별 소송 결과를 살펴보았다. 방송 외 매체의 경우, 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된 스트레이트 기사를 상대로 한 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46.6%로 나타났다.

방송 매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뉴스 프로그램에 대한 소송의 원고 승소율은 19.0%로 저조했는데, 고발 프로그램(21.4%)이나 교양 프로그램(20.0%) 등 다른 보도유형도 비슷한 수치로 조사됐다.

〈표 3-10〉 방송 외 매체의 보도유형별 소송 결과

보도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스트레이트	124 (46.6)	142 (53.4)	266 (100.0)
스트레이트/사설	6 (75.0)	2 (25.0)	8 (100.0)
스트레이트/칼럼	3 (100.0)	0 (0.0)	3 (100.0)
칼럼	5 (50.0)	5 (50.0)	10 (100.0)
만평	0 (0.0)	4 (100.0)	4 (100.0)
합계	138 (47.4)	153 (52.6)	291 (100.0)

※ ()안의 숫자는 %

〈표 3-11〉 방송 매체의 보도유형별 소송 결과

보도유형	원고승	원고패	계
뉴스	4 (19.0)	17 (81.0)	21 (100.0)
고발	3 (21.4)	11 (78.6)	14 (100.0)
교양	1 (20.0)	4 (80.0)	5 (100.0)
토론	1 (33.3)	2 (66.7)	3 (100.0)
합계	9 (20.9)	34 (79.1)	43 (100.0)

※ ()안의 숫자는 %

8. 소송기간

3개월 이내 판결이 선고된 1심 보도게재청구 사건 0건

언론소송에서는 소송 결과만큼이나 소송 진행의 신속함도 중요하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29조에서는 “법원은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 제1항에서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는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 취지가 실제 소송에서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소송 개시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 즉 소송기간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⁵⁾

그 결과, 1심과 2심 사건 상당수가 6개월을 초과해서 판결이 선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 심급별 소송기간 분포

구 분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6개월 초과 1년 이내	1년 초과 2년 이내	2년 초과	계
1심	8 (5.2)	17 (11.1)	78 (51.0)	43 (28.1)	7 (4.6)	153 (100.0)
2심	4 (8.2)	16 (32.7)	24 (49.0)	4 (8.2)	1 (2.0)	49 (100.0)
3심	6 (17.7)	18 (52.9)	1 (2.9)	1 (2.9)	8 (23.5)	34 (100.0)
합 계	18 (7.6)	51 (21.6)	103 (43.6)	48 (20.3)	16 (6.8)	236 (100.0)

※ ()안의 숫자는 %

특히, 보도게재청구 사건의 1심 재판에서는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한 경우가 단 1건도 없었다.⁶⁾ 접수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선고한 사건이 79건(85.9%)으로 대다수였다.

〈표 3-13〉 보도게재청구 사건의 심급별 소송기간 분포

구 분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6개월 초과 1년 이내	1년 초과 2년 이내	2년 초과	계
1심	0 (0.0)	13 (14.1)	50 (54.3)	26 (28.3)	3 (3.3)	92 (100.0)
2심	3 (15.8)	6 (31.6)	9 (47.4)	1 (5.3)	0 (0.0)	19 (100.0)
3심	0 (0.0)	6 (42.9)	1 (7.1)	1 (7.1)	6 (42.9)	14 (100.0)
합 계	3 (2.4)	25 (20.0)	60 (48.0)	28 (22.4)	9 (7.2)	125 (100.0)

※ ()안의 숫자는 %

5) 이 분석에서는 언론중재법이 아닌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의 일환으로 보도문 게재를 청구하는 사건도 대상에 포함하였음을 밝혀둔다.

6) 다만, 해당 사건들이 보도게재청구만을 단독으로 다루는 것이 아닌, 손해배상청구를 비롯한 여타의 청구들이 병합되어 판결이 늦어진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제4장

손해배상청구 사건

전술한 바와 같이, 분석 대상 판결을 매체별로 나눈 후 다시 청구별로 재분류하여 합산한 건수는 543건이다. 543건 중 손해배상청구 사건 272건만을 대상으로 원고 승소율, 청구액 및 인용액, 공동 피소된 언론인에 대한 판결 결과,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유 등을 분석해 보았다.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청구액 및 인용액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사건이 전체 평균값의 상승 또는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청구액 및 인용액의 중앙값⁷⁾과 최빈액⁸⁾을 함께 조사했다.

원고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고들 각각의 청구액이나 인용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했으며, 피고가 다수인 경우에는 피고를 매체별로 구분하여 산출된 매체별 금액을 기준으로 했다. 또 피고가 언론인인 경우에는 해당 언론인이 소속된 매체의 청구액과 인용액에 언론인에 대한 청구액을 합산했다.

1. 손해배상청구 사건 소송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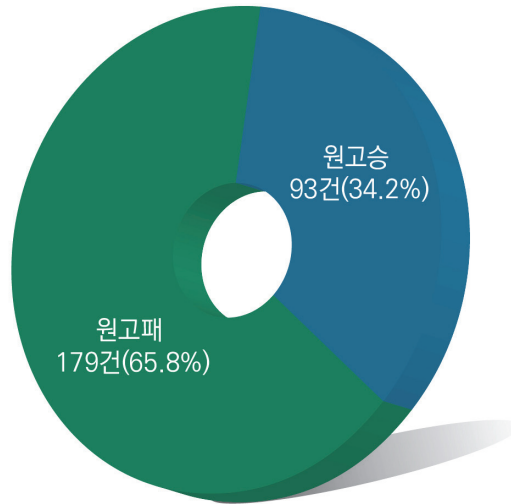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의 원고 승소율 34.2%

분석 대상 손해배상청구 사건 272건 중 원고가 승소한 사건은 93건으로 원고 승소율은 34.2%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언론소송(236건)에서의 원고 승소율(46.6%)보다 다소 저조한 수치로 분석된다.

7) 중앙값이란 사례를 순위대로 배열하여 사례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한 가운데에 위치한 사례의 액수를, 짝수인 경우에는 한 가운데 위치한 두개 값의 평균을 말한다.

8) 최빈액은 전체 사례 중 건수가 가장 많은 값이다.

〈표 4-1〉 손해배상청구 사건 소송 결과



2. 청구액

평균 손해배상청구액 1억 3,849만 원, 중앙값 6,250만 원
 청구액 기준 1억 원 이상 사건 비중 43.8%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고 청구액을 평균과 중앙값, 최빈액 등으로 나눠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청구액 평균은 약 1억 3,849만 원이었고, 중앙값은 6,250만 원, 최빈액은 1억 원이었다.

전체 손해배상청구 272건 중 1억 원 이상의 고액 청구 사건이 119건(43.8%)을 차지하였으며, 최고 청구액은 13억 원, 최저 청구액은 1원이었다.

〈표 4-2〉 손해배상 청구액

청구액(원) 건수	평균액	중앙값	최빈액	최저액	최고액
272	138,495,711	62,500,000	100,000,000	1	1,300,000,000

3. 인용액

손해배상 평균 인용액 약 1,464만 원, 인용 최고액 2억 524만 원

손해배상청구 사건(272건) 중 청구가 인용되어 금전배상이 이루어진 건수는 93건(34.2%)이다. 이들 사건의 평균 인용액은 약 1,464만 원이었고 중앙값과 법원이 가장 빈번하게 선고한 액수는 모두 5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손해배상 인용 최고액은 2억 524만 원으로, 의료 관련 기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언론사가 의도적으로 특정 내용을 누락한 채로 중대한 약물 부작용이 발생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사건이었다.⁹⁾

한편, 손해배상청구 인용 사건 중 2심 판결은 30건, 3심 판결은 16건이었다. 위 상소심 판결 46건을 대상으로 상소심 법원이 원심에서 인용한 손해배상액을 증액 또는 감액했는지를 살펴보았다. 2심 법원이 원심 판결의 인용액을 유지한 경우는 18건이었고, 증액한 경우(원심의 원고 패소판결을 번복한 경우 포함) 8건, 감액한 경우 4건으로 나타났다. 3심의 경우, 대법원은 16건 모두 원심 인용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표 4-3〉 손해배상 인용액

인용액(원) 건수	평균액	중앙값	최빈액	최저액	최고액
93	14,646,238	5,000,000	5,000,000	500,000	205,24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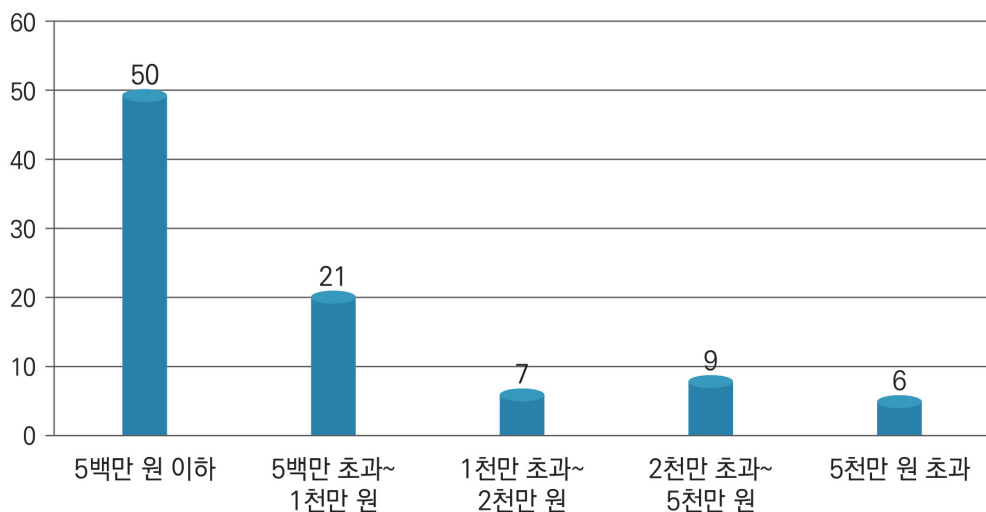
9) 서울고등법원 2019. 9. 20. 선고 2018나2037343 판결

4. 인용액 분포

손해배상 인용액 5백만 원 이하 53.8%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인용된 사건 93건의 인용액 분포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5백만 원 이하가 50건(53.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5백만 원 초과 1천만 원 이하가 21건(22.6%),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가 7건(7.5%),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가 9건(9.7%), 5천만 원 초과가 6건(6.4%)으로 나타났다.

〈표 4-4〉 손해배상 인용액 분포



5. 침해유형별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명예훼손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한 사건의 원고 승소율 33.0%

손해배상청구 사건 272건의 침해법익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원고 승소율과 인용액을 분석한 결과, 건수가 가장 많은 명예훼손 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33.0%로 나타났다. 명예훼손만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인용액 평균값은 약 960만 원, 인용액 중앙값은 5백만 원이었다.

명예훼손 다음으로 많은 유형은 명예훼손과 모욕을 동시에 주장한 사건들로, 이 경우 승소율은 41.2%를 기록했다.

〈표 4-5〉 침해유형별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침해유형	건수	원고승	원고 승소율(%)	인용액 평균값(원)	인용액 중앙값(원)
명예	215	71	33.0	9,626,762	5,000,000
명예/신용	13	2	15.4	70,000,000	70,000,000
명예/신용/재산	1	1	100.0	205,240,000	205,240,000
명예/모욕	17	7	41.2	7,857,143	5,000,000
명예/모욕/초상	2	1	50.0	2,000,000	2,000,000
명예/초상	4	1	25.0	4,000,000	4,000,000
명예/초상/음성	2	2	100.0	6,000,000	6,000,000
명예/초상/성명	2	0	0.0	-	-
명예/초상/사생활	1	0	0.0	-	-
명예/음성	1	0	0.0	-	-
명예/성명	2	0	0.0	-	-
명예/성명/사생활	1	0	0.0	-	-
명예/사생활	5	3	60.0	8,333,333	7,500,000
명예/재산	2	2	100.0	88,180,032	88,180,032
초상	1	1	100.0	10,000,000	10,000,000
재산	1	0	0.0	-	-
저작	2	2	100.0	500,000	500,000
합계	272	93	34.2	14,646,238	5,000,000

6.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지자체 외 손해배상청구 승소율 저조한 경향

원고유형별로 살펴본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지자체가 100%로 가장 높게 파악됐으나, 사건수는 4건에 불과했다. 이어 일반인(47.6%), 공적인물(46.7%)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원고가 언론사인 경우 승소율은 5.6%로 매우 낮게 조사됐다. 사실상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승소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한편 교육단체의 승소율은 25%로 낮았지만 인용액 평균값은 약 8,800만 원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승소 사건 수가 2건 뿐이어서 인용액의 통계적 의미는 크지 않다.

〈표 4-6〉 원고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원고유형	건수	원고승	원고 승소율(%)	인용액 평균값(원)	인용액 중앙값(원)
개 인	고위 공직자	63	16	25.4	6,937,500	4,500,000
	공적 인물	30	14	46.7	7,571,429	4,500,000
	일반인	84	40	47.6	9,737,500	7,250,000
단 체	언론사	18	1	5.6	30,000,100	30,000,100
	국가기관	0	0	0.0	-	-
	지자체	4	4	100.0	2,750,000	2,750,000
	기업	34	11	32.4	44,567,273	17,500,000
	공공단체	2	0	0.0	-	-
	종교단체	5	0	0.0	-	-
	시민단체	6	1	16.7	20,000,000	20,000,000
	교육단체	8	2	25.0	88,180,032	88,180,032
	일반단체	15	4	26.7	7,000,000	7,500,000
	정 당	3	0	0.0	-	-
	합 계	272	93	34.2	14,646,238	5,000,000

〈표 4-7〉 공적 인물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승소율 및 인용액

공적 인물 유형	건수	원고승	원고 승소율(%)	인용액 평균값(원)	인용액 중앙값(원)
정치인	8	6	75.0	3,166,667	2,500,000
전문인	2	0	0.0	-	-
언론인	5	3	60.0	7,333,333	6,000,000
연예인	3	2	66.7	2,500,000	2,500,000
기 타	12	3	25.0	20,000,000	5,000,000
합 계	30	14	46.7	7,571,429	4,500,000

7. 매체유형별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원고 승소율, 월간지 상대로 낮고 지역종합일간신문 높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매체유형별 원고 승소율은 전년도와는 반대로 월간지를 상대로 한 사건에서 66.7%로 가장 높았는데, 사건수는 3건뿐이었다. 사건수가 가장 많은 인터넷신문(40.3%)과 언론사닷컴(36.7%) 등 인터넷 매체가 피고인 사건의 원고 승소율은 38.0%로 낮게 나타났다. 원고 승소율이 가장 낮은 매체는 경제일간지(0.0%)였으나 표본이 2건에 불과했다.

이전 5년간 방송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인용액 평균값이 가장 높았으나 2019년에는 인터넷 매체에 대한 인용액 평균값이 약 2,230만 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됐는데, 이는 재산상 손해를 인정한 고액 사건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표 4-8〉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매체유형별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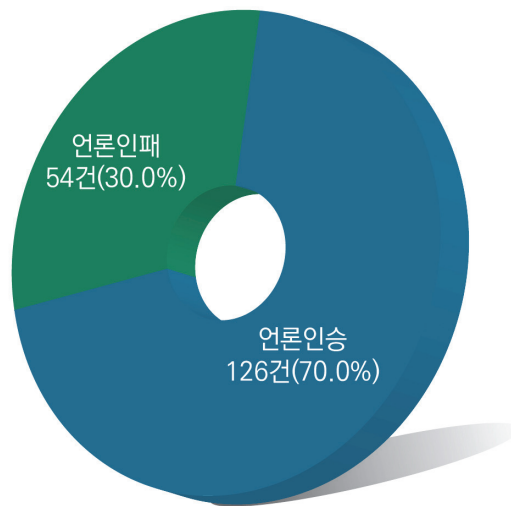
매체유형		인용액	건수	원고승	원고 승소율(%)	인용액 평균값(원)	인용액 중앙값(원)
일 간	중앙종합		28	10	35.7	3,150,000	2,500,000
	지역종합		10	5	50.0	7,800,000	5,000,000
	경제일간		2	0	0.0	-	-
	소 계		40	15	37.5	4,700,000	3,000,000
방 송	지상파방송		17	1	5.9	10,000,000	10,000,000
	케 이 블		14	1	7.1	4,000,000	4,000,000
	소 계		31	2	6.5	7,000,000	7,000,000
주간신문			19	7	36.8	6,500,000	5,000,000
월 간 지			3	2	66.7	500,000	500,000
뉴스통신			8	2	25.0	3,500,000	3,500,000
인터넷	인터넷신문		62	25	40.3	22,309,604	10,000,000
	언론사닷컴		109	40	36.7	16,659,002	5,000,000
	소 계		171	65	38.0	18,832,310	7,500,000
합 계			272	93	34.2	14,646,238	5,000,000

8. 공동 피소된 언론인 승소 결과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의 언론인 승소율은 70.0%

손해배상청구 272건 중 언론인이 공동 피고로 제소된 사건은 180건(66.2%)이었다. 이 중 피고 언론인(대표, 담당자 등)이 면책되어 승소한 경우는 126건(70.0%)이었다. 언론인인 피고의 승소율이 전체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피고승소율 65.8%보다 다소 높게 분석됐다.

〈표 4-9〉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피고 언론인 승소 여부



9.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유

명예훼손 사건에서 언론사 승소 요인은 보도의 공익성·진실성·상당성

손해배상청구 272건 중 기각(원고 패소)된 179건의 침해유형별 기각 사유를 살펴보았다. 명예훼손의 경우¹⁰⁾, 보도의 공익성 및 상당성이 인정되어 기각된 경우가 35건(19.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보도의 공익성 및 진실성과 상당성이 모두 인정되어 기각된 사례가 30건(16.8%),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된 경우가 27건(15.1%)으로 조사되어 공익성·진실성·상당성이 주된 기각 사유로 드러났다.

재산권 침해를 주장한 사건의 경우 보도내용과 손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기각되었다.

〈표 4-10〉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유

기각 사유		건수	비율(%)
명예훼손	불특정	13	7.3
	사실적시없음	24	13.4
	사실적시없음/공익	1	0.5
	사실적시없음/공익/상당성	2	1.1
	사실적시없음/진실성	3	1.7
	사실적시없음/평가저하아님	1	0.5
	사실적시없음/평가저하아님/진실성	2	1.1
	평가저하아님	3	1.7
	평가저하아님/공익/진실성	3	1.7
	공 익	13	7.3
	공익/진실성	27	15.1
	공익/진실성/상당성	30	16.8
	공익/상당성	35	19.6
	진실성	12	6.7
	진실성/상당성	3	1.7
	상당성	4	2.2
	기 타	2	1.1
재산	기 타	1	0.5
합 계		179	100.0

10) 명예를 포함하여 복수의 인격권 침해를 호소한 경우 주된 침해유형인 '명예훼손'에 분류하여 집계했다.

제5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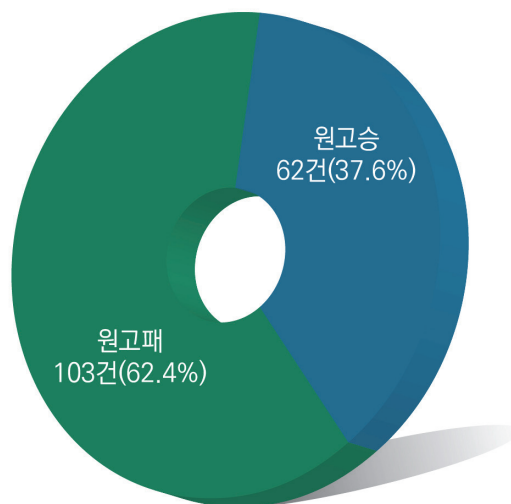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 사건

1. 정정보도청구 사건 소송 결과

정정보도청구 사건의 원고 승소율 37.6%

분석대상 판결을 매체별로 나눈 후, 다시 청구권별로 나눈 건수 543건 중 정정보도청구 사건은 165건이었다. 정정보도청구 사건에서 원고가 승소한 사건은 62건으로 원고 승소율은 37.6%로 낮게 나타났다. 이 중 정정보도를 단독으로 청구한 건수는 27건이었고 대부분 반론보도, 손해배상 또는 기사삭제 등과 병합하여 청구했다.

〈표 5-1〉 정정보도청구 사건 소송 결과



2. 정정보도청구 기각 사유

정정보도청구 사건의 주된 기각 사유는 ‘보도의 진실성’

정정보도청구 사건 중 원고가 패한 사건(103건)에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 1건을 제외한 102건의 기각 사유를 분석한 결과, 재판부가 보도의 진실성을 인정하여 기각한 사례가 50건(49.0%)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는 사유로 기각한 사건이 25건(24.5%), 보도에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진실하다는 사유로 기각된 경우가 17건(16.7%)을 차지하여, 주로 보도의 진실성이 인정되거나 보도내용이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표 5-2〉 정정보도청구 기각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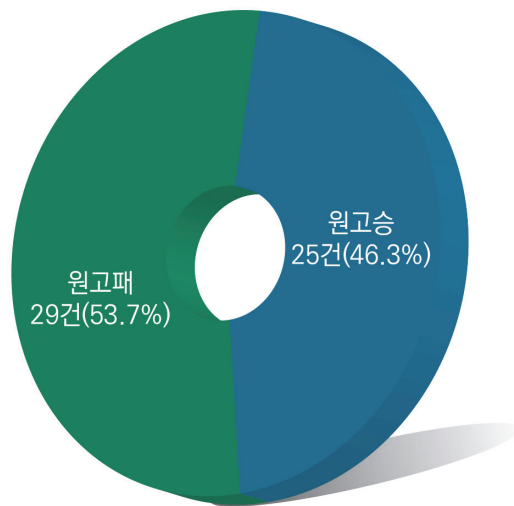
기각 사유	건수	비율(%)
개별연관 부정	2	2.0
사실주장 아님	25	24.5
사실주장 아님/진실성	17	16.7
진실성	50	49.0
기 타	8	7.8
합 계	102	100.0

3. 반론보도청구 사건 소송 결과

반론보도청구 사건의 원고 승소율 46.3%

분석대상 판결 중 반론보도청구 건수는 54건으로 원고 승소 사건은 25건, 원고 승소율은 46.3%로 나타났다. 반론보도만을 단독으로 청구한 사건은 11건이었고 대부분 정정보도나 손해배상 등과 병합하여 청구했다.

〈표 5-3〉 반론보도청구 사건 소송 결과



4. 반론보도청구 기각 사유

보도내용이 사실적 주장이 아닌 경우 반론보도청구 기각

반론보도청구 사건 54건 중 각하 1건을 제외하면 기각된 사건은 28건이었다. 보도내용이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된 경우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표 5-4〉 반론보도청구 기각 사유

기각 사유	건수	비율(%)
사실주장 아님	9	32.1
사실주장 아님/지엽말단	2	7.1
사실주장 아님/기반론행사	1	3.6
사실주장 아님/사실에 반함	3	10.7
지엽말단/기반론행사	4	14.3
기반론행사	1	3.6
사실에 반함	1	3.6
기 타	7	25.0
합 계	28	100.0

5. 판결 주문에 따른 정정보도등의 형식

법원에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 추후보도(이하 “정정보도등”이라 한다) 게재를 명한 사건은 총 84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5건은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동시에 게재하도록 판결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별로 분류한 기준으로 집계한 보도 게재 건수는 총 89건이다.

매체유형별로 분류하면 일간신문 15건, 주간신문 13건, 월간지 1건, 방송 5건, 인터넷 매체 55건이었고, 인용한 보도의 유형은 정정보도 62건, 반론보도 25건, 추후보도 2건이었다.

〈표 5-5〉 매체별 정정보도등의 인용건수

매체유형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	계
일간신문	9	6	-	15
주간신문	10	3	-	13
월 간 지	1	-	-	1
방송	3	2	-	5
뉴스통신	-	-	-	0
인터넷 매체	39	14	2	55
합계	62	25	2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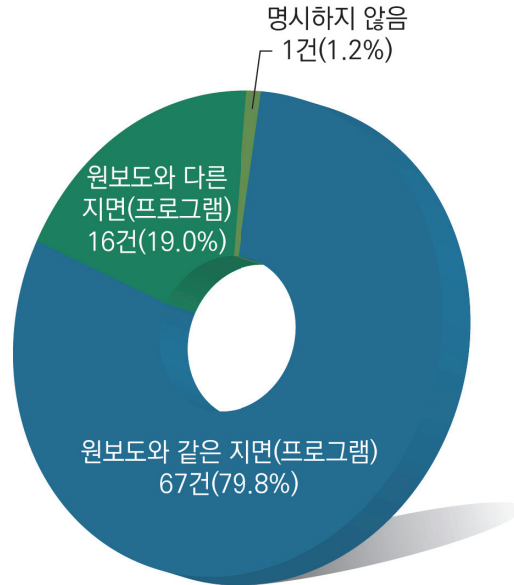
한편, 법원이 정정보도등을 명하는 때에는 보도문의 내용·크기·횟수·게재위치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야 한다(언론중재법 제27조 제2항). 이에 따라 판결 주문에서 법원이 인용한 보도문의 위치, 제목, 본문 길이 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정정보도등의 게재위치

대부분 원보도와 동일한 위치에 보도하도록 판결

법원이 인용한 정정보도등의 위치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 원보도와 같은 지면이나 프로그램에 보도하도록 명한 것으로 조사됐다(67건, 79.8%). 원보도와 다른 지면이나 프로그램에 보도하도록 명한 경우는 16건(19.0%)에 불과했다. 그 외 보도지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1건 있었다.

〈표 5-6〉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보도지면(프로그램)



보도문 게재를 명한 84건의 매체별 보도위치를 조사한 결과, 일간신문, 주간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1면 게재가 11건, 방송의 경우 첫머리가 5건, 인터넷 매체의 경우 제목이나 내용의 일부를 초기 화면에 게시하도록 한 사례가 42건으로 나타났다.

〈표 5-7〉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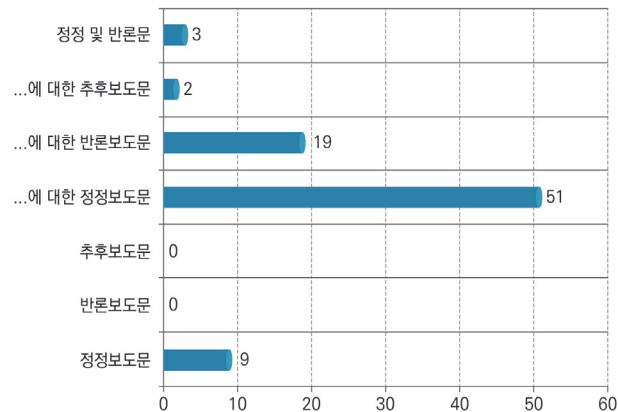
구분	보도위치	건수	비율(%)
정기간행물	1면	11	40.7
	1면 외	16	59.3
합 계		27	100.0
방송	첫머리	5	100.0
	후반	0	0.0
합 계		5	100.0
인터넷	제목이나 내용의 일부가 초기화면에 노출	42	80.8
	초기화면에 노출되는 것이 없음	10	19.2
합 계		52	100.0

나. 정정보도등의 보도제목, 보도본문 길이

원보도의 핵심 내용을 함께 기재하는 제목 형식이 일반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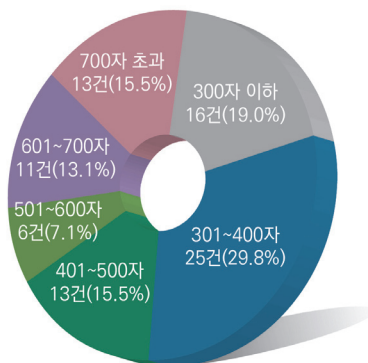
법원이 인용한 보도문의 제목과 본문 길이 등 형식을 분석했다. 보도 제목의 경우, ‘...에 대한 정정보도문’이나 ‘...에 대한 반론보도문’ 형식이 70건(83.3%)으로 집계되어 전년도(73.0%)보다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5-8〉 인용된 정정보도등의 보도제목



보도본문의 길이는 글자 수 기준으로 300자 초과 400자 이하가 25건(29.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0자 이하 16건(19.0%), 400자 초과 500자 이하 및 700자 초과 각 13건(1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9〉 인용된 정정보도문등의 본문 길이



제6장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과 법원 판결 비교

1. 조정경유 비율

전체 언론분쟁 중에서 위원회 조정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서 처리되는 비율 7.3%

2019년 분석대상 판결의 매체별 건수 334건을 청구권별로 재분류한 543건 중에서 기사삭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정정·반론·추후·손배 네 가지 청구권 관련 사건(총 496건)을 대상으로 위원회 조정을 거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 언론분쟁 중에서 7.3%의 사건만이 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법원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 조정경유 비율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전체 언론분쟁 건수 (A+B)	3,540 (100.0)	3,890 (100.0)	3,823 (100.0)	11,253 (100.0)
조정 건수 (A)	3,230 (91.2)	3,562 (91.6)	3,544 (92.7)	10,336 (91.9)
조정을 거치지 않은 판결 건수 (B)	310 (8.8)	328 (8.4)	279 (7.3)	917 (8.1)
조정을 거친 판결 건수 (C)	173 (4.9)	227 (5.8)	217 (5.7)	617 (5.5)
법원 판결 건수 (B+C)	483 (13.6)	555 (14.3)	496 (13.0)	1,534 (13.6)

※ ()안의 숫자는 %

* 건수 산정 : 정정·반론·추후·손배 청구권별 산정 (기사삭제, 게재금지 등 제외)

* 전체 언론분쟁 건수 : 판결 수집 건수를 전수조사로 전제한 경우임

* 법원 판결 건수는 기사삭제, 게재금지 청구 등을 포함할 경우 더 많아질 수 있음

2.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조정액과 인용액 비교

위원회 평균 조정액 약 481만 원, 법원 평균 인용액 약 1,464만 원

2019년 위원회가 처리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조정성립 등을 통해 금전배상이 이루어진 사건의 조정액과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인용액을 비교,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위원회 평균 조정액은 약 481만 원, 중앙값은 200만 원이고, 법원 평균 인용액은 약 1,464만 원, 중앙값은 500만 원이었다.¹¹⁾ 위원회의 평균 조정액은 피신청인의 불출석에 따라 고액 합의 간주된 사건¹²⁾으로 인해 전년도(약 196만 원)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법원 평균 인용액은 전년도(약 1,420만 원)와 비슷한 수치로 조사됐다. 고액 인용 사건의 영향으로 위원회 조정액이 상승했음에도 법원 인용액과는 여전히 격차를 보였다.

〈표 6-2〉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위원회 조정액과 법원 인용액 비교

구분	건수	평균액(원)	중앙값(원)	최저액(원)	최고액(원)
조정액	53	4,817,442	2,000,000	150,000	100,000,000
인용액	93	14,646,238	5,000,000	500,000	205,240,000

3. 조정을 거친 사건의 위원회 조정 결과와 법원 소송 결과 비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피신청인(언론사)이 이의제기한 경우, 언론사의 승소 확률 약 33%

2019년 언론 관련 판결 중 위원회 조정을 거친 217건¹³⁾을 대상으로 위원회 조정 결과와 법원 소송 결과를 원고 승소율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해보았다.

위원회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60건으로 이 사건들에서 원고 승소율은 56.7%(34건)로 나타났다. 피신청인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한 경우의 원고 승소율은 66.7%(14건)로, 신청인이 이의신청한 경우의 원고 승소율 37.0%(10건)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11)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두 기관의 결과 비교가 보다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차이를 비교,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 분석은 두 기관이 각기 다른 사건을 심리하여 판단한 결과이므로 분석 결과를 단순 비교하여 위원회와 법원의 손해배상액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고, 두 기관의 손해배상액의 전체적인 추이를 살펴보려는 데에 의미가 있다.

12) 피신청인이 조정에 불출석하여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 및 100,000,000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간주된 사건 (2019서울 조정1151·1152 사건)

13) 위원회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이루어진 경우를 비롯하여 조정불성립결정이나 조정성립, 취하 등 위원회 조정 이후 별도 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한편 위원회에서 기각된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 원고 승소율은 0%로 나타났고, 조정을 취하한 후 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원고 승소율은 92.3%(12건)로 조정을 거친 사건 중에서 가장 높았다.

〈표 6-3〉 위원회와 법원 소송결과 비교

위원회 조정결과		판결 결과	계	원고일부승	원고패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신청인 이의신청		27	10	17
	피신청인 이의신청		21	14	7
	신청인, 피신청인 이의신청		12	10	2
조정불성립결정			126	63	63
기각			6	-	6
각하			7	1	6
취하			13	12	1
합의			5	2	3
합계			217	112	105

손해배상을 명한 자동 소 제기 사건의 최고 인용액은 500만 원으로 위원회와 동일

위원회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손해배상을 명했지만 분쟁 당사자의 이의신청으로 법원에 자동 소 제기된 사건의 위원회 조정액 및 법원 인용액을 비교, 분석해보았다.

위원회를 거쳐 자동 소 제기된 6건 중 절반인 3건은 법원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었다. 손해배상이 인용된 경우 평균액 및 최저액은 법원 인용액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표 6-4〉 자동 소 제기 사건의 위원회 조정액 및 법원 인용액 비교

구분	건수	평균액(원)	중앙값(원)	최저액(원)	최고액(원)
조정액	6	2,583,333	2,000,000	500,000	5,000,000
인용액	3	3,666,667	5,000,000	1,000,000	5,000,000

〈표 6-5〉 자동 소 제기 사건 중 손해배상 인용 동일 사건 비교

구분	사건번호	원고	피고	조정액	인용액
1	2018나57023	A	국민일보 주식회사	500,000	1,000,000
2	2018가합417	A	주식회사 서울경제신문	1,000,000	-
3	2019나24101	A	주식회사 머니투데이	1,000,000	-
4	2018가합1395	A	주식회사 뉴스타운	5,000,000	5,000,000
5	2018가합5527	A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3,000,000	-
6	2018가합1711	A	주식회사 한국경찰일보	5,000,000	5,000,000

〈표 6-6〉 조정을 거친 사건의 소송 결과 전체 목록

순번	사건번호 (청구명)	신청인	피신청인	사건개요	위원회 결과	1심	2심	3심	환송후심
1	2018서울조정 1587 · 1588 · 1589 (정정 · 반론 · 추후)	A 외 1명	한국방송공사	신청인 교회가 재산헌납과 이혼을 강요하고, 교주가 여신도들과 성관계를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성립 -반론	각하 (서울남법 2018가합 109449)	취하 (서울고법 2019나 2014927)	-	-
2	2017서울조정 1046 · 1048 1099 · 1100 (각 정정 · 손해)	A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신문	2007년 당시 ○○사 주지였던 신청인이 과거 ○○사가 소유했던 토지의 개발권 계약을 통해 개인적으로 5백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인용-정정 1,000만 원 (서울중법 2017가합 549907)	인용-정정 1,000만 원 (서울고법 2018나 2028813)	인용-정정 1,000만 원 (대법 2019다 208984)	-
3	2017서울조정 1263, 1264 (각 손해)	A	국민일보 주식회사	서울광장 쿠퍼축제 현장에 서 신청인이 촬영한 사진을 무단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직권결정 -50만 원	인용 100만 원 (서울남법 2017가소 61059)	인용 100만 원 (서울남법 2018나 57023)	-	-
4	2018서울조정 411, 412 (각 정정)	A	한국방송공사	전 청와대 안보실장인 신청인이 과거 미국 연수시절 미국의 방위산업체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기각 (서울서법 2018가합 34667)	-	-	-
5	2018서울조정 768 (정정)	A당	B (서울의 소리)	A당의 대표가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하며 시위하던 청소년들이 끌려 나갈 때 비웃으며 구경했고, 색깔론을 들이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기각 (서울서법 2018가합 35493)	-	-	-
6	2017서울조정 263 (손해)	주식회사 A 외 1명	주식회사 미디어실크 에이치제이	신청인 회사 대표가 범죄 수익금으로 회사를 인수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인용 200만 원 (서울남법 2017가단 233423)	인용 200만 원 (서울남법 2018나 54895)	인용 200만 원 (대법 2018다 280675)	-

순번	사건번호 (청구명)	신청인	피신청인	사건개요	위원회 결과	1심	2심	3심	환송후심
7	2017서울조정 457, 667 (정정, 손해)	A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콘텐츠허브	○○○대 체육강사인 신 청인이 최순실 정유라 모 녀에게 학점 취득에 관한 상담을 해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인용-정정 300만 원 (서울중법 2017가합 530781)	인용-정정 300만 원 (서울고법 2018나 2048121)	-	-
8	2017서울조정 505, 655 (정정, 손해)	A	주식회사 한국일보	○○○대 체육강사인 신 청인이 최순실 정유라 모 녀에게 학점 취득에 관한 상담을 해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인용-정정 300만 원 (서울중법 2017가합 530781)	인용-정정 300만 원 (서울고법 2018나 2048121)	-	-
9	2017서울조정 1715 (정정)	A	이데일리 주식회사	국제 무기중개업을 하는 신청인이 8백억 원의 비자 금을 조성했고 이와 관련 해 교회 장로가 자살했다 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직권결정 -정정	인용-정정 (서울중법 2017가합 36944)	인용-정정 (서울고법 2019나 2007868)	-	-
10	2017경기조정 326·327 328·329 330·331 (각 정정·손배)	A	반월신문 주식회사	지역 개발사업과 관련해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전 ○○시장 비서실장이 현 재의 ○○시장 및 비서실 장과 연루됐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기각 (안산지원 2018가합 5284)	기각 (서울고법 2019나 2009857)	기각 (대법 2020다 203282)	-
11	2017서울조정 1917, 1919 (각 정정)	거제시 외 1명	주식회사 시사저널사	거제시장인 신청인이 공적 지위를 이용해 동생 및 측 근들이 보상금 차익을 누 릴 수 있도록 특혜를 했다 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인용-정정 700만 원 (서울서법 2017가합 40788)	인용-정정 700만 원 (서울고법 2018나 2049551)	-	-
12	2015서울조정 2908, 2910 2930, 2932 (각 손해)	A 주식회사	주식회사 제이티비씨	신청인 회사가 생산하는 산삼주가 가짜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기각	기각 (거창지원 2018가단 614)	기각 (창원지법 2019나 53751)	-	-
13	2017서울조정 117, 118 (각 정정)	국방부	한국방송공사	군의 의료조치가 미흡하고 진단이 늦어져 군인 형제가 희귀병인 복합부위통증증 후군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직권결정- 정정·반론	기각 (서울남법 2017가합 514)	인용-정정 (서울고법 2018나 2001405)	인용-정정 (대법 2018다 285649)	-
14	2017대전조정 58·59 (정정·손배)	A	주식회사 T&T뉴스	대학교수인 신청인이 학생 들에게 수업자료를 만들도 록 하고 논문도 대필시켰다 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기각 (부산동부 2018가합 101412)	-	-	-
15	2018대전조정 1·2 (정정·손배)	A	주식회사 언론홍보 진흥원	신청인 협회가 발급하는 ○ ○○○속독강사 자격증이 미등록 불법 자격증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인용-정정 1,000만 원 기사삭제 (부산지법 2017가합 42961)	-	-	-

순번	사건번호 (청구명)	신청인	피신청인	사건개요	위원회 결과	1심	2심	3심	환송후심
16	2018서울조정 1570 · 1571 (정정 · 손배)	A당 외 1명	주식회사 씨비에스 아이	A당 유니폼 납품업체 선정 및 해당 업체 사장부부의 지방선거 공천에 특혜가 있었고, 그 배후가 ○○○ 사무총장이라는 보도는 사 실이 아니다.	불성립	기각 (서울남법 2018가합 109708)	-	-	-
17	2017서울조정 255 · 256 (정정 · 반론)	A	B (인터넷 크리스찬 연합신문)	목사인 신청인이 법리도 모른 채 한국독립교회선교 단체연합회 총회 진행을 방해하는 소란을 피웠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직권결정 -반론	기각 (고양지원 2017가합 490)	기각 (서울고법 2018나 2041755)	기각 (대법 2019다 226425)	-
18	2017서울조정 2096 (정정)	A 주식회사	파이낸셜 뉴스신문 주식회사	인천공항공사 운영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정규직 전 환을 앞둔 직원들을 일방 적으로 타지역으로 발령내 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직권결정 -반론	인용-정정 1,000만 원 (서울남법 2018가합 47)	인용-정정 (서울고법 2019나 2019915)	-	-
19	2017서울조정 1718 (정정)	A	주식회사 기독교 텔레비전	신청인 교단이 오대양 사 건과 세월호 사고를 유발 한 사이버종교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기각 (서울중법 2018가합 507559)	기각 (서울고법 2018나 2040608)	기각 (대법 2018다 304366)	-
20	2018서울조정 753, 754 (각 정정)	A당	주식회사 문화일보	A당과 B당이 대선 관련 고 소 · 고발사건을 서로 취하 하기로 합의할 당시, A당 이 "○○○"을 보호할 목 적으로 "○○○"이 포함된 팬카페 회원들에 대한 취 하를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기각 (서울중법 2018가합 539280)	-	-	-
21	2018대구조정 93, 95 (각 정정)	문경시	주식회사 한원	문경시가 시 행정에 비판 적인 언론사에게는 시 홍 보 관련 광고예산을 집행 하지 않는 등 독선적인 행 정을 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인용-정정 (상주지원 2018가합 5412)	인용-정정 (대구고법 2019나 22051)	-	-
22	2016서울조정 1651~1656 (각 정정 · 반론 · 손배)	A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신청인 산하 노조들의 파 업이 불법이고 기득권 강 화를 위한 것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인용-반론 (서울중법 2017가합 500346)	인용-반론 (서울고법 2017나 2068081)	인용-반론 (대법 2018다 302698)	-
23	2018서울조정 284 (정정)	조달청	아시아투데이 주식회사	조달청이 공공기관의 입찰 위반 행위를 묵인해 신생 기업들이 공공 조달시장 진입에 애로를 겪고 있다 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직권결정 -반론	기각 (서울남법 2018가합 672)	-	-	-
24	2017서울조정 1743 (손배)	A	주식회사 엠탑	한국도로공사 사장 물망에 오른 신청인이 과거에 7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보 도는 사실이 아니다.	취하	기각 (서울서법 2018가합 32739)	기각 (서울고법 2018나 2057545)	기각 (대법 2019다 233225)	-

순번	사건번호 (청구명)	신청인	피신청인	사건개요	위원회 결과	1심	2심	3심	환송후심
25	2017서울조정 1084 (손배)	A	주식회사 민중의소리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신청 인이 여자 아르바이트생들 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했다 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하	인용 1,000만 원 (서울중법 2018가합 570427)	강제조정 (서울고법 2019나 2023532)	-	-
26	2017서울조정 1087 (손배)	A	주식회사 아시아경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신청 인이 여자 아르바이트생들 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했다 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하	기각 (서울중법 2018가합 570427)	강제조정 (서울고법 2019나 2023532)	-	-
27	2017서울조정 1089 (손배)	A	주식회사 스페셜미디어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신청 인이 여자 아르바이트생들 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했다 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하	기각 (서울중법 2018가합 570427)	강제조정 (서울고법 2019나 2023532)	-	-
28	2018서울조정 156 (정정)	A	주식회사 새한일보	경기도재난안전본부의 소 방성능평가위원인 신청인 이 특정 업체에 유리한 평 가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 이 아니다.	직권결정 -정정	인용-정정 300만 원 (서울중법 2018가합 1495)	인용-정정 300만 원 (서울고법 2019나 2021703)	-	-
29	2018서울조정 1680 (정정)	주식회사 문화방송	주식회사 미래한국 미디어	MBC가 대기발령 상태인 전직 노조위원장에게 100 만 원 수준의 월급을 지급 해 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직권결정 -반론	인용-정정 (서울중법 2018가합 7004)	-	-	-
30	2017서울조정 1068 (손배)	A 주식회사 외 1명	주식회사 아시아경제	신청인 회사 회장이 역대 대통령 일가 및 정관계 인 사에 로비를 했다는 취지 의 부정적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	불성립	기각 (서울중법 2017가합 558529)	기각 (서울고법 2018나 2040790)	기각 (대법 2019다 204562)	-
31	2018서울조정 913 (반론)	A	주식회사 아이엠비씨	세월호 유가족들의 단식농 성을 조롱한 일베 회원들 의 폭식투쟁을 다루면서 신청인을 마치 폭식투쟁의 배후인물인 것처럼 화면에 부각시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직권결정 -반론	기각 (서울서법 2018가합 992)	-	-	-
32	2018서울조정 922 (반론)	A	주식회사 문화방송	세월호 유가족들의 단식농 성을 조롱한 일베 회원들 의 폭식투쟁을 다루면서 신청인을 마치 폭식투쟁의 배후인물인 것처럼 화면에 부각시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직권결정 -반론	기각 (서울서법 2018가합 1001)	-	-	-
33	2018서울조정 1958, 1959 (각 반론)	A	주식회사 매일방송	90년대 인기 그룹 멤버인 신청인이 수입 자동차 매 장에서 막무가내로 난동을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기각 (서울중법 2018가합 582307)	화해권고 (서울고법 2019나 2026791)	-	-

순번	사건번호 (청구명)	신청인	피신청인	사건개요	위원회 결과	1심	2심	3심	환송후심
34	2017서울조정 1702·1703 (정정·손배)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미디어오늘	신청인 신문사가 '서울시 간접조작 사건' 관련 국정 원과의 특별한 관계를 바 탕으로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기각 (서울중법 2018가합 500572)	화해권고 (서울고법 2019나 2029592)	-	-
35	2018전북조정 76 (손배)	장수군	주식회사 전북금강일보	장수군이 교량 재가설공사 입찰공고를 개찰 당일 취 소하고 재공고한 이유가 특정 업체를 입찰에 포함 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보 도는 사실이 아니다.	직권결정 -정정	인용 500만 원 (전주지법 2018가합 4351)	화해권고 (광주고법 -전주 2019나 11024)	-	-
36	2018전북조정 78 (손배)	장수군	주식회사 전북금강일보	장수군이 교량 재가설공사 입찰공고를 개찰 당일 취 소하고 재공고한 이유가 특정 업체를 입찰에 포함 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보 도는 사실이 아니다.	직권결정 -정정	인용 500만 원 (전주지법 2018가합 4368)	화해권고 (광주고법 -전주 2019나 11031)	-	-
37	2018서울조정 250, 252 (각 손배)	A	주식회사 서울경제신문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신청 인이 학부모에게 충지를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직권결정 -100만 원, 알림보도 기사노출 · 검색차단	기각 (제주지법 2018가합 417)	-	-	-
38	2018서울조정 1731·1732 (정정·손배)	A	주식회사 문화방송	경찰관인 신청인이 수갑을 채우다 피의자가 다치자 고의로 공무집행방해 혐의 를 적용했다는 보도는 사 실과 다르다	직권결정 -반론 및 기사수정	기각 (서울서법 2018가합 1681)	-	-	-
39	2018서울조정 391, 392 (각 정정)	학교법인 A	주식회사 시사저널사	신청인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슈퍼박테리아인 M RSA에 감염됐다는 보도 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인용-정정 (서울서법 2018가합 33527)	비언론판결	비언론판결	-
40	2015서울조정 3688 (손배)	A	주식회사 고양신문	신청인 유치원의 운전기사 가 원아를 성추행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조사결과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조정성립 -알림기사	인용 96,853,665원 (고양지원 2015가합 72705)	인용 176,300,034 원 (서울고법 2016나 2061724)	인용 176,300,034 원 (대법 2019다 247194)	-
41	2018서울조정 1182 (반론)	A	한국 프로듀서 연합회	신청인이 MBC 편성제작 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6 월 항쟁 30주년' 특집 다 큐의 제작 중단 지시를 내 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 니다.	직권결정 -반론	인용-반론 (서울남법 2018가합 1330)	-	-	-
42	2018충북조정 55·56 (반론·손배)	A	주식회사 동양미디어	공무원인 신청인이 환경정 화시설 업체들에게 사전검 사를 한다며 말쑥한 정화 조에 구멍을 뚫고, 근무지 근처로 정화조를 가져 오 라고 명령하는 등 갑질을 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 니다.	불성립	인용-반론 300만 원 (충주지원 2018가합 5867)	-	-	-

순번	사건번호 (청구명)	신청인	피신청인	사건개요	위원회 결과	1심	2심	3심	환송후심
43	2017서울조정 1187·1188 1253·1254 1299·1300 1357·1358 1359·1360 (각 정정·손배)	주식회사 일간뉴스경남 외 1명	프레시안 협동조합	신문사 회장인 신청인이 지역 내 유명음식점의 불 법실태를 취재하는 다른 언론사에 취재중단을 요청 하는 등 해당 음식점과 유 착관계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기각 (진주지원 2017가합 370)	기각 (부산고법 -창원 2019나 11695)	-	-
44	2018서울조정 2188, 2189 (각 반론)	A	국민일보 주식회사	신청인이 마치 대중의 주 목을 받고자 거친 발언을 일삼는 사람인 것처럼 보 도해 피해를 입었다.	기각	기각 (서울남법 2018가합 114960)	기각 (서울고법 2019나 2029219)	-	-
45	2018서울조정 1216·1217 (정정·손배)	A	연합경찰 신문	신청인이 모스크바 한인 회장으로 재임할 당시 성 매매사업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기각 (서울중법 2018가합 556117)	강제조정 (서울고법 2019나 2031991)	-	-
46	2018서울조정 839, 855 (각 정정)	A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신청 인 프로필과 관련, 포털사 이트가 자료수집 실수로 잘못 등록된 내용에 대해 신청인이 '이력 마사지'를 했다고 악의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불성립	기각 (서울남법 2018가합 109401)	-	-	-
47	2018경기조정 98 (정정)	A	B (크리스찬 포토저널)	신청인이 모스크바 한인 회장으로 재임할 당시 성 매매사업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인용-정정 1,000만 원 (서울남법 2018가합 110043)	강제조정 (서울고법 2019나 2032772)	-	-
48	2018경기조정 96·97 (정정·손배)	A	B (가독교 방송)	신청인이 모스크바 한인 회장으로 재임할 당시 성 매매사업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인용-정정 1,200만 원 (서울남법 2018가합 110197)	강제조정 (서울고법 2019나 2032789)	-	-
49	2018경기조정 101·102 (정정·손배)	A	B (가독교 열린방송)	신청인이 모스크바 한인 회장으로 재임할 당시 성 매매사업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인용-정정 1,000만 원 (서울남법 2018가합 110418)	강제조정 (서울고법 2019나 2032796)	-	-
50	2018서울조정 973, 974 (각 정정)	A	국민일보 주식회사	신청인 교단이 '오대양 사 건'과 '세월호 사건'의 배후 라는 목사의 표현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결 과가 기각됐다고 보도했으 나, 판결내용 중에는 해당 표현이 허위라는 점도 일 부 인정되었다.	직권결정 -반론	인용-반론 (서울남법 2018가합 1293, 1309)	인용-반론 (서울고법 2019나 2038190)	-	-
51	2018서울조정 1874·1875 (정정·반론)	A	국민일보 주식회사	세월호 참사 배후로 지목 된 이들 대다수가 구원파 신자이고, 구원파가 특정 개인을 교주로 따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직권결정 -반론	인용-반론 (서울남법 2018가합 1873)	인용-반론 (서울고법 2019나 2036811)	-	-

순번	사건번호 (청구명)	신청인	피신청인	사건개요	위원회 결과	1심	2심	3심	환송후심
52	2014서울조정 1536 · 1537 ~ 1566 · 1567 (각 정정 · 손해)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머니투데이	한국감정원이 제시한 적정 가격 수준의 상 · 하한선이 18%의 차이가 나며, ‘한 남더힐’ 타당성 조사가 부 적절하게 진행되었다는 보 도는 사실과 다르다.	직권결정 -100만 원 정정 · 반론	인용 정정 · 반론 2,000만 원 (대구지법 2014가합 9858 등)	인용 정정 · 반론 2,000만 원 (대구고법 2016나 21125 등)	인용(파기) 정정 · 반론 (대법 2016다 272342)	인용 정정 · 반론 (대구고법 2019나 24101)
53	2018서울조정 1476 · 1477 1478 · 1479 (정정 · 손해)	A 외 7명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신청인 단체가 개최한 남북 정상회담 기념 감상작 공모 전 시상식 행사를 김정은 칭찬글 상 주는 행사로 왜 곡보도해 주최 측과 수상자 의 명예가 훼손됐다.	불성립	인용 정정 · 반론 500만 원 (서울남법 2018가합 569878)	인용-정정 500만 원 (서울고법 2019나 2040360)	-	-
54	2018서울조정 2572 · 2573 2574 · 2575 (각 정정 · 손해)	재단법인 A	주식회사 크리스천 투데이	신청인 단체가 출연재산에 대해 탈세를 한 의혹이 있다 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인용-정정 3,500만 원 (서울중법 2019가합 510514)	인용-정정 3,500만 원 (서울고법 2019나 2039261)	계류 (대법 2020다 227233)	-
55	2018서울조정 860 (정정)	A	한국방송공사	A가 연역검사장비를 도입 하면서 국산 업체에는 성 능평가 기회도 주지 않고 다국적 업체에 특혜를 주 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 니다.	불성립	인용-정정 (서울남법 2018가합 108538)	계류 (서울고법 2019나 2040926)	-	-
56	2016서울조정 1033 · 1034 (정정 · 손해)	우병우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청와대 민정수석인 신청인 이 처가의 부동산 거래를 추선하고, 현직 감사장의 거액 주식 보유를 눈감아 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 니다.	불성립	인용-정정 (서울중법 2016가합 542312)	인용-정정 (서울고법 2018나 2059435)	인용-정정 (대법 2019다 268849)	-
57	2017서울조정 1071 (정정)	A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신청인 학교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재벌총수 의 손자를 아무런 조치없 이 보냈다는 보도는 사실 이 아니다.	불성립	기각 (서울남법 2017가합 110411)	계류 (서울고법 2019나 2041783)	-	-
58	2018서울조정 1803 · 1804 (정정 · 손해)	A	주식회사 뉴스타운	한국○○재단 이사장에 임명된 신청인이 응모지원 서에 학력과 경력을 허위 기재했고, 과거 공무원법 을 위반했다는 보도는 사 실이 아니다.	직권결정 -500만 원, 정정	인용-정정 500만 원 (서울북법 2018가합 1395)	강제조정 (서울고법 2019나 2040957)	-	-
59	2018서울조정 1808 · 1809 1810 · 1811 (각 정정 · 손해)	주식회사 A	주식회사 아이엠비씨	신청인 국제학교가 인기도 받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 고, 방학 캠프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허위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취하	인용-반론 (서울중법 2018가합 590414)	계류 (서울고법 2019나 2043482)	-	-

순번	사건번호 (청구명)	신청인	피신청인	사건개요	위원회 결과	1심	2심	3심	환송후심
60	2018서울조정 1663·1664 1665·1666 (각 정정·손배)	A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신청인이 19대 총선 당시 구청 등에서 불법으로 빼 낸 주민명부를 활용해 선 거운동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기각 (서울서법 2018가합 40907)	계류 (서울고법 2019나 2044157)	-	-
61	2018서울조정 1537·1538 (정정·손배)	A	주식회사 조선방송	농장을 운영하는 신청인과 신청인의 차가 일터제공 명 목으로 지적장해를 가진 노 숙인 형제를 수십 년간 학 대하고 재산까지 빼앗았다 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불성립	기각 (서울중법 2018가합 566954)	계류 (서울고법 2019나 2051360)	-	-
62	2018서울조정 196·197 (추후·손배)	A	주식회사 제이티비씨	신청인 운영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바늘로 찌르는 학대를 했다고 보도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 을 받았다.	불성립	기각 (서울서법 2018가합 36359)	-	-	-
63	2018서울조정 1688·1689, 1690 (정정·반론, 정정)	A	재단법인 씨비에스	A가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 이 아니다.	직권결정 -반론	인용-정정 (서울남법 2018가합 1545, 1552)	-	-	-
64	2018서울조정 1286, 1287 (각 손배)	A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사내 성폭력 피해자인 신 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인 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보 도하면서 신원을 노출해 피해를 입었다.	직권결정 -300만 원, 기사열람 차단	기각 (서울중법 2018가합 5527, 5534)	기각 (서울고법 2019나 2051100)	-	-
65	2016서울조정 1232·1233, 1234 (정정·손배, 정정)	A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교육부 공무원인 신청인이 신분제 공고화를 주장했다 는 등 발언취지를 왜곡해 피해를 입었다.	직권결정 - 반론	기각 (서울중법 2016가합 32662 등)	기각 (서울고법 2017나 2036916 등)	기각 (대법 2017다 282704)	-
66	2018서울조정 1787·1788 (정정·손배)	주식회사 A	주식회사 하우징헤럴드	재개발지역 감정평가 용역 업체 선정과 관련, 신청인 법인이 조합원과 청산자들 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하 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인용-정정 1,000만 원 (서울중법 2018가합 584778)	계류 (서울고법 2019나 2054185)	-	-
67	2018서울조정 2547·2548 2549·2550 (각 정정·손배)	A	주식회사 법보신문사	대한불교청년회 전 회장인 신청인이 공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 실과 다르다.	취하	인용-정정 500만 원 (서울중법 2019가합 509866)	강제조정 (서울고법 2019나 2052189)	-	-
68	2018서울조정 1830·1831 (정정·손배)	A	주식회사 한국경찰 일보	한국문화재단 이사장에 임 명된 신청인이 응모지원서 에 학력과 경력을 허위 기 재했고, 과거 공무원법을 위반했으며, 전통예술을 모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직권결정 -500만 원, 정정	인용-정정 500만 원 (서울서법 2018가합 1711)	계류 (서울고법 2019나 2055607)	-	-

순번	사건번호 (청구명)	신청인	피신청인	사건개요	위원회 결과	1심	2심	3심	환송후심
69	2019서울조정 688, 691, 694 (각 정정)	주식회사 A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암호화폐 투자사인 신청인 회사가 재보험사의 오너 일가가 설립한 업체이며, 암호화폐 판매 사기 의혹 이 있다고 잘못 보도해 피 해를 입었다.	불성립	기각 (서울서법 2019가합 33968)	-	-	-
70	2019서울조정 296·297 298·299 (각 정정·손배)	A	주식회사 시민일보사	○○○○당 조직강화특위 위원장인 신청인이 당협위 원장 공모 과정에 부당하 게 개입했다는 등의 보도 는 사실과 다르다.	불성립	기각 (서울남법 2019가합 103493)	-	-	-
71	2019서울조정 862, 863 (각 정정)	A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신청인이 본인 소유 부동 산을 보상받기 위해 도로 노선을 변경하도록 국토관 리청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직권결정 -반론	기각 (서울서법 2019가합 821)	강제조정 (서울고법 2019나 2055287)	-	-
72	2019서울조정 326 (손배)	A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신청인이 K스포츠재단 설 립에 관여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연루지라 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인용 300만 원 (서울중법 2019가소 1532637)	계류 (서울중법 2019나 77769)	-	-
73	2019서울조정 177·178 (정정·손배)	사단법인 A	뉴스앤조이	신청인 법인이 운영하는 “○○○○○운동본부”가 난민 혐오, 동성애 반대 관 련 가짜뉴스 발원지이고, 정치 개입을 위한 단체까 지 결성했다는 보도는 사 실이 아니다.	불성립	인용 300만 원 (서울중법 2019가합 554699)	계류 (서울고법 2019나 2056488)	-	-
74	2019서울조정 374, 376 (각 정정)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미디어오늘	동아일보가 같은 아파트라 도 혁신학교 배정여부에 따 라 동별로 집값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왜곡보도했다 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기각 (서울남법 2019가합 104267)	계류 (서울고법 2019나 2057733)	-	-
75	2018서울조정 1715·1716 (정정·손배)	네이버 주식회사	주식회사 문화방송	네이버가 삼성 관련 실시 간 검색 결과를 왜곡하고, 기사 하단의 댓글 공감수 를 조작했다는 보도는 사 실과 다르다.	불성립	기각 (서울서법 2018가합 40419)	계류 (서울고법 2020나 2000153)	-	-
76	2019서울조정 168·169 (정정·손배)	A	주식회사 오마이뉴스	시립어린이집 원장인 신청 인이 보육교사들을 상대로 고의적인 업무 배제, 부당 업무 지시 등 갖은 갑질행 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 과 다르다.	직권결정 -반론, 기사수정	인용-정정 기사삭제 (서울서법 2019가합 357)	-	-	-
77	2018대구조정 115·116 (정정·손배)	A	주식회사 한원	신청인과 분쟁중인 자의 일반적인 허위주장을 독자 투고글에 그대로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불성립	인용-정정 700만 원 (상주지원 2019가합 5075)	계류 (대구고법 2019나 27117)	-	-

순번	사건번호 (청구명)	신청인	피신청인	사건개요	위원회 결과	1심	2심	3심	환송후심
78	2014서울조정 1630~1635 (각 정정·손배 ·반론)	주식회사 A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신청인 회사가 해외 공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인상하지 않았고, 폭력조직과 결탁하여 근로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불성립	인용-정정 5,000만 원 (서울중법 2014가합 585919, 515900, 515917)	인용 반론 (서울고법 2015나 2060359, 2060366, 2060373)	인용 반론 (대법 2017다 208843)	-
79	2018서울조정 1600·1601 (정정·손배)	A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유명만화가 ○○○씨의 성추행을 옹호하는 ○○○씨 지인의 페이스북 글에 웹툰협회장인 신청인이 "좋아요"를 눌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각하	기각 (서울남법 2018가합 115567)	계류 (서울고법 2019나 2055713)	-	-
80	2018서울조정 1907 (정정)	A	주식회사 베이비 타임즈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사립 개인유치원을 없애버리고 싶다"고 말했다는 등 페이스북에 올린 제3자의 댓글 내용을 마치 신청인의 발언인 것처럼 허위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	직권결정 -기사열람 ·검색차단	인용 100만 원 (서울남법 2018가합 1750)	-	-	-
81	2019서울조정 1543 (반론)	A 주식회사	주식회사 미디어오늘	신청인 기업이 용역직원을 동원해 합법파업을 폭력진압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불성립	인용-반론 (서울남법 2019가합 111258)	-	-	-
82	2019서울조정 1593 (반론)	A 주식회사	주식회사 미디어오늘	신청인 기업이 노조파괴를 해 왔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불성립	인용-반론 (서울남법 2019가합 112046)	-	-	-
83	2019서울조정 633·634 635·636 (각 정정·손배)	네이버 주식회사	주식회사 일요신문사	신청인 회사가 YG엔터테인먼트에 1,000억 원을 투자한 이유가 전 이사회 의장의 아들이 YG엔터테인먼트 산하 음반사 소속 DJ이기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직권결정 -반론	기각 (서울중법 2019가합 2204)	계류 (서울고법 2020나 2000344)	-	-
84	2018경남조정 30·31 (정정·손배)	주식회사 일간뉴스경남	주식회사 뉴스와 사람들	○○시장 관련 보도를 한 기자들 상대로 제기된 형사고발이 신청인 매체의 사주와 기획에 의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직권결정 -정정	기각 (진주지원 2018가합 254, 278, 261)	-	-	-
85	2018경남조정 32·33 (정정·손배)	주식회사 일간 뉴스경남	주식회사 브릿지경제 신문사	○○시장 관련 보도를 한 기자들 상대로 제기된 형사고발이 신청인 매체의 사주와 기획에 의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직권결정 -정정	기각 (진주지원 2018가합 254, 278, 261)	-	-	-

순번	사건번호 (청구명)	신청인	피신청인	사건개요	위원회 결과	1심	2심	3심	환송후심
86	2018경남조정 34·35 (정정·손배)	주식회사 일간 뉴스경남	주식회사 중도일보사	○○시장 관련 보도를 한 기자들 상대로 제기된 형사 고발이 신청인 매체의 사주 와 기획에 의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직권결정 -정정	기각 (진주지원 2018가합 254, 278, 261)	-	-	-
87	2019서울조정 51 (정정)	A 협회	주식회사 건설신문	신청인 협회가 직원 채용 과정에서 회장의 측근을 채용하고 부당하게 높은 연봉을 지급하는 등 인사 비리 의혹이 있다는 보도 는 사실과 다르다.	불성립	기각 (서울남법 2019가합 103509)	-	-	-
88	2018서울조정 2468·2469 2470·2471 (각 정정·손배)	주식회사 문화일보	주식회사 미디어오늘	문화일보가 사원채용 시 대학별 쿼터를 적용하고 있고, 대표이사가 신입기 자들에게 6개월간의 경찰 서 밤샘취재를 하도록 지 시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 실이 아니다.	불성립	기각 (서울중법 2019가합 505185)	계류 (서울고법 2020나 2003695)	-	-
89	2019서울조정 956 (반론)	A 노동조합	주식회사 머니투데이	○○○○○○공단의 운영 이 어렵게 된 이유가 소속 변호사들의 고비용 구조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불성립	기각 (서울중법 2019가합 547752)	강제조정 (서울고법 2020나 2003732)	-	-
90	2019서울조정 189·190 (정정·손배)	A	주식회사 프라임경제	국회의원인 신청인의 아들 이 KT 재직 중 인사상 특 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 실이 아니다.	불성립	기각 (서울남법 2019가합 280)	-	-	-
91	2016서울조정 470~478 (각 정정)	재단법인 국제방송교류 재단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아리랑TV의 외주제작사 선정 과정에 비리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 니다.	직권결정 -반론	인용-정정 (서울중법 2016가합 6526 등)	인용-정정 (서울고법 2017나 2029604 등)	인용-정정 (대법 2017다 281114)	-
92	2016서울조정 487~495 (각 정정)	A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아리랑TV 외주제작사 선 정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신청인이 노골적으로 특정 업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 르다.	직권결정 -반론	인용-정정 1,500만 원 (서울중법 2016가합 6618 등)	인용 정정 1,500만 원 (서울고법 2017나 2000108 등)	인용-정정 1,500만 원 (대법 2017다 282100)	-

* 진하게 표시된 사건은 2019년도에 선고된 것임

* 사건번호는 하나이지만 피고가 복수이고 조정신청건도 복수인 경우 결과를 각각 코딩

분석 판결 목록(민사 236건)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1	2019-01-09	2018가합102247	서울동법	1심	손배	(주)와이티엔 외 1명	기각
2	2019-01-09	2018가합35226	서울서법	1심	손배	(주)피치원미디어 외 1명	인용
3	2019-01-10	2018가합109449	서울남법	1심	정정/반론/주후	한국방송공사	각하
4	2019-01-10	2017가소6415726	서울중법	1심	손배	(주)뉴스1 외 1명	인용
5	2019-01-10	2018가단5253102	서울중법	1심	손배	이○○	인용
6	2019-01-11	2018나2028813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신문 외 3명	인용
7	2019-01-11	2018나57023	서울남법	2심	손배	국민일보(주)	인용
8	2019-01-16	2018가합34667	서울서법	1심	정정/손배	한국방송공사 외 1명	기각
9	2019-01-16	2018가합35493	서울서법	1심	정정/손배	백○○	기각
10	2019-01-16	2018가합35707	서울서법	1심	정정/손배	(주)오마이뉴스	기각
11	2019-01-17	2018다42491	대법	3심	손배	(주)조선일보 외 1명	기각
12	2019-01-18	2018다280675	대법	3심	손배	이○○(선정당사자) 외 1명	인용
13	2019-01-18	2018나2048121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주)한국일보사 외 1명	인용
14	2019-01-18	2017가합36944	서울중법	1심	정정	이데일리(주)	인용
15	2019-01-23	2018카합20348	서울남법	1심	보도금지	(주)에스비에스	기각
16	2019-01-24	2015가단224649	부산지법	1심	손배	(주)케이에스비 한국스마트방송	인용
17	2019-01-24	2016가합109537	서울남법	1심	정정/손배	상조뉴스(주) 외 1명	인용
18	2019-01-24	2017가합108821	서울남법	1심	손배	정○○	기각
19	2019-01-24	2017가단5072917	서울중법	1심	손배	(주)디지털조선일보	인용
20	2019-01-24	2018가합5284	안산지원	1심	정정/손배	반월신문(주) 외 1명	기각
21	2019-01-30	2018나2049551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주)시사저널사	인용
22	2019-01-31	2018다278436	대법	3심	손배	(주)디지털데일리	인용
23	2019-01-31	2018다281067	대법	3심	정정/손배	(주)서울경제신문 외 1명	인용
24	2019-01-31	2018다284530	대법	3심	손배	뉴데일리경제(주)	인용
25	2019-02-12	2017가단220274	서울남법	1심	손배	임○○ 외 1명	기각
26	2019-02-12	2018가단614	거창지원	1심	손배	제이티비씨(주) 외 2명	기각
27	2019-02-13	2018나2039448	서울고법	2심	반론/손배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외 1명	인용
28	2019-02-13	2017가합33841	서울서법	1심	정정/반론/손배	(주)조선뉴스프레스 외 2명	인용
29	2019-02-14	2018다285274	대법	3심	손배	(주)문화방송 외 1명	기각
30	2019-02-14	2018다285649	대법	3심	정정/기사삭제	한국방송공사	인용
31	2019-02-15	2017가단5226851	서울중법	1심	손배	장○○ 외 4명	기각
32	2019-02-15	2018가합522268	서울중법	1심	손배	(주)경향신문사 외 2명	기각
33	2019-02-15	2018가합548345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동아일보사 외 5명	기각
34	2019-02-18	2018다288129	대법	3심	손배	(주)경기일보 외 2명	기각
35	2019-02-19	2017가합113960	서울남법	1심	정정/반론/손배	(주)데일리로그 외 2명	인용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36	2019-02-20	2018가합101412	부산동부	1심	정정/손배	(주)뉴스티앤티 외 1명	기각
37	2019-02-20	2017가합42961	부산지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언론홍보진흥원 외 1명	인용
38	2019-02-22	2018가합10026	안양지원	1심	기사삭제/보도금지	(주)뉴스타운 외 1명	인용
39	2019-02-28	2018다290979	대법	3심	손배/기사삭제	(주)충북일보 외 1명	기각
40	2019-03-14	2018다295189	대법	3심	손배	한겨레신문(주) 외 2명	기각
41	2019-03-20	2018가합506143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조선일보사 외 1명	기각
42	2019-03-20	2018가단509983	수원지법	1심	손배	(주)뉴스시경기남부 외 1명	기각
43	2019-03-20	2018가단513104	수원지법	1심	손배	홍○○	기각
44	2019-03-21	2018가합108804	서울남법	1심	추후/손배	(주)씨비에스아이	인용
45	2019-03-21	2018가합109708	서울남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씨비에스아이 외 1명	기각
46	2019-03-22	2018나2041755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손배	지○○	기각
47	2019-03-25	2019가합5022	대구서부	1심	기사삭제	사단법인 뉴스민 외 1명	기각
48	2019-03-27	2018가합554814	서울중법	1심	정정/기사삭제	(주)한국일보사	기각
49	2019-03-28	2018다299266	대법	3심	손배	손○○ 외 2명	인용
50	2019-04-02	2018가합50691	서울서법	1심	기사삭제/보도금지	사단법인 참세상 외 2명	기각
51	2019-04-03	2018가합37253	서울서법	1심	정정	프레시안협동조합	인용
52	2019-04-04	2018가합47	서울남법	1심	정정/손배	파이낸셜뉴스신문(주)	인용
53	2019-04-05	2018다304366	대법	3심	정정/반론/손배	(주)기독교텔레비전	기각
54	2019-04-10	2018가합36908	서울서법	1심	손배/기사삭제	제이티비(주) 외 1명	기각
55	2019-04-10	2018가합539280	서울중법	1심	정정	(주)문화일보	기각
56	2019-04-11	2018가합5412	상주지원	1심	정정	(주)한원	인용
57	2019-04-11	2018가합5429	상주지원	1심	정정/반론	(주)청운	인용
58	2019-04-11	2018다302698	대법	3심	정정/반론/손배	(주)조선일보사	인용
59	2019-04-11	2018가합672	서울남법	1심	정정/반론	아시아투데이 (주)	기각
60	2019-04-11	2018나47785	서울중법	2심	손배	(주)세계일보 외 2명	인용
61	2019-04-12	2018나2057545	서울고법	2심	손배/기사삭제	(주)엠타 외 1명	기각
62	2019-04-16	2018가단216936	서울서법	1심	손배	한○○	기각
63	2019-04-17	2018가합570427	서울중법	1심	손배	(주)민중의소리 외 2명	인용
64	2019-04-17	2018나70808	서울중법	2심	손배	(주)조선방송 외 8명	기각
65	2019-04-18	2018나2053215	서울고법	2심	손배/기사삭제	(주)일요신문대전세종충청(선정당사자) 외 5명	기각
66	2019-04-18	2018가단5156041	서울중법	1심	손배	김○○ 외 1명	기각
67	2019-04-24	2019다200973	대법	3심	손배	(주)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외 2명	인용
68	2019-04-24	2018가합1495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새한일보	인용
69	2019-04-24	2018가합7004	서울중법	1심	정정	(주)미래한국미디어	인용
70	2019-04-24	2018가단522344	수원지법	1심	손배	김○○ 외 1명	기각
71	2019-04-25	2019다204562	대법	3심	손배	(주)아시아경제 외 5명	기각
72	2019-04-26	2018나59235	광주지법	2심	손배	양○○	인용
73	2019-04-26	2017가단202702	서울남법	1심	손배	김○○ 외 6명	기각
74	2019-05-01	2018가합110828	서울동법	1심	손배	(주)데일리팜 외 1명	기각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75	2019-05-02	2018가단44327	서울중법	1심	손배	김○○	기각
76	2019-05-02	2018가단44358	서울중법	1심	손배	박○○	기각
77	2019-05-02	2018가단44365	서울중법	1심	손배	신○○	기각
78	2019-05-02	2018가단44372	서울중법	1심	손배	정○○	기각
79	2019-05-08	2018가합992	서울서법	1심	반론	(주)아이엠비씨	기각
80	2019-05-08	2018가합1001	서울서법	1심	반론	(주)문화방송	기각
81	2019-05-08	2018가합850	서울중법	1심	손배	박○○ 외 1명	인용
82	2019-05-10	2018가합108085	서울동법	1심	정정/반론/손배	(주)대한급식신문사 외 1명	인용
83	2019-05-15	2018가합582307	서울중법	1심	반론/손배	(주)매일방송 외 1명	기각
84	2019-05-16	2017나2070961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주)문화방송 외 2명	기각
85	2019-05-16	2017가단247064	서울남법	1심	손배	(주)노컷뉴스 외 1명	기각
86	2019-05-22	2018가합500572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미디어오늘 외 2명	기각
87	2019-05-22	2018가합4351	전주지법	1심	손배	(주)전북금강일보	인용
88	2019-05-22	2018가합4368	전주지법	1심	손배	(주)전북금강일보	인용
89	2019-05-23	2018가단1493	논산지원	1심	손배	이○○	기각
90	2019-05-23	2018가합417	제주지법	1심	손배	(주)서울경제신문	기각
91	2019-05-29	2017가합39160	서울서법	1심	손배/보도금지	이○○ 외 2명	인용
92	2019-05-29	2018가합1681	서울서법	1심	정정/손배	(주)문화방송	기각
93	2019-05-29	2018가합33527	서울서법	1심	정정/손배	(주)시사저널사 외 2명	인용
94	2019-05-30	2016다254047	대법	3심	손배	(주)채널에이 외 1명	기각 (파기)
95	2019-05-30	2016나2061724	서울고법	2심	손배	(주)교양신문 외 4명	인용
96	2019-05-30	2018가합1330	서울남법	1심	반론	한국프로듀서연합회	인용
97	2019-05-30	2018가합108095	서울남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미디어오늘 외 1명	기각
98	2019-05-30	2018가합5867	충주지원	1심	반론/손배	(주)동양미디어	인용
99	2019-06-05	2018가합35417	서울서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제이티비씨(주) 외 2명	기각
100	2019-06-07	2019가단1525	서울중법	1심	손배	(주)뉴시스	기각
101	2019-06-12	2017가합370	진주지원	1심	정정/손배	프레시안 협동조합 외 1명	기각
102	2019-06-13	2018나2074588	서울고법	2심	손배/기사삭제	(주)미디어오늘 외 2명	기각
103	2019-06-13	2018가합111367	서울남법	1심	추후/손배	(주)에스비에스 외 2명	기각
104	2019-06-14	2018나2068088	서울고법	2심	손배/기사삭제	한겨레신문(주) 외 1명	인용
105	2019-06-19	2019다220922	대법	3심	반론/손배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외 1명	인용
106	2019-06-19	2018가합6261, 2018가합6278(병합)	서울중법	1심	반론	(주)경향신문사	인용
107	2019-06-19	2018가합523544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시사저널사 외 6명	기각
108	2019-06-20	2016가합106767	서울남법	1심	손배	백○○ 외 4명	인용
109	2019-06-20	2018가합114960	서울남법	1심	반론	국민일보(주)	기각
110	2019-06-26	2018가합545698	서울중법	1심	기사삭제	(주)시사저널사 외 2명	인용
111	2019-06-26	2018가합556117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박○○	기각
112	2019-06-27	2018가합109401	서울남법	1심	정정/손배	(주)씨비에스아이	기각

번호	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113	2019-06-27	2018가합110043	서울남법	1심	정정/손배	정○○	인용
114	2019-06-27	2018가합110197	서울남법	1심	정정/손배	한○○	인용
115	2019-06-27	2018가합110418	서울남법	1심	정정/손배	김○○	인용
116	2019-07-03	2019가합50246	서울서법	1심	기사삭제	한겨레신문(주)	기각
117	2019-07-05	2018나75421	서울중법	2심	손배	(주)조선일보	기각
118	2019-07-10	2019나4976	서울중법	2심	손배	이○○	기각
119	2019-07-11	2018가합1293 2018가합1309(병합)	서울남법	1심	정정/반론	국민일보(주)	인용
120	2019-07-11	2018가합1873	서울남법	1심	정정/반론	국민일보(주)	인용
121	2019-07-11	2019나30772	서울서법	2심	손배	(주)한국미디어네트워크 외 3명	인용
122	2019-07-11	2018가단47852	서울중법	1심	손배	(주)머니투데이	기각
123	2019-07-12	2019나2006407	서울고법	2심	손배	(주)피치원미디어 외 1명	인용
124	2019-07-12	2019나2019090	서울고법	2심	추후/손배	(주)씨비에스아이	인용
125	2019-07-17	2016가합545175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한겨레신문(주) 외 2명	기각
126	2019-07-23	2018가단263841	서울남법	1심	손배	이○○ 외 2명	기각
127	2019-07-24	2019다226425	대법	3심	정정/반론/손배	지○○	기각
128	2019-07-24	2019가합500999	서울중법	1심	손배	(주)문화방송 외 2명	기각
129	2019-07-25	2016다51293	대법	3심 (재상 고심)	손배	(주)미디어실크에이치 외 1명	인용
130	2019-08-02	2019가합20323	서울남법	1심	보도금지	(주)에스비에스	인용
131	2019-08-09	2018가단215568	서울서법	1심	손배	레○○○ ○○○○ 외 2명	인용
132	2019-08-09	2019가합50461	서울서법	1심	보도금지	(주)문화방송	기각
133	2019-08-14	2016다272342	대법	3심	정정/반론/손배	(주)머니투데이	인용 (파기)
134	2019-08-14	2019다234747	대법	3심	손배	(주)조선방송 외 8명	기각
135	2019-08-14	2018가합569878	서울중법	1심	정정/반론/손배	(주)조선일보사	인용
136	2019-08-21	2017가합514888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외 2명	기각
137	2019-08-21	2019가합510514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크리스천투데이 외 3명	인용
138	2019-08-21	2019나8589	서울중법	2심	손배	(주)디지털조선일보	인용
139	2019-08-22	2018가합108538	서울남법	1심	정정	한국방송공사	인용
140	2019-08-22	2018가단114837	안양지원	1심	손배	(주)인천일보 외 4명	인용
141	2019-08-23	2018나2059435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주)조선일보사 외 3명	인용
142	2019-08-23	2019나2001020	서울고법	2심	손배/기사삭제	김○○ 외 1명	인용
143	2019-08-23	2019나2002122	서울고법	2심	손배/기사삭제	(주)뉴스스	기각
144	2019-08-23	2019나2014354	서울고법	2심	손배	(주)경향신문사 외 2명	기각
145	2019-08-23	2017가단241912	서울남법	1심	손배	(주)에스비에스 외 1명	기각
146	2019-08-28	2018가단102189	서울동법	1심	손배	(주)문화방송 외 4명	기각
147	2019-08-29	2019다231120	대법	3심	손배/기사삭제	(주)일요신문대전세종충청(선정당사자) 외 5명	기각
148	2019-08-29	2017가합110411	서울남법	1심	정정/손배	(주)에스비에스 외 4명	기각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149	2019-08-29	2018가합1395	서울북법	1심	정정/손배	(주)뉴스타운	인용
150	2019-08-29	2018나79553	서울중법	2심	손배	(주)중소기업신문 외 1명	기각
151	2019-08-30	2015다210255	대법	3심	정정/손배	(주) 조선일보사 외 1명	인용
152	2019-09-04	2017가합584078	서울중법	1심	손배	(주)논객닷컴 외 3명	기각
153	2019-09-04	2018가합590414	서울중법	1심	정정/반론/손배/ 기사삭제	(주)문화방송 외 1명	인용
154	2019-09-09	2019다208984	대법	3심	정정/손배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신문 외 3명	인용
155	2019-09-10	2019나22875	서울중법	2심	손배	김○○ 외 1명	기각
156	2019-09-18	2018가합40907	서울서법	1심	정정/손배	한겨레신문(주) 외 3명	기각
157	2019-09-18	2019가합33531	서울서법	1심	정정	(주)시사저널사	인용
158	2019-09-18	2019나52331	수원지법	2심	손배	(주)새길 외 1명	기각
159	2019-09-18	2018가합4184	전주지법	1심	손배	김○○ 외 3명	기각
160	2019-09-19	2019가합101855	서울남법	1심	반론	(주)에스비에스	인용
161	2019-09-20	2018나2037343	서울고법	2심	손배	(주)엠케이그룹 외 1명	인용
162	2019-09-25	2018가합566954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조선방송	기각
163	2019-09-26	2018나10564	서울고법	2심 (환송 후심)	정정/손배	변○○ 외 7명	인용
164	2019-09-26	2019나2026074	서울고법	2심 (환송 후심)	손배	(주)채널에이 외 1명	인용
165	2019-09-26	2017가단118528	안양지원	1심	손배	박○○	기각
166	2019-09-27	2019나6286	서울중법	2심	손배	(주)뉴스1 외 1명	인용
167	2019-10-02	2018가합36359	서울서법	1심	추후/손배	제이티비씨(주) 외 1명	기각
168	2019-10-10	2018가합1545, 2018가합1552(병합)	서울남법	1심	정정/반론	(재)씨비에스	인용
169	2019-10-10	2019가합102872	서울남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오○○	기각
170	2019-10-16	2018가합5527, 2018가합5534(병합)	서울중법	1심	손배	(주)에스비에스 외 1명	기각
171	2019-10-16	2019가합502773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조선일보사	인용
172	2019-10-17	2017다282704, 2017다282711(병합), 2017다282728(병합)	대법	3심	정정/반론/손배	(주)경향신문사	기각
173	2019-10-17	2019다247194	대법	3심	손배	(주)고양신문 외 4명	인용
174	2019-10-18	2019다247866	대법	3심	손배/기사삭제	한겨레신문 (주) 외 1명	인용
175	2019-10-23	2018가합584778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하우정해럴드	인용
176	2019-10-23	2019가합509866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법보신문사 외 2명	인용
177	2019-10-24	2019나22051	대구고법	2심	정정	(주)한원	인용
178	2019-10-24	2018가합112377	서울남법	1심	손배/기사삭제	오○○	인용
179	2019-10-29	2018나43097	서울중법	2심	손배	(주)미래한국미디어	인용
180	2019-10-29	2018나75506	서울중법	2심	손배	황○○(선정당사자) 외 6명	기각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181	2019-10-30	2019나24101	대구고법	2심 (환송 후심)	정정/반론/손배	(주)머니투데이	인용
182	2019-10-30	2018가합1711	서울서법	1심	정정/손배	(주)한국경찰일보	인용
183	2019-10-30	2019가합33968	서울서법	1심	정정	한겨레신문(주) 외 1명	기각
184	2019-10-30	2019가합530105	서울중법	1심	손배/기사삭제 /보도금지	(주)시큐어웍스 외 1명	인용
185	2019-10-31	2019다257696	대법	3심	손배	이○○	기각
186	2019-10-31	2019나11695	부산고법 (창원)	2심	정정/손배	프레시안 협동조합 외 1명	기각
187	2019-10-31	2019가합103493	서울남법	1심	정정/반론/손배	(주)시민일보사 외 2명	기각
188	2019-10-31	2019나54519	서울남법	2심	손배	임○○ 외 1명	기각
189	2019-10-31	2019나34194	서울서법	2심	손배	한○○	기각
190	2019-11-07	2019가합20411	서울남법	1심	보도금지	한국방송공사	기각
191	2019-11-07	2018나47501	서울중법	2심	손배	(주)여성신문사	인용
192	2019-11-08	2019나2017049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주)동아일보사 외 5명	기각
193	2019-11-13	2018가합39235	서울서법	1심	정정	(주)와이티엔	기각
194	2019-11-15	2019나2009857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반월신문(주)	기각
195	2019-11-15	2019나2037692	서울고법	2심	손배	(주)문화방송 외 2명	기각
196	2019-11-20	2018가합39419	서울서법	1심	정정/손배	(주)문화방송 외 4명	기각
197	2019-11-20	2019가합821	서울서법	1심	정정	한겨레신문(주)	기각
198	2019-11-20	2018가합533855	서울중법	1심	정정/기사삭제	(주)에스비에스	기각
199	2019-11-20	2019가소1532637	서울중법	1심	손배	노○○	인용
200	2019-11-20	2019가합554699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강○○ 외 1명	인용
201	2019-11-20	2019가합2031	전주지법	1심	손배	(주)전북금강일보	기각
202	2019-11-20	2019가합2048	전주지법	1심	손배	(주)전북금강일보	인용
203	2019-11-21	2019가합104267	서울남법	1심	정정	(주)미디어오늘	기각
204	2019-11-22	2019나2003743	서울고법	2심	손배	송○○ 외 1명	인용
205	2019-11-22	2019나2029219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	국민일보(주)	기각
206	2019-11-27	2018가합40419	서울서법	1심	정정/반론/손배	(주)문화방송	기각
207	2019-11-27	2019가합357	서울서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오마이뉴스	인용
208	2019-11-27	2018가합573464	서울중법	1심	정정/반론/손배/기 사삭제	(주)씨비에스아이	인용
209	2019-11-28	2019가합5075	상주지원	1심	정정/손배	(주)한원 외 1명	인용
210	2019-11-28	2017다208843, 2017다208850(병합), 2017다208867(병합)	대법	3심	정정/반론/손배	한겨레신문(주) 외 5명	인용
211	2019-11-28	2018가합115567	서울남법	1심	정정/손배	(주)에스비에스	기각
212	2019-11-28	2018가합55107	창원지법	1심	정정/손배	(주)시사저널사 외 1명	인용
213	2019-12-05	2018가합1750	서울남법	1심	정정/손배	(주)베이비타임즈	인용
214	2019-12-05	2019가합111258	서울남법	1심	반론	(주)미디어오늘	인용
215	2019-12-05	2019가합112046	서울남법	1심	반론	(주)미디어오늘	인용

번호	선고일자	판결번호	법원명	심급	청구명	사건피고명	결과
216	2019-12-06	2019나2040360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손배	(주)조선일보사	인용
217	2019-12-06	2018가단216929, 2018가단217151(병합)	서울서법	1심	손배	최○○ 외 1명	기각
218	2019-12-11	2019가합2204, 2019가합2211(병합) 2019가합2228(병합) 2019가합2235(병합)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일요신문사	기각
219	2019-12-11	2018가합254 2018가합278(병합) 2018가합261(병합)	진주지원	1심	정정/손배	(주)브릿지경제신문 외 5명	기각
220	2019-12-12	2016다206949	대법	3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주)채널에이 외 1명	기각 (파기)
221	2019-12-12	2019다267648	대법	3심	손배/기사삭제	김○○ 외 1명	인용
222	2019-12-12	2019가합103509	서울남법	1심	정정/손배	(주)건설신문 외 1명	기각
223	2019-12-13	2019다267631	대법	3심	손배	(주)경향신문사 외 2명	기각
224	2019-12-18	2019나2007868	서울고법	2심	정정	이데일리(주)	인용
225	2019-12-18	2019나2019915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파이낸셜뉴스신문(주)	인용
226	2019-12-18	2019나2031908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손배	(주)시사저널사 외 6명	기각
227	2019-12-18	2019가합505185	서울중법	1심	정정/손배	(주)미디어오늘	기각
228	2019-12-18	2019가합547752	서울중법	1심	반론/손배	(주)머니투데이 외 1명	기각
229	2019-12-19	2018가합110227	서울남법	1심	정정/손배	(주)에스비에스 외 2명	기각
230	2019-12-19	2019가합280	서울남법	1심	정정/손배	(주)프라임경제 외 1명	기각
231	2019-12-19	2019가합101695	서울남법	1심	정정	(주)미디어오늘	기각
232	2019-12-19	2019가단5262417	서울중법	1심	손배	손○○	인용
233	2019-12-19	2018가합6560	청주지법	1심	정정/손배	(주)동양미디어 외 8명	기각
234	2019-12-20	2019카합20550	서울남법	1심	보도금지	(주)에스비에스	인용
235	2019-12-24	2017다281114	대법	3심	정정	(주)경향신문사	인용
236	2019-12-27	2017다282100	대법	3심	정정/손배	(주)경향신문사	인용

제2부

언론 관련 판결 사례

제1장 손해배상청구

1. 명예훼손 사례
2. 초상권 침해 사례
3. 사생활 침해 사례
4. 재산권 침해 사례
5. 저작권 침해 사례

제2장 정정 · 반론 · 추후보도청구

제3장 기사삭제청구 등

제4장 기타 판결

제1장

손해배상청구

명예훼손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7가소641572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9나6286 판결

기사 내용과 무관한 일로 원고가 공판에 출석하는 사진을 게재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암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 원고 : A
- 피고 : 주식회사 뉴스1 외 1명

[사실관계]

피고 주식회사 뉴스1은 2017년 5월 29일 <뉴스1 코리아>에 '원고가 세비를 기탁하겠다는 약속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피고가 취재에 들어가자 원고가 같은 날 사랑의 열매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알려졌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며 원고가 형사공판에 출석하는 사진을 첨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보도내용 자체도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원고의 무죄 사실을 알리지 않고 형사공판에 참석하는 사진을 보도한 것은 명예훼손이라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보도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으며, 다만 보도내용과 무관한 사진을 게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사진 게재는 원고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후 원고 및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다280061).

[판결요지]

□ 기사 내용과 무관한 형사공판에 출석하는 원고의 사진과 그 설명을 게재한 것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하면서 원고의 사진과 함께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는 문구를 함께 게재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원고는 위 항소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피고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는 내용만을 게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하면서 이와 같은 사진을 게재하고 그에 관한 설명을 부가한 부분은, 원고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암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1심 판결문

사	건	2017가소6415726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1. 주식회사 뉴스1	
		2. 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1. 22.
			2019. 1. 10.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4.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2018. 9. 13.자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변경신청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63조에 의하여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바, 어떤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되는 것이다.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바,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2017. 5. 29. 17:27 기사를 기사1, 같은 날 18:38 수정된 기사를 기사2라 칭한다.

- ① “약속 1년이 다가오는 29일 현재까지 A 의원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기사1), “약속 1년이 다가오는 29일 오전까지 A 의원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기사2), “하지만 A 의원은 당시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아직 실천에 옮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까지 2016년 세비를 기부하지 않은 것이다”(기사1), “뉴스1은 A 의원과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세지까지 남겼으나 A 의원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기사1), “본보가 취재에 들어가자 A 의원측은 이날 낮 사랑의 열매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알려왔다.”(기사2), “본보 보도이후 사랑의 열매 G 대외홍보부장은 ‘A 의원이 오늘 점심 무렵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기사2),

->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세부에 있어 사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 그러므로 진실한 사실이거나 피고 B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② “그러나 ‘사랑의 열매’측에 확인한 결과, A 의원측 설명과는 전혀 다른 답변이 돌아왔다. ‘사랑의 열매’ 측은 그동안 A 의원측과 기부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기사2)

-> 기사가 게재된 직후 사랑의 열매측 G 부장과 통화한 결과 ‘그동안 A 의원측과 기부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는 기사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수정하지 않고 계속 게재하여, 독자들이 원고가 기부를 약속하고도 1년 가까이 기부할 생각이 없다는 기사가 취재를 시작하자 마지못해 기부를 한 것처럼 오해하도록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이 인정된다.

- ③ 원고의 형사재판 선고공판 출석장면 사진 및 “A 무소속 의원이 9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는 기재

-> 원고가 무죄 선고를 받은 점을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고 형사재판 피고인으로서 선고를 받는 점만을 부각시켜 독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이 인정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보도의 경위, 원고, 피고들의 지위,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손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액은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심 판결문

사 건	2019나6286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1. 주식회사 뉴스1 2. B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7가소6415726 판결
변 론 종 결	2019. 7. 12.
판 결 선 고	2019. 9. 2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4.부터 2019. 9.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고, 피고 주식회사 뉴스1(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뉴스1 코리아’ 제호의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사이며, 피고 B는 피고 회사에 소속된 기자이다.

나. 피고들은 2017. 5. 29. 17:27 ‘뉴스1 코리아’의 홈페이지(<http://news1.kr/>) 사회면 초기화면에 “‘세비전액 기부’ A 의원 약속 1년 가까이 지났는데,...”라는 제목으로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1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고, 그로부터 약 1시간 후인 2017. 5. 29. 18:38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된 기사(이하 ‘이 사건 2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들이 인터넷신문에 게재한 이 사건 각 기사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10 내지 14, 16, 17호증, 을나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1) 원고는 2016. 6.경 친인척 보좌진 채용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2016. 6. 30.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세비를 공익적인 부분에 기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2) 원고는 2016. 7.경부터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사랑의 열매’라고 한다) 대외협력본부 팀장 D와 여러 차례에 걸쳐 기부 방법과 기부금 사용처 등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2016. 10.경에는 사랑의 열매 측으로부터 1억 원 이상 기부자를 위한 아너소사이어티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리플렛과 가입신청서를 전달받았으며, 원고의 보좌관 C는 2016. 10. 31. D로부터 기부에 필요한 계좌번호 등을 전달받기도 하였다.
- 3) 피고 B는 원고의 세비 기부 약속에 대한 후속 취재를 하고자, 2017. 5. 29. 09:30(이하 같은 날은 시간만을 기재하기로 한다) 원고의 비서관 E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가 약속대로 세비를 공익적 부분에 기탁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당시 피고 B와 E가 나눈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 고 : 의원님이 작년에 세비 전액 기부하시겠다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중간 생략)

E : 아 그게 작년에 그쪽하고 이야기가 다 됐는데요. 그 다음에 처리가 안 되가지고 지금 그걸 아직 못했네요. 뭐 지금 뭐 해야 한다고 계속.

(중간 생략)

피 고 : 공익적 부분에 기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사랑의 열매였나요.

E : 네네

피 고 : 그 뭐 기부는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신지 1년 딱 되셨거든요.

E : 그죠 네네. 조만간 조만간 해야죠. 너무 자꾸 미뤄져 가지고 의원님도 빨리 처리하라고 성화시네요.

피 고 : 일단은 제가 현재까지는 기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를 할 수밖에는 없을텐데요. 계획이 있으신거죠. 사랑의 열매쪽에.

E : 네네. 근데 뭘 또 보도를 하시려고. 허허.

- 4) 피고 B는 09:34 E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사랑의 열매 측에 세비 기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확인한 다음 기사를 작성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사랑의 열매 측 담당자가 누구인지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E는 확인해 보겠다고 하였으나, 그 이후 피고 B에게 전화를 하지는 않았다.

5) 피고 B는 09:43 사랑의 열매 측에 직접 전화를 걸어 대외협력본부 직원 F와 다음과 같이 통화하였다.

피 고 : A 국회의원이 사랑의 열매랑 기부 관련해서 논의를 좀 진행한 적이 있는지 (중간 생략) 얘기를 하다가 사랑의 열매쪽이랑 얘기가 잘 안돼서 기부가 안됐다고 저쪽에서 말씀을 하셔서요.
(중간 생략)

F : 혹시 그 국회의원님이 기부 상담하신게 혹시 저희쪽 맞으신가요?

피 고 : 사랑의 열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F : 지회 자체한 건 못 들으신거죠?

피 고 : 사실은 이게 거짓말일 확률이 높아서 이게 통상적으로 기부를 진행하시면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F : 아. 저희가 다양하게 기부 프로그램이 있어서 사실 국회의원분은 아너소사이어터라고 1억 기부하시는게 제일 확률이 높은데, 이게 저희가 지회별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피 고 : 그러니까 세비 전액을 기부한다고 했으니까 1억이 좀 넘을 텐데요. 그럼 만약에 그 프로그램이 맞을 것 같은데 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6) F는 10:38 피고 B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과 같이 알려 주었다.

F : A님은 저희쪽에 기부 관련해서 상담한 적은 없으시구요. (중간 생략) A님은 국회의원이시니까 서울 지회쪽이나 중앙회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금액이라면 아너프로그램으로 상담하셨을 확률이 높으신데 일단 그 담당자 모두 다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중간 생략)

F : 아마 상담하셨으면 서울지회 아니면 중앙(회)이셨을 텐데 둘 다 상담하신 적이 없다고.

피 고 : 아. 두분 다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피고 B는 10:53 F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전산상에 상담일지나 기록이 남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인지 문의하였던바, F는 ‘전산상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니고, 아너소사이어터 프로그램의 경우 고액기부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따로 있고, 그 담당자에게 확인을 하면 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8) 한편 원고는 10:17(피고 B가 F와 두 번째 통화를 하기 전의 시점이다) 사랑의 열매 측 신한은행 계좌에 5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원고의 보좌관 C는 10:44 원고에게 “의원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의원님 기부하신 것 확인하라고 전화했습니다. 감사하다고 기뻐하구요. - 지정기탁 관련해서 6월 2째주쯤 실장급이 직접 와 A 의원님께 설명하기로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9) 피고 B는 13:50경 원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세비 기부 약속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원고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포럼 토론회를 개최하여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중요성과 정책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하고 있었으므로 전화를 받지 못하였다.

- 10) 원고는 14:56 피고 B에게 “회의 중이니 나중에 전화하겠습니다.”, “토론회 진행 중입니다. 메시지 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 B는 14:58 원고에게 “뉴스1 B 기자입니다. 세비 기부 관련 여쭙 말씀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통화 가능하실 때 회신 부탁드립니다.”라고 답변하였다.
- 11) 그런데 원고는 국회 본회의 참석 등 계속되는 공식일정으로 인하여 피고 B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한 채로 이 사건 1기사를 피고 회사에 송고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17:27 이 사건 1기사를 ‘뉴스1 코리아’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 12) 이 사건 1기사는 「“세비 전액 기부” A 의원 약속 1년 가까이 지났는데....29일 현재까지 기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라는 제목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속 1년이 다가오는 29일 현재까지 A 의원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간 생략) A 의원은 당시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아직 실천에 옮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2016년 세비를 기부하지 않은 것이다.

29일 A 의원실 관계자는 “작년에 사랑의 열매 측과 (기부) 이야기가 다 됐는데 처리가 안됐다.”며 “너무 미뤄져 A 의원님도 빨리 처리하라고 성화”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랑의 열매’측에 확인한 결과, A 의원 측 설명과는 전혀 다른 답변이 돌아왔다. ‘사랑의 열매’측은 그 동안 A 의원 측과 기부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사랑의 열매 관계자는 “1억 원 이상 기부를 하는 경우 ‘아너 소사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기부를 진행하는데 서울지역에 있는 사랑의 열매 중앙회와 서울 지회 담당자 모두 A 의원 측과 상담을 한 사실이 없다”며 “기부 상담은 물론 회원 가입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A 의원은 당시 ‘가족 채용’과 ‘로스쿨 입학 특혜 의혹’ 등으로 ○○당 징계위에 회부됐지만 징계위원회의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해 7월 11일 자진 탈당했다. 최근 A 의원은 ○○당 복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은 A 의원과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까지 남겼으나 A 의원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 13)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1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면서 원고의 사진을 함께 게재하였는데, 그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A 무소속 의원이 9일(2017. 3. 9.을 의미한다)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4) 사랑의 열매 대외협력본부 부장 G는 17:56 피고 B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당시 G와 피고 B가 나눈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G :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좀 전에 A 의원 관련해서 기사를 봤습니다. (중간 생략) 저희가 기부 관련해서 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중간 생략) A 의원이 저희에게 기부를 안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A 의원이 기부를 하셨어요. (중간 생략) 저희가 알기로 오늘 점심 무렵이라고 제가 알고 있구요. (중간 생략) 예. 기부를 하셨어요. 근데 저희 쪽에서 왜 기부를 안했다고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피 고 : 오전에 확인을 했구요.

G : 근데 오전은 기사가 나온 게 5시 반 상황이라서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기부를 한 거니까.

피 고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얼마 기부하셨습니다.

G : 예. 5천만원 기부하셨습니다. (중간 생략) 제가 1시로 들었구요. (중간 생략)

1시에 5천만 원은 팩트예요. (중간 생략) 반영 좀 부탁드립니다.

피 고 : 네네

15) 피고 B는 G와 전화통화를 마치고 나서 이 사건 1기사를 수정하여 이 사건 2기사를 작성하였고, 18:38 「“세비 전액 기부” A의원 약속 1년 가까이 지났는데...취재 들어가자 점심 무렵 5000만원 기부」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2기사를 게재하였으며((-) 표시는 이 사건 1기사에서 삭제된 부분을 의미하고, () 표시는 이 사건 1기사에 추가된 부분을 의미한다), 원고의 사진 및 그 하단의 문구는 수정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남겨 두었다.

약속 1년이 다가오는 29일 현재 오전까지 A 의원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취재에 들어가자 A 의원 측은 이날 낮 사랑의 열매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알려졌다.

(중간 생략) A 의원은 당시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아직 실천에 옮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2016년 세비를 기부하지 않은 것이다.

29일 오전 A 의원실 관계자는 “작년에 사랑의 열매 측과 (기부) 이야기가 다 됐는데 처리가 안됐다.”며 “너무 미뤄져 A 의원님도 빨리 처리하라고 성화”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랑의 열매’측에 확인한 결과, A 의원 측 설명과는 전혀 다른 답변이 돌아왔다. ‘사랑의 열매’측은 그 동안 A 의원 측과 기부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사랑의 열매 관계자는 “1억원 이상 기부를 하는 경우 ‘어니 쇼사이어터’ 프로그램을 통해 기부를 진행하는데 서울지역에 있는 사랑의 열매 중앙회와 서울 지회 담당자 모두 A 의원 측과 상담을 한 사실이 없다”며 “기부 상담은 물론 회원 가입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A 의원은 당시 ‘가족 채용’과 ‘로스쿨 입학 특혜’ 의혹 등으로 ○○당 징계위에 회부됐지만 징계위원회의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해 7월 11일 자진 탈당했다. 최근 A 의원은 ○○당 복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은 A 의원과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까지 남겼으나 A 의원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본보 보도 이후 사랑의 열매 G 대외 홍보부장은 “A 의원이 오늘 점심 무렵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16) 피고 B는 18:40 G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G는 당시 이 사건 2기사의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피고 B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피 고 : 보통 의원실에서 전화해서 (기사 수정 의견을) 밝히시는데.
G : 아 저희는 기사를 보고, 그래서 이제 기사 중에 그 저희 관계자가 그런 사람 없다고 있었잖아요. (중간 생략) 그래서 그렇게 전화를 받은 사람을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 분이 이제 아너 명단에서만 찾았나 봐요.
피 고 : 아니 근데 뭐 오늘까지 기부가 없었던 건 맞는, 오전까지 기부가 없었던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G : 그건 그렇죠. 예예예 맞아요. 그래서 뭐 기자님 틀리셨다기 보다, 현재 상황이 중요하니까. (중간 생략) 예 근데, 이제 이제 근데 그 이런 건 들었어요. 그 상의를 하고 있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제 뭐 나중에 기부하면 보도자료나 내지 뭐 이러고 있었어요. 그동안 간간이 얘긴 들었는데.
피 고 : 아 아니 근데, 원래 전혀, 전혀 상의가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요.
G : 아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약간 기부처도 상의도 하고 그런거는 저도 들었는데, 제가 농담으로 '해야 하는 거야 해야 보도자료 내야 돼'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견 의원실에서는 전혀 상의가 없었다는 부분이 좀 서운했던 것 같아요.
피 고 : 근데 뭐 거기까지는 좀 제가 취재했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G : 예예예

17) 사랑의 열매측은 다음날인 2017. 5. 30. 언론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2기사의 내용을 수정하지는 아니한 채 그대로 인터넷에 게재해 두었다.

○ A 국회의원(서울 XX구갑)은 29일 오전,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천만 원을 기부했다.
○ A 의원은 지난해 9월경부터 공동모금회와 기부 방식, 기부금 사용처 등에 대해 여러 차례 긴밀히 협의해 왔다. (이하 생략)

18) 한편, 이 사건 각 기사가 인터넷에 게재된 이후 이 사건 각 기사에는 원고를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이 다수 첨부되었다.

나.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기사 중 '원고가 세비 기부 약속을 이행하지 않다가 피고들이 취재에 들어가자 2017. 5. 29. 점심 무렵 기부 약속을 이행하였다'는 부분 및 '피고 B가 원고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여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

11157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 중 ‘원고가 세비 기부 약속을 이행하지 않다가 피고들이 취재에 들어가자 기부 약속을 이행하였다’는 부분 및 ‘피고 B가 원고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는 부분은 그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 할 것이고, 설령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경우에 불과하여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기사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제1심법원은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가 항소이유로 삼은 부분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간략하게 그 이유를 기재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각 기사 중 ‘원고가 피고들이 취재에 들어가기 이전에 사랑의 열매와 기부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는 부분에 관하여

가) 언론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진실성이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하는 바,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고,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 37524 판결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기사 중 ‘원고가 피고들이 취재에 들어가기 이전에 사랑의 열매와 기부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는 부분은 그 진실성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들로서는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이 부분 기사 내용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기사 내용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여지 아니한다.

- ① 원고는 2016. 6.경 친인척 보좌진 채용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올해 세비를 공익적인 부분에 기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피고들이 인터넷신문에 게재한 이 사건 각 기사는 국회의원인 원고가 위와 같은 세비 기부 약속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보도로서,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봄이 마땅하다.
- ② 피고 B는 이 사건 1기사를 작성하기에 앞서서 원고의 보좌관로부터 ‘사랑의 열매 측과 기부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랑의 열매 측 대외협력본부 직원 F와 통화하였는데, F로부터 ‘원고와 기부 협의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그 후에도 다시 F에게 전화를 걸어 전산상에 상담일지나 기록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 ③ 피고 B는 이 사건 각 기사 작성 이전에 원고로부터 세비 기부 약속의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자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원고와 접촉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원고측의 사정으로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 ④ 이 사건 1기사가 게재된 이후 사랑의 열매 측 대외홍보부장 G가 피고 B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당시에 ‘원고가 5,000만 원을 기부했으니 기사에 반영해 달라’는 요청만

하였을 뿐이고, ‘원고와 사랑의 열매 측 사이에 세비 기부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

- ⑤ 이 사건 2기사를 게재한 직후 피고 B는 G와 다시 통화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G로부터 원고와 사랑의 열매 측 사이에 세비 기부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기는 하였으나, 당시 G가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전한 것이 아니었고, 이 사건 2기사의 수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 B로서는 ‘원고와 사랑의 열매 측이 세비 기부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적이 없었다’는 자신의 취재 내용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⑥ 다음날 사랑의 열매 측에서 ‘원고는 2016. 9.경부터 기부 방식, 기부금 사용처 등에 대하여 협의해 왔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각 기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정정보도를 요청하거나 반론을 제기하지 않은 이상, 피고 B로서는 이 사건 2기사를 수정할 필요성까지는 느끼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하면서 형사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원고의 사진을 게재하고 그에 관한 설명을 부가한 부분에 관하여

- 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이러한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에 단정적 표현이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 전체의 취지가 그 사실의 존재를 암시한다면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참조).

-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하면서 ‘형사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원고의 사진을 게재하고 그에 관한 설명을 부가한 부분’은, 원고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암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이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위와 같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료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① 피고 B는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하면서 원고의 사진과 함께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는 문구를 함께 기재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 ② 원고는 위 항소심 사건뿐만 아니라 제1심 형사공판에서도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피고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와 같이 무죄 판결을 선고 받은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는 내용만을 기재하였다.

- ③ 국회의원으로서 선출직 공무원인 원고가 형사사건, 그것도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출석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일반 독자로 하여금 원고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다)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들의 사회적 지위,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하게 된 배경, 피고들이 원고의 사진을 사용하게 된 경위, 원고의 사진 및 그 하단의 문구가 이 사건 각 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그 크기, 원고의 사진 및 그 하단의 문구에 대한 일반 독자의 인식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 위자료를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6.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9.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2〉 대상기사 생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7가단507291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9나8589 판결

현직 기자의 트위터 게시글이나 칼럼을 보고 기사를 작성했더라도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원고 : A
- 피고 :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사실관계]

피고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는 2014년 4월 18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조선닷컴> 및 <더 스타>에 원고가 유명 가수의 사촌언니, 모 야구선수의 여자친구, 일본 교민 등을 사칭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들을 게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이 사건 대상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에 해당하고, 인터넷 상에 게시된 내용을 기사에 적시하면서도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피고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6,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2심 법원 역시 게시된 기사의 내용이 원고의 사생활에 관련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1심과 동일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이 사건은 현재 피고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2019다266638).

[판결요지]

□ 피고가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현직 기자가 자신의 이름을 건 ‘기자 칼럼’을 통해 원고의 과거 행적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나섰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이 보도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터넷상 가상공동체(cyber community)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저장된 자료를 보고 그에 더 잡아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기고문을 게재하였다면, 설령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B 기자의 트위터 및 칼럼은 가십적 보도의 성격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기사는 ‘해경의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라는 공익적 사안보다는 공인이 아니라 일반인 잠수지원 자원활동가였던 원고의 사생활 관련 소문들과 원고를 ‘거짓말쟁이’, ‘허언증 환자’라고 무차별적으로 보도한 점,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각 보도 부분을 기사로 게재하기 전에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하였는지, 어떤 근거나 자료로 위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었는지 등에 관하여 제대로 된 증명이 없는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심 판결문

사 건 2017가단5072917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변 론 종 결 2018. 12. 14.
판 결 선 고 2019. 1.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4.부터 2019. 1.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가. 2014. 4. 16. 09:00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총 476명이 탑승한 세월호가 침몰하여 인명 구조 활동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언론의 취재열기가 고조된 상황이었다.
- 나. 원고는 2014. 4. 18. 06:17경부터 06:29경까지 약 12분 동안 전남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에 있는 민간잠수 자원봉사 현장인 팽목항 선착장에서 중합편성채널인 MBN과 세월호 구조작업에 관하여, ‘잠수부 중에 생존자와 대화를 한 사람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 등 정부는 구조작업을 하려는 민간잠수부를 지원하는 대신 오히려 이를 막고, 대충 시간만 때우고 가라는 식으로 말을 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중계차를 이용한 텔레비전 인터뷰를 하여 그 무렵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게 되었다. 한편 피고는 1995년 10월 주식회사 조선일보의 뉴미디어계열 자회사로

탄생한 인터넷(온라인)신문사업자이다.

다. 위 인터뷰 보도가 나간 후, ①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조선닷컴(chosun.com)’은 2014. 4. 18. 13:46경부터 같은 달 28. 15:52경까지 그 홈페이지(http://chosun.com)에 원고에 관한 총 27건의 기사를 게재하였고(그 중 일부 기사에는 네티즌의 게시글을 캡처한 사진도 그대로 게재되어 있다), ② 피고가 운영하는 연예매체인 ‘더 스타(THE STAR)’도 2014. 4. 18. 부터 2014. 4. 24.까지 그 홈페이지(http://the-star.co.kr/)에 원고에 관한 총 4건의 기사를 게재하였는바, 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이를 통틀어서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

라. 이 사건 각 기사의 제목을 일자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2014. 4. 18.자 보도

순번	시 간	제 목	증거
1	13:46경	[세월호 침몰] MBN 민간잠수부 보도에 B “A 허언증 이상”	갑제2호증
2	13:53경	[진도 여객선 침몰] MBN이 인터뷰한 A, 누구인지 살펴보니...“○○○ 사건과 연관?”	갑제7호증
3	14:09경	[세월호 침몰] MBN “민간잠수부 A 논란, 의도와 관계없다” 사과? 변명?	갑제8호증
4	14:28경	민간잠수부 주장 여성 MBN 인터뷰로 들쭉...거짓으로 밝혀져 보도국장 공식 사과	갑제9호증
5	14:41경	[세월호 침몰사고] MBN 보도국장 ‘A 인터뷰’ 사과... “국민들께 죄송”	갑제10호증
6	15:03경	[세월호 침몰] B “A 허언증 정도가 아니다”	갑제11호증
7	15:25경	[세월호 침몰] B, A에 관해 “당시 A와 직접 통화했는데...”	갑제12호증
8	15:43경	[세월호 침몰] B 기자 “MBN 인터뷰 A ‘사기’로 검찰조사 받아”	갑제13호증
9	16:07경	[세월호 침몰] B 기자 “MBN 인터뷰 A ‘허언증’ 소름돋을 정도!”	갑제14호증
10	16:37경	[세월호 침몰] MBN “A 신원 파악 中” VS. B “정체 내가 안다”	갑제15호증
11	17:51경	MBN A 인터뷰, 말 하나하나 다 거짓으로 밝혀져	갑제16호증
12	15:57경	‘세월호 침몰’ MBN 인터뷰 논란 A, 과거 C 사촌언니 ‘사칭’	갑제37호증 (더 스타)

(2) 2014. 4. 19.자 보도

순번	시 간	제 목	증거
1	02:58경	[진도 여객선 침몰 / 괴담 퍼뜨리는 사람들] “생존자와 대화했다” “정부의 자작극”... 또 퍼지는 유언비어	갑제17호증
2	11:03경	[세월호 침몰] 민간잠수부 A 한 마디에 대한민국 들쭉	갑제18호증

(3) 2014. 4. 21.자 보도

순번	시 간	제 목	증거
1	09:27경	허위 인터뷰 A 일본 지진 당시 “사랑하는 사람도 일본에 있고...”	갑제19호증
2	09:55경	[세월호 침몰 사고] A 체포영장 발부, “과거에도 수차례 거짓 인터뷰!”	갑제23호증

순번	시 간	제 목	증거
3	10:23경	[세월호 침몰 사고] A 체포영장 발부, “과거 행적 보니 충격!”	갑제24호증
4	10:59경	[세월호 침몰 사고] A 체포영장 발부, “경찰청 자진 출석한 이유?”	갑제25호증
5	11:06경	거짓 인터뷰 A 일본에서는 도쿄 도민? …“○○○ 사건까지” 충격	갑제26호증
6	14:18경	[세월호 침몰 사고] A 경찰 출두, “거짓 인터뷰 관련 처벌 수위는?”	갑제27호증
7	17:05경	A 경찰 출두, 세월호 침몰 관련 ‘거짓 파문’… “흥분된 상태로 인터뷰했다”	갑제28호증
8	12:56경	[세월호 침몰] 거짓 인터뷰 논란 A 경찰 출두…“허위 사실 유포 인정”	갑제29호증
9	15:33경	[세월호 침몰] 거짓 인터뷰 논란 A 경찰 출두…“조사중 또 거짓말?”	갑제30호증
10	14:32경	[세월호 침몰] A 경찰 출두 “방송서 민간 잠수부라 한 적 없다”…“또 거짓말?”	갑제31호증
11	16:04경	[세월호 침몰] A 경찰 출두 “민간 잠수부라 한 적 없어”…“누구말이 진짜야?”	갑제32호증
12	19:32경	[세월호 침몰] A 체포 영장 발부 “20일 자진 출석”…“잠수 자격증 없어”	갑제33호증
13	10:51경	[세월호 침몰] A 체포 영장 발부에 ‘자진 출석’…“허위 사실 유포 인정”	갑제34호증
14	10:27경	[세월호 침몰] ‘체포영장 발부’ A, ‘일본 대지진’ 때는 도쿄 교민?	갑제38호증 (더 스타)

(4) 2014. 4. 24.자 보도

순번	시 간	제 목	증거
1	10:46경	[세월호 침몰] 거짓인터뷰女 A, 연예부 기자 사칭? □□□□와 인증샷	갑제39호증 (더 스타)
2	11:07경	[세월호 침몰] 거짓인터뷰女 A, 수많은 사칭? ‘C 사촌-연예부 기자’	갑제40호증 (더 스타)

(5) 2014. 4. 28.자 보도

순번	시 간	제 목	증거
1	15:52경	[주간조선] A 사례로 본 ‘관심종자’ ‘어그로꾼’…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나	갑제35호증

마. 이 사건 각 기사에는, 주로 ‘원고가 ① 과거 SNS를 통해 ○○○의 전 멤버 C의 사촌언니라고 사칭하였다, ② 다수의 유명 야구 선수들의 여자 친구라 밝히고 애인 행세를 하고, 야구팬들 사이에 가짜 스캔들을 만들었다, ③ □□□□콘서트에서 연예부 기사를 사칭하고 사진을 찍었다(갑제35호증), ④ 사망한 D 야구선수와 일면식이 없음에도 자신의 통장으로 관련 모금을 진행했다, ⑤ 도쿄 거주 교민 행세를 했다, ⑥ 허언증, 정신질환자이다, ⑦ MBN과의 인터뷰 내용은 거짓이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원고는 그 후 피고의 위와 같은 보도 및 트위터 글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물론 누리꾼들의 입에 담기 어려운 악성 댓글에 시달렸고, 대인관계 기피 및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장기간 동안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7 내지 19호증, 갑 제22 내지 35호증, 갑 제37 내지 41, 50, 51, 58, 81, 85호증, 갑 제45, 55, 56, 57, 59 내지 80, 82, 83, 84호증의 각 1, 2, 갑 제4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각 기사 중 원고가 ① □□□□콘서트에서 연예부 기사를 사칭하고 사진을 찍었다, ② 과거 SNS를 통해 ○○○의 전 멤버 C의 사촌언니이자 작사가라고 주장하였다, ③ 다수의 야구 선수들의 여자 친구라 밝히고 애인 행세를 했다, ④ 사망한 모 야구선수와 일면식이 없음에도 자신의 통장으로 관련 모금을 진행했다, ⑤ 도쿄 거주 교민 행세를 했다, ⑥ 허언증이다, ⑦ 원고가 MBN 측과 세월호 침몰 사고에 관하여 거짓 인터뷰를 하였더라는 부분 등은 모두 허위인바, 피고가 이와 같이 허위 기사를 한꺼번에 무차별적으로 게재하는 바람에 원고의 명예와 인격이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의 일부금으로 155,000,000원(각 기사마다 5,000,000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

- 1)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기사들 중 피고의 특종보도나 단독보도는 단 하나도 없다. 이 사건 각 기사에서 취재기자가 마치 자신이 사실을 직접 확인한 것처럼 보도하거나, SNS를 통해 전파되고 있는 사실을 진실이라고 단정해서 보도한 부분은 전혀 없다.
- 2) 다만, 원고의 인터뷰 이후에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원고의 과거 행적과 관련된 글과 사진이 캡처돼 올라오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을 소개하면서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원고가 인터뷰를 통해 발언한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평가적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다.
- 3) 원고의 과거 행적과 관련하여 SNS를 통해 많은 의혹이 제기됐던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피고가 이 사건 각 기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원고의 과거의 행적은 허위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자신이 민간잠수사인 것처럼 신분을 속이는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기사에 적시된 사실은 진실이다.
- 4)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주식회사 데일리스포츠월드 소속 현직 기자인 B가 자신의 이름을 건 ‘기자 칼럼’을 통해 원고의 과거 행적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나섰으므로, 언론으로서는 적어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 1) 언론 보도에 의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원고가 그 언론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한편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다240829 판결 참조).
- 2) 그리고 사실의 적시와 관련하여 거짓의 사실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인 경우, 그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증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
- 3) 한편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되,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신문 등 언론매체에 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나.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언론매체가 보도한 수개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사들이 연재기사로 기획되어 게재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기사별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기사들은 총 31건에 이르지만, 그 기사들이 연재기사로 기획되어 게재되었고, 단기간에 걸쳐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 게재되었으므로, 그 전체로서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사실 적시 여부

가) 구체적인 관련 법리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德行,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가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등을 인용하여 기사화한 것이고 보도내용에 단정적 표현이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한다면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있고(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도내용에 적시된 사실의 주된 부분은 암시된 사실 자체라고 보아야 하므로, 암시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면 그에 관한 소문 등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644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7 내지 19호증, 갑 제23 내지 35호증, 갑 제37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기사는 주로 온라인 등에 떠도는 원고의 과거 이력사칭 내지 거짓 인터뷰 관련 소문이나 네티즌의 말을 인용한 형태가 많기는 하지만, 피고는 단순히 SNS나 네티즌 등 출처를 밝히고 논란을 소개한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과거 ‘걸그룹 ○○○의 전 멤버 C의 친척이다’, ‘유명 야구선수들과 만남을 가졌다, 모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 등 수많은 거짓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과거에도 수차례 거짓인터뷰!”, “허위 사실 유포 인정” 등 단정적인 표현도 사용한 점, ② 그 뿐 아니라, 기사의 제목을 “MBN A 인터뷰, 말 하나하나 다 거짓으로 밝혀져”, “‘세월호 침몰’ MBN 인터뷰 논란 A, 과거 C 사촌언니 ‘사칭’”, “[세월호 침몰 사고] A 체포영장 발부, 과거에도 수차례 거짓인터뷰!”, “거짓 인터뷰 A 일본에서는 도쿄 도민? ... ○○○ 사건까지 충격”, “A 경찰 출두, ‘방송서 민간 잠수부라 한 적 없다’... 또 거짓말?”, “거짓인터뷰女 A, 수많은 사칭? C 사촌-연예부 기자”로 기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거짓말’ 부분에 이목을 집중하게 한 점, ③ 이 사건 각 기사는 대부분 과거 이력사칭의 일시, 장소, 내용과 거짓 인터뷰 내용을 반복적으로 적시함에 따라 원고가 세간에 ‘거짓말쟁이’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나아가 “[세월호 침몰] 거짓인터뷰女 A, 수많은 사칭?”이라는 내용까지 추가하여 세월호 침몰 관련 거짓 인터뷰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④ 더욱이 “[세월호 침몰] 거짓 인터뷰 논란 A 경찰 출두... 허위 사실 유포 인정”이라고 적시하여 독자로 하여금 거짓 인터뷰를 하였다는 점은 분명하다는 인상을 더욱 심어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기사는 원고가 MBN과의 인터뷰를 통해 발언한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평가적 의견을 개진한 것을 넘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 2) 전제된 기사에 관하여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언론사가 통신사나 다른 언론사 제공의 기사를 재보도함에 있어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언론사가 자신의 조직, 인력 및 자력만으로는 기사 내용의 진위에 대한 조사 의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고려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위 법리가 전제 보도한 기사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기사 내용에 특정인에 대한 허위 사실이 포함됨으로써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단지 해당 기사가 전제 기사라는 사정만으로 전제 보도한 언론사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65620 판결의 취지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이 사건 각 기사 중 허위인 부분

이 사건 각 기사 중, ① 원고가 걸그룹 ○○○의 전 멤버였던 C의 사촌언니라고 사칭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기까지 하였다는 부분, ② 원고가 다수의 야구선수들과 만남을 가졌거나 그들의 여자친구라고 사칭 하였다는 부분(E와의 열애라는 소문을 퍼뜨렸다는 부분 포함), ③ 원고가 과거 수많은 거짓말을 하였다는 부분, ④ 원고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자신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 소속 야구선수였다가 사망한 D를 위한 모금활동을 진행하였다는 부분, ⑤ 원고가 일본 도쿄 주민이라고 자처하였다는 부분, ⑥ 원고가 연예부 기자라고 사칭하였다는 부분, ⑦ 원고가 작사가라고 사칭하였다는 부분, ⑧ 원고가 트위터를 통해서 ‘내가 MBN 인터뷰를 한 것이 그렇게 부럽냐. 그러면 니네들도 현장 와서 얼굴 맞대고 얘기해 보든가. 이러다 나 영화배우 데뷔하는 거 아닌가 몰라.’라고 자신을 비난한 네티즌들을 비꼬았다는 부분 등이 모두 허위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6, 21, 36, 42, 92, 93호증,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 4) 이 사건 각 기사 중 원고가 2014. 4. 18. MBN 측과 세월호 침몰 사고에 관하여 거짓 인터뷰를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기자회견 내용의 허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기자회견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기자회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아래에서 배포된 보도자료 및 구두설명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 (1) 갑 제1, 99호증, 을 제4호증의 8, 1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4. 18. MBN 측과 세월호 침몰 사고에 관하여 인터뷰를 하면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해양경찰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 1. 9. 선고 2014고단612 판결),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으며(광주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노200 판결), 이에 검찰이 상고했으나 2018. 11. 29. 상고기각판결(무변론)이 선고(대법원 2016도 14678)된 사실, 특히 위 항소심 법원은 ①“해양경찰이 민간잠수부에게 지원을 하지 않고, 민간잠수부의 구조작업을 막고 있다.”는 취지의 글 및 인터뷰 부분은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②“현장구조대원이 실종자 가족에게 ‘여기는 희망도 기적도 없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글 및 인터뷰 부분은 실제 원고가 들었던 말을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기사 중 원고가 2014. 4. 18. MBN측과 세월호 침몰 사고에 관하여 거짓 인터뷰를 하였다는 부분 역시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 (2) 비록 위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위 항소심 법원이 원고의 위 인터뷰 내용 중 “해양경찰이 민간잠수부에게 지원을 하지 않고, 민간잠수부의 구조작업을 막고 있다.”라는 취지의 부분 및 “현장구조대원이 실종자 가족에게 ‘여기는 희망도 기적도 없다’는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부분은 이를 허위로 보기 어려우나, “2014. 4. 17. 구조작업에 투입된 민간잠수부가 벽을 두고 생존자와 대화하였다.”라는 취지의 부분 및 “해양경찰이 민간구조대원에게 ‘시간만 대충 때우고 가라’는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부분은 이를 허위로 볼 수 있고, 다만 원고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을 한 사실 또한 인정되고, 피고는 원고의 위 인터뷰 내용 중 위 항소심 법원이 허위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부분들을 근거로, 원고의 위 인터뷰에는 진실인 내용과 허위인 내용이 혼재되어 있고, 따라서 이 사건 각 기사 중 원고가 거짓 인터뷰를 하였다는 부분은 진실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인터뷰 중에 원고가 자신을 민간잠수사라고 소개하는 등 일부 허위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인터뷰에 임하였다면 그 인터뷰 전체를 가리켜 이를 거짓 인터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기사 중 원고가 거짓 인터뷰를 하였다는 부분에는 ‘원고가 어떠한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인터뷰에서 그 사실을 말하였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할 것인데, 이것이 진실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10, 46, 47, 48호증, 갑 제43, 45호증의 각 1, 2, 갑 제44호증의 1 내지 8, 을 제4호증의 8, 11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5) 이 사건 각 기사 중 원고가 도쿄 대지진 때 도쿄 거주 시민으로서 MBC 측과 인터뷰를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갑 제19, 23, 24, 26, 27, 3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년 3월 일본 대지진 당시 도쿄 거주 교민을 자처하며 MBC 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거짓 인터뷰 A 일본에서는 도쿄 도민?... 왜 이러시는 건지'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기사는 맥락상 마치 원고가 도쿄 주민이라고 교민 지위를 사칭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그런데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년경부터 2011. 11.경까지 도쿄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실제 교민으로 거주하던 중 우연히 인터뷰를 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실제로 도쿄 거주 교민이라 할 것이므로, 위 자처하였다는 부분은 허위라 할 것이다.

6) 이 사건 각 기사 중 원고가 과거 사칭 이력이 있다는 부분에 관하여

갑 제3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가 과거 사칭 이력이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민간잠수부라고 사칭하였기 때문에 위 기사가 진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사 전체(갑 제31호증)를 살펴보면 앞 부분에 '앞서 A씨는 지난 18일 MBN과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의 구조 작업과 관련해 거짓 인터뷰를 진행했다.'라는 내용이 있고, 마지막 전단 부분에서 '그러나 결국 A씨의 인터뷰는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고, 과거 A씨가 사칭한 이력들도 속속 드러나 거센 비난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는바, 설령 원고가 민간잠수부라고 사칭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앞서 4)항에서 살펴 본 '거짓 인터뷰' 부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과거 사칭 이력' 부분은 원고가 C의 사촌언니, 작사가, 도쿄 주민 또는 연예부 기자라고 사칭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것이 허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기사 중 원고가 과거 사칭 이력이 있다는 부분은 허위라 할 것이다.

7) 피고가 이 사건 각 기사 부분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가) 피고측 주장의 요지

현직 기자가 자신의 이름을 건 '기자 칼럼'을 통해 원고의 과거 행적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나섰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이 위 부분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

나) 인정사실

갑 제13, 92호증, 을 제3호증의 1, 9, 을 제4호증의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인터뷰를 마친 후 주식회사 데일리스포츠월드 소속 기자인 B는 아래와 같은 글을 남기거나 게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다.

(1) 먼저 B는 2014. 4. 18.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허언증 정도가 아니죠. 소름 돋을 정도로 무서운 여자입니다. 예전 ○○○ C 사촌언니라고 거짓말하던 A는 왜 진도에 가서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그때 울며불며 죄송하다고 해서 용서해줬는데... 아~MBN이 A한테 다했구나!'라는 글을 남겼다.

(2) 한편 B는 같은 날 18:48경에는 주식회사 데일리스포츠월드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스포츠월드'에 "내가 A의 정체를 공개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기자 칼럼(갑 제

13호증)을 게재하였는데, 위 기사에는 “A의 거짓말이 미디어와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정부에 대한 분노로 바뀌 쏟아내는 이들에게 빌미를 제공해줬다”. “A는 민간잠수부가 아니다. 기자는 과거 ○○○ C의 왕따 사건 때 그녀의 정체를 확실히 알았다. 당시 A는 C의 사촌언니 행세를 하면서 SNS에 ○○○에 대한 분노의 글을 쏟아 내고 있었다.”, “밑바닥 인생을 살던 A는 성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았다.”, “과거에도 A는 기자에게 정체가 들통난 후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진도에 가서 또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더라.”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판단

일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기사화함에 있어서 그 내용의 진실여부를 미리 조사, 점검하여야 하는 것은 언론기관의 기본적 책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6622 판결 참조), 한편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하며(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다240829 판결 등 참조), 한편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복사·가공하여 게시·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궁극적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인터넷상 가상공동체(cyber community)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저장된 자료를 보고 그에 터 잡아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기고문을 게재하였다면, 설령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857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대로 당초 B 기자의 트위터 및 칼럼은 가십적 보도의 성격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기사는 ‘해경의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라는 공익적 사안보다는 공인이 아니라 일반인 잠수지원 자원활동가였던 원고의 사생활 관련 소문들과 원고를 ‘거짓말쟁이’, ‘허언증 환자’라고 무차별적으로 보도한 점,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각 보도 부분을 기사로 게재하기 전에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하였는지, 어떤 근거나 자료로 위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었는지 등에 관하여 제대로 된 증거가 없는바, 피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8) 소결론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인격권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명예훼손 내지 인격권 침해로 인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 건대, 이 사건 각 기사의 취재 경위, 보도의 동기, 이 사건 기사의 형식과 내용, 보도 횟수, 유포 정도, 표현 방법, 특히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기사들은 총 31건에 이르지만, 그 기사들이 연재기사로 기획되어 게재되었던 점, 이 사건 각 기사 중 허위 부분이 차지하는 정도, 보도 매체의 특성 및 원고가 입었을 피해의 정도, 원고의 인터뷰 경위, 원고의 나이 및 사회적 지위, 직업, 피고의 언론기관으로서의 지위 및 영향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위자료를 6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초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4.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대상기사 생략

2심 판결문

사 건 2019나8589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A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7가단5072917 판결
변 론 종 결 2019. 7. 10.
판 결 선 고 2019. 8.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4.부터 2019. 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기사 등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또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로 인하여 몇 차례 기사화된 적이 있지만, 문제된 기사 등의 내용은 세월호 현장에서 해경의 구조 활동 책임이라는 공익적 사안과 무관한 원고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사 등에 게재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였거나 오로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인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2. 12. 선고 2017가단220274 판결

회사의 대표자와 회사가 동일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대표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가 바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원고 : 주식회사 케이티
- 피고 : A 외 1명

[사실관계]

피고들은 2017년 4월 19일 <프라임경제> 인터넷 사이트에 원고의 대표인 C 회장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최서원이 설립한 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여 60억 원 이상의 광고를 발주하였고, 원고 주식에 고배당을 하고 있어 이승만 전 대통령을 떠올리게 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1심 법원은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주식회사인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것이 아니며, 그 외에 이 사건 기사 보도내용은 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심 역시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나54519 판결).

[판결요지]

□ 대표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가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주식회사는 법인격을 가지는 독자적인 권리주체이고 대표이사 외에도 수많은 임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주식회사의 대표자가 주식회사와 동일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주식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나 인격권 침해 행위가 있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바로 주식회사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볼 수도 없다.

판결문

사 건 2017가단220274 손해배상(기)
원 고 주식회사 케이티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2018. 10. 23.
판 결 선 고 2019. 2.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이동전화, 유무선 인터넷, 유선전화 등 기간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프라임경제는 ‘프라임경제’라는 제호의 인터넷 신문(<http://www.newsprime.co.kr>)을 발간하는 인터넷 신문사이며, 피고 A는 주식회사 프라임경제에서 근무하는 기자, 피고 B는 주식회사 프라임경제의 산업부 부장이다.
- 나. 주식회사 프라임경제는 2017. 4. 19. 16:35경 자신이 운영하는 ‘프라임경제’ 인터넷 사이트에 ‘C 하버드 제스처, 친일파 비호 이승만의 향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 이 사건 기사는 피고 A가 작성하고 피고 B가 검토·수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사이드컷] C 하버드 제스처, 친일파 비호 이승만의 향기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HBS)의 권위는 매우 높습니다. 여기 출판부에서 펴내는 책들이 더러 한국에 번역되기도 하는데, 화제를 모으기도 하죠.

필자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기서 싱가포르 등 일명 ‘아시아의 4마리 용’이 급격히 발전한 이유를 ‘신 유교주의’로 규명했다고 해서 대학입시 관련 외울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C KT 회장이 14일(이하 현지시간) 바로 이 HBS에 강연자로 서게 돼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됐습니다. 그는 이번에 석사 2년차 120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했다고.

특히나 그에겐 이번 특강이 처음이 아닙니다. 삼성에 근무하던 시절 이미 강연을 하러 HBS에 온 바가 있기 때문이죠. 하긴 ‘○의 법칙’이라는 걸출한 반도체 관련 어젠다를 만들어낸 인물이자 KT(030200) 실적 문제를 해결한 승부사이기도 하니, 여러 번 초청한다 해도 이상할 게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의 자연스러운 제스처 역시 미국 유수의 대학 강단에 특별히 초청돼도 어색하지 않아 자연스럽다는 평을 얻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삿대질쯤으로 보이기 쉬운 손가락 제스처 등도 대단히 잘 활용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버터 향기’가 나는 건 그 자신 성공한 글로벌 기업의 CEO이기 전에 미국 유학과 출신이기 때문이라는 풀이도 뒤따릅니다.

이 정도 화려한 키워드로 하버드와 연관된 인물은 많지가 않은데요. 아마 하버드대 석사와 프린스턴대 박사를 속성으로 끝냈던 고 이승만 전 대통령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보수 진영에서 ‘건국 대통령’으로 추앙해 마지않는(이런 시각에 따르면 상해 임정 활동의 의의가 대거 축소되죠) 인물이죠. 또 미국에서 외교전에 치중한 독립운동을 오래한 탓인지, 말투나 행동 거지에(어순이 도치가 된다는지) 미국 스타일이 물씬 풍겼다고 합니다.

❶ C 회장 개인적으로도 영광되고 좋은 일이자, 국위를 선양한 상황에 대해 제스처 하나를 갖고 일일이 시비를 하는 건 지나쳐 보입니다만, 이왕 제스처와 분위기 이야기가 나왔으니 몇 가지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C 회장은 이번에 연임에 성공했죠. 그는 “3년 전 이 자리에 섰을 때 KT는 실적 악화와 외부 악재로 매우 위기로운 상황이었지만 지난 3년간 뼈를 깎는 혁신으로 KT속에 잠재된 1등 DNA를 살렸다”고 자평하며 앞으로도 더 잘 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런 자화자찬식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가 궁지에 몰린 것은, 좋은 성적표에도 최순실씨 광고 몰아주기 등 대단히 불미스러운 사태에 연루됐기 때문입니다.

60억 원이 약간 넘는 액수였다고. 문제는 KT가 이런 이상한 지출을 할 정도로 녹록한 사정이 아니라는 것, 즉 C 회장이 살려냈다는 평이 지배적일 정도로 아직 ‘큰 병치레 후 기초체력이 많이 회복되지 못한 사정’이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KT는 비교적 부채가 많다 보니 이자를 많이 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은 1조 4400억 원에 달하지만 이자비용이 3000억 원을 넘죠. 이자보상배율은 4.3에 달합니다.

아울러 EBITDA(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마진율은 21.4%인데, EBITDA 마진율이 높은 것은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가 3조4200억 원 규모로 크기 때문이라합니다. 결국 광고비를 댔씩 60억 원이나 집어주기에 녹록지 않은 사정이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C 회장이 실적이 나뉘던 것도 아닙니다. ‘내 실적이 이러한데, 내가 왜 눈치를 봐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당당히 어필할 수 있는 게 HBS가 진정 원하는 (아직 한국처럼 재벌과 공기업, 준공공기관 등에 정부와 정권 관계자들이 압박을 줄 수 있는 나라의) 우수 CEO상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점에서 아까 ‘이승만의 향기’와 ‘C의 향기’가 겹쳐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꺼낸 것이죠. 고 이 전 대통령이 본인은 친일파를 대거 중용해서 허약한 신생 국가의 기틀을 닦은 점과, C 회장이 D 전 회장 시절의 병폐를 그대로 답습해 자기 입지를 닦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겹쳐집니다.

② KT는 C 회장의 전임자인 D 전 회장 시절 배당금을 크게 늘렸습니다. D 전 회장은 2009년 취임 첫해부터 KT의 배당금을 액면가 5000원 1주당 2000원이 넘는 배당정책을 실시했습니다.

KT는 2009년 회계연도에 배당금이 주당 2000원, 2010년 2410원, 2011년 2000원, 2012년 2000원, 2013년 800원의 배당을 실시했습니다(2013년의 경우 연결기준 603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이런 배당을 실시).

그런데 C 회장은 어렵게 살려낸 회사의 자금을 혈어 여전히 고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KT를 가리켜 실적과 고배당 성향이 잘 어우러진 좋은 종목이라고들 합니다. 다만 이게 마냥 좋은 일인지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KT는 금년 열린 주주총회에서도 주당 800원의 배당금을 확정했습니다.

KT의 정책은 계속해서 투자자들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민감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단순히 자연스러운 미국식 제스처, 풍부한 식전 등 못지않게 ‘C와 이승만은 닮은 점이 있다’는 등식을 그려보게 됩니다. 과거의 병폐를 쉽게 극복하지 못한다는 점도 마찬가지죠.

이런 약점을 넘어서야 앞으로도 또 HBS 초빙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신감 넘치면서도 당당한 C 회장의 다음 HBS 특강 사진을 보고 싶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기사에서 언급된 이자보상배출 수치와 EBITDA 마진을 수치에 의하면 원고의 재정상황은 매우 양호하고, 피고들은 경제 전문지 기자들로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일부러 사실을 왜곡하여 마치 원고가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최순실 측에 과도한 광고비를 지급하였고, 이는 원고의 회장 C가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D 전 회장 시절의 병폐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이 사건 기사 중 ❶ 부분 관련). 또한 원고가 2016년도에 1주당 800원을 배당한 것은 고배당이 아닌데도 “어렵게 살려낸 회사의 자금을 혈어 고배당을 하고 있다”고 표현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C 회장을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승만에 비유함으로써 기사를 읽는 사람들에게 원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었다(이 사건 기사 중 ㉒ 부분 관련). 따라서 이 사건 기사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2) 인격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설령 이 사건 기사가 원고의 광고비 지급행위와 2016년도 배당에 대한 평가로서 피고들의 의견 표명 내지 논평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는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또는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기사는 이자보상배율과 EBITDA 마진을 수치를 바탕으로 한 의견 표명 내지 논평에 불과하고, 원고에 대한 당부 내지 조언의 의미로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며,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설령 이 사건 기사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 1) 언론 보도에 의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원고가 그 언론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 2)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다가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 3)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되,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신문 등 언론매체에 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 4)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바,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참조).

나. 기사의 사회적 배경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으로서 2016. 12. 9. 탄핵심판이 청구되어 2017. 3. 10.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되었다. 최서원은 개명 전 이름인 최순실로 널리 알려져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인으로서, 대통령의 묵인 하에 국정 운영 전반에 관여해오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으로 기소되었다. 최서원은 2018. 2. 13.,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8. 4. 6. 각 제1심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사유와 두 사람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최서원은 대기업 등으로부터 광고계약을 수주할 목적으로 차은택과 함께 광고회사를 설립하고 대통령에게 자신의 측근인 E, F가 원고 회사에 채용될 수 있도록 부탁하였다.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안종범은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원고의 회장 C에게 연락하여 ‘VIP 관심사항’이라며 두 사람의 채용을 부탁하였고, C의 지시로 E, F는 통상의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 회사에 채용되었다가 다시 같은 경위로 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으로 보직 변경되었다. 이어서 최서원은 대통령에게 자신이 2015. 10.경 설립한 주식회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이하 ‘플레이그라운드’라 한다)가 원고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대통령의 지시는 안종범과 C를 거쳐 원고의 실무자들에게 전달되었다. 원고는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기 위하여 광고대행사 선정기준 중 광고실적을 요구하는

조건을 삭제하였고,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제출한 서류 일부가 사실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2016. 3. 30. 플레이그라운드를 신규 광고대행사로 선정하여 2016. 8. 9.까지 7건의 광고(발주금액 총 68억 1,767만 원 상당)를 발주하였다.

C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기업활동이 어렵게 될 것을 우려해서 대통령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안중범의 원고에 대한 강요죄는 유죄로 인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70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사건 기사 중 ❶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서 언급된 원고의 이자보상배율 수치(4.3)과 EBITDA 마진율 수치(21.4%)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원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최서원이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여 60억 원 이상의 광고를 발주한 것도 사실이다(플레이그라운드의 광고제작능력과 관계없이, 정상적인 선정절차를 거쳤다면 플레이그라운드는 원고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하다).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재정상황이 양호한데도 좋지 않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 9, 15 내지 18호증, 을 제2, 4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이자보상배율 수치나 EBITDA 마진율 수치는 절대적으로 높다 또는 낮다고 단언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재정상황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구나 이 사건 기사는 원고의 재정상황을 두고 “큰 병치레 후 기초체력이 많이 회복되지 못한 사정이었다”거나 “광고비를 덱석 60억 원이나 집어주기엔 녹록치 않은 사정이었다”고 표현하였는데, 문언상으로도 원고의 재정상황이 매우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C 회장이 취임한 이래) 재정상태가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60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덱석 지출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원고가 대통령의 측근인 최서원이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에게 석연치 않은 경위로 60억 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한 것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던 점, 원고는 사기업이기는 하나 공기업(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시작하여 민영화한 기업으로 기간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공공적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원고의 회장도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점(원고 스스로도 국민들이 원고 회사를 국민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인정하였다), 언론 본연의 역할은 공적인 사안에 대한 감시·비판, 올바른 여론형성 등에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보면, “광고비를 덱석 60억 원이나 집어주기엔 녹록치 않은 사정이었다”라는 표현이나 “C 회장이 D 전 회장 시절의 병폐를 그대로 답습해 자기 입지를 닦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겹쳐집니다”라는 부분은 언론 매체에게 허용되는 의견 표명 내지 논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후자는 원고의

회장 C의 경영방식에 대한 논평일 뿐인데, 주식회사는 법인격을 가지는 독자적인 권리주체이고 대표이사 외에도 수많은 임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주식회사의 대표자가 주식회사와 동일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주식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나 인격권 침해 행위가 있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바로 주식회사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이 사건 기사 중 ㉒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서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C 회장은 어렵게 살려낸 회사의 자금을 혈어 여전히 고배당을 하고 있다”는 것과 “C와 이승만은 닮은 점이 있다는 등식을 그려보게 됩니다. 과거의 병폐를 쉽게 극복하지 못한다는 점도 마찬가지죠”라는 부분이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민영화된 후 2003년부터 2010년까지는 1,000~3,000원을 배당해왔고,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는 다음과 같이 배당을 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별도 표시 없는 항목의 단위 : 백만원)

대표이사 회장	D			C		
사업연도	제30기 (2011년)	제31기 (2012년)	제32기 (2013년)	제33기 (2014년)	제34기 (2015년)	제35기 (2016년)
주당 액면가액(원)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연결)당기순이익	1,289,055	708,819	-392,311	-966,176	631,288	797,844
(연결)주당순이익	5,299	2,953	-1,609	-4,316	2,258	2,904
현금배당금총액	486,602	487,445	195,112	-	122,425	195,977
(연결)현금배당 성향(%)	37.7	68.8	-	-	19.4	24.6
현금배당수익률(%)	5.3	5.2	2.5	-	1.7	2.7
주당 현금배당금(원)	2,000	2,000	800	-	500	800

먼저 “C 회장은 어렵게 살려낸 회사의 자금을 혈어 여전히 고배당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와 관련하여 언급된 원고 회사의 배당금액(2009년부터 2013년, 2016년), C 회장 취임 후 원고의 재정상태가 좋아진 것(“C 회장이 어렵게 살려낸 회사”)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원고는 C 회장 취임 전에 주당 2,000원 정도씩 배당을 해 온 것에 비하면 2015년도에 주당 500원, 2016년도에 주당 800원 배당을 한 것을 두고 “고배당”이라고 표현한 것은 악의적인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저배당 또는 고배당이란 특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 표현은 원고가 C 회장 취임 첫해에 1조 가까운 적자상태에서 배당을 하지 못하였다가 1년 만에 겨우 흑자로 돌아서자마자 다시 현금배당을 시작했고 그 액수를 늘려가고 있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의견 표명 내지 논평에 해당하고, “고배당”이라는 표현은 원고

회사의 배당 추세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강조하기 위한 수사적 과장에 불과할 뿐,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기사의 내용은 진실에 부합하고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C와 이승만이 닮은 점이 있다는 부분은 의견 표명 내지 논평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설령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회장 C에 대한 것이지 그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바로 침해된다고 할 수는 없다.

마. 인격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에 언급된 기초 사실 자체는 전부 진실에 부합하고, 그 사실을 기초로 한 피고들의 의견 내지 논평은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바.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금품이 전달된 매체를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 원고 : A
- 피고 :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외 2명

[사실관계]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은 2015년 4월 15일 <경향신문>과 <인터넷 경향신문>에 원고가 'D로부터 비타 500 박스에 담긴 금품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금품이 전달된 매체가 비타 500 박스라는 허위사실이 적시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금품 전달매체가 비타 500 박스임을 단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이 허위로 보도한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으나, 공직자에 관한 보도에 있어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수준이라고는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심 법원과 3심 법원 역시 1심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14354, 대법원 2019다267631).

[판결요지]

□ 비타 500 박스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사에서 사용된 비타 500 박스라는 문구 자체는 음료의 상표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 및 다른 정황사실과 결합되어 해당 기사를 접한 독자로 하여금 그 대상에 대하여 부정적 평가를 하도록 만든다면 그 표현을 통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 금품 전달매체를 허위 보도한 것이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들은 D의 측근들을 상대로 금품의 전달매체에 대하여 이미 취재를 마친 후 이 사건 기사 초판에서 이를 '조그만 노란색 굴박스 같은 그런 거'로 특정하였는데, D의 측근들이 굴박스는 사실이 아니며, 차라리 비타 500 박스가 사실에 가깝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반영하여 이 사건 기사에서 금품의 전달매체가 비타 500 박스라고 보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이 비타 500 박스가 진실이라는 확신은 가질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하게 보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기사의 의혹 제기는 공직자의 청렴성·도덕성에 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결문

사	건	2018가합522268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1.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2. B 3. C
변론종결		2019. 1. 23.
판결선고		2019. 2. 1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13. 4.경 충남 □□△△ 지역에서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당 소속으로 입후보하였던 사람으로, 2015. 4.경에는 국무총리로 재직 중이었다.
-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일간지 '경향신문' 등을 발행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B는 피고 회사 소속 기자이며, 피고 C는 2015. 4.경 피고 회사의 편집국장이었다.
- D는 ○○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기업인으로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다.
- 검찰은 2015. 3.경 ○○기업의 자금관리·운용 과정에서의 비리에 관한 수사에 착수하여 2015. 3. 18. ○○기업 본사를 압수수색 하고, 2015. 4. 6. D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 D는 구속영장청구사건의 피의자 심문기일인 2015. 4. 9. 06:00 무렵에 피고 B와 약 50분간 전화통화를 하면서 “2013. 4.경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원고의 선거사무소에 가서 한나절 정도 있으면서 ‘한, 한, 한 3,000만 원’을 주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진술을 한 뒤 자살하였다.
- 피고 회사는 2015. 4. 10. “[D 단독인터뷰] D, 새벽 집 나서며 ‘꼭 좀 보도해 달라’ 50분간 통화”라는 제목으로 D가 자살 전 피고 회사와 전화인터뷰를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후, 2015. 4. 14. “A 총리에도 재선거 때 3,000만 원 주고 왔다”라는 제목으로 “2013. 4.경 재보궐선거 때 원고의 선거사무소를 찾아가 현금 3,000만 원을 주고 왔다.”라는 취지의 위 D의 전화인터뷰 내용을 보도하였다.
- 그리고 피고들은 2015. 4. 15. “[단독] 2013년 4월 4일 오후 4시 30분 A □□ 선거사무소 D 측 ‘차에서 비타 500 박스 꺼내 전달’”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보도하였다.
- 한편 원고는 ‘2013. 4. 4. 오후 5시경 충남 □□군 □□읍 ○○리 XXX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자신의 □□ 선거사무소 내 후보실에서 D로부터 선거자금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라는 내용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569호) 법원은 D의 위 전화인터뷰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등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2016. 1. 29. 원고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노505호) 법원은 D의 위 전화인터뷰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그밖에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2016. 9. 27. 원고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이 2017. 12. 22.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대법원 2016도15868호) 위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5, 15호증, 갑 21호증의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3. 4. 4. □□ 선거사무소에서 D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이 담긴 비타 500 박스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기사 중 비타 500 박스 부분은 허위인데¹⁴⁾, 피고들은 금품의 전달매체가 비타 500 박스라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취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악의적으로 비타 500 박스를 부각시켜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 B, C는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민법 제760조에 기하여, 피고 회사는 피고 B, C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기하여, 각자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14) 원고는 ‘이 사건 기사에 포함된 금품수수사실도 허위이나 그 부분에 관한 주장은 하지 않고, 금품이 전달된 매체가 비타 500 박스라는 점에 한하여 허위임을 주장한다.’라는 입장이다.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억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 1) ‘비타 500’은 금품수수 전달매체의 상표에 불과한바, 이와 같은 지엽말단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더라도 이 사건 기사가 허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위 기사에서 허위성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2) 이 사건 기사 중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부분은 ‘D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받아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이므로, 비타 500 박스 그 자체로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3) 만약 비타 500 박스가 이 사건 기사의 중요부분으로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비타 500 박스 부분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
- 4) 설령 비타 500 박스 부분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들로서는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특히 이 사건 기사는 공직자의 도덕성 등에 대한 의혹 제기로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사실의 적시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바, 신문 등 언론 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일반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일 때 인정되며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9766 판결 등 참조).

2) 비타 500 박스 부분이 이 사건 기사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의 주된 내용은 ‘D가 2013. 4. 4. 원고에게 불법적인 정치자금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라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갑 1, 2, 16, 20, 21,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타 500 박스는 금품의 전달매체로서 이 사건 기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타 500 박스 부분을 이 사건 기사 전체의 허위성 판단에 영향이 없는 지엽 말단적인 부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 사건 기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4. 14. ‘D가 2013. 4.경 재보궐선거 당시 원고의 선거사무소를 찾아가 현금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간 다음날 보도된 것으로,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위 2015. 4. 14.자 기사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보도할 필요가 있었는바, 이 사건 기사에서는 D 측 인사의 말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금품수수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다.
- 이 사건 기사는 그 첫머리에 피고 회사만 보도하는 기사라는 의미로 [단독]이라는 기재가 있는데, 여러 언론사들이 원고가 D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하였는지에 관하여 경쟁적으로 보도하던 당시 상황에서, 이 사건 기사 중 기존의 다른 보도들과 차별화된 피고 회사의 ‘단독보도’라고 할 만한 내용은 위 현금 3,000만 원을 전달한 구체적인 정황이 제기되었다는 것, 특히 그 금품수수의 전달매체가 ‘비타 500 박스’라는 것이었다.
- 이 사건 기사의 제목에 “차에서 비타 500 박스 꺼내 전달”이라는 부분이 강조되어 있고, 위 기사 내용 첫머리에 “D가 2013년 4월 재선거를 앞두고 승용차에 ‘비타 500 박스’를 싣고 원고의 □□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전달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제기됐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며, 기사 본문에 “D 측 인사는 ‘D가 원고의 □□ 선거사무소에 방문했을 때인 2013. 4. 4. 16:30 D의 지시로 비타 500 박스를 선거사무소 내 테이블에 놓고 나왔다’고 전했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등 이 사건 기사에서 비타 500 박스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 이 사건 기사와 그 전날인 2015. 4. 14.자 기사를 비교하여 보면, 금품수수의 시기가 2013. 4.경 재보궐선거 무렵이라는 점, 금품수수의 장소가 원고의 선거사무소라는 점은 이미 이전 기사에서 보도되었던 내용으로, 이 사건 기사에서는 특히 금품수수의 경위나 방법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비타 500 박스는 금품의 전달매체로 특정된 것이므로 비타 500 박스는 이 사건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와 같이 금품의 전달매체를 매우 구체적으로 특정한 이 사건 기사까지 보도됨으로써 앞서 원고가 D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보도들의 신빙성도 올라가게 되었다.
- 2013. 4.경 D의 보좌관이었던 E는 관련 형사사건 제1심 법정에서 “피고 B가 이 사건 기사에서 ‘노란색 박스’ 이야기가 키워드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앞서

본 이 사건 기사의 보도 시기 및 내용에 위와 같은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들은 D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한 매체가 비타 500 박스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보도하려는 목적으로 가지고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자가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공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측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진실을 가리는 주요기준이 될 것이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금품의 전달매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는지 여부도 그 신빙성을 뒷받침할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 사건 기사는 금품수수의 전달매체를 비타 500 박스라는 상표명까지 언급하며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어, 기사를 접하는 독자 입장에서는 위 상표까지 정확하게 특정될 정도로 금품수수의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 이 사건 기사에서 금품수수의 전달매체로 특정된 박스의 상표가 '비타 500'인지 다른 상표인지 여부 자체는 세부적 사항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하겠으나, 전달매체를 단순히 '박스'라고만 보도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기사와 같이 상표를 특정한 경우 기사의 구체성이나 전체적인 신빙성이 확연히 올라가게 되고 독자들로서도 보도내용이 진실이라는 인상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므로, 이 사건 기사의 '비타 500' 박스 부분은 금품의 전달매체 그 자체로서 위 기사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만일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금품수수 의혹 보도에서 금품수수 사실 자체 이외의 관련 정황사실은 허위성 여부의 판단대상인 중요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일단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가사 언론사가 그 금품수수의 전달매체 등 관련 정황사실에 관한 허위내용을 마치 진실한 것처럼 보도하더라도 그 보도내용의 중요성이나 허위의 정도를 불문하고 그러한 허위보도 행위에 대하여 일절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결과가 되는데,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 있어서 금품의 전달매체 등 관련 정황사실들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매우 부당하다.
 -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이후 특히 원고를 비타 500과 관련지어 조롱하는 패러디물 등 비판적인 게시물들이 인터넷에 속출하였고, 비타 500과 관련된 후속 기사도 이어졌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를 접하는 독자들이나 다른 기자들도 비타 500 박스를 금품의 전달매체로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3) 비타 500 박스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 이 사건 기사에서 사용된 비타 500 박스라는 문구 자체는 음료의 상표에 불과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
- 그러나 보도에 사용된 문구 자체로는 명예훼손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 및 다른 정황사실과 결합되어 해당 기사를 접한 독자로 하여금 그 대상에 대하여 부정적 평가를 하도록 만든다면 그 표현을 통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는 ‘D가 2013. 4.경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라는 내용의 2015. 4. 14.자 기사에 이어서, 당시 사용된 금품의 전달매체도 밝혀졌다는 점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보도하였다.
 - 이미 원고의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위와 같이 금품수수의 중요한 정황인 전달매체가 비타 500 박스라는 구체적인 상표까지 특정되어 보도됨으로써 앞선 보도의 신빙성이 확연히 올라가게 되었다.
 - 금품의 전달매체로 특정된 박스의 상표가 무엇이든 그 자체로는 명예훼손적인 표현이 될 수 없겠으나,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구체적인 상표를 언급하지 않은 채 단지 ‘박스’라는 정도로 전달매체를 특정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를 접하는 독자 입장에서는 상표까지 특정될 정도로 금품수수의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인식하게 되는 등 금품수수 의혹을 진실로 믿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 결과적으로 비타 500 박스라는 상표가 사용된 보도는 그렇지 아니한 보도와 비교할 때 원고가 D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보다 구체화하고 강한 인상에 의하여 이를 뒷받침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더욱 저하시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이후 특히 원고를 비타 500과 관련지어 조롱하거나 희화화하는 패러디물 등 비판적인 게시물들이 인터넷에 속출하기도 하였다.
- 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의 ‘비타 500’ 박스는 D가 원고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사실과 결합하여 그 금품전달의 매체로 적시됨으로써 단지 원고의 금품수수 의혹만을 추상적으로 보도하는 경우보다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더욱 저하시키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기사 중 비타 500 박스 부분은 허위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중요부분으로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나. 비타 500 박스 부분이 허위인지 여부

- 1) 갑 4, 6, 23, 25호증, 을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2013. 4.경 D의 수행비서였던 F는 2015. 5. 10.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13. 4. 4. 원고의 □□ 선거사무소에서 D의 차량 안에 있던 쇼핑백을 꺼내 원고와 함께 있던 D에게 전달하였는데 위 쇼핑백 안에는 ‘그리 무겁지 않은 네모난 물건’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 또한 F는 2015. 10. 27.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법정에서, “원고의 □□ 선거사무소 안에서 D에게 쇼핑백을 전달한 사실이 있고, 그 안에 ‘그리 무겁지 않은 네모난 물건’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 E는 2015. 5. 11. 관련 형사사건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13. 4.경 ○○기업의 재무담당 이사 G로부터 조그만 박스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 쇼핑백을 받아서 D 차에 실은 기억이 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 또한 E는 2015. 10. 27.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법정에서, “2013. 4.경 D의 지시에 따라 G로부터 쇼핑백을 받아 D의 차량에 실었는데, 쇼핑백 안에 볼록한 박스 형태 같은 게 들어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 G는 2015. 11. 6. 관련 형사사건 제1심 법정에서, “2013. 4.경 (실무자인) H로부터 현금이 든 박스가 든 쇼핑백을 받아 E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 위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D가 박스에 3,000만 원을 담아 원고에게 전달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D의 측근들은 2013. 4.경 D가 원고에게 금품을 전달할 때 사용한 매체를 ‘박스’로 특정하고 있기는 하다.

- 2) 그러나 나아가 위 박스가 ‘비타 500’ 박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2, 4 내지 11, 23, 24, 25호증, 을 1,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I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 중 비타 500 박스 부분은 허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D는 2015. 4. 9. 피고 B와 전화인터뷰를 할 당시 원고에게 현금을 전달한 매체가 무엇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 E, F나 2013. 4.경 D의 수행비서였던 J, 운전기사였던 K 등 D의 측근 중 관련 형사사건에서 비타 500 박스를 보았다고 진술하거나 이를 피고 B에게 언급하였다고 진술하는 사람은 없다(K가 이 사건 기사 보도 이후 언론사 인터뷰에서 비타 500 박스를 보았던 것처럼 말한 사실이 있으나,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법정에서는 “당시 전달했던 쇼핑백이 반으로 접혀 있고 테이핑 처리가 되어 있어 내용물을 확인하지는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특히 원고의 선거사무소에서 D의 차량에 있던 쇼핑백을 K로부터 건네받아 D에게 전달했다는 F는 관련 형사사건 제1심 법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비타 500 박스에 대해 언급했던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까지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금품의 전달매체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 ○○기업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실무자인 H도 관련 형사사건 제1심 법정에서, 비타 500 박스에 3,000만 원을 쓴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 ○○기업의 인사총괄 임원이었던 I도 이 법정에서 “D의 수행비서 등 측근들로부터 비타 500 박스에 관하여 들은 바는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이 사건 기사의 초판에는 금품수수의 전달매체에 관하여 ‘차에 박스 신고 가 전달’, ‘사과박스 같이 큰 것은 아니고, 매끈하게 잘 코팅돼 있는 조그만 노란색 굴박스 같은 그런 거였다.’라고만 특정되어 있었고, 비타 500 박스에 관한 기재는 없었다.
-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기사의 초판 기사는 비타 500 박스가 아니라 ‘조그만 노란색 굴박스 같은 그런 거’였으며, 테이블 위에 놓고 나왔다는 언급도 없었다. 만일 K나

F가 처음부터 비타 500 박스를 언급했다면 언론사가 이를 놓칠 리 없다. E는 사전에 이 사건 기사의 초판을 접하고 그 진위 여부에 대해 신문사 측에 항의하는 과정이 있었으며, 피고 회사 측이 자신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비타 500 박스로 보도했다고 진술한다. F도 2015. 4. 12. 장례식장에서 피고 B가 뭔가 전달한 것이 있는지 집요하게 캐묻기에 ‘선거사무소에 가면서 과일상자 같은 것은 갖다 줄 수 있겠죠’라는 정도로 일반적인 대답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비타 500 박스는 기자들이 D의 진술을 토대로 비서진들의 진술을 각색하고 과장해 보도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 피고 B가 2015. 4. 12. D의 장례식장에서 F, K, J 등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메모나 이를 피고 C에게 보고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기 전 금품의 전달매체가 비타 500 박스가 확실한지 여부에 관한 취재는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3)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서 마치 ‘비타 500’ 박스가 금품의 전달매체로 사용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위법성 조각 여부

1) 공익성과 진실성 또는 상당성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언론보도로 타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언론매체에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나) 공익성

이 사건 기사는 국무총리인 원고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인바, 이는 고위 공직자인 원고의 비위행위 등을 비판·감시하고 도덕성·청렴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어서,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사안에 관한 것으로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보도의 목적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진실성

비타 500 박스 부분이 진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은 앞서 제3의 나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상당성

- (1) 앞서 살펴본 D 및 그 측근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할 당시 'D가 원고에게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점'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있다.
- (2) 그러나 갑 2, 4 내지 11, 23, 24, 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I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금품의 전달매체가 비타 500 박스라는 점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앞서 제3의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D의 측근들은 비타 500 박스에 관하여 언급한 적이 없고, 피고 B도 금품의 전달매체가 비타 500 박스라는 점을 확실하게 취재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 B는 2015. 4. 12. D의 장례식장에서 F, J, K 등을 취재하였는데, F는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법정에서 “피고 B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선거사무소를 가면서 여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먹이라고 과일상자 같은 것은 갖다 줄 수 있겠죠’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고 B는 2015. 4. 12. 장례식장에서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 기사 초판을 작성하면서 금품의 전달매체를 ‘조그만 노란색 굴박스 같은 그런 거’라고 특정하였다. 그런데 2015. 4. 14.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위 초판 기사를 본 I, E로부터 굴박스는 사실이 아니라는 항의를 받자 I와 논의한 끝에 이를 비타 500 박스로 수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금품수수의 현장에 있었다는 F 등에 대한 추가 취재나 별도의 사실확인 절차는 거치지 아니하였다.
 - E는 관련 형사사건 제1심 법정에서, “이 사건 기사 초판의 노란색 굴박스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항의했고, 그러면 음료박스 정도로 가겠다고 해서 그것도 안 된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 피고 B는 금품수수의 전달매체가 ‘박스’라는 정도까지는 취재는 하였으나 그 박스가 비타 500 박스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정확한 취재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서 비타 500 박스가 금품의 전달매체로 사용되었다는 D 측근의 진술을 확실하게 확인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하였다.
 -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의 초판에 쓰인 굴박스가 사실이 아니라는 항의를 받았다면 이를 ‘박스’ 정도로 표현하여 보도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구체

성과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타 500 박스라는 상표까지 특정하여 보도하였다.

-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은 D 측근들의 진술 및 피고 B의 취재, 보도경위를 종합하여 앞서 제3의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는 기자들이 비서진들의 진술을 각색하고 과장해 보도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기도 하였다.

(3)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하여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문제 되는 경우에 그 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보도가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보도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해당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특히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을 그 사명의 하나로 하는 언론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언론보도의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의혹을 품을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의혹사항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 행위는 언론자유的重要内容 중의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언론보도로 말미암아 공직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고,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이때 언론보도가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지는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 방식, 의혹 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취재 과정이나 취재에서 보도에 이르기까지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다4037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2, 4, 9, 10, 21, 23, 25호증, 을 1, 2, 4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I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1), (2), (3)항 기재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에서 ‘비타 500’ 박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금품의 전달매체에 대한 취재 과정

○ 피고 B는 2015. 4. 12. D의 장례식장에서 I, E를 통해 D의 측근이었던 F, J, K를 취재할 기회를 가졌다. D가 자살하기 직전에 피고 B와 전화인터뷰를 하였기 때문에 I, E는 다른 기자들과 달리 피고 B에게는 D의 측근들을 취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B는 위 장례식장에서 F, J, K를 상대로 ‘D와 함께 2013. 4.경 원고의 □□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 ‘당시 D가 원고에게 전달한 것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 F는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법정에서, “2015. 4. 12. D의 장례식장에서 피고 B에게 박스 이야기를 한 적은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E 부장이 이 분(피고 B)한테는 다 말씀드려도 된다고 말했고, 피고 B가 몇 가지를 묻기 시작했다. (피고 B에게) 2013. 4. 재선거가 있었을 때 (D을 원고 사무실로) 모시고 간 기억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피고 B가 원고 선거사무소 방문 당시) 뭔가를 꺼내서 회장님(D)한테 전달을 한 적은 있느냐고 질문을 했고, 그래서 별다른 것은 기억이 나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기억나는 바는 있었지만 일부러 모른다고, 이 분(피고 B)이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그런데 계속 저한테 보채듯이 물어보기에, ‘선거사무소를 가면서 여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먹으라고 과일상자 같은 것은 갖다 줄 수 있겠죠’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피고 B가 계속 어떤 과일, 어떤 과일상자, 얼마만한 크기, 어떤 색깔, 이런 쪽으로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대답은 안 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 즉 피고 B는 2015. 4. 12. F 등에게, 2013. 4.경 D가 원고에게 전달하였다는 박스의 종류, 모양, 크기, 색깔 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을 하였다. F는 피고 B의 위와 같은 질문에 상세히 답변을 안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 이 법정에서 “피고 B에게 (박스의 모양 등에 대한)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 오래 돼서 이야기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에게 말했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2) 이 사건 기사 초판에서 금품 전달매체를 ‘조그만 노란색 굴박스 같은 그런 거’로 특정한 경위

○ 위와 같이 피고 B는 2015. 4. 12. D의 장례식장에서 D의 측근들을 상대로 금품 전달매체의 종류, 크기, 색깔 등을 취재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F, E, K 등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B는 적어도 F 등으로부터 “원고에게 전달한 것은 ‘박스’이고, ‘과일상자’ 같은 것을 갖다주었을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내용은 취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F는 2015. 4. 12. 피고 B의 취재 이후 2015. 4. 14. 피고 회사가 ‘2013년 재선거 때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주고 왔다.’라는 내용의 D와의 전화인터뷰를 보도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D는 자신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지인에게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거냐. 지금 내가 한 마디만 해도 총리 사퇴해야 한다. 그때 내가 모시고 갔거든. 얘기해야 될 것 같다.’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분노를 표시하였고, 중앙일보 소속 L 기자의 문자 및 전화인터뷰에 응하기도 하였다.
 - L 기자는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이후 위 F와의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2015. 4. 16. “비타 500 vs 굴박스 vs 누런 봉투”라는 제목으로 “‘3,000만 원 어디에 담았나’ D 측근들 기억 엇갈려...음료수 박스 주장하는 측근 ‘언론 전달 과정서 비타 500으로 둔갑’” 등의 내용이 담긴 기사를 보도하였는바, 이 사건 기사 보도 당시 F를 비롯한 D의 측근들은 금품의 전달매체에 관하여 기자들에게 적어도 음료수 박스나 굴박스라는 정도로는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B도 이와 같은 진술들을 토대로 이 사건 기사의 초판에서 금품의 전달매체를 ‘조그만 노란색 굴박스 같은 그런 거’로 특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I는 이 법정에서 “피고 B에게 굴박스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온거냐고 하니, 피고 B는 (2015. 4. 12.) 상가에 갔을 때 저희 직원들한테 직접 들었다고 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 (3) ‘조그만 노란색 굴박스 같은 그런 거’를 비타 500 박스로 수정한 경위
- I, E 등은 2015. 4. 14. D와 피고 B 사이의 2015. 4. 9.자 전화인터뷰 녹취록을 듣기 위하여 피고 회사를 방문하였다가 이 사건 기사의 초판을 보게 되었고, I와 E는 피고 B, C에게 굴박스는 사실이 아니니 이대로 기사가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 E는 관련 형사사건 제1심 법정에서, “이 사건 기사 초판의 노란색 굴박스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항의했고, 그러면 음료박스 정도로 가졌다고 해서 그것도 안 된다고 하다가 기사를 안 쓰는 쪽으로 결론을 냈는데 다음날 비타 500 박스 이야기가 기사로 났다.”라는 취지로, 피고들이 I, E의 항의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상의 없이 비타 500 박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러나 I는 이 법정에서 “당시 E는 (이 사건 기사 초판에 관한) 대화에 일관되게 관여하지 못했고, 제가 피고 B, C와 한참 이야기를 나눴다. 저는 기사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 I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기사의 금품 전달매체를 비타 500 박스로 특정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기사의 초판에서는 ‘굴박스’라고 되어 있었는데, 3,000만

원을 굴박스에 담는다는 것이 부피 자체가 안 맞고, 계절적으로 그 때(2013. 4.경)가 굴이 낄 때가 아니라서, 피고 B에게 굴박스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당시 대화를 하던 과정에서 ‘노란색’, ‘박카스 박스 크기’ 등의 말이 오가다가 피고 B가 비타 500 박스가 아니냐고 하여 증인이 그쪽에 가깝겠다, 비타 500 박스로 나가는 것이 굴박스보다는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 또한 I는 이 법정에서 “직원들과 이야기 나눈 잔상도 있고, 그런 정도(대략 돈을 어디에다 넣었다는 이야기)의 대화를 직원들한테 들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 위와 같이 이 사건 기사에서 금품 전달매체를 비타 500 박스로 특정하게 된 것은 I의 의견이 결정적이었는바, ○○기업의 임원으로서 F 등의 상급자였고, D의 사망 이후 후속처리를 총괄하며 원고와의 금품수수 사건에 대하여도 F 등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을 I의 지위나 역할, F 등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기사에서 금품의 전달매체를 굴박스 대신 비타 500 박스로 수정하여 보도하는 게 낫다는 I의 주장이 틀렸다고 확신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 즉 피고 B는 D의 측근들을 상대로 금품의 전달매체에 대하여 이미 취재를 마친 후 이 사건 기사 초판에서 이를 ‘조그만 노란색 굴박스 같은 그런 거’로 특정하였는데, I, E가 굴박스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I는 차라리 비타 500 박스가 사실에 가깝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반영하여 이 사건 기사에서 금품의 전달매체가 비타 500 박스라고 보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이 사건 기사의 취재 과정, 보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비타 500 박스가 진실이라는 확신은 가질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하게 보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기사에서 금품의 전달매체를 비타 500 박스로 표현한 것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위 기사의 의혹 제기는 공직자의 청렴성·도덕성에 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대상기사 생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가합54834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1. 8. 선고 2019나2017049 판결

제보자가 사건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관련 녹취록을 제공하며 자신의 실명을 밝혀도 된다고 했다면 제보내용을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 원고 : A
- 피고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외 5명

[사실관계]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2018년 2월 27일부터 3월 5일에 걸쳐 <동아일보> 및 <동아닷컴>에 원고가 과거 성추행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1심 법원은 피고 D의 제보에 근거한 기사에 대해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고 보아 이 부분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반면 피고 E의 제보에 근거한 기사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적시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기사가 저명한 문인인 원고의 성추행 사건 고발이라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는 점, 피고 E의 제보가 일관되고 상세하였고 자신의 실명을 밝혀도 된다고 말한 점, 피고 E가 소외 M, N이 원고의 행위를 목격했거나 전해 들었다고 시인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제공한 점을 고려하면 언론사가 피고 E의 제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제보자인 피고 E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이후 2심 법원 역시 원고와 피고 E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3심 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다297298).

[판결요지]

□ 피고 동아일보, 동아닷컴, B, C의 위법성 조각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E는 2018. 2. 6. 피고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2008년 사건을 제보하면서, 사건의 시기, 장소, 동석자, 원고의 구체적인 행동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자신의 실명을 밝혀 보도해도 된다고 하였다.

피고 E는 2000년경 △△동에서 원고의 성추행을 목격하였으며 이전에 피고 E으로부터 2008년 사건에 관하여 들은 적이 있다는 M의 진술이 담긴 녹취파일 등 자신의 제보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전달하고, 원고의 성추행 등을 추가로 증언하여 줄 만한 다른 문인들의 연락처도 알려주었다. 그리고 피고 E는 2018. 2. 27. 4~5년 전 광주에서 원고의 성기노출을 목격한 적이 있다는 N의 진술이 담긴 녹취파일도 보내주었다.

피고 E가 실명이 드러나는 자신의 블로그에 2008년 사건 관련 글을 올린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년 사건 관련 글은 사건의 시기, 장소, 경위, 원고의 구체적인 말과 행동, 사건 후의 정황, 당시 피고 E가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게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자로서는 위 내용을 신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문

사	건	2018가합548345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1.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2. 주식회사 동아닷컴 3. B 4. C 5. D 6. E
변	론	2019. 1. 30.
판	결	2019. 2. 15.

주 문

1. 피고 E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동아닷컴, B, C, D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동아닷컴, B,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E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동아닷컴, B, C에 대하여 :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동아닷컴은 각자 1,000,000,000원을, 피고 B, C는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동아닷컴과 각자 위 1,000,000,000원 중 500,00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이 판결 송달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동아일보’의 광고란을 제외한 제1면 기사 게재 부분에 별지 4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과 내용은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1회 게재하라. 만약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가 위 기한 내에 위 정정보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한 만료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동아닷컴은 이 판결 송달 후 24시간 이내에 인터넷신문 동아닷컴(<http://www.donga.com>)의 첫 화면

중앙 중단에 24시간 동안 별지 4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과 내용은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하고, 초기화면 기사 목록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며, 이후로는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만약 피고 주식회사 동아닷컴이 위 기한 내에 위 정정보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한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 D에 대하여 : 피고 D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 피고 E에 대하여 :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이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시인으로 1958년 등단한 이래 ‘(작품명 생략)’ 등 다수의 시를 발표한 원로 문인이고, 한국□□회의(구 □□□□□회의) 이사장 및 상임고문, ○○대 석좌교수, △△△△ 석좌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이하 ‘피고 동아일보사’라고 한다)는 일간지 ‘동아일보’ 등을 발행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동아닷컴(이하 ‘피고 동아닷컴’이라 한다)은 홈페이지(<http://www.donga.com>)에 ‘인터넷 동아일보’를 발행하는 언론사이며, 피고 B, C는 피고 동아일보사 소속 기자이다.
- 피고 D는 1992년 등단한 시인으로 ‘(작품명 생략)’ 등 다수의 시집을 내왔고, 피고 E는 2001년 등단한 시인으로 ‘(작품명 생략)’ 등 다수의 시집을 펴냈다.
- 피고 E는 2018. 2. 6. 피고 B에게 ‘원고가 2008. 4.경 □□대학교 인문학 강연회 뒤풀이에서 성기를 노출했다.’라는 내용을 제보하였다.
- 피고 B는 2018. 2. 27. “[단독] △△, 여대학원생 성추행하며 신체 주요부위 노출”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1 기사’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동아일보사, 동아닷컴이 이를 보도하였는데, 위 기사에는 “40대 문인 ㄱ씨(피고 E를 지칭한다)에 따르면 2008. 4. 원고는 지방의 한 대학 초청 강연회에 참석했다. 행사 후 뒤풀이 성격의 술자리가 열렸다. 원고와 문인 출신인 다른 대학의 교수, 여성 대학원생 3명, 그리고 ㄱ씨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원고는 옆에 앉은 20대 여성 대학원생에게 ‘이름이 뭐냐’, ‘손 좀 쥐봐라’고 말하며 손과 팔,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만졌다. 누구도 이를 말리지 못했다. 급기야 술에 취한 원고는 노래를 부르다 바지를 내리고 신체 주요부위까지 노출했다고 한다. 한 여성은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ㄱ씨는 ‘그는 이 세계의 왕이자 불가침의 영역, 추앙받는 존재였다. 그런 추태를 보고도 제지할 수 없어 무력함을 느꼈다’고 말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피고 B는 2018. 2. 27. 피고 D에게 원고의 성추행 등을 목격한 것이 있으면 제보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 D는 피고 B에게 ‘1992년 겨울에서 1994년 봄 사이 ○○ XX 공원 근처 술집에서 원고가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이메일로 보냈다.

- 피고 B는 2018. 2. 28. “[단독] D ‘△△ 시인, 술집서 바지 지퍼 내리고 만져달라고...’”라는 제목으로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2 기사’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동아일보사, 동아닷컴이 이를 보도하였는데, 위 기사에는 피고 D가 제보한 “1992년 겨울에서 1994년 봄 사이의 어느 날 저녁, ○○ XX공원 근처 술집에서 선후배 문인들과 술과 안주를 먹고 있었는데, 원고가 들어와 의자 3~4개가 이어진 위에 등을 대고 누워 바지 지퍼를 열고 자신의 손으로 아랫도리를 주무르더니 ‘야, 니들이 여기 좀 만져줘’라고 말했다. ‘니들’ 중에는 피고 D 외에 또 다른 젊은 여성시인 한명도 있었다. 주위의 문인 중 아무도 원고의 행동을 저지하지 않았고 남자들은 재미난 광경을 보듯 히죽 웃었으며 술집 여자는 원고를 위에서 내려다보더니 묘한 웃음을 지으며 ‘아유, 선생님두~’라고 말했다.”라는 내용의 글이 포함되어 있다.
- 피고 E는 이 사건 2 기사가 보도된 이후 2018. 3. 5. 자신의 블로그에 ‘나도 2008. 4.경 원고의 성추행 및 성기노출을 목격하였다. 원고의 자위행위를 목격하였다는 피고 D의 증언은 거짓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 피고 C는 2018. 3. 5. “E 시인 ‘△△ 시인, 지퍼 열고...D 시인 증언, 결코 거짓 아냐’”라는 제목으로 별지 3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3 기사’라고 하고, 위 기사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기사’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동아일보사, 동아닷컴이 이를 보도하였는데, 위 기사에는 피고 E가 2018. 3. 5.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2008. 4. X 대학교에서 주최한 강연회의 뒤풀이에서 원고가 옆자리에 앉은 20대 여성의 손, 팔, 허벅지를 만졌고, 자리에서 일어나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흔들었다.’라는 내용의 글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20, 21호증, 을가 4, 7호증, 을마 39호증, 을바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1992년 겨울에서 1994년 봄 사이에 ○○ XX공원 근처 술집에서 의자 위에 누워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하 ‘1994년 사건’이라 한다)이 없고, 2008. 4.경 강연회 뒤풀이 자리에서 20대 여성의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성기를 노출한 사실(이하 ‘2008년 사건’이라 한다)도 없다.

그런데 피고 동아일보사, 동아닷컴, B, C는 허위의 내용이 담긴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고, 피고 D는 1994년 사건과 관련된 허위의 글(이하 ‘1994년 사건 관련 글’이라 한다)을 피고 B에게 제보하였으며, 피고 E는 2008년 사건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피고 B에게 제보하고 이에

대한 글(이하 ‘2008년 사건 관련 글’이라 한다)을 블로그에 게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동아일보사, 동아닷컴은 피고 B, C와 함께 허위 기사를 보도한 공동불법행위자이자 피고 B, C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760조에 기하여 각자 위자료 10억 원을, 피고 B, C는 피고 동아일보사, 동아닷컴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60조에 기하여 각자 위 10억 원 중 5억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동아일보사, 동아닷컴은 민법 제764조에 따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이 사건 각 기사에 대한 별지 4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 D, E는 위와 같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각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동아일보사, 동아닷컴, B, C

이 사건 각 기사 중 1994년 사건 관련 부분 및 2008년 사건 관련 부분은 허위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각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이고, 이에 적시된 사실은 진실한 것이거나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피고 D

1994년 사건에 관한 피고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소명자료도 충분한 반면 위 사건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 또한 피고 D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인 1994년 사건 관련 글을 기자에게 제보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 피고 E

2008년 사건에 관한 피고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소명자료도 충분한 반면 위 사건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 또한 피고 E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인 2008년 사건을 기자에게 제보하고 2008년 사건 관련 글을 블로그에 게재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피고 동아일보사, 동아닷컴, B, D에 대한 1994년 사건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적시사실의 허위 여부

1) 관련 법리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언론보도에 의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원고가 그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그 증명 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궁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 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을가 7호증, 을마 2, 3, 7, 9, 10, 16 내지 22, 25, 27, 30, 32, 34, 36, 38, 39, 43, 45, 46호증, 을바 19, 21호증의 각 기재, 을마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영상,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동아일보사, 동아닷컴, B, D는 1994년 사건의 존재를 수궁할 만한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갑 7, 9 내지 14, 22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2 기사 중 1994년 사건 부분이나 피고 D가 작성한 1994년 사건 관련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 D 진술의 신빙성

① 제보의 동기나 경위

- 피고 D는 2016. 10.경 문단 내 성폭력 문제를 취재하던 에스비에스(SBS) 방송국 소속 H 기자에게 1994년 사건을 제보하기는 하였으나 직접 인터뷰 촬영에 응하지는 못하였다.
- 그 후 피고 D는 문화예술 계간지 ‘□□□□’ 2017년 겨울호에 원고의 성추행 등을 풍자한 ‘(작품명 생략)’이라는 시를 발표하였는데, 2018. 2. 6. 시인 I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 ‘(작품명 생략)’은 원고에 대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동안 묵인하였던 문인들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위 페이스북 내용이 2018. 2. 7. 기사화되었고, 피고 E가 원고의 성기노출 목격담을 피고 B에게 제보하여 2018. 2. 27. 이 사건 1 기사가 보도되기도 하였다.
- 피고 D는 원고의 성추행에 대하여 추가취재를 하던 피고 B으로부터 2018. 2. 27. 제보 요청을 받고 2018. 2. 11. 무렵 작성해두었던 1994년 사건 관련 글을 피고 B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 위와 같은 피고 D의 제보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는 처음에는 원고의 문단

내에서의 지위, 원고에 대한 폭로를 할 경우의 사회적 반향이나 불이익 등이 두려워 이를 알리는 것을 주저하다가, 다수의 목격담이 나오고 기사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원고가 별다른 자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자 제보를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 D가 허위의 제보를 하여 원고를 음해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② 사건 발생시기에 관한 진술

- 피고 D는 1994년 사건 관련 글에서, 사건의 발생시기를 ‘1992년 겨울에서 1994년 봄 사이’로 매우 포괄적으로 특정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과정에 이르러서야 ‘1994년 늦봄’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 그러나 피고 D가 처음부터 사건의 발생시기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한 것은 약 25년이란 시간의 경과로 인한 인간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 피고 D는 사건 발생시기를 특정한 경위에 관하여, 1992년 겨울에 등단한 이후 문단의 술자리에 자주 참석하다 1994년 봄경 시집 ‘(작품명 생략)’을 발간한 뒤 바빠져서 술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1994년 사건 관련 글에서는 문단의 술자리에 자주 참석하며 종종 원고를 보았던 1992년 겨울에서 1994년 봄 사이를 대략적인 사건 발생시기로 특정하였다가, 예전 일기를 찾아보라는 동생의 조언을 들은 후 ‘광기인가 치기인가 아니면 그도 저도 아닌 오기인가 - A 선생 대(對) 술자리 난장판을 생각하며’라고 기재되어 있는 자신의 1994. 6. 2.자 일기를 발견하고 사건의 발생시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1994년 늦봄이라고 특정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위와 같은 특정경위에 대한 주장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D가 1994년 사건 관련 글에서 사건의 발생시기를 포괄적으로 특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D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③ 목격한 사건의 내용 등에 관한 진술

- 피고 D가 피고 B에게 제보한 1994년 사건 관련 글이나 피고 D의 이 법정에서의 1994년 사건에 관한 진술내용은, 사건발생의 장소, 사건을 목격하게 된 경위, 당시 원고의 말이나 행동, 사건 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묘사가 있고,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세부적인 정보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
- 또한 1994년 사건 관련 글의 내용과 피고 D가 이 법정에서 1994년 사건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중요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다.
- 1994년 사건 관련 글 중 술집여자가 웃으며 ‘아유 선생님두~’라고 말했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 D가 1994년 사건의 발생장소로 특정한 술집 ‘XX’을 운영하였던 F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F도 당시 'XX'에 F 외에 젊은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 D는 이 법정에서 F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F 외에 다른 여성이 위와 같은 말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 D는 이 법정에서 “손에 술잔이나 물병을 든 여성이었기 때문에 ‘술집여자’라고 표현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세부적 정황을 부연하여 묘사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바, 위 피고가 당시 목격한 원고의 말과 행동 등 중요한 부분을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이상,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일부분을 들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 피고 D는 이 법정에서 1994년 사건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약 25년 전의 사건에 관하여 ‘여성시인이 한 명 있었다.’라는 정도로 기억하면서도 그것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기억력의 한계에 비추어 납득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한편 시인이자 1994년 한국□□회의 간사였던 증인 G도 “1994년 무렵 여성시인이 많지는 않았다. J와 K 모두 문인단체 간사를 맡았기 때문에 당시 가끔 ‘XX’ 주점에 갔었다. K는 이미 사망하였고,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피고 D가 당시 동석한 다른 여성시인을 찾는 과정에서 J에게 연락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 D는 1994년 사건 당시의 동석자를 찾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피고 D가 원고의 자위행위를 목격한 시간을 1분에서 30분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하나, 피고 D는 이 법정에서 “원고가 자위행위를 한 것은 적어도 1분 이상이었고, 30분은 원고가 의자 위에 누워있었던 시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약 25년 전 목격한 사건에 관하여 소요시간을 그 이상 구체적으로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피고 D가 원고의 자위행위를 실제로 목격하였다면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을 리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자위행위를 목격한다는 것은 매우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상황인 점, 피고 D는 이 법정에서 당시 주위에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너무 놀라서 가만히 있었다는 피고 D의 주장은 수긍할 수 있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부수적인 사정만으로 피고 D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 원고는 피고 D가 원고의 자위행위를 목격하였다는 1994년 늦봄 이후에도 원고와 비교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 D의 위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가 1994년 늦봄 이후에도 다른 문인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원고와 술자리를 함께 하거나, 자신을 위한 TV 프로그램 인터뷰를 원고에게 부탁하거나, 원고와 통화를 하였다는 내용이 원고의 일기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1994년 사건 당시 피고 D를 상대로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당시 원고의 주변사람들 사이에 원고의 술자리에서의 기행은 어느 정도 묵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그 무렵 문단 내에서의 원고의 지위 및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보면, 설령 피고 D가 1994년 사건 이후에도 원고와의 관계를 단절하지 아니한 채 술자리에 합석하거나 통화를 하는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하여 앞서 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D가 원고의 술자리에서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목격하였음을 추단케 하는 1994. 6. 2.자 일기가 존재하고, 위 일기가 조작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에 의하여 피고 D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는지 여부

① 증인 F의 증언

F는 이 법정에서 “1994년 사건과 관련된 날은 피고 D가 시인 L과 같이 온 날이다. 원고가 먼저 ‘XX’에 와서 화장실에 간 사이 피고 D가 L과 들어왔다. 증인이 가게 자리를 비운 적이 없는데 원고의 자위행위는 없었고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소문이 다 났을 것이다. 그 날 G도 왔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 F가 기억하는 “원고와 피고 D가 같이 ‘XX’ 내에 있었지만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던 그 날”은 피고 D가 특정하는 1994년 사건이 있었던 날과 다른 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 F가 ‘XX’에 없거나 내실 안에 있을 때 피고 D가 목격한 1994년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 F가 원고에게 ‘아유 선생님두~’라는 말을 한 적 없다고 하더라도 당시 ‘XX’에서 근무한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위와 같은 말을 했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 F도 당시 ‘XX’에서는 미리 약속을 하고 만나기도 하지만 문인, 예술인, 언론인, 정치인 등이 수시로 모여 자유롭게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시 술자리들이 이루어진 경위나 분위기 등에 대한 피고 D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 F는 “1994년 봄 당시 ‘XX’ 주점에서 같은 시간에 원고와 피고 D 두 사람이 다 있는 것을 본 것은 두 번뿐인데 그 두 사람이 합석한 것은 아니었고, 그중 한 번은 G도 있었다.”고 증언하나, 당시 문인들 사이의 만남이 다수 있었던 위 ‘XX’ 주점에서, 약 25년 전에 합석하지도 않았던 원고와 피고 D가 같은 시간에 위 주점에 있었던 횟수가 두 번뿐이라거나 그중 한 번은 다른 손님 중에 G가 있었다는 것을 제3자인 F가 기억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그러한 증언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 F는 이 법정에서 1990년대 초반 ‘XX’ 주점 안에서의 문인들 모임 사진을 촬영한 을마 26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나타난 여성 문인들에 대하여는 모두 이름을 모른다고 증언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F의 진술만으로 피고 D 진술의 신빙성을 선불리 배척할 수는 없다.

② 증인 G의 증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 D가 1994년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에 자신도 ‘XX’에 있었는데 원고의 자위행위 사건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G은 피고 D와의 통화 당시에는 “내가 피고 D가 같이 있는 건 기억을 못하겠는데.”라고 말하여 피고 D가 원고의 자위행위를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때에 자신이 같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 D를 ‘XX’에서 본 것은 1994년 봄 한번 뿐이다.”라고 진술하였지만, 한편 당시 한국□□회의 간사로서 ‘XX’에 수시로 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 D는 “자신은 그 무렵 ‘XX’에 자주 갔으며 그곳에서 G을 몇 번 보았으나 1994년 사건이 있었던 날 G이 그 장소에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G은 “1994년 봄 당시 ‘XX’ 주점에서 같은 시간에 원고와 피고 D 두 사람이 다 있는 것을 본 것은 한 번뿐인데 그 두 사람이 합석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나, 당시 문인들 사이의 만남이 다수 있었던 위 ‘XX’ 주점에서, 약 25년 전에 합석하지도 않았던 원고와 피고 D가 같은 시간에 위 주점에 있었던 횟수가 한 번뿐이라는 것을 제3자인 G이 기억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그러한 증언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G의 진술만으로 피고 D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③ 기타 증거들

원고가 제출한 갑 7, 9 내지 14, 22 내지 25호증은 F가 피고 D의 주장을 반박한 내용이거나, 피고 D의 경제사정, 피고 D가 쓴 ‘(작품명 생략)’이라는 시에 대한 논란, 원고가 자신의 일기에서 피고 D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 등이어서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앞서 본 피고 D의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 D가 쓴 1994년 사건 관련 글의 내용 및 피고 동아일보사, 동아닷컴, B가 보도한 이 사건 2 기사 중 1994년 사건에 관한 부분은 허위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피고 D가 피고 B에게 원고의 자위행위를 목격하였다는 1994년 사건을 제보하고 이를 피고 동아일보사, 동아닷컴, B가 이 사건 2 기사로 보도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저하될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동아일보사, 동아닷컴, B, D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 동아일보사, 동아닷컴, B, D의 위법성 조각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지만,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언론매체에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또한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이는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에 밝혀진 사실들을 참고하여 표현 시점에서의 진실성 및 상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므로, 표현 행위 후에 수집된 증거자료도 그 판단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60971 판결 등 참조).

한편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 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보도가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보도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해당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2) 피고 동아일보사, 동아닷컴, B의 주장에 관하여

가) 공익성

이 사건 2 기사는 저명한 원로 문인으로서 문화예술계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원고가 여성인 피고 D를 포함한 다른 문인 등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인바, 이는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의 범법행위나 도덕성 등에 대한 내용이므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목적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진실성 및 상당성

이 사건 2 기사 중 1994년 사건 관련 부분이 허위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제3의 가 2)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설령 그 부분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을가 2 내지 11호증, 을마 39, 42호증, 을바 17,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동아일보사, 동아닷컴, B가 이 사건 2 기사를 보도할 당시 1994년 사건에 관한 피고 D의 진술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 D는 앞서 본 바와 같이 ‘□□□□’ 2017년 겨울호에 원고의 성추행 등을 풍자한 시 ‘(작품명 생략)’을 발표하였고, 2018. 2. 6. 제이티비씨(JTBC) 방송국과 문단 내 성폭력이 만연한 현실에 관한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으며, 2018. 2. 17. 페이스북 북에 ‘언젠가 때가 되면 괴물의 모델이 된 원로시인의 실명을 확인해주고...(중략)...1993년에서 1994년 상반기의 어느 날 ○○의 술집에서 목격한 괴물선생의 최악의 추태는 따로 있는데, 제 입이 더러워질까봐 차마 말하지 못하겠네요.’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기도 하였다.
- 한편 피고 E는 2018. 2. 6. 피고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2008년 사건을 제보하였고, 피고 B가 2018. 2. 25. 피고 E에게 원고의 성추행 등을 목격한 다른 사람이 있는지 소개해달라고 하자, 피고 E는 피고 B에게 2000년경 △△동에서 원고의 성추행을 목격하였다는 시인 M의 진술이 담긴 녹취파일, 4~5년 전 □□에서 원고의 성기노출을 목격하였다는 기자 N의 진술이 담긴 녹취파일 등을 보내주었다.
- 또한 한국□□회회는 2018. 2. 22. 보도자료를 통해 그 무렵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원고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위와 같은 피고 E의 제보 등을 바탕으로 피고 B는 2018. 2. 27. 이 사건 1 기사를 보도하였고, 피고 D가 위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자 피고 D에게 원고의 성추행 등을 목격한 것이 있으면 제보해달라고 요청하여 이메일로 피고 D로부터 1994년 사건 관련 글을 전달받았다.
- 피고 D는 1994년 사건 관련 글에서 사건의 시기, 장소, 원고의 구체적인 말과 행동, 사건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자신의 실명을 밝혀 보도하는 것에도 동의하였다.
- 피고 B는 피고 D가 보낸 1994년 사건 관련 글을 바탕으로 기사의 초안을 작성하고 피고 D의 감수를 거쳐 이 사건 2 기사를 보도하였다.

- 이 사건 2 기사에서는 ‘D 시인에 따르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피고 D가 이메일로 보낸 1994년 사건 관련 글 전문도 함께 게재하는 등 피고 D의 제보내용을 인용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1994년 사건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였고, 이를 마치 확인된 사실이라는 인상을 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아니하였다.
- 피고 B는 이 사건 2 기사를 보도하기 전 2018. 2. 26. 원고에게 취재요청을 하는 등 원고의 반론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아니하여 원고측 입장을 위 기사에 반영할 수 없었다. 그 후 원고가 2018. 3. 2. 무렵 영국의 출판사에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성명을 보내자 피고 동아닷컴은 2018. 3. 4. “△△ ‘어떤 부끄러운 짓도 하지 않았다...글쓰기 계속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피고 동아일보사는 2018. 3. 5. “△△ ‘부끄러운 행동 한 적 없다’ 성추행 부인, D ‘용서 빌 마지막 기회 날려...딱하다’”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입장을 밝히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 원고의 인지도나 영향력, 이 사건 2 기사의 보도내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기사는 공적 인물을 대상으로 한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보도이므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될 필요가 있고, 원고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의 제기는 일반 사인에 대한 경우보다 넓게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피고 D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 D는 저명한 원로 문인으로서 문화예술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고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알리고, 원고의 자성 등을 촉구하고자 1994년 사건 관련 글을 작성하여 제보한 것으로,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며 목적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앞서 제3의 가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4년 사건에 관한 피고 D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를 뒷받침할 정황사실도 존재하므로 진실성도 인정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동아일보사, 동아닷컴, B가 이 사건 2 기사를 보도한 행위와 피고 D가 1994년 사건 관련 글을 작성하여 제보한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및 정정보도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피고 동아일보사, 동아닷컴, B, C, E에 대한 2008년 사건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적시사실의 허위 여부

1) 구체적 판단

갑 6, 8, 18,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08. 4.경 □□대학교 강연회 뒤풀이 자리에서 20대 여성을 추행하고 성기노출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이 사건 1, 3 기사 중 2008년 사건 관련 부분 및 피고 E가 쓴 2008년 사건 관련 글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을가 1, 4, 5, 11호증, 을바 10 내지 17, 20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 피고 E는 2018. 2. 6. 피고 B에게 2008년 사건을 제보하고, 2018. 3. 5. 자신의 블로그에 위 사건에 관한 글을 올렸으며, 이 사건에서 2008년 사건에 관한 진술서(을바 17호증)를 제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P 교수 지도하에 XX대학교 문예창작과 박사과정을 밟던 2008. 4.경 □□대학교에서 열린 원고 강연회 뒤풀이 자리에 원고, P, P 교수의 제자인 여자 대학원생 3명과 함께 참석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손을 좀 보자’면서 20대 여자 대학원생의 손을 만지더니 팔, 허벅지도 만져 추행하였고,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노출한 뒤 ‘너희들 이런 용기 있어’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해여성이 밖으로 나가 흐느껴 울었고, 택시에 태워 먼저 보냈다.”라는 것이다.
-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 E의 진술에 대하여 P는 2018. 3. 7. 시인 Q에게 ‘그 자리에는 원고, 저, C 대학 교수(원고 초청 강연회를 주최했던 □□대학교 교수 R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으로 운전해 갈 대학원 박사과정의 남학생(지금 50대 중반), 지금 50대 후반의 박사과정 여학생(O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 E 외에 1~2명이 더 있었나 하는데요...(중략)...대략 6~8명이 될 듯합니다. 한 시간 반이나 두 시간 정도 이른 저녁을 먹었습니다...(중략)...추행이나 신체노출 등의 아무 일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2008. 4.경 인문학 강좌 뒤풀이에는 원고, 저, R, S, O, 피고 E 외에 1~2명이 더 있었으며, 한 시간 반이나 두 시간 정도 이른 저녁을 먹었고, 원고의 여학생 추행이나 신체노출 등은 없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도 제출하고 있어 피고 E의 진술에 배치된다.
- 또한 2008. 4.경 P의 지도하에 박사과정을 밟던 O도 이 법정에서 “당시 뒤풀이에 참석하여 원고에게 ‘△△론으로 박사논문을 쓰려고 한다’, ‘딸이 하버드대학교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의 말을 한 것이 기억난다. 원고가 여학생을 추행하거나 성기를 노출한 일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 E의 진술에 배치된다.
- 그리고 O는 이 법정에서 “피고 E는 뒤풀이에 P의 제자인 여성 3명이 있었고 그중 20대 여성이 추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당시 P 제자 중 20, 30대 여성으로는 T, U, V, W가 있었다. 그런데 2008. 4.경 T는 휴학 중이었고, V는 장학조교 일 때문에 뒤풀이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하며, U나 W는 뒤풀이에 갔는지 안 갔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원고의 추행이나 성기노출은 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술도 하였다.
- O가 2008. 4.경 뒤풀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지목한 U는 ‘2008년 당시 함께 대학원에 다녔던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지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눴지만 아무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 제가 그 자리에 갔었다는 V의 증언과, 당시 그런 행사가 있으면 으레 참석하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저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나, 피고 E가 주장하는 장면은 목격한 바가 전혀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어 피고 E의 진술에 배치된다.

- 피고 E는 2008년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여성 3명이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 E가 2018. 2. 6. 피고 B에게 2008년 사건을 제보할 때나 2018. 3. 5. 블로그에 2008년 사건 관련 글을 올릴 때에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여성 3명이 누구인지, 그중 원고로부터 추행을 당한 여성이 누구인지 여부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E도 2018. 2. 6. 제보 당시 ‘P 교수 및 그의 여제자 2명, 여성시인 1명이 있었다.’라고 하였고, 2018. 3. 5. 블로그에 올린 2008년 사건 관련 글에서 ‘저 포함 해당 여성들은 P의 지도학생이었다.’라고 하는 등 피해여성은 P의 제자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인 O가 이 법정에서 그 무렵 P의 제자 중 20, 30대의 여성을 모두 밝히며 그중 뒤풀이 현장에 있었을 만한 사람을 지목하기에 이르렀다면, 피고 E도 그에 상응하는 정도로 피해여성을 특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여전히 피고 E는 자신이 직접 택시에 태워 보낸 피해여성이나 그 자리에서 있었던 여성 3명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위 피고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 E 진술의 신빙성은 현저히 탄핵될 수밖에 없다.
- 피고 동아일보사, 동아닷컴, B, C, E는 O가 뒤풀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와의 친분 때문에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 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 피고 E도 2018. 2. 6. 피고 B에게 2008년 사건을 제보하면서 ‘뒤풀이 자리에 P 교수 및 그의 여제자 2명, 여성시인 1명이 있었다. 동석했던 여성은 20대 2명, 40대 1명이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위 ‘여성시인’이나 ‘40대 여성’이 O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위 피고들은 O의 진술 중 뒤풀이 참석경위, 참석인원 등이 R, P 등의 진술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이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사소한 차이에 불과하여 진술의 주된 부분이 일치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전체적인 신빙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R은 자신이 뒤풀이에 참석하였는지 여부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한 점, ■ 원고의 2008. 4. 11.자 일기에 ‘인문학 강좌...(중략)...그들과 술자리. 한 여성은 △△론으로 박사논문 쓰는 모양이다. 딸이 하버드대 들어갔다 한다.’라고 뒤풀이에 참석한 O를 지칭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O 진술의 신빙성을 선불리 배척하기 어렵다.
- R은 자신이 뒤풀이에 참석하였는지 여부가 확실히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원고의 성추행이나 성기노출 등을 본 기억은 없다는 취지의 서면증언서를 제출하였다.
- M, N, Y 등이 2008년 사건 이외에 원고의 성추행이나 성기노출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을가 11호증, 을바 20, 21호증), 이는 2008년 사건을 목격하였다는 피고 E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E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상당히 탄핵되었고, 피고 E 진술에 배치되는 O, P, U의 각 진술 등 다수의 증거가 제시되었으며 위 증거들이 허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 이상, M, N, Y 등의 진술만으로 2008년 사건에 관한 피고 E 진술이 모두 진실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 피고 E는 건강상태를 이유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를 거부하여, 법정에서 위 피고 진술에 일관성, 구체성 등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기회가 없었다.

2) 소결

따라서 피고 E는 피고 B에게 2008년 사건을 제보하고 자신의 블로그에 2008년 사건 관련 글을 올렸으며, 피고 동아일보사, 동아닷컴, B, C는 2008년 사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1, 3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허위의 사실로 보이는 2008년 사건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동아일보사, 동아닷컴, B, C, E는 원고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 동아일보사, 동아닷컴, B, C, E의 위법성 조각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동아일보사, 동아닷컴, B, C의 주장에 관하여

가) 공익성

이 사건 1, 3 기사는 저명한 원로 문인으로서 문화예술계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원고가 여성을 성추행하고 성기를 노출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인바, 이는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의 범죄행위나 도덕성 등에 대한 내용이므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목적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상당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 3 기사 중 2008년 사건 관련 부분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을가 3, 4, 5, 8 내지 11호증, 을바 17,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동아일보사, 동아닷컴, B, C가 이 사건 1, 3 기사를 보도할 당시 2008년 사건에 관한 피고 E의 진술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 E는 2018. 2. 6. 피고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2008년 사건을 제보하면서, 사건의 시기, 장소, 동석자, 원고의 구체적인 행동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자신의 실명을 밝혀 보도해도 된다고 하였다.
- 또한 한국□□회회는 2018. 2. 22. 보도자료를 통해 그 무렵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원고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피고 B는 피고 E의 제보를 받은 후 이 사건 1 기사를 보도하기 전 2018. 2. 25. 피고

E에게 원고의 성추행 등을 목격한 다른 사람이 있는지 소개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 E는 2000년경 △△동에서 원고의 성추행을 목격하였으며 이전에 피고 E로부터 2008년 사건에 관하여 들은 적이 있다는 M의 진술이 담긴 녹취파일 등 자신의 제보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전달하고, 원고의 성추행 등을 추가로 증언하여 줄 만한 다른 문인들의 연락처도 알려주었다. 그리고 피고 E는 2018. 2. 27. 4~5년 전 광주에서 원고의 성기노출을 목격한 적이 있다는 N의 진술이 담긴 녹취파일도 보내주었다.

- 이에 피고 B는 피고 E의 제보내용, 피고 E와 M 사이의 녹취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1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였다.
- 또한 피고 C는 피고 E가 2018. 3. 5. 자신의 블로그에 2008년 사건 관련 글을 올리자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3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였는데, 피고 E가 실명이 드러나는 자신의 블로그에 2008년 사건 관련 글을 올린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년 사건 관련 글은 사건의 시기, 장소, 경위, 원고의 구체적인 말과 행동, 사건 후의 정황, 당시 피고 E가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게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자로서는 위 내용을 신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1 기사에서는 ‘40대 문인 ㄱ씨에 따르면’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 사건 3 기사에서는 ‘E 시인은...(중략)...D 시인의 증언은 결코 거짓이 아니라고 밝혔다.’, ‘E 시인은...(중략)...주장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피고 E가 쓴 2008년 사건 관련 글 전문을 함께 게재하는 등 피고 E의 제보내용을 인용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2008년 사건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였을 뿐 이를 마치 확인된 사실이라는 인상을 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아니하였다.
- 피고 B는 2018. 2. 26. 원고에게, 2018. 3. 4. 원고의 측근인 시인 Q에게, 2018. 3. 5. △△재단 관계자인 Z에게 연락하여 취재를 요청하는 등 원고의 반론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함에 따라 원고 측 입장이 기사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그 후 원고가 2018. 3. 2. 무렵 영국의 출판사에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성명을 보내자 피고 동아닷컴은 2018. 3. 4. “△△ ‘어떤 부끄러운 짓도 하지 않았다...글쓰기 계속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피고 동아일보사는 2018. 3. 5. “△△ ‘부끄러운 행동 한 적 없다’ 성추행 부인, D ‘용서 빌 마지막 기회 날려...딱하다’”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입장도 함께 밝히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 원고의 인지도나 영향력, 이 사건 1, 3 기사의 보도내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각 기사는 공적 인물을 대상으로 한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보도이므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될 필요가 있고, 원고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의 제기는 일반 사인에 대한 경우보다 넓게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동아일보사, 동아닷컴, B, C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E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 E가 피고 동아일보사, 동아닷컴 측에 제보하거나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린 2008년 사건은 저명한 문인으로서 문화예술계에 큰 영향력을 가진 원고가 여성을 추행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하였다는 내용인바, 이는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의 범법행위나 도덕성 등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그 목적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2008년 사건에 관한 피고 E의 제보내용이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제4의가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피고 E 자신이 직접 목격하였음을 전제로 진술한 것이므로 위 피고에게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E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 E가 2008년 사건을 제보하고 이에 관한 글을 작성하여 블로그에 게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저하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한바, 피고 E가 2008년 사건을 제보하거나 이에 관한 글을 블로그에 올린 경위, 글의 내용, 표현방법, 원고의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 피고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동아일보사, 동아닷컴, B, C가 이 사건 1, 3 기사에서 2008년 사건을 보도한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및 정정보도청구는 모두 이유 없고, 피고 E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동아일보사, 동아닷컴, B, C, D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1~3〉 대상기사 생략

〈별지4〉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2심 판결문

사	건	2019나2017049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피 고 , 피 항 소 인		1.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2. 주식회사 동아닷컴 3. B 4. C 5. D
피 고 , 항 소 인		E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가합548345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0. 11.
판 결 선 고		2019. 11. 8.

주 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동아닷컴, B, C, D에 대한 항소와 피고 E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동아닷컴, B,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E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동아닷컴, B, C에 대하여
가.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동아닷컴은 각자 600,000,000원을,
2) 피고 B, C는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동아닷컴과 각자 위 600,000,000원 중 30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위와 같이 각 감축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 1) 이 판결 송달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동아일보'의 광고란을 제외한 제1면 기사 게재 부분에 별지 4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과 내용은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1회 게재하라.
- 2) 만약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가 위 기한 내에 위 정정보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한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 주식회사 동아닷컴은,

- 1) 이 판결 송달 후 24시간 이내에 인터넷신문 동아닷컴(<http://www.donga.com>)의 첫 화면 중앙 중단에 24시간 동안 별지 4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과 내용은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하고, 초기화면 기사 목록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며, 이후로는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 2) 만약 피고 주식회사 동아닷컴이 위 기한 내에 위 정정보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한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D에 대하여

피고 D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3. 피고 E에 대하여

피고 E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1. 원고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동아닷컴, B, C, D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손해배상금청구를 일부 감축함에 따라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2. 피고 E

제1심판결 중 피고 E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 D를 성추행하거나 성적인 의도가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2 기사와 1994년 사건 관련 글은 모두 허위라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당시 피고 D를 상대로 직접적인 성추행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없음은 피고 D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2 기사의 내용은 원고가 특정 여성을 상대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원고가 남성문인들 외에도 피고 D를 포함하여 젊은 여성시인 2명이 참석한 선후배 문인들의 술자리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인 점, 통상적인 성 관념을 지닌 젊은 여성으로서 원고의 행위를 자위행위로 오인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특정 여성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행위에 성적인 의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2 기사와 1994년 관련 글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여전히 옳지 않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9행 이하의 “이 법정”을 일괄하여 “제1심법정”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2면 제21행의 “진술서도 제출하고 있어” 부분을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항소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고 있어”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3면 제12행의 “O가 2008. 4.경 뒤풀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지목한” 부분을 “피고 E가 피해자라고 지목한”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3면 제19행부터 제24면 제12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5면 제17행부터 제19행까지를 삭제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동아닷컴, B, C, D에 대한 항소와 피고 E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4〉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다루는 기사에서 공인 아닌 식당 사장의 신원을 노출하였다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질 수 있다

- 원고 : A
- 피고 : 주식회사 민중의소리 외 2명

[사실관계]

피고 주식회사 아시아경제는 2016년 12월 14일 <인터넷 아시아경제>에, 피고 주식회사 민중의소리는 2016년 12월 16일 <민중의소리>에, 피고 주식회사 스페셜미디어는 같은 날 <인터넷 스페셜미디어>에 ‘원고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성희롱 내지 모욕적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적시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사인인 원고의 신원과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의 상호 및 주소 등을 공개하지 않고도 보도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식당 상호와 영업장 소재지가 기재된 사진을 함께 게재한 피고 주식회사 민중의소리에 한하여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고 그 외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후 이 사건은 2심 법원에서 강제조정 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23532).

한편 원고는 소 제기애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각하된 바 있다(2017서울조정1082·1083·1084, 2017서울조정1085·1086·1087, 2017서울조정1088·1089).

[판결요지]

□ 사인인 원고의 신상정보를 적시하는 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민중의소리가 게시한 기사는 전체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의 문제를 다룬 것으로 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는 평범한 식당운영자에 불과하여 공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없고, 그의 신원이 일반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되어야 할 정도로 보도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보도내용의 성격상 피고 주식회사 민중의소리가 일반 국민에게 이를 알려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하여도, 굳이 상호와 주소 등 원고의 신원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고서도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하는 것만으로 공익적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보도 과정에서 명시한 원고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민중의소리의 보도행위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문

사	건	2018가합570427 손해배상(언)
원	고	A
피	고	1. 주식회사 민중의소리 2. 주식회사 스페셜미디어 3. 주식회사 아시아경제
변론종결		2019. 3. 20.
판결선고		2019. 4. 17.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민중의소리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0.부터 2019. 4.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민중의소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스페셜미디어, 주식회사 아시아경제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민중의소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민중의소리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스페셜미디어, 주식회사 아시아경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시 △△면 □□로 XXX 지상건물에서 ‘●● 레스토랑’이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들은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사이다.

나. 이 사건 보도 전 사건 경과

- (1) 원고는 2016. 10. 20.경 이 사건 식당의 트위터에 “메갈리아 출입금지”라는 내용의 트윗을 올려 SNS 상에서 화제가 되었다. 그 무렵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였던 아르바이트생들이 원고로부터 입은 피해사례를 SNS 상에 게시하였고, 원고는 이들을 명예훼손 내지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다.
- (2) 이에 아르바이트생들은 시민단체인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이하 ‘알바노조’라 한다)에게 상담요청을 하였고, 알바노조는 2016. 12. 12. 운영하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성희롱 레스토랑, 이 사건 식당’이라는 제목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의 피해사례에 관한 글을 게시하였다.
- (3) 이후 알바노조는 2016. 12. 16. 국가인권위원회에 원고를 피진정인, 이 사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성희롱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7명을 피해자로 하여 “이 사건 식당 대표의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성희롱”이라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다.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

- (1) 피고 주식회사 민중의소리(이하 ‘피고 민중의소리’라 한다)는 2016. 12. 16. 인터넷신문 민중의소리에 『“돼지 같은 x” 알바생 상습 성희롱한 레스토랑 실장』이라는 제목으로 별지1 기재 기사(이하 ‘제1기사’라 한다)를 게재·보도하였다.
- (2) 피고 주식회사 스페셜미디어(이하 ‘피고 스페셜미디어’라 한다)는 2016. 12. 16. 인터넷신문 스페셜경제에 『[사회] “예쁜 엉덩이 다칠라” 알바생 성희롱 일삼은 ○○ 레스토랑 사장님』이라는 제목으로 별지2 기재 기사(이하 ‘제2기사’라 한다)를 게재·보도하였다.
- (3) 피고 주식회사 아시아경제(이하 ‘피고 아시아경제’라 한다)는 2016. 12. 14. 인터넷신문 아시아경제에 『경기도 소재 ‘S레스토랑’ 성희롱 알바 피해자 10명 이상?...알바노조, 국가인권위 16일 진정』이라는 제목으로 별지3 기재 기사(이하 ‘제3기사’라 한다)를 게재·보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했던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성희롱 내지 모욕적 발언을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식당의 전면사진 내지 간판사진, 이 사건 식당의 상호와 영업장 소재지가 그대로 노출된 현수막 사진 등을 게재함으로써 원고를 특정하고, 원고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성희롱 내지 모욕적 발언을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이 사건 각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로써 피고들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며 원고는 이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각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가) 이 사건 각 기사에의 피해자 특정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 5021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먼저 제1 기사를 보건대, 제1 기사에서는 원고를 ‘ㄱ실장’, 이 사건 식당을 ‘ㄱ레스토랑’이라고만 지칭하고, 기사와 함께 게재된 이 사건 식당의 전면사진은 모자이크로 처리되었다. 그러나 제1 기사에 게재된 알바노조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시위하는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에는 이 사건 식당의 상호와 영업장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적시하여 원고를 특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제2, 3 기사를 보건대, 제2 기사에는 원고를 ‘S레스토랑 사업주’, 이 사건 식당을 ‘S레스토랑’으로, 제3 기사에는 원고를 ‘○○ 레스토랑 사장님’, 이 사건 식당을 ‘경기도 ○○에 위치한 S레스토랑’이라고 각 지칭하여 그 자체로서는 원고의 실명 및 신상에 관한 정보를 적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미 트위터에서 이 사건 식당과 관련된 사건은 커다란 화제였고, 다른 언론사에서도 이 사건 식당 관련 기사들을 보도하였으므로 제2, 3 기사에서 얻은 정보 등을 토대로 간단한 검색을 통하여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그 주인공이 원고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

(나) 구체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德行,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표현하였지만,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기사의 제목에서는 원고의 성희롱 발언과 관련하여 ‘알바생 상습 성희롱한’(제1기사), ‘성희롱 알바 피해자’(제2기사), ‘알바생 성희롱 일삼은’(제3기사)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점, ② 이 사건 각 기사의 본문에서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원고로부터 들었다는 성희롱 내지 모욕적 발언 내용을 인용부호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알바노조의 진정서 내용을 전면에 자세히 다룬 점, ③ 반면에 원고의 반론주장은 ‘전면 부인’, ‘아르바이트생들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등으로 간단하게 소개하는데 그친 점 등을 종합하면,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이 사건 각 기사를 접근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과 인상 등을 함께 고려할 경우 아래 표와 기재와 같은 표현을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성희롱 내지 모욕적 발언을 하였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제1기사	- (제목) “돼지 같은x” 알바생 상습 성희롱한 레스토랑 실장 - 가해자로 지목된 ㄱ실장은 실질적인 사업주의 위치에서 “내가 몇 년만 젊었어도 널 와이프 삼고 싶다” 등의 발언으로 알바생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한 것으로 알려졌다. - “가슴이 크다. 몸매가 좋다” 등 부인하기 힘든 성희롱 발언 - 노조가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ㄱ실장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근무한 아르바이트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 인격 모독 발언, 사적인 만남 요구 등을 지속해 왔다. - 이 밖에도 음식을 먹고나간 손님들 향해서도 막말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 진정서를 살펴보면 ㄱ실장은 올해 3월부터 근무한 여자 아르바이트생 박모씨에게 “가슴이 크다. 몸매가 좋다”, “내가 나이가 조금만 적었어도 아내 삼고 싶다” 등 발언을 해왔다. - 이후 5월부터 근무한 또 다른 박모씨에게는 “너는 평균 이상이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등 위모평가적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 음식을 먹고 간 여성 손님들에게는 “xx 돼지 같은 x이네” 등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제2기사	- 경기도 ○○에 위치한 S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생 10여 명이 사장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성희롱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 이들은 S레스토랑 사장이 손님과 알바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혐오발언 및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했다. - 알바노조에 의하면, 사장은 손님이 식사를 마치고 가게를 나설 때 “돼지 같은 x이네”라고 말하거나 알바노동자들의 외모를 비하하고 평가하는 발언을 자주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또 이들은 사장이 넘어진 아르바이트생에게 “예쁜 엉덩이 다치면 어떡하냐”고 말하거나 회식 자리에서 “넌 예쁜 한데 여자로 안 보인다.”, “알바생 중에서 00이 취향이다.”, “00이 가슴이 크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 경기도 소재 맛집으로 유명한 'S레스토랑'에서 성희롱 아르바이트 근로자 피해자만 무려 10명 이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알 : (여름에 비치는 곳을 입고 밥을 먹으려 감)
사 : (식사하는 도중 앞에 앉더니) "눈을 어디에 뒀냐 할지 모르겠다. 이게 시스루냐."
(이후 차를 태워다 주겠다고 함. 차 안에서)
사 : 나중엔 다 벗고 다니겠네?
- (손님이 음식을 남기지도 않고 모두 먹었음)
사 : 존나 돼지 같은 년이네.
- 사 : "00(다른 알바노동자)이 가슴이 크더라."
- (손님들이 먹고 남긴 잔반을 먹으라고 지속적으로 강요)
사 : "업소에서 일했던 여자들이 몸매도 얼굴도 예뻐다."
- 사 : "너는 평균 이상이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피해자의 외모에 대한 평가발언)
- 사 : "00이는 못생겼다. 잘 봐줘도 평범하다."
- 알 : (사과를 깎으며) "사과 품종 중에는 아오이를 좋아한다."
사 : "아오리 링고 말고 아오이 소라 알아? 아오이 소라(포르노 배우)."

따라서 이 사건 각 기사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언론 보도에 의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원고가 그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을가 2 내지 8, 을나 1 내지 4, 을다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식당에서 일했던 아르바이트생들은 SNS 상에 피해내용을 게시하여 원고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알바노조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알바노조는 사단법인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로부터 이 사건 각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원고의 발언내용이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에 해당한다는 법률자문을 받아 노조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알바노조는 운영 홈페이지 게시판에 원고의 성희롱 등 발언행위를 폭로하는 글을 게시한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이 사건 각 기사는 알바노조의 게시글, 진정서와 기자회견을 근거로 작성되었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 10. 13. 알바노조의 진정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등을 근거로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언행은 성희롱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차별과 성희롱에 대한 특별인권 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다.

- 3) 원고가 이 사건 각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성희롱 발언이나 이 사건 식당의 위생상태 등과 관련하여 SNS 상에서 원고를 모욕하거나 사실적시로 명예훼손을 한 자들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약식기소 내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식당의 위생상태 관련 명예훼손은 이 사건 각 기사에 적시된 사실과 관련이 없고, 명예훼손은 적시된 사실의 진위를 불문하고 성립하는 것이며, 일부 아르바이트생들은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은 성립하나 그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기사에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저하됨으로써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되었음은 경험칙 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라) 위법성 조각 여부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기사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보도된 것이고, 그 내용은 진실하며, 피고들로서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

2) 관련법리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에 밝혀진 사실들을 참고하여 표현 시점에서의 진실성 및 상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므로, 표현 행위 후에 수집된 증거자료도 그 판단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60971 판결 등 참조).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 있거나,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없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협,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이 어떠한 내용이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고, 나아가 범죄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므로, 대중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으나,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는 없고,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3) 제1기사의 경우

제1기사는 전체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의 문제를 다룬 것으로 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 그러나 제1기사는 이 사건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신상정보를 적시하였다. 원고는 평범한 식당운영자에 불과하여 공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없고, 그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 일반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되어야 할 정도로 보도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진정내용이나 그 성격상 피고 민중의소리가 일반 국민에게 이를 알려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하여도, 굳이 상호와 주소 등 원고의 신원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고서도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하는 것만으로 공익적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민중의소리가 원고가 행한 성희롱 발언 등을 보도하면서 명시한 원고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민중의소리의 보도행위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 민중의소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2, 3기사의 경우

식당업을 운영하는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는 직장 내 성희롱의 문제를 다룬 것으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되, 이 사건 제2, 3기사는 전체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① 피고 스포셜미디어, 아시아경제는 제2, 3기사 작성 당시 알바노조가 법률

자문을 받아 작성한 진정서를 입수하였고, 아르바이트생들의 SNS, 원고와 주고받은 카카오톡의 내용, 알바노조 사무국장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한 점, ② 피고 스페셜미디어, 아시아경제가 제2, 3기사를 보도하기 전에 이미 타 언론사에서 같은 취재원으로 같은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점, ③ 피고 스페셜미디어, 아시아경제는 제2, 3기사 작성 전에 원고로부터 그 입장을 취재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연락조차 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스페셜미디어, 아시아경제로서는 ‘원고가 성희롱 내지 모욕적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 스페셜미디어, 아시아경제가 제2, 3기사를 보도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스페셜미디어, 아시아경제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인격권의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기사가 그 형식 및 내용에서 사회적 상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정도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신상에 관하여 적극적인 사실 왜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기사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는 피고 민중의소리가 보도한 제1기사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요, 이 경험직상 명백하므로, 피고 민중의소리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위자료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민중의소리는, 식사를 마치고 떠난 손님을 대상으로 한 “돼지 같은 x”라는 표현을 마치 아르바이트생에게 한 상습적 성희롱의 일부인 것처럼 왜곡하여 배치함으로써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한 부적절한 방식의 편집을 한 점, 피고 민중의소리가 원고의 신상정보를 적시함으로써 인하여 가명이나 두문자 또는 이니셜 등으로 특정하는 경우보다 원고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커지는 점, 원고는 성희롱 발언 관련 언론보도로 인하여 사실상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고 현재 폐업상태인 점,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그 밖에 침해행위 당시 사용된 표현의 수위, 해당 부분이 전체 보도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피고 민중의소리는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제1기사의 보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8. 10. 20.부터 피고 민중의소리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선고일인 2019. 4.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민중의소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스페셜미디어, 아시아경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3〉 대상기사 생략

만평에 묘사된 표현은 풍자적 외피 또는 은유로서 그 사실 자체를 적시한 것이라 할 수 없다

- 원고 :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외 1명
- 피고 : B 외 1명

[사실관계]

피고들은 2018년 6월 8일 <시사IN> 및 <인터넷 시사IN>에 원고 A가 이마에 방사성 물질(핵)을 상징하는 로고를 붙이고 있고, 허리에는 곧 터질 것 같은 폭발성 물질의 띠를 두르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된 만평을 게시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명예훼손과 모욕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만평의 특성상 원고들에 대해 묘사한 내용 자체가 표현의 목적 또는 대상이라기보다 사상을 희화적으로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된 풍자적 외피 또는 은유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22875 판결).

[판결요지]

□ 이 사건 시사만화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시사만화는 만평 또는 풍자만화(Cartoon)로, 원고 A를 엑스트라로 등장시켜 풍자의 소재로 삼아 독자들에게 희화화함으로써 □□□□당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정치상황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시사만화의 경우 D 전 대표가 A와 ‘반문 동맹 체결’이라는 글이 새겨진 문서를 잡고 있는 모습과 A의 이마에 방사성 물질(핵)을 상징하는 로고를 삽입한 후, 그림 하단에 실명 ‘A’이라고 명확히 기재해 놓았고, 허리에는 곧 터질 것 같은 폭발성 물건의 띠를 두르고 있는 장면은 그 자체가 표현의 목적 또는 대상이라기보다는 풍자만화의 특성상 어떤 사상을 희화적으로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된 풍자적 외피 또는 은유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만평이 원고 협회와 A가 정치성향을 드러내어 D 전 대표와 ‘반문 동맹 체결’을 모의하고 있다거나 그 체결 사실 자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합리적인 독자라면 이를 사실의 묘사라고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

사	건	2018가단5156041 손해배상(기)
원	고	1.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2. A
피	고	1. B
		2. C
변론종결		2019. 3. 8.
판결선고		2019. 4. 18.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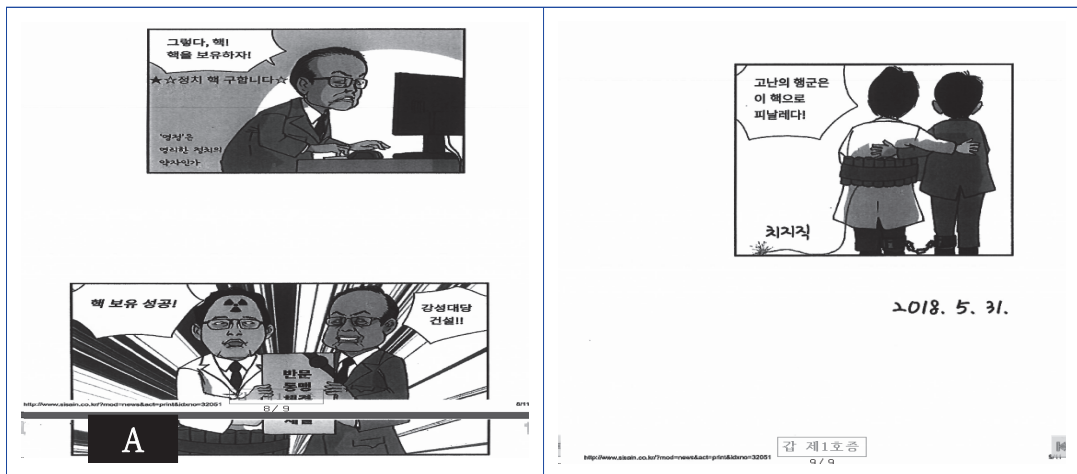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가. 원고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이하 '원고 협회'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향상, 회원권의 옹호 등을 목적으로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인의 중앙회로서 13만 의사회원을 대표하는 법정 단체이고, 원고 A는 원고 협회의 이사이자 대표자(회장)이다.
- 나. 피고 C는 '시사IN'이라는 제목의 주간지(이하 '이 사건 주간지'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발행인이고, 피고 B는 만화작가로서 2018. 6. 8.자 위 주간지 제560호에 "고난의 행군-강성대당 건설"이라는 제목의 별지 기재 만화(이하 '이 사건 시사만화'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이 사건 시사만화는 그 무렵 발행, 배포되었다.

다. 이 사건 시사만화는 총 9면으로 되어 있고(별지 참조), 그 중 원고 A와 직접 관련된 부분은 총 2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사건 시사만화는 마지막 부분 2컷 중 1컷에 “반문 동맹 체결”이라고 쓰여진 문서를 들고 있는 2명 중 1명의 이름을 ‘A’으로 특정하고, 그 A가 “핵 보유 성공!”이라고, □□□□당 D 전 대표가 “강성대당 건설!!”이라고 각 외치고 있으며, 위 A의 허리에는 폭발성 물건을 두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1컷에 “고난의 행군은 이 핵으로 피날레다!”라고 소리치고 있다.



라. 이 사건 시사만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원문은 별지 참조).

- 1) 우선 나치 군복을 연상하는 제복 위에 □□□□당 로고를 그려 당시 야당인 □□□□당을 묘사하고, 이어지는 내용은 E 전 당총재가 죽창과 총, 그리고 뇌물을 의미하는 사과박스 등을 통해서 당을 구했고, 박근혜 전 당대표는 전제군주인 여왕이고 그를 지지했던 국민들은 근왕파였으며, 그것을 통해 당을 구했다는 식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 2) 거기에, 전체주의 국가체제이며 핵개발을 통해서 전세계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북한의 김정일이 등장한다. 김정일이 D 전 대표에게도 핵이 필요하다고 조언을 하는데, 이윽고 D 전 대표가 A와 ‘반문 동맹 체결’이라고 쓰여진 문서를 함께 잡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
- 3) 마지막 장면에 묘사된 원고 A는 이마에 방사성 물질(핵)을 상징하는 로고를 붙이고 있고, 그림 하단에 실명 ‘A’이라고 명확히 기재해 놓았으며, 허리에는 곧 터질 것 같은 폭발성 물질의 띠를 두르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 그리고 마지막 1컷에는 원고 A의 허리에 두른 폭발성 물질의 심지에 불이 붙어 ‘치지직’ 타오르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시사만화'에서 원고들이 □□□□당과 '반문 동맹'을 체결하는 등 특정정치세력과 선거에 연계된 직능단체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아울러 원고 A를 핵폭탄에 비유한 후 곧 폭발하여 특정정당과 함께 자멸할 것처럼 묘사하는 한편 원고들이 '반문 동맹'을 체결한 것으로 희화화하여 모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 협회의 특정 여부

1) 관련 법리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는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머리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 협회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원고들과 □□□□당은 이 사건 시사만화가 나갈 무렵인 2018. 5. 14.경 □□□□당 당사에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른바 문재인 케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왜곡된 의료 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취지의 정책연대를 위한 공동 서약서에 서명하였다.

나) 한편 원고 협회는 문재인 케어 등을 포함한 각종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원고 협회가 지향하는 부분에 대해 정당에 제안하고 관련 보건의료분야 정책방향에 대한 소통을 위해, 2018. 5. 14.경 □□□□당 뿐만 아니라 △△△△당, ○○○○당, ●●당에게도 정책협력 및 간담회 재최를 요청하였다.

다) 이 사건 시사만화에는 □□□□당의 종전 당대표인 E과 박근혜가 어려운 상황에서 당을 구하는 방법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김정일이 D 전 대표에게도 핵이 필요하다고 조언을 하고, 이윽고 D 전 대표가 원고 A와 '반문 동맹 체결'이라고 쓰여진 문서를 함께 잡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

라) 그런데 원고 A는 원고 협회의 회장이고 원고 협회는 법정직능단체로서 의사들의 권익과 우리사회 보건위생 및 국민들의 건강에 이바지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시사만화의 마지막

장면에 묘사된 A는 실사에 가까운 그림으로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이고, 의사 가운을 입고 있으며, 그 이마에 방사성 물질(핵)을 상징하는 로고를 삽입한 후, 그림 하단에 실명 'A'이라고 명확히 기재해 놓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과 이 사건 시사만화가 배포될 당시의 국내의 정치·사회적 상황, 그리고 이 사건 시사만화 내용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시사만화가 나갈 무렵 원고들과 □□□□당은 2018. 5. 14.경 문재인 정부의 보건정책(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고 정책 연대를 위한 공동서약서에 서명한 상황이었으며, A는 의사단체인 원고 협회를 대표하는 회장이었던 점, 그리고 A가 의사가운을 입은 채 D 전 대표와 '반문 동맹 체결'이라는 글이 새겨진 문서를 잡고 있는 모습이 묘사된 점, 원고 협회의 사회적 위치 및 활동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들이 이 사건 시사만화에서 직접 '원고 협회'라고 명시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원고 A를 엑스트라로 등장시켜 사실상 원고 협회를 간접적, 우회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명예훼손 여부 - 사실의 적시 여부

1) 관련 법리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는 사실을 직접 표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그 사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단지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관하여 비평하거나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할 때에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고, 나아가 한 두 컷(Cut)의 그림과 이에 관한 압축된 설명 문구를 통해 인물 또는 사건을 희화적으로 묘사하거나 풍자하는 만평 또는 풍자만화(Cartoon)의 경우에는 인물 또는 사건 풍자의 소재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직접 적시하지 아니하고 이에 풍자적 외피를 씌우거나 다른 사실관계에 빗대어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을 사용하는 만큼, 그 만평을 통하여 어떠한 사상이 적시 또는 표현되었는가를 판단하는 데에는 이와 같은 풍자적 외피 또는 은유를 제거한 다음, 작가가 그 만평을 게재한 동기, 그 만평에 사용된 풍자나 은유의 기법, 그 만평을 읽는 독자들의 지식 정도와 정보 수준, 그리고 그 만평의 소재가 된 객관적 상황이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그 만평이 독자들에게 어떠한 인상을 부여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참조). 한편 풍자만화나 만평의 경우에는 직설적인 언행과는 달리 풍자나 은유, 희화적 표현기법이 흔히 사용되고 일반 독자들도 그러한 속성을 감안하여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과장은 용인될 수 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75736 판결 참조).

2) 판단

가) 우선 앞서 보았듯이 의사 단체인 원고 협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은 국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 □□□□당과 손을 잡았고, 이 사건 시사만화의 내용 중에는 A가 의사 가운을 입은 채 D 전 대표와 ‘반문 동맹 체결’이라는 글이 새겨진 문서를 함께 잡고서 “핵 보유 성공!, 강성대당 건설!!”이라고 서로 소리치는 모습, 그리고 원고 A는 심지에 불이 붙어 타오르고 있는 폭발성 물건을 허리에 두른 채 D 전 대표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나) 그런데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시사만화의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 피고 B의 직업, 이 사건 시사만화의 소재가 된 정치·사회적 상황, 그 밖에 원고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시사만화에 등장한 인물들의 과거 경력이나 행적, 사회적 지위, 특히 이 사건 시사만화는 압축된 설명 문구를 통해 인물 또는 사건을 희화적으로 묘사하거나 풍자하는 만평 또는 풍자만화(Cartoon)인 점, 이 사건 시사만화와 같은 정치만평을 읽는 독자들의 지식 정도와 정보 수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8년 지방선거를 앞 둔 시점에 정치적 열세에 놓인 D □□□□당 대표가 반 문재인 정서를 최대한 끌어 모으려는 상황에서, 만화가자인 피고 B가 평소 언론기사 등을 통해 원고 A와 □□□□당 D 대표가 함께 문재인 케어 허구성 규명 및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모색 정책협력을 위한 공동서명서를 같이 들고 있는 사진에서 영감을 얻어,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당의 어려운 정치적 행로가 북한이 핵을 가짐으로써 일부 해소된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이 향후 강력할 폭발력을 갖고 있는 핵과 같은 존재인 원고들과 힘을 합하여 반문 동맹 등을 하는 등으로 강한 정당을 건설함으로써 어려움을 끝낼 수도 있을 것이라든가 필자의 생각을 풍자만화의 고유한 특성인 풍자, 과장, 은유 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표현하기 위하여, □□□□당의 강력한 정치적 우군으로 의사 가운을 입은 원고 A를 엑스트라로 등장시켜 □□□□당과 사이에서 ‘핵 보유 성공, 반문 동맹 체결’을 체결하는 것처럼 풍자의 소재로 삼아 독자들에게 희화화함으로써 □□□□당을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정치상황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시사만화의 경우 D 전 대표가 A와 ‘반문 동맹 체결’이라는 글이 새겨진 문서를 잡고 있는 모습과 A의 이마에 방사성 물질(핵)을 상징하는 로고를 삽입한 후, 그림 하단에 실명 ‘A’이라고 명확히 기재해 놓았고, 허리에는 곧 터질 것 같은 폭발성 물건의 띠를 두르고 있는 장면은 그 자체가 표현의 목적 또는 대상이라기보다는 풍자만화의 특성상 어떤 사상을 희화적으로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된 풍자적 외피 또는 은유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사건 만평이 원고 협회와 A가 정치성향을 드러내어 D 전 대표와 ‘반문 동맹 체결’을 모의하고 있다거나 그 체결 사실 자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시사만화는 사회나 인물시대의 결합, 과오, 모순 따위를 빗대어 비판하는 내용의 풍자만화로서 그림에 의하여 묘사된 사실이 사실 자체를 적시한다기

보다는 의견전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창출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합리적인 독자라면 그것을 사실의 묘사라고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다) 결국, 이와 같이 피고 B는 이 사건 시사만화를 통해 D 전 대표가 정치적으로 절박한 상황을 타개해 나가려는 모습을 당시의 정책연대상황에 빗대어 회화적으로 묘사하면서 만화작가의 견해를 우회하여 표현한 것일 뿐, 원고들이 정치성향을 드러내어 □□□□당과 반문 동맹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거나 반문 동맹을 계획 또는 모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이를 대하는 독자들 또한 그와 같은 판단을 하거나 그러한 인상을 받았으리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모욕 여부

한편 만평 등을 통하여 특정인을 풍자의 대상으로 삼아 그를 회화적으로 묘사한 경우 그 만평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명예 감정이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그 만평을 통해 표현된 사상(事家)이 허위의 내용이고, 나아가 그 만평에 사용된 풍자의 기법이나 내용이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나, 이 사건 시사만화가 표현하고 있는 내용, 즉 당시 2018년 지방선거를 앞 둔 시점에서 D □□□□당 대표가 원고들과 정책연대를 할 당시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당 차원에서 이를 타개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더욱이 의사단체라는 원고 협회나 위 협회의 회장이라는 원고 A의 지위나 이 사건 시사만화가 소재로 삼은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사만화에서 사용한 풍자의 기법이나 내용(원고들이 □□□□당과 반문 동맹을 체결하는 것 같은 장면)이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시사만화의 게재가 위와 같은 의미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대상만평 생략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7. 12. 선고 2017가단70059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8나59235 판결

범죄 혐의자의 일방적 진술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여 보도하였다면 보도의 공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원고 : A

■ 피고 : B

[사실관계]

피고는 2014년 8월 11일 <인터넷 순천투데이>에 대학총장인 C의 비리사실을 보도하면서 이 대학 교수인 원고와 C가 연인이었으며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C의 주장을 담은 기사를 게시하였다. 원고는 C와 연인관계가 아니었으며 부적절한 관계 또한 없었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1심 법원은 원고에 대한 C의 일방적인 진술에 근거하여 단정적으로 기사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 또한 공익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2심 법원 역시 피고가 제목과 일부 단정적인 표현을 통해 원고와 C가 연인 관계라는 암시를 강하게 주고 있다고 보아 1심 법원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고 원고와 피고의 상고가 없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결요지]

□ 원고와 C의 관계에 대한 보도가 공익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대학교의 총장인 C가 수사기관에서 한 일방적인 진술을 바탕으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다. 당시 위 진술의 진위나 신빙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상황이었고, 기사의 내용 자체가 원고의 명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원고의 의견을 확인하거나 반영하지 않았다.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대학교 총장의 도덕성과 자질에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공익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독자로 하여금 원고가 C와 연인으로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단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명예훼손의 피해보다 그 공익의 가치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C는 이미 배임 등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었으나, 원고는 ○○대학교의 교수로서 총장인 C와는 지위에 따른 공적 책임의 정도가 다르고, 아직 언론 보도에 등장하지도 않아 사회적 주목도가 낮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기사는 ‘총장과 여교수의 연인 관계’라는 대중에게 소비되기 쉬운 가십거리에 집중되도록 작성되었는데, 이는 원고의 공적 활동의 결과물도 아니고, 원고가 적극적으로 유인한 것이 아님에도 결국 원고의 가정 또는 직장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원고의 사적 영역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공공적·사회적 의미가 있는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1심 판결문

사	건	2017가단70059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4. 19.
			2018. 7.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21.부터 2018. 7.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대학교 향장피부미용과 조교수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지역언론사인 ‘순천투데이’의 운영자 겸 기자이다.
- 나. 피고는 2014. 8. 11. 순천투데이 인터넷 뉴스 게시판에 “대학총장이 같은 학교 여교수와 ‘연인’ 사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순천 ㄷ대학교(사립전문대학교)의 불법외화유출 혐의에 대한 추가수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ㄱ총장이 같은 학교 ‘ㄴ여교수와 연인 사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대학총장과 여교수 사이가 ‘연인’이라는 이름 아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해왔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기에 파장이 일 전망이다.

지난 6월 25일 전남 순천경찰서는 (중략)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사건 수사과정에서 ㄱ총장과 ㄴ여교수와의 관계가 드러난 것. ㄱ총장은 ‘강제 성추행’ 혐의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ㄴ여교수와는 애인 사이다. 둘이 사귀었다. 연인 사이이기에 서울 강남의 특급호텔에서도 같이 잤다.”고 주장한 것.

ㄱ총장이 자신의 ‘강제 성추행’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해명과정에서 ‘연인 사이’라는 주장을 했다 치더라도, 둘 사이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음이 드러난 것으로, 이는 ‘불법외화유출’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이하 생략)

다. 이 사건 기사에서 ㄷ대학교는 원고가 재직 중인 ○○대학교, ㄱ총장은 위 대학교의 총장 C, ㄴ여교수는 원고를 지칭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C와 연인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C와 연인으로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왔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 등 핵심인물을 이니셜로 지칭하였고, 기사의 내용에 있어서도 ㄱ총장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였을 뿐이며, 원고와 ㄱ총장의 관계를 연인 사이로 단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는 불법외화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대학교 총장이 스스로 여교수와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주장하여 그 도덕성이나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일 뿐, 원고를 비방하거나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설령 이 사건 기사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순천 지역 유명 대학교 총장의 강제추행 혐의 및 그에 대한 변명 내용을 알리기 위한 의도로 게재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ㄱ총장의 주장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한 이상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가) 먼저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를 본다.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원고의 청구에는 이 사건 기사의 허위성 여부를 떠나 기사 자체에 의하여 입게 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C가 수사과정에서 원고와의 관계에 대하여 한 주장을 보도하면서 원고가 C와 애인 사이이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여 왔고, 서울 강남의 특급호텔에서도 같이 잤다는 내용을 그대로 적시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하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또한 비록 원고를 ‘ㄴ여교수’라는 이니셜로 지칭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주변 인물들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보고 어렵지 않게 ‘ㄴ여교수’가 원고를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참조), 이 사건 기사의 내용으로 인하여 원고가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위법성 조각 여부

가) 관련 법리

언론·출판을 통하여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가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대학교 총장의 도덕성과 자질에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공익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독자로 하여금 원고가 C와 연인으로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단정적으로 받아들여 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명예훼손의 피해보다 그 공익의 가치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피고가 제출한 불기소결정서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내용을 보도한 피고의 행위가 공익성을 갖추어 위법성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① 피고는 C가 수사기관에서 한 일방적인 진술을 바탕으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다. 당시 위 진술의 진위나 신빙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상황이었고, 기사 내용 자체가 원고의 명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원고의 의견을 확인하거나 반영하지 않았다.
- ② 이 사건 기사에는 “총장이 불법의화유출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기사의 제목을 “대학총장이 같은 학교 여교수와 ‘연인’ 사이?”로 기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총장과 원고의 관계 부분에 이목을 집중하게 하였으며, “대학총장과 여교수 사이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해왔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라거나 “서울 강남의 특급호텔에서 같이 잤다”는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포함하여 “총장과 원고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음을 시사하는 데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 ③ 또한 단순히 “총장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 수사과정에서 “총장과 “여교수의 관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하거나, “둘 사이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왔음이 드러난 것으로 (중략)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라고 하는 등 단정적·평가적인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어 독자로 하여금 해당 사실이 이미 객관적인 진실로 판명되었다고 오인하도록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어 보도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운영하는 언론 매체의 규모, 영향력, 원고의 사회적 지위, 피해의 정도,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목적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의 액수는 3,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7. 1.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8. 7.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판결문

사	건	2018나59235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B	
제 1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7. 12. 선고 2017가단70059 판결
변 론 종 결		2019. 4. 12.	
판 결 선 고		2019. 4. 26.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¹⁵⁾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한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기사 게재 당시 이미 원고와 C가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이 있었고, C가 강제추행으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C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원고의 입장만 상세한 보도가 이루어진 상태였으므로, C가 원고를 강제추행 했는지 또는 원고와 연인 관계였는지 여부는 지역사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는 사항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가 C를 인터뷰하여 그 주장을 인용하여 보도한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그 내용이 진실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 1)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15) 원고는 항소취지 변경신청서에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라고만 기재하였으나, 위 신청서와 원고 항소장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패소한 부분 중 일부인 27,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는 취지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제1심판결 중 위 범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나아가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지, 단지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끌게 된 데 지나지 않는 인물인지, 적시된 사실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공성·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그와 관련한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데에 피해자 스스로 어떤 관여가 된 바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 2) 제1심에서 실시한 사정과 갑 제1, 2,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가 암시하는 내용인 C와 원고의 관계가, 이 사건 기사로 인한 원고의 사적 영역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공공적·사회적 의미가 있는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기사 게재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① 이 사건 기사의 주된 내용은 C가 원고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원고와 연인 관계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C의 진술을 옮긴 것에 불과하나, 제목과 일부 단정적인 표현을 통해 원고와 C가 연인 관계라는 암시를 강하게 주고 있다.
- ② 이 사건 기사 이전에 2014. 6. 24.자 전국매일신문에 별지와 같은 내용으로 C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기사가 보도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위 기사는 주로 C의 배임 혐의에 관한 것으로, 성추행 관련 내용도 있으나 그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 여교수들이고, 기재된 행동도 일부 부적절한 언행 정도가 묘사되어 있을 뿐 위 기사에는 C의 원고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 ③ 그 밖에 이 사건 기사 게재 전에 원고가 수사기관에 C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진술을 하였을 뿐, C가 원고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져 널리 주목을 받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가 스스로 언론에 C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한 상황도 아니었다.
- ④ 특히, C는 ○○대학교의 총장으로 이미 배임 등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었으나, 원고는 ○○대학교의 교수로서 총장인 C와는 지위에 따른 공적 책임의 정도가 다르고, 아직 언론 보도에 등장하지도 않아 사회적 주목도가 낮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기사는 ‘총장과 여교수의 연인 관계’라는 대중에게 소비되기 쉬운 가십거리에 집중되도록 작성되었는데, 이는 원고의 공적 활동의 결과물도 아니고, 원고가 적극적으로 유인한 것이 아님에도 결국 원고의 가정 또는 직장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발생하게 하였다.

3.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친구야’라는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 공유하거나, 타인에 의해 공유된 기사를 계속 방치하여 위 기사가 확산되도록 하였다. 또한 원고의 이익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 사건 기사를 계속하여 게재하여 원고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제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3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우선,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 공유하였다거나, 위 채팅방의 구성원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가 위 채팅방의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타인이 위 채팅방에 공유한 기사를 지울 수 있는 권한이 있다거나, 이미 위 채팅방에 공유된 기사의 확산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다음으로, 갑 제2, 8, 9, 2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다음날인 2014. 8. 12. 오전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이 사건 기사를 삭제하였고, 원고로부터 항의 연락을 받은 것은 위 삭제한 시점 이후임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의 항의에도 이 사건 기사를 계속하여 게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가 원고를 ‘○○대학교 여교수 ㄴ’라는 이니셜로 표시하여 실명보도에 비하여 제한적 범위에서 특정을 하는데 그쳤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순천 투데이라는 매체는 순천 지역에 기반을 둔 인터넷 언론으로 그 영향력이 매우 높지는 않은 점,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은 순천 지역에 있는 대학교의 총장인 C와 관련된 보도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에서 위자료를 300만 원으로 정한 것은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대상기사 생략

조정절차에서 있었던 상대방의 진술을 소송절차에서 원용할 수 없다

- 원고 : 장수군
- 피고 : 주식회사 전북금강일보

[사실관계]

피고 주식회사 전북금강일보는 2018년 8월 23일 및 같은 달 27일 <전북금강일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재입찰공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시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소 제기에 앞서 원고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여 정정보도 게재를 명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으나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2018전북조정75·76). 피고는 원고가 조정심리 당시 중재부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이 사건 소 제기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배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 주장하였으나, 1심 법원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을 민사소송절차에서 원용할 수 없다 판단하였고 기사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이후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심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나11024).

[판결요지]

- 조정심리 당시 중재부의 결정을 따른다는 원고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한 것이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조정절차는 그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하고(제19조 제9항), 민사조정법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은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도 민사소송절차에서 원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대리인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심리에서 '중재부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로 말미암아 이 사건 소송이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판결문

사 건 2018가합4351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기)
원 고 장수군
피 고 주식회사 전북금강일보
변 론 종 결 2019. 4. 17.
판 결 선 고 2019. 5.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는 전북금강일보를 발행하는 언론사이다.
- 나. 피고는 2018. 8. 23. 전북금강일보 종합 1면에 “장수군, 공사 입찰 ‘돌연 취소’ …배경에 의혹 증폭”이라는 제목으로 별지1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제1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고, 2018. 8. 27. 전북금강일보 종합 1면에 “A 장수군수, 자질론 도마 위”라는 제목으로 별지2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제2 기사’라 하고, 이 사건 제1, 2 기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 다. 원고는 2018. 8. 29. 언론중재위원회 전북중재부(이하 ‘언론중재위원회’라 한다)에 이 사건 각

기사에 관한 정정보도 및 (원고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고, 2018. 9. 11.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심리기일에 피고가 이 사건 각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수용 의사를 밝히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포기를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 대리인이 '중재부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같은 날 언론중재위원회는 '피고는 이 사건 각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하고, 원고는 그 정정보도가 이행될 경우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원고가 2018. 9. 18.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한편 피고는 위 결정 이후 이 사건 각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2018. 9. 11.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심리 당시 중재부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가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것으로 신뢰하여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등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진술과 달리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대리인이 2018. 9. 11.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심리에 출석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손해배상청구 포기권유에 대하여 '중재부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언론중재위원회가 '원고는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포기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조정절차는 그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하고(제19조 제9항), 민사조정법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은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도 민사소송절차에서 원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이 사건 소송이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사실이 아닌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함으로 인하여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사회적 신뢰와 평판이 저하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기사가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피고는 이 사건 각 기사가 게재될 당시 원고가 ○○교 재가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된 특허협약 업체에 특허를 주기 위해 재입찰공고를 하였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각 기사의 허위 여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4. 12. 신기술(특허)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공법을 ATA합성형 라멘교[특허 제10-1431640호]로 할 것을 결정하였고, 2018. 4. 24. 위 공법 사용에 관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와 특허 사용협약서를 체결하였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3절 2. 가. 다) (5)는 ‘해당 공사에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계약담당자는 협약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가 기술사용 협약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가 2018. 8. 14. 공고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업체 입찰 공고에는 위 특허 사용협약서의 체결 사실 및 그 특허 사용협약서의 체결 업체가 주식회사 △△△△라는 점이 누락되어 있다.

라) 이에 피고의 계약 담당자는 2018. 8. 22. 11:41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 입찰 공고를 취소하였고, 2018. 8. 23.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 입찰 공고의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하여 ‘본 공사는 교량공법에서 특허 제10-1431640호(거더의 형식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거더 고정장치 및 이를 이용한 라멘교의 시공방법)가 적용된 공사로서 기술보유자와 장수군간 상호 기술 사용협약이 되어 있으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부서에

서 특허 사용협약과 특허가 포함된 공중의 공사내용, 금액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재공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 입찰 자격에 ‘특허 사용협약서의 체결 사실 및 그 특허 사용협약서의 체결 업체’를 추가하기 위하여 2018. 8. 22. 기존의 이 사건 공사의 입찰 공고를 취소한 후 재공고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특허협약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재입찰공고를 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위법성 조각 여부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등 참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언론매체에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 공적인 존재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업체 입찰은 공적인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 공고가 취소 및 재공고된 경위는 피고와 같은 언론사 입장에서 비교적 손쉽게 취재, 확인할 수 있는 것인 점, ② 이 사건 각 기사가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신속한 보도를 요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의 담당 공무원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 공고가 취소 및 재공고된 경위나 이유 등에 관하여 취재나 문의를 하는 등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거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각 기사의 취지는 원고가 특정 특허협약 업체에 특혜를 주려고 하였다는 것이어서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될 위험이 현저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기사를 보도할 때 원고의 구체적인 반론을 게재하거나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는 2018. 8. 23. ‘특정특허업체를 추가하기 위한 의도적으로 입찰을 취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제1 기사를 게재한지 4일 만인 2018. 8. 27. ‘S업체를 개찰 취소 후 명단에 포함시키기 위해 의도적인 취소였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

다.’고 단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2 기사를 게재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기사와 형식과 내용, 기사 제목, 사용된 어휘 및 문구, 그 내용의 근거 및 공익성의 정도, 이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특허협약 업체에 특허를 주기 위해 재입찰공고를 하였다.’는 점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특허협약 업체에 특허를 주기 위해 재입찰공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담은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하여 원고의 사회적 신뢰와 평판을 훼손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허위 사실이 포함된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저하되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한 점, 다만, 피고가 2018. 9. 18. 이 사건 각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점, 이 사건 각 기사와 형식, 내용, 횟수, 원고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 및 원고가 입었을 피해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무형적 손해에 관한 배상금을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2〉 대상기사 생략

다소 과장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들어 범행 의혹을 제기하였더라도, 당사자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반대되는 정황까지 함께 제시했다면 위법하지 않다

- 원고 : A
- 피고 : B 외 2명

[사실관계]

언론인이자 영화감독이기도 한 피고 B는 유명 가수였던 D가 자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D의 사망 원인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 공표하였다. 또한 피고 B와 주식회사 발뉴스는 2017년 9월 19일 및 같은 달 21일 원고가 'D를 살해하고 D의 음악저작권을 강탈하였으며 D의 딸인 F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시하였다. 또 피고 B는 위와 같은 취지의 글을 자신의 SNS에도 게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와 주식회사 발뉴스, C(D의 형)을 상대로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및 보도금지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D의 배우자로서 공적 인물인 원고라고 할지라도 혐의에 불과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한 기사와 피고 B의 SNS 게시글을 위법하다고 판단, 피고 B와 주식회사 발뉴스에게 손해배상금 지급(피고 B는 5,000만원, 피고 발뉴스는 3,000만원)과 비용지출을 명하였다. 그러나 타살 의혹의 가능성을 열어둔 피고 B의 영화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심 법원에서는 오히려 위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이 상향되었으며 피고들의 상고로 개시된 3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28445, 대법원 2020다215186).

[판결요지]

□ 이 사건 영화의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영화의 주된 내용은 D가 타살되었을 수 있고 원고가 이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으로서, D의 대중음악사적 위치, 대중음악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일반 대중의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것이고, 타살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각종 근거를 제시하는 다큐멘터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피고 B가 이 사건 영화에 원고의 영상 등을 삽입한 것은 이 사건 영화의 목적에 부합하고, 필요하였다고 볼 수 있다.

D와 원고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이 사건 영화 상영 이전에 이미 일반 대중에게 알려진 인물인 점, D의 사망 원인 등에 관하여 다소 과장되거나 일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하나, D가 자살하였다는 의견을 아울러 소개함은 물론, 단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들에게 불법행위책임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기사 및 SNS 게시글의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한 판단

D와 원고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피고 B, 발뉴스의 기사 보도 이전에 이미 일반 대중에게 알려진 인물이고, B의 대중음악사적 위치, 대중음악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B가 타살되었을 수 있고 원고가 이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나 원고가 유기치사, 사기 혐의로 고발·고소되었다는 점 등은 일반 대중의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 B, 발뉴스는 이 사건 적시사실이 진실이라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함에도,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의혹제기를 넘어서 그 적시사실이 진실이라고 단정적으로 인상지우는 표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적시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점은 인정되나, 피고 B, 발뉴스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문

사	건	2017가합39160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1. B 2. 주식회사 발뉴스 3. C
변	론	2019. 4. 24.
판	결	2019. 5. 29.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5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발뉴스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1. 18.부터 2019. 5.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가. 피고 B, 주식회사 발뉴스는 별지1 목록 제1의 가항 기재 내용으로 원고를 비방하는 언행을 하거나, 각종 언론매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하여 이를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피고들은 별지1 목록 제1의 나 내지 라항 기재 내용으로 원고를 비방하는 언행을 하거나, 각종 언론매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하여 이를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 다. 피고 B는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를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발뉴스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발뉴스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원고에게, 피고 B는 30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발뉴스는 100,000,000원, 피고 C는 2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상의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는 오기로 보인다)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B는 2017. 8. 30.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을 극장 또는 텔레비전, 유선 방송, 아이피티비(IPTV; 올레티비, 쿡티비, 비티비 등) 등을 통하여 상영하거나, DVD, 비디오테이프, CD 등을 제작, 판매, 배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들은 "망 D가 타살되었다. 또는 망 D 사인은 자살이 아니다. 원고가 타살 유력 혐의자이다. 원고가 재혼 사실을 숨기고 D와 혼인했다. 망 D가 E에게 판권 또는 저작권을 양도하였다. 원고가 강압으로 D의 저작권을 시덥으로부터 빼앗았다. 상속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망 F를 방치하여 죽게 하였다. 망 F의 죽음을 숨기고 소송 사기를 벌였다. 망 D 생전에 원고가 불륜을 저질렀다" 등 원고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원고를 비방하는 일체의 언행을 하거나, 각종 언론 매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하여 이를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고 B는 "D를 죽인 살인범이 확보하도록 놔둘 순 없다. 살인 사건 열쇠를 쥐고 있는 부인 A 잠적. 영화 ○○○을 통해 타살 주요혐의자로 지목한 A 씨의 해외 도피 우려. 의혹이 있는 살인 혐의자가 백주 대로를 확보하며 국민이 지출하는 음원 저작료를 독식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임신 9개월에 아이를 낳아 죽인 뒤 D에게 접근했다. 정의의 법으로 악마의 비행을 막아달라" 등 원고가 영아살해를 하고, D와 F를 살해한 것처럼 비방하는 행위를 일체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피고 B는 위 제2 내지 4항의 각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각 위반행위 1회당 50,000,000원을, 피고 주식회사 발뉴스, C는 제3항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10,000,000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96. 1. 6. 사망한 D의 처이고, F는 D의 딸로 2007. 12. 23. 사망하였다.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발뉴스(이하 '발뉴스'라 한다)가 운영하는 고발뉴스의 대표 기자이자 영화 '○○○'(이하 '이 사건 영화'라 한다)의 감독이다. 피고 발뉴스는 인터넷 언론매체인 고발뉴스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 C는 D의 형이다.

나. D의 사망에 대한 조사결과

D의 사망과 관련하여 당시 수사기관은 최초 발견자이자 처인 원고를 비롯하여 원고의 오빠, 어머니, D의 아버지 등 지인들에 대한 조사결과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를 종합하여 D의 사망원인을 의사(목을 매어 죽음)로 판단하고 타살혐의가 없다고 보아 사건을 종결하였다(D의 아버지와 지인들은 당시 D가 자살할 이유가 없다고 자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다. 영화의 제작 및 개봉

피고 B는 D가 자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D의 사망 원인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영화를 감독으로서 촬영하였다. 이 사건 영화는 2017. 8. 30.경 정식으로 개봉하였고, 현재 아이피티브이(IPTV) 등을 통하여 상영·배포되고 있다.

라. F의 사망사실 확인

F의 사망사실은 이 사건 영화 개봉 전까지 피고 C 등 D 측 유족이나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고, 이 사건 영화 개봉 후 피고 C가 F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한 2017. 9. 19. 이후 확인되었다.

마. 관련 기사의 게재, 피고 B, C의 언론 인터뷰, 피고 B의 페이스북 계정 글 게시 등

이 사건 영화의 개봉과 그 이후 F가 이미 10년 전에 사망하였음이 밝혀진 것과 관련하여 고발뉴스를 비롯하여 여러 언론에서 기사가 게재되었고, 피고 B, C의 언론 인터뷰, 피고 B의 페이스북 계정 글 게시 등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0 내지 12,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 가. 이 사건 영화는 D가 자살한 것이 아니라 타살된 것이고, 원고와 원고의 오빠 G가 D를 죽였으며, 원고가 강압적으로 D의 저작권을 시택으로부터 빼앗았고, 9개월 된 영아를 낳아 살해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영화는 원고가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원고의 허락 없이 사용하고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고 원고, D, F의 초상권을 침해하였고, 영화화에 대한 동의 없이 진행된 원고에 대한 인터뷰 영상을 포함하고 있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 나. 피고 B, C는 기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청구취지 제3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피고 발뉴스는 자신이 발행하는 고발뉴스를 통해 같은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인격권)를 현저히 훼손하였다. 또한 피고 B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청구취지 제4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인격권)를 훼손하고 있다.
- 다. 따라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B는 3억 원, 피고 발뉴스는 1억 원, 피고 C는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가항의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영화의 상영과 DVD 등의 제작·판매·배포·공개 금지를 명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들의 위 나항과 같은 명예훼손행위의 금지를 명할 필요가 있다.

3. 관련 법리

- 가. 영화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영화의 객관적인 내용과 함께 영화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이야기와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대사의 통상적인 의미와 그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영화 내용이 보통의 주의로 영화를 접하는 관객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영화가 내포하고 있는 보다 넓은 주제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3483 판결, 대법원 2019. 3. 6. 자 2018마6721 결정 등 참조).
- 나.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 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 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138 판결, 위 대법원 2000다37524, 37531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등 참조).

- 라.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德行,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5. 1. 17. 자 2003마1477 결정,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
- 마.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때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표현행위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피고들이 그 표현행위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는 될지언정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로는 될 수 없다(위 대법원 2010다60950 판결 참조).
- 바. 영화 내지 기사 등 표현행위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표현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그 표현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인 경우에, 그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증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위 대법원 2010다60950 판결 참조).

4.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영화와 관련한 피고들의 불법행위 부분

- 1) 이 사건 영화에서 원고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저작권,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
별지2 기재와 같다(원고는 영화 내용 중 일부씩을 발췌하여 나열하고 있을 뿐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허위사실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체로 2.의 가.항과 같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명예훼손 여부

이 사건 영화가 전체적으로 보아 D가 타살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원고가 그 유력한 혐의자일 뿐 아니라 D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전개됨으로써 다소 편파적이고 원고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유발할 수 있는 면은 있으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영화가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영화의 객관적인 내용과 그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이야기와 화면의 구성방식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영화의 주된 내용은 D가 자살한 것이 아니라 타살된 것일 수 있고 원고가 이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각종 근거에 의하여 설명하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일반의 관심을 환기시키려는 것이다. 그런데 종래 D의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되었던 것 자체는 사실이고, 이는 일반 대중의 공적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나) D와 원고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이 사건 영화 상영 이전에 이미 일반 대중에게 알려진 인물이다.

다) 이 사건 영화에서 D의 사망 원인 등에 관하여 다소 과장되거나 일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영화는 피고 B의 다른 매체를 통한 표현과 달리, 원고가 D 타살의 유력한 혐의자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D가 자살하였다는 의견을 아울러 소개함은 물론, D의 사망 원인에 관한 의혹을 해소할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내용이 몇 차례 반복되고 마지막에 제보와 참여를 기다린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어 단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이고, 주로 D의 사망 원인에 관한 의혹을 담고 있는 중에 부수적으로 D의 음악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 문제나 영아살해 등을 다루고 있다.

3) 저작권, 초상권 침해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영화에 원고의 영상 등이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주장의 저작권과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영화는, 상업 영화이기는 하나 그 주된 내용은 D가 타살되었을 수 있고 원고가 이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으로서, D의 대중음악사적 위치, 대중음악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일반 대중의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것이고, 타살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각종 근거를 제시하는 다큐멘터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영화의 목적, 내용, 영화적 기법에 비추어 피고 B가 이 사건 영화에 원고의 영상 등을 삽입한 것은 이 사건 영화의 목적에 부합하고, 필요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또한 이 사건 영화에 사용된 원고 등의 영상이나 사진은 이미 오래 전에 촬영되어 공개된

것이거나 공적 행사 등 개방된 장소에서 촬영된 것이 많고, 앞서 본 바와 같이 D와 원고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이 사건 영화 상영 이전에 이미 일반 대중에게 알려진 인물이다.

다) 피고 B와 원고 사이의 인터뷰의 경우, 그 인터뷰 대상인 원고는 D의 사망 직전 D와 함께 있었고 D의 사망을 최초 목격하였으며, D의 사망 원인에 대해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고, 타살 의혹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다. 또한 그 내용은 원고가 피고 B와의 인터뷰에 응하여 여러 의혹에 대한 원고의 입장을 말한 것이다.

4) 소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들에게 불법행위책임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사, 언론 인터뷰,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한 피고들의 불법행위 부분

1) 피고 B, 발뉴스의 기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한 불법행위 부분

가) 사실적시 여부

갑 제6호증의 6, 7, 1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는 2017. 9. 19. 고발뉴스 기사를 통하여 “D 변사사건의 핵심 혐의자로 지목된 부인 원고가 잠적한 가운데, 10년째 실종 상태인 D 씨의 딸 F 씨 신변에도 위험이 감지된 것으로 알려져 비상이다. 최근 개봉한 영화 <○○○>은 부인 원고가 주장한 남편의 자살의 이유가 모두 사실이 아니며 거꾸로 자신의 불륜이 드러나 이혼당할 위기에 처하자 남편을 살해한 것이 아니냐는 충격적인 질문을 던져 재수사를 위한 특별법 발의까지 이끌어낸 바 있다.”, “F 씨는 어머니 원고의 사기결혼을 문제 삼아 할아버지 E 씨가 관리하고 있던 음원저작권을 물려받은 상속녀였다. … 최근 개봉한 영화 <○○○>에 남편 D 씨 타살사건의 주요 혐의자로 지목받고 있는 원고는 일체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한 채 잠적 중이다.”는 표현을 한 사실, 고발뉴스는 2017. 9. 21. ○○○○○○당 H 의원과 피고 B의 서울중앙지검에서의 기자회견과 F 씨 사망사건 관련 원고에 대한 고발장 제출 소식을 전하면서 별지3 기재 같은 피고 B의 기자회견문을 그대로 보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발뉴스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된다.

[표]

번호	적시사실
①	D가 자살한 것이 아니라 타살되었고 원고가 그 유력한 혐의자이다.
②	원고가 재혼사실을 숨기고 D와 결혼했다.
③	D가 E에게 저작권(판권)을 관리하게 하였다.

번호	적시사실
④	원고가 강압으로 D의 저작권을 시택으로부터 빼앗았다.
⑤	원고가 상속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F를 방치하여 죽게 하였다.
⑥	원고가 F의 죽음을 숨기고 소송사기를 하였다.
⑦	D 생전에 원고가 불륜을 저질렀다.

나) 허위사실 여부

(1) [표]의 ① 부분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적시사실은 허위라고 인정된다.

(가) D에 대한 부검 결과 D의 사인은 의사(縊死)로 판단되었는바, 현재까지는 이를 뒤집을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나) 피고 B, 발뉴스가 주장·제출한 정황사실 및 증거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D의 사인이 자살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움에도, 피고 B, 발뉴스는 D의 사인에 관한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의혹제기를 넘어서 그 사인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고 원고가 그 살인혐의자라고 단정적으로 인상지우는 표현을 하였다.

(2) [표]의 ②, ⑦ 부분

원고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위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을가 9 내지 16,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적시사실이 진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표]의 ③ 부분

앞서 든 증거와 을가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E에게 판권을 가지게 하였던 점, 피고들은 판권과 저작권을 혼동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위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표]의 ④ 부분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적시사실은 허위라고 인정된다.

(가) 피고 C와 D의 모(母) I는 원고 및 원고 운영의 주식회사 ☆☆☆☆☆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D의 부(父) E가 D로부터 4개 음반에 관한 저작권접권을 양수하였고, E와 원고 사이의 1996. 6. 26.자 합의에 의하여 향후 제작할 D의 노래와 관련된 모든 음반의 저작권 및 저작권접권의 1/2 지분을 보유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2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06나104343호)은 E가 D로부터 4개 음반에 관한 저작권접권을 양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고(이 부분은

상고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다), 대법원(2008다10815호)은 위 합의가 D가 가지고 있던 실연자로서의 저작권접권 자체를 E와 원고의 공유로 하기로 한 합의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환송 후 2심 법원에서 피고 C와 I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됨). 결국 D의 저작권접권은 그 법정상속인인 원고와 F가 공동으로 상속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D의 저작권을 시택으로부터 빼앗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한편, 피고 B, 발뉴스가 판권과 저작권을 혼동하여 표현한 것으로서, 원고가 판권을 빼앗았다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원고와 E는 1996. 6. 26.경 위 4개 음반 및 새로운 음반으로 수익을 얻을 권리에 관하여 서로 합의를 하였을 뿐이고,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원고와 E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 등)만으로는 원고가 강압으로 E로부터 그 권리를 빼앗았다고 볼 수 없다.

(5) [표]의 ⑤, ⑥ 부분

앞서 든 증거와 갑 제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적시사실은 허위라고 인정된다.

(가) 피고 C는 원고가 딸 F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F의 사망사실을 피고 C 및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고지하지 아니하여 소송사기를 범하였다는 취지로 원고를 고발·고소하였다. 그러나 부검결과 F의 사인은 폐질환(미만성 폐포손상, 폐렴, 이물흡입)이라고 판단되었고, 수사기관은 2017. 12. 6. 원고의 행적, 평소 양육태도, 환경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F를 유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폐렴에 걸린 F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원고 및 피고 C 등 사이의 위 소송의 쟁점, 고지의무 유무, 소송의 경과 등을 감안하면 소송사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2017년 형제85971호).

(나) 피고 B, 발뉴스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원고가 F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거나 소송사기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피고 B, 발뉴스는 원고에 대한 고발·고소 소식을 보도하면서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의혹제기를 넘어서 원고가 그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적으로 인상지우는 표현을 하였다.

다) 위법성조각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적시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점은 인정되나, 피고 B, 발뉴스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적시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 (1) D와 원고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피고 B, 발뉴스의 기사 보도 이전에 이미 일반 대중에게 알려진 인물이고, B의 대중음악사적 위치, 대중음악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B가 타살되었을 수 있고 원고가 이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나 원고가 유기치사, 사기 혐의로 고발·고소되었다는 점 등은 일반 대중의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것이다.
- (2) 그러나 피고 B, 발뉴스는 이 사건 적시사실이 진실이라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함에도,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의혹제기를 넘어서 그 적시사실이 진실이라고 단정적으로 인상지우는 표현을 하였다.

2) 피고 C의 불법행위 부분

가) 공동불법행위 여부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B, 발뉴스와 공모 공동하여 이 사건 영화 및 언론 등을 통해 원고의 명예(인격권)를 현저히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영화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저작권과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가 앞서 본 피고 B, 발뉴스의 기사 등을 통한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언론 인터뷰를 통한 불법행위 여부

(1) 피고 C의 언론 인터뷰 중 원고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

- ㉠ “D와 가족에게 해를 끼친 원인 제공자가 그 권리를 누리고 또 D를 기리고자 문화 예술활동을 하는 분들의 발목을 잡는 것을 막고 싶습니다.” … C 씨는 또 수면 위로 떠오른 D의 타살 의혹에 대해서도 ‘유족으로선 차고 넘치는 정황상 자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 1996년 6월 아버지는 원고가 경호원이라며 2명을 대동하고 온 날 홀로 나가 합의문을 썼고, 같은 해 7월 ‘유증’을 남기셨다. 아버지는 합의문이 원고의 강압으로 작성한 것이니 고민 끝에 다시 ‘4개 음반 저작권을 부인과 아들에게 넘겨준다’는 유증을 공증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합의문은 ‘계약’이니 유증에 우선한다며 F의 권리를 인정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조정이 성립될 때인 그해 10월에는 이미 F가 사망한 상태였지만 원고는 재판부에 알리지 않았다.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으니 계약 관계도 무효가 된다. 다음으로 효력이 있는 아버지의 유증이 인정되거나 처음부터 저작권의 권리가 어디에 있는지 다툴 여지가 생겼다. 원고는 지난 9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F가 없으면 제가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F를 잘못하게 했을까요?’라고 말했다. 결국 저작권을 위해 딸의 사망사실을 숨겼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다. … D가 1993년 음반 판권을 아버지에게 돌려놓았다. 그때 이미 원고에 대한 신뢰가 깨진 상태였다. D는 1992년 5월 F 돌 때 원고가 재혼이란 사실을 알았다. 평창동 집에서 F 돌잔치가

있었는데 원고의 이모가 부엌에서 ‘저번 남편보다 인물은 못하다. 돈은 잘 벌지 몰라도’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 그때 D가 이혼하려 했다. D가 재산 주고 기타 하나 들고 나오겠다고 했더니 원고가 저작권도 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아버지가 이혼을 반대했고, D는 원고에게는 저작권을 주기 싫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아버지에게 판권을 넘겼다. 원고가 저작권에 관해선 이야기도 못 꺼내도록 한 것이었다. … D가 사망하고 어린 애를 3년간 미국의 D 친구 집에 맡겨두고 거의 찾지 않는 식이었다. … F와 왕래하지 않은 건 원고가 식구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섬뜩했다. 원고와 연락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F가 미국에서 잘 있다는 얘기만 전해 들었다. … 또 그해 가을쯤 10년 만에 원고가 F를 데리고 내 직장에 찾아왔다. F 교육 문제를 이유로 저작권 소송을 포기해달라는 것이었다. 그 이후 F를 생각해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F가 존재했기에 합의했다. … (원고의 남자 문제로) 마음고생을 한 D는 이혼하려는 마음을 굳혔고, 주위 친구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 사망 전날인 1996. 1. 5. D는 장모에게 이혼을 통보했고 원고가 잘못이 있으니 위자료도 줄 수 없으며 처가에서 빌려 간 2억여 원도 돌려달라고 했다. 그래서 처가 식구들이 집에 모이자 D는 이날 밤 어머니에게 전화해 ‘처가 식구들이 다 와 있으니 엄마도 오라’고 했지만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 가지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 날인 6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됐다. … 현장에 있던 원고의 진술은 계속 바뀌었다. D를 최초 발견했을 때의 모습, D네 건물 마당 컨테이너 박스에 살던 원고의 G가 사건 당일 집으로 올라왔을 때의 정황도. 현장감식 등 경찰의 초동 수사도 미흡했고, 원고 측의 진술만 듣고 자살로 수사를 진행하는 인상을 줬다. … 목을 맨 채 계단에 비스듬히 누워 천장을 바라본 자세였다는데 그럼 목 뒷부분에 삭흔이 생겨야 한다. B 기자는 사건 당시 경찰서에서 본 사진에서 등에 계단에 눌린 자국이 있었다고 한다. 원고가 공개를 원치 않아 우린 부검감정서나 사망진단서를 볼 수가 없다. … 파기환송심에서 조정할 때 추모 공연이나 팬클럽 행사에서 F 허락을 받지 않고 D 노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만 달았다. D를 위해 장학 재단을 만들고자 동료들이 마음을 모아 기금을 모으는 데까지 원고가 손을 뻗치게 하고 싶지 않았다. … D는 친구들에게 ‘이제 처가 돈 벌어주는 일은 그만해야겠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내 목숨과 같다’고 했던 저작권이 죽어서도 원고의 돈벌이로 악용되는 현실이 안타깝고 D의 말을 못 지켜준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D의 저작권으로부터 얻는 금전적인 이득을 1원도 취할 의사가 없다. 단지 D 부녀에 대한 의혹이 진실에 조금이라도 더 접근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원고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니 거짓말탐지기라도 했으면 하는 절박한 심정이다. 또 이번 기회에 ‘○○○법’이 제정돼 의혹 있는 죽음에 공소시효에 가려지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2017. 11. 6. 연합뉴스와의 인터뷰, 갑 제6호증의 19).”

- ㉠ “D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다는 걸 누구보다 가족들은 알고, 믿고 있다. 의혹들은 수사에서 전혀 언급이 안 된 부분이니까 제대로 한 번 밝혀졌으면 좋겠다(2017. 9. 5. SBS ‘본격연예 한밤’에 출연, 갑 제11호증의 1).”
- ㉡ ‘D 씨가 사망한 뒤 원고와는 사이가 틀어졌다.’는 물음에 “3개월 뒤 시택에 전화가 와서 험한 소리를 하고 그 해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좋지 않았다. 당시 A는 ‘덩치’들을 대동해 아버님을 어디론가 데려가 협박을 해 ‘딸 F에게 저작권을 넘기겠다’는 합의서를 쓰게 했다. 아버님은 합의서를 쓰고 나와 그길로 동네 지인을 데리고 가서 법률사무소에서 ‘내가 죽으면 저작권을 처와 아들(C)에게 넘기겠다’는 공증서류를 남기기도 했다(2017. 9. 21. 조선일보와의 인터뷰, 갑 제11호증의 2).”
- ㉢ “원고가 F의 죽음에 직접 책임이 있다고 감히 생각하지는 않지만 양육 태도를 지켜봐왔던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한 것. 무혐의가 면죄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딸의 죽음을 철저하게 숨기고, 그 대가로 D의 저작권을 상속받아 D의 마음을 갈가리 찢어놓은 이 모 씨와 동거해 온 원고의 삶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2017. 11. 10.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갑 제11호증의 5, 6).”
- ㉣ “원고를 용서한 건 아니다. 별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라 생각하려 한다. 처벌보다 천벌이 더 클 것이다. 의혹을 알린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한다. 더 이상 D의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 돈은 탐욕을 따라갈 뿐이다. 듣고 싶은 자유 마음껏 누리시길 바란다(2017. 11. 10. 이데일리, 갑 제11호증의 7).”

(2) 사실적시 여부

피고 C의 언론 인터뷰는 대부분 피고 C가 원고를 유기치사사기 혐의로 고발·고소한 뒤 이루어진 것으로 위 언론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피고 C는 언론 인터뷰를 통하여 앞서 본 [표]의 ②, ③, ④, ⑥, ⑦ 부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 C가 언론 인터뷰에서 ‘유족으로선 차고 넘치는 정황상 자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등 D의 타살 의혹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 C의 의견표현에 불과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C가 ‘D가 자살한 것이 아니라 타살되었고 원고가 그 유력한 혐의자이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 C의 언론 인터뷰에는 ‘원고가 상속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F를 방치하여 죽게 하였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고, 다만 그 내용이 피고 C가 원고를 유기치사 혐의로 고발한 뒤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피고 C가 F의 죽음과 관련하여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는 내용일 뿐,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C가 ‘원고가 상속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F를 방치하여 죽게 하였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 C가 원고가 F가 급성 폐렴으로 위독할 때 119 신고를 늦게 해 사망하게 한 유기치사 혐의로 원고를 검찰에 고발하였다는 기사 부분과 피고 C가 원고를 유기

치사 혐의로 고발한 이유를 설명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 C가 언론 인터뷰를 통하여 앞서 본 [표]의 ⑤ 부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허위사실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표]의 ④, ⑤, ⑥ 부분 적시사실은 허위라고 인정되고, ②, ③, ⑦ 부분 적시사실은 원고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위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위법성조각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과 D의 형이자 F의 큰아버지인 피고 C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가 언론 인터뷰를 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적시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유기치사, 사기 혐의로 고발·고소되었다는 점 등은 일반 대중의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것이다.

(나) 피고 C는 원고를 유기치사, 사기 혐의로 고발·고소한 이후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원고를 고발·고소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표]의 ④, ⑥ 부분 사실을 적시하였고, ⑤ 부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피고 C는 E로부터 들은 말과 원고와 E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 등을 근거로 [표]의 ④ 부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가 F의 사망사실을 오랫동안 피고 C 등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고, 피고 C로서는 앞서 본 손해배상 소송의 환송 후 2심 법원에서 조정 전에 F가 사망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대법원이 피고 C 승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포기하는 조정을 쉽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 C는 F의 죽음과 관련하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한 것이지 그 적시사실이 진실이라고 단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 B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한 불법행위 부분

가) 사실적시 여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사용하여 2017. 9. 12. “D 죽인 살인범이 활보하도록 놔둘순 없지 않겠습니까(갑 제10호증의 1).”, 2017. 9. 18.에는 “살인 사건 열쇠 쥐고 있는 부인 A 잠적.. 10년째 실종 상태 D 씨 딸 신변 위험 감지(갑 제10호증의 3).”, 2017. 9. 20.에는 “영화 ○○○ 통해 타살 주요혐의자로 지목한 A 씨의 해외 도피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갑 제10호증의 6).”, 2017. 9. 21.에는 앞서 본 별지3 기자회견문(영화 <○○○> 감독의 변, 갑 제10호증의 8)을 각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는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청구취지 제4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허위사실 여부

(1) ‘D를 죽인 살인범이 활보하도록 놔둘 순 없다’, ‘영화 ○○○을 통해 타살 주요혐의자로 지목한 A의 해외 도피 우려’, ‘살인 혐의자가 백주대로를 활보하며 음원 저작료를 독식한다’는 표현

위 1)의 나) (1),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적시사실은 허위라고 인정된다.

(2) ‘원고가 영아살해를 하였다’는 표현

원고는 D와 결혼하기 전 임신 7개월 무렵 낙태를 한 사실이 있다고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임신 9개월’에 아이를 낳아 ‘영아살해’를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다. 한편 ‘낙태’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의미하고(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780 판결 참조), ‘영아살해’는 태어난 어린(젖먹이) 아기를 죽이는 살인 행위로서, 형법상으로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하는 범죄행위를 의미한다(형법 제251조). 이와 같이 낙태와 영아살해는 객관적으로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객체와 태양이 다르고, 법정형과 비난가능성도 달라 질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낙태행위’를 넘어서 ‘영아살해행위’를 하였다고 단정적으로 적시하는 것은 단순한 수사적 과장의 범위를 넘어서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를 ‘악마’라고 지칭하는 표현

원고에 대하여 ‘악마’라고 지칭하는 표현은 그 단어 자체가 ‘매우 나쁜 사람’이라는 현저히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B가 위 표현을 사용한 글의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D를 살해하였다거나 D의 저작권을 강제로 빼앗았다는 것 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이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살인사건 열쇠를 쥐고 있는 부인 A 잠적’이라는 표현

이 부분 적시사실은 원고가 D를 살해하였다고 단정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당시 일시적으로 원고와 연락이 닿지 않고 취재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일부 과장하여 표현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다) 위법성조각 여부

이 부분 적시사실의 표현이 단정적이고 인신공격에 해당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적시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고 볼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피고 B, 발뉴스가 기사 등을 통해 허위인 [표]의 ①, ④, ⑤, ⑥ 부분 사실을 적시한 것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피고 B, 발뉴스는 공동하여(원고는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은 피고들에게 각각 구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각각 구하는 손해배상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공동하여 지급을 명한다) 원고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가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허위인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것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B의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한 불법행위에 피고 발뉴스가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가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손해배상 액수

정신적 손해배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기사 및 페이스북 계정 글의 내용, 표현 방식, 영향력, 이 사건에 관한 사회적 관심도, 허위 사실의 적시가 차지하는 정도, 원고의 사회적 지위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액수는 피고 B, 발뉴스의 공동불법행위 부분은 3,000만 원, 피고 B의 단독불법행위 부분은 2,0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5,000만 원, 피고 발뉴스는 원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3,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17. 11. 18.부터 피고들이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5.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영화의 상영 등 금지 청구에 관한 판단

우선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영화의 감독일 뿐이고 영상제작자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인 사실, 피고 B는 2016. 5. 15. 이 사건 영화와 관련된 모든 용역의 결과물과 이 사건 영화로부터 발생하거나 파생하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모든 지적재산권(속편의 저작권, 리메이크권은 제외)을 ○○○○에게 독점적으로 귀속시킨다는 취지의 영화감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는 ○○○○에게 이 사건 영화에 대한 복제권, 공연권, 배포권 등을 포함하는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였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 B가 이 사건 영화의 상영, 판매, 배포 등을 할 법적 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가 이 사건 영화에 관하여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의 대표이사 J가 피고 B의 친동생이고 ○○○○는 피고 B가 주도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1인 회사와 마찬가지로

므로, 피고 B와의 관계에서는 ○○○○의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하므로, 피고 B에 대하여 ○○○○가 제작한 이 사건 영화에 관한 상영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의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할 정도로 그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거나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설령 피고 B에게 위와 같은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화가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원고 주장의 저작권과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영화의 상영 등을 금지해야 할 정도로 원고의 명예나 인격권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거나 원고 주장의 저작권과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피고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금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용하는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 발뉴스는 허위인 [표]의 ① 부분 사실을 적시하고, 피고들은 허위인 [표]의 ④, ⑤, ⑥ 부분 사실을 적시하며, 피고 B는 그 밖에도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영아 살해’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 내지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의 지위와 관계, 피고들이 표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들이 한 구체적 표현행위의 문언과 그 내용, 행위태양 내지 방법, 그로 인하여 일반 대중이 받게 되는 인상(영향), 피고들이 앞으로도 계속 허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는 원고의 인격권에 대한 추가적인 침해를 발생(가중)시키는 것인 점(피고 C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고소한 직후부터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언론 인터뷰를 통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위법성이 조각되나 향후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B, 발뉴스가 별지 목록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하거나 각종 언론 매체나 SNS 등을 통하여 이를 유포하거나, 피고들이 별지 목록 제1의 나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하거나 각종 언론 매체나 SNS 등을 통하여 이를 유포하거나, 또는 피고 B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비방행위를 하는 것은 원고의 명예 내지 인격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존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행위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

나. 기각하는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표]의 ②, ③, ⑦ 부분 적시사실과 ‘살인사건 열쇠를 쥐고 있는 부인 A 잠적’이라는 표현은 원고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간접강제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들의 부작위채무를 명함에 있어 간접강제도 구한다.

그러나 부대체적 채무인 부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은 간접강제만 가능하고, 간접강제결정은 판결절차에서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채권자의 별도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거쳐 채무를 불이행하는 때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부작위채무에 관한 집행권원 성립을 위한 판결절차에서 장차 채무자가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간접강제를 하는 것은 부작위채무에 관한 소송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서 보아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그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절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서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간접강제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원고가 주장하는 명예훼손적 내용 목록 생략

〈별지2〉 대상영화 생략

〈별지3〉 피고 B의 기자회견문 생략

병원이 최초 발급한 소견서가 추후에 수정, 재발행되었으나 이를 모른채 기존 소견서를 근거로 보도했다면 보도내용을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

- 원고 : 학교법인 ○○학원
- 피고 : 주식회사 시사저널사 외 2명

[사실관계]

피고 주식회사 시사저널사는 2018년 2월 7일 <인터넷 시사저널> 및 같은 달 13일 <시사저널>에 ‘원고가 운영하는 ○○대□□병원에서 MRSA(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상구균) 감염 환자가 발생하였고, MRSA 감염으로 환자가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을 이유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보아 피고 주식회사 시사저널사에게 정정보도를 명하였다. 그러나 제보자인 피고 B가 수정된 소견서를 누락하는 등 피고 주식회사 시사저널사와 A가 이 사건 보도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이 있다 판단하여 피고 B에게만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이후 피고 B만이 항소하여 피고 주식회사 시사저널사와 A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소 제기 전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불성립된 바 있다(2018서울조정391, 2018서울조정392).

[판결요지]

□ 이 사건 기사의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사는 ‘병원 내 감염병 관리 소홀’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 B는 피고 시사저널 소속 H 기자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제보를 하였고, 피고 시사저널 소속 기자 피고 A는 ○○대□□병원에 MRSA 감염 여부 등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나, ○○대□□병원은 2018. 1. 31.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그 이상 답변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더하여 피고 B는 다른 언론사에 대한 제보의 경우와 달리 피고 A에게 최초 소견서만을 제공하였을 뿐으로, 감염 사실을 증명하는 확실하고 신빙성 있는 자료인 소견서가 잘못 발행되는 것은 이례적임으로 피고 A가 ○○대□□병원에서 MRSA 감염 환자가 발생한 사실의 진실성을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피고 A에게는 이 사건 기사 중 허위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었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문

사 건 2018가합33527 정정보도등
원 고 학교법인 ○○학원
피 고 1. 주식회사 시사저널사
2. A
3. B
변 론 종 결 2019. 5. 1.
판 결 선 고 2019. 5. 29.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시사저널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 가. 피고 주식회사 시사저널사가 최초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시사저널 제38면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정정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같은 크기, 활자체, 줄간격으로 게재하고, 위와 같은 정정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위 서적의 목차부분에 게재하고,
 - 나.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초기화면 상단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정정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같은 크기, 활자체로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이후로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며, [○○대□□병원서 슈퍼박테리아감염 환자 ‘혼수상태’]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시사저널사가 위 제1항 기재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주식회사 시사저널사는 원고에 그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B는 원고에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7.부터 2019. 5.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 피고 주식회사 시사저널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시사저널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시사저널사는

가. 이 판결 확정 후 피고 주식회사 시사저널사가 최초로 발행하는 주간지 〈시사저널〉 제38면에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을 정정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같은 크기, 활자체, 줄간격으로 게재하고, 위와 같은 정정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위 서적의 목차부분에 게재하라.

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 초기 화면의 뉴스 부문 및 첫 부분에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을 정정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과 같은 크기, 활자체, 줄간격으로 표시되도록 하고, 이후로는 기사DB에 이를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며, [○○대□□병원서 슈퍼박테리아감염 환자 ‘혼수상태’]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시사저널사가 위 제1항의 기간 내에 위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주식회사 시사저널사는 원고에게 위 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1) 원고는 ○○대학교 □□병원(이하 ‘○○대□□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시사저널사(이하 ‘피고 시사저널’이라 한다)는 주간지 시사저널을 발행하고 인터넷신문인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을 운영하는 언론사이다.
- 2) 피고 A는 피고 시사저널 소속 기자이고, 피고 B는 ○○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C의 아들이다.

나. ○○대□□병원의 C에 대한 수술 및 최초 소견서 발행 경과

- 1) C는 2017. 9. 24. ○○대□□병원에 입원하여 2017. 9. 26. 감압 및 척추고정술을 받았고, 2017. 9. 27. 15:45경 심폐정지로 인하여 무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이다.
- 2) ○○대□□병원 소속 의료진은 2017. 10. 15. C의 혈액에 대한 세균배양검사를 하면서 2017. 10. 18. C에게 경험적 항생제로 반코마이신(vancomycin)을 투약하였고, 2017. 10. 19. 경 보고된 세균배양검사 결과 MRSE(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Epidermidis,

- 표피포도상구균)가 검출되었다가 2017. 10. 23.경 소실되었다.
- 3) ○○대□□병원 중환자실 담당의사 D는 2017. 10. 31. C의 아들인 피고 B에게 “MRSA 균혈증이 발생하여 vancomycin 투여”라고 잘못 기재된 소견서(이하 ‘최초 소견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 4) 한편 C의 객담(가래)에 대한 세균배양검사 결과 2017. 10. 21. MRPA(Multidrug-Resistant *Pseudomonas aeruginosa*, 다제내성 녹농균)가 검출되었다.
 - 5) MRSA(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상구균)와 MRPA는 슈퍼박테리아로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MRSE는 법정 감염병에 해당하지 않고, MRSA보다 독성이 약하다.

다. ○○대□□병원과 피고 B 사이의 분쟁 및 소견서 재발행 경과

- 1) C의 둘째 아들이자 피고 B의 동생인 E는 2017. 11. 13. D에게 C의 MRSA 감염에 대하여 설명해주지 않은 것에 항의하였고, D는 E에게 C가 최초 소견서에 기재된 MRSA가 아니라 MRSE에 감염되었음을 설명하였다.
- 2) 피고 B는 C가 수술 이후 혼수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하여 2017. 10. 10. ○○대□□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고, 국민신문고에 『MRSA 슈퍼박테리아 감염신고(○○대□□병원) 정보 은폐 및 감염경로 조사 요망』이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 3) □□시보건소는 위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하여 2017. 11. 20. ○○대□□병원에 MRSA 감염 환자 발생 여부에 관한 문의를 하였고, D는 □□시보건소에 최초 소견서에 MRSE를 MRSA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시보건소는 2017. 12. 4. 및 2017. 12. 12.경 피고 B에게 D의 답변 내용을 전달하는 회신을 하였다.
- 4) 피고 B는 ○○대□□병원을 상대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라 한다)에 조정 신청을 하기 위하여 2017. 12. 9. ○○대□□병원에 중재원 제출용 소견서 발급을 요청하고, 2017. 12. 11. 개인 확인용 소견서 추가 발급을 요청하였다. ○○대□□병원 의사 F는 2017. 12. 11. “중환자실 재원 중 발생한 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Epidermidis* 균혈증”이라고 기재하여 MRSA를 MRSE로 수정한 소견서(이하 ‘재발행 소견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C의 셋째 아들이자 피고 B의 동생인 G에게 건네주었고, 재발행 소견서는 C 측이 ○○대□□병원을 상대로 의료분쟁조정신청을 하면서 중재원에 제출되었다.

라. 피고 A의 기사 작성 및 게재 경위

- 1) 피고 B는 피고 시사저널 소속 H 기자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C가 ○○대□□병원에서 MRSA에 감염되었다는 내용의 제보를 하였고, 피고 시사저널 소속 기자인 피고 A는 이러한 내용을 H 기자로부터 전달받은 후 2018. 1. 9. ○○대□□병원에 C의 MRSA 감염 여부에 관하여 문의를 하였다.

- 2) ○○대□□병원은 2018. 1. 22. MRSA 감염 여부에 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클렙시엘라와 슈도모나스균 등 다른 균이 검출되었다가 소실되었다고 답변하였다. 피고 A는 2018. 1. 29. 재차 ○○대□□병원에 위 균 외에 3종의 세균에 추가로 감염된 것이 맞는지 문의하였으나, ○○대□□병원은 2018. 1. 31.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더 이상 답변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 3) 피고 A는 2018. 2. 7. 인터넷신문인 시사저널과 2018. 2. 13. 발행된 주간지 시사저널에 『**단독**』 ○○대□□병원서 슈퍼박테리아 감염 환자 ‘**혼수상태**’』라는 제목으로 별지 3.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호증, 을 제1 내지 6, 10, 21, 2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시보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제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시사저널은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대□□병원에서 MRSA 감염 환자가 발생하였고, MRSA 감염으로 환자가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에 피해를 입혔으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조치로서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고(원고는 정정보도에 대한 간접강제도 구한다), 피고 B는 피고 A에게 C가 ○○대□□병원에서 MRSA에 감염되었다는 허위 제보를 하였으며, 피고 A는 이에 관하여 질병관리본부에 확인을 하는 등의 사실 확인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허위인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는바, 피고 B, A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시사저널은 피고 A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 위자료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실의 적시 여부

1) 관련 법리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게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하고,

사실적 주장과 의견을 구별할 때에는 해당 언론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언론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뿐만 아니라 해당 언론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및 일반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참조). 그리고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가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등을 인용하여 기사화한 것이고 그 보도 내용에 단정적 표현이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 전체의 취지가 그 사실의 존재를 암시한다면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참조).

2)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단독] ○○대□□병원서 슈퍼박테리아 감염 환자 ‘혼수상태’』

△△△△병원에 이어 최근 ○○대□□병원에서도 감염사고가 발생했다. △△△△병원에서는 신생아가 사망했고, ○○대□□병원에서는 노인이 4개월째 혼수상태다.

환자의 아들 B 씨는 “어느 날 간호사끼리 어머니의 항생제 치료 기간에 대해 주고받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다. 처음에는 수술 부위의 염증 치료를 위한 것인 줄로만 알았다. 그래도 깨름칙해 의사의 소견서를 요구해서 봤더니 환자가 MRSA(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상알균)에 감염된 기록이 있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치사율이 높고 피부 접촉으로도 감염되는 슈퍼박테리아였다. 이 때문에 어머니는 급성 콩팥기능 손상이 생겼다. 슈퍼박테리아 감염 자체도 문제인데, 그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더 큰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환자가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사실을 몰랐던 가족은 교대로 중환자실을 드나들며 어머니를 간호했다. 환자 가족은 병원이 약 2주일 동안 환자의 슈퍼박테리아 감염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B 씨는 “MRSA 감염에 대해 병원 측은 한마디도 설명해 주지 않았다. 약 2주일동안 우리 가족은 슈퍼박테리아에 노출된 것이다.(이하 중략)”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대□□병원 환자에게 심폐정지와 혼수상태가 발생한 원인, 슈퍼박테리아 감염 경로 등도 미제로 남았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기사에는 최초 소견서의 사진과 함께 최초 소견서에 “MRSA 균혈증”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 부기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기사의 제목에는 슈퍼박테리아 감염 환자가 ‘혼수상태’에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기사 첫 문단에 감염의 결과로서 △△△△병원에서의 신생아 사망과 대응되는 구조로 ○○대□□병원 환자의 혼수상태를 언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기사 말미에 혼수상태가 발생한 원인이 미제로 남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제목이나 첫 문단과 멀리 떨어져 있어 그 의미가 연결되지 않고 오히려 앞선 취지가 더 주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사에는 ‘○○대□□병원에서

MRSA 감염 환자가 발생하였고, MRSA 감염으로 인하여 환자가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적시사실의 허위 여부

1) 관련 법리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56413 판결 참조).

2) 판단

가) ○○대□□병원 의사 D가 2017. 10. 31. C에 대하여 “MRSA 균혈증이 발생하여 vancomycin 투여”라고 기재된 최초 소견서를 발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D는 2017. 11. 13. 피고 B의 동생인 E에게 C에 대한 세균배양검사 결과 MRSE가 검출되었음에도 최초 소견서에 MRSE를 MRSA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설명하였고, ○○대□□병원 소속 의사 F는 2017. 12. 11. MRSA를 MRSE로 수정한 재발행 소견서를 발급한 사실도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갑 제9, 10호증, 을 제6,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수술을 받은 다음날인 2017. 9. 27. 심정지가 발생하여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데 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감정결과 C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원인은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중독에 의한 호흡저하로 인한 것이고, C의 혈액에 대한 세균배양검사로 검출된 감염균은 MRSE로 밝혀진 사실, 이에 따라 중재원은 조정결정을 하면서 C가 MRSA에 감염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가 MRSA에 감염되었고 이로 인하여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이 사건 기사의 적시사실은 허위라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 게재 당시 C가 법정 감염균이자 슈퍼박테리아인 MRPA에 감염되어 있었고, 2018. 9.경 C에게서 MRSA가 검출되기도 하였으므로 C가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되었다는 이 사건 기사의 적시사실은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C의 객담(가래)에 대한 세균배양검사 결과 2017. 10. 21. 슈퍼박테리아이자 법정 감염병인 MRPA가 검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9,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8. 7. 23. C의 객담에 대한 세균배양검사 결과 MRSA가 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2, 3,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기사는 짧은 글씨의 소제목으로 구분되는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에서 MRSA 감염 환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세 번째 문단에서부터 위 환자의 객담 검사 결과 슈도모나스균 즉, MRPA도 검출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바, MRSA와 MRPA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사 중 슈퍼박테리아로 지칭된 감염균은 대부분 MRSA를 지칭하는 것인 점, C의 혈액이 아니라 객담에서 검출된 MRPA는 단순 집락화 상태로서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감염증 상태가 아닌 점, C의 객담에서 최초로 MRSA가 검출된 시점은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때로부터 5개월이 경과한 이후이고 이 역시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감염증 상태는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기사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

다. 정정보도의 내용과 방법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는바, 이 사건 기사 중 ○○대□□병원에서 MRSA 감염 환자가 발생하였고 위 환자가 MRSA 감염으로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부분이 진실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법원은 사안에 따라 적절한 반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정보도의 내용과 위치 및 방식 등을 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문에 내용상의 제한이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법원은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85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과 방법, 이 사건 기사 중 허위부분의 내용과 분량 및 그 표현방식,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구하는 별지 2. 기재 정정보도문을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과 같이 수정하여 게재하도록 하고, 정정보도문의 게재시기, 게재방법, 간접강제방법 등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4.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에 허위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됨으로써 원고에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고 게재한 피고 A, 시사저널과 피고 A에게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여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되도록 한 피고 B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대□□병원 측의 주장이나 □□시보건소의 회신 내용을 믿기 어렵었고, 재발행 소견서가 발행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C가 MRSA에 감염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으며, 피고 A가 JTBC 보도를 접하여 ○○대□□병원의 주장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피고 A에게 허위의 사실을 제보한 것이 아니거나 제보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B는 국민신문고에 『MRSA 슈퍼박테리아 감염신고(○○대□□병원) 정보 은폐 및 감염경로 조사 요망』이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시보건소는 2017. 12. 4. 및 2017. 12. 12.경 D로부터 받은 답변서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 B에게 최초 소견서상 MRSA는 MRSE의 오기라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 D는 2017. 11. 13. 피고 B의 동생인 E에게 C가 MRSA가 아니라 MRSE에 감염되었음을 설명하였던 사실, 피고 B는 ○○대□□병원에 증재원 제출용 소견서 발급을 요청하였고, MRSA를 MRSE로 수정한 재발행 소견서를 피고 B의 동생인 G가 수령하여 증재원에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는 2017. 12. 20. JTBC 기자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제보를 하면서 □□시보건소의 피고 B에 대한 회신자료를 첨부하였고, “MRSA가 아니고 MRSE였다고 진단서 발행의 착오였다고 해명하는 것도 전문의 레벨에 맞지 않고 아마 책임의 강도를 조절하기 위해 변명하는 것으로 보임”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을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 B는 □□시보건소로부터 회신을 받아 ○○대□□병원 측 주장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재발행 소견서의 발행 경위나 피고 B와 동생들의 관계 및 피고 B가 ○○대□□병원과의 분쟁을 주도하여 온 정황을 고려하면 재발행 소견서의 존재와 그 내용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런데 피고 B는 피고 A에게 제보를 하면서 JTBC 기자 등에게 제보한 경우와 달리 최초 소견서상 MRSA가 MRSE의 오기라는 ○○대□□병원 측의 주장 내용을 언급하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인 재발행 소견서, □□시보건소의 회신내용을 제공하지 않은 점, ③ JTBC 뉴스룸의 2017. 12. 20. 보도내용이나 2018. 2. 8. OBS뉴스 기사에는 MRPA가 검출되었다는 내용만 보도되었고, 2018. 2. 9. 메디컬 투데이의 기사에는 MRSE가 검출되었다는 내용만 보도되는 등 MRSA 감염에 관하여 보도된 적은 없었는바, 만약 피고 B가 ○○대□□병원 측 입장을 피고 A에게 전달하였다면 이 사건 기사에 허위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점, ④ 오히려 이 사건 기사 내용에 의하면 피고 B는 피고 A와의 인터뷰에서 “□□시보건소에 얘기하니 직원이 병원에 나와 조사하긴 했는데 별문제 아니라는 듯 얼버무렸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시보건소의 회신 내용에 관하여 다소 다르게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설령 피고 B는 C의 MRSA 감염 사실을 믿고 있었고, 피고 A가 JTBC 보도 내용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고 하더라도 JTBC 보도 내용에는 MRSA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고 A가 이를 통하여 ○○대□□병원 측 입장을 알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최초 소견서만을 피고 A에게 제공하고 그와 반대되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라고 확인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왜곡된 제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가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피고 A에게 제보를 하여 이 사건 기사로 보도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가 허위사실을 제보한 것이 아니라거나 그 제보행위에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A, 시사저널의 위법성 조각 여부

가) 피고 A, 시사저널은 이 사건 기사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최초 소견서의 내용과 ○○대□□병원의 이메일 회신내용에 비추어 피고 A로서는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설령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53805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는 ‘병원 내 감염병 관리 소홀’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당시 △△△△병원에서 감염사고가 발생하여 그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피고 B는 피고 시사저널 소속 H 기자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제보를 하였고, 피고 시사저널 소속 기자 피고 A는 이러한 내용을 H 기자로부터 전달받은 후 2018. 1. 9. ○○대□□병원에 C의 MRSA 감염 여부에 관하여 문의를 하였으며, 2018. 1. 22. ○○대□□병원은 MRSA 감염 여부에 관해서는 답변하지 않은 사실, 피고 A는 2018. 1. 29. 재차 ○○대□□병원에 MRSA 감염 여부 등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나, ○○대□□병원은 2018. 1. 31.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그 이상 답변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더하여 을 제1, 4, 11 내지 14,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A는 피고 B의 인터뷰 내용과 ○○대□□병원에서 발행된 최초 소견서, ○○대□□병원에 대한 사실 확인을 통하여 ○○대□□병원에서 MRSA 감염 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소견서가 감염 사실을 증명하는 확실하고 신빙성 있는 자료인 이상 피고 A의 이러한 인식은 객관적

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피고 B는 다른 언론사에 대한 제보의 경우와 달리 피고 A에게 최초 소견서만을 제공하였을 뿐 ○○대□□병원 측 주장을 언급하거나 이에 부합하는 자료는 전혀 제공하지 않았는바, 소견서가 잘못 발행되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피고 A가 ○○대□□병원에서 MRSA 감염 환자가 발생한 사실의 진실성을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A로서는 최초 소견서가 존재하고, 비록 직접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였으나 소견서를 발행한 병원에 사실 확인을 하였으므로 □□시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등을 통하여 재차 사실 확인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이유로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피고 A에게는 이 사건 기사 중 허위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었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A의 이 사건 기사 작성 및 게재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피고 A, 시사저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소결

그러므로 피고 B는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 피고 A, 시사저널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 B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 배상해야 할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의 제보 경위, 동기, 제보 형식 및 이 사건 기사의 보도 형식 및 횟수, 유포 정도, 표현 방법, 이 사건 기사 중 허위 부분이 차지하는 정도 및 원고가 입었을 피해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B가 배상할 손해액은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기사 게재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2018. 2. 7.부터 피고 B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5.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시사저널,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 피고 시사저널,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정정보도문

1. 정정보도문

가. 제목

「○○대□□병원서 슈퍼박테리아 감염 환자 ‘혼수상태’」에 대한 정정보도문

나. 본문

본사는 2018. 2. 「○○대□□병원서 슈퍼박테리아 감염 환자 ‘혼수상태’」라는 제목으로, ○○대□□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고 혼수상태에 빠진 환자 C 씨(여·74)가 슈퍼박테리아인 MRSA에 감염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C 씨(여·74)는 슈퍼박테리아인 MRSA에 감염된 사실이 없고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되어 혼수상태에 빠진 것이 아님이 밝혀져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별지2〉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3〉 대상기사 생략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72342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9. 10. 30. 선고 2019나24101 판결

허위보도라도 기초가 된 사실관계를 잘못 표현한 것에 불과하며 그 비중이 전체 보도내용에 비추어 매우 낮다면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 원고 : 해산된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A
- 피고 : 주식회사 머니투데이

[사실관계]

피고는 2014년 7월 10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머니투데이>에 '원고가 감정평가 타당성을 조사한 후 제시한 적정가격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상·하한 가격차 범위 10%를 위반하여 상·하한 가격차가 18%에 달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을 이유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심 법원은 정정 및 반론보도에 관하여 원심의 판단을 인용하였으나, 피고가 적시한 허위사실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손해배상 청구에 한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환송후심 역시 환송심과 같이 피고의 손해배상 패소 부분을 취소하였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소 제기예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여 정정 및 반론보도와 1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으나 원고와 피고 양측이 이익을 제기한 바 있다 (2014서울조정1536·1537, 2014서울조정1538·1539, 2014서울조정1540·1541, 2014서울조정1542·1543, 2014서울조정1544·1545, 2014서울조정1546·1547, 2014서울조정1548·1549(병합)).

[판결요지]

□ 이 사건 기사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대신하여 이 사건 각 감정평가결과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A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정당한 보도활동이다. 다만 피고는 주식회사 A가 제시한 적정가격에 위와 같은 문제가 있음을 순차적으로 지적하는 과정에서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 감정평가금액 사이에 10%를 초과하는 편차가 발생하게 되면 재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감정원이 제시한 적정가격의 상·하한은 지나치게 폭이 넓다.'라고 표현하였어야 하는 것을 '감정원이 제시한 적정가격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상·하한 가격차 범위 10%를 위반하였다.'고 잘못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주식회사 A가 제시한 적정가격의 상·하한 사이에 상당한 편차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기초로 삼은 사실관계 자체는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전체 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아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심(환송심) 판결문

사	건	2016다272342 손해배상(기)
		2016다272359(병합) 손해배상(기)
		2016다272366(병합) 손해배상(기)
		2016다272373(병합) 손해배상(기)
		2016다272380(병합) 손해배상(기)
		2016다272397(병합) 손해배상(기)
		2016다272403(병합) 손해배상(기)
		2016다272410(병합) 손해배상(기)
		2016다272427(병합) 손해배상(기)
		2016다272434(병합) 손해배상(기)
		2016다272441(병합) 손해배상(기)
		2016다272458(병합) 손해배상(기)
		2016다272465(병합) 손해배상(기)
		2016다272472(병합) 손해배상(기)
		2016다272489(병합) 손해배상(기)
		2016다272496(병합) 손해배상(기)
		2016다272502(병합) 손해배상(기)
		2016다272519(병합) 손해배상(기)
		2016다272526(병합) 손해배상(기)
		2016다272533(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해산된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A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머니투데이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6. 11. 16. 선고 2016나21125, 21132(병합), 21149(병합), 21156(병합), 21163(병합), 21170(병합), 21187(병합), 21194(병합), 21200(병합), 21217(병합), 21224(병합), 21231(병합), 21248(병합), 21255(병합), 21262(병합), 21279(병합), 21286(병합), 21293(병합), 21309(병합), 21316(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19. 8. 14.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할위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는 관할위반의 잘못이 있어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정정보도청구 관련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2기사, 제3기사, 제6기사 중 일부에 관하여 피고에게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정보도 청구권의 성립요건, 의견표명과 사실적시의 구별기준,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손해배상청구 관련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등 참조).

나.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6기사 중 ‘A가 제시한 적정가격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상·하한 가격차 범위 10%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1) ○○○○ 주식회사(이하 '임대인'이라고 한다)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구 단국대학교 부지에 이 사건 아파트 600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일단 이를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제공한 다음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분양전환하기로 하였다.
- (2) 임대인과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들은 임대차 개시일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분양전환을하기로 하되,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인이 의뢰하여 얻은 감정평가결과와 임차인들이 의뢰하여 얻은 감정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하기로 합의하였다.
- (3) 분양전환 시기가 되자 임대인 측에서는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임차인들은 ○○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법인 컨소시엄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 (4) 그런데, 임대인 측 감정평가결과와 임차인 측 감정평가결과 사이에 2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여 감정평가결과 자체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사건 각 감정평가가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되었다.
- (5) 국토교통부에서는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각 감정평가의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였는데, A는 이 사건 아파트 600세대의 적정가격을 1조 6,800억 원부터 1조 9,800억 원까지 사이로 제시하여 상·하한 사이의 편차가 약 18%에 달하였다.
- (6) 피고는 2014. 7. 10.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감정평가금액 가운데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를 초과하게 되면 재평가를 하게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 (7) 피고는 2014. 7. 21. 「A가 제시한 적정가격조차 하단 대비 18% 격차를 보인 데 따른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다. 통상 범위가 10% 이상이면 재감정을 한다는 점에서 A가 내놓은 적정가격 역시 고무줄이란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제1기사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 (8) 피고는 2014. 7. 29. 「A가 제시한 적정가격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상·하한 가격차 범위 10%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A는 이 사건 아파트 600가구 총액 적정가로 1조 6,800억 ~ 1조 9,800억 원을 제시했다. 상·하한 가격차가 무려 18%에 달한다. 특히 전용면적 243 ~ 245㎡ 적정가는 3.3㎡당 4,600만 ~ 6,000만 원으로 제시, 30%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제6기사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제6기사 중 원심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부분은 국토교통부장관을 대신하여 이 사건 각 감정평가결과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A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정당한 보도활동의 범위 내의 것으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1)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임대주택제도의 취지를 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분양전환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분양전환가격의 산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임대사업자와 입주자들 사이에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야기하게 된다.
- (2) 이와 관련하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하기 위해 그 기초가 되는 감정평가금액 중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 사이에 10%를 초과하는 편차가 발생하게 되면 재평가를 거치게 함으로써 분양전환가격이 자의적으로 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 (3)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결과 사이에 10%를 넘는 편차가 발생하더라도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임대사업자와 입주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만을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 (4)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을 대신하여 감정평가결과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는 A가 제시한 적정가격의 상·하한 사이에 편차가 커지게 되면 이는 자의적으로 산정된 분양전환가격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 (5) 피고는 ① 2014. 7. 10.자 기사, ② 이 사건 제1기사, ③ 이 사건 제6기사를 통해 A가 제시한 적정가격에 위와 같은 문제가 있음을 순차적으로 지적하는 과정에서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 감정평가금액 사이에 10%를 초과하는 편차가 발생하게 되면 재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A가 제시한 적정가격의 상·하한은 지나치게 폭이 넓다’라고 표현하였어야 하는 것을 ‘A가 제시한 적정가격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상·하한 가격차 범위 10%를 위반하였다’고 잘못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 (6) 피고가 A가 제시한 적정가격의 상·하한 사이에 상당한 편차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기초로 삼은 사실관계 자체는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전체 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아 보인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환송후심 판결문

사	건	2019나24101 손해배상(기)
		2019나24118(병합) 손해배상(기)
		2019나24125(병합) 손해배상(기)
		2019나24132(병합) 손해배상(기)
		2019나24149(병합) 손해배상(기)
		2019나24156(병합) 손해배상(기)
		2019나24163(병합) 손해배상(기)
		2019나24170(병합) 손해배상(기)
		2019나24187(병합) 손해배상(기)
		2019나24194(병합) 손해배상(기)
		2019나24200(병합) 손해배상(기)
		2019나24217(병합) 손해배상(기)
		2019나24224(병합) 손해배상(기)
		2019나24231(병합) 손해배상(기)
		2019나24248(병합) 손해배상(기)
		2019나24255(병합) 손해배상(기)
		2019나24262(병합) 손해배상(기)
		2019나24279(병합) 손해배상(기)
		2019나24286(병합) 손해배상(기)
		2019나24293(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해산된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A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머니투데이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4가합9858, 9988(병합), 9995(병합), 10001(병합), 10018(병합), 10025(병합), 9902(병합), 9926(병합), 9957(병합), 9889(병합), 9933(병합), 9940(병합), 10032(병합), 10049(병합), 9896(병합), 9865(병합), 9964(병합), 9971(병합), 9872(병합), 9919(병합) 판결
환송 전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6. 11. 16. 선고 2016나21125, 21132(병합), 21149(병합), 21156(병합), 21163(병합), 21170(병합), 21187(병합), 21194(병합), 21200(병합), 21217(병합), 21224(병합), 21231(병합), 21248(병합), 21255(병합), 21262(병합), 21279(병합), 21286(병합), 21293(병합), 21309(병합), 21316(병합)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72342, 272359(병합), 272366(병합), 272373(병합), 272380(병합), 272397(병합), 272403(병합), 272410(병합), 272427(병합), 272434(병합), 272441(병합), 272458(병합), 272465(병합), 272472(병합), 272489(병합), 272496(병합), 272502(병합), 272519(병합), 272526(병합), 272533(병합) 판결
변 론 종 결	2019. 9. 18.
판 결 선 고	2019. 10. 3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피고 패소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이 부분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위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하여, 환송 전 당심에서의 주위적 청구취지는 별지 1-1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예비적 청구취지는 별지 1-2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각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2-1 내지 2-8 기재 각 기사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피고가 위 각 기사와 같은 허위내용의 보도를 통해 원고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위 각 기사에 관한 정정보도 및 그에 기초한 이행강제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원고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위 각 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위 각 기사에 관한 반론보도 및 그에 기초한 이행강제금의 지급을 구하며, 더불어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가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보도 내지 제보 등을 통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① 별지 2-2 기사와 별지 2-3, 2-6 각 기사의 일부에 관한 각 주위적 정정보도 청구, ② 별지 2-3, 2-6 각 기사의 일부, 별지 2-4, 2-5 각 기사에 관한 각 예비적 반론보도 청구, ③ 위 정정보도 청구와 반론보도 청구에 관한 각 해당 이행강제금 청구, ④ 원고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중 별지 2-6 기사의 일부인 ‘원고가 제시한 적정가격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상·하한 가격차의 범위인 10%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된 부분(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는 환송 전 판결 중 피고가 패소한 위 주위적 정정보도 청구 부분과 그 이행강제금 청구 부분 및 위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위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환송판결로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위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파기 환송된 부분, 즉 이 사건 기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6행부터 끝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감정평가사들에 대한 수사 등

이 사건 각 감정평가를 수행한 일부 감정평가사들에 대하여 부동산공시법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B는 2014. 9. 1. 서울동부지방법검찰청으로부터 'B가 의뢰인으로부터 허위감정의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라는 취지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 감정평가를 실시한 C와 D는 2015. 1. 30.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으로부터 금원을 받는 대가로 △△△△의 평가액을 고의로 낮게 평가하였다는 취지의 배임수재, 부동산공시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88호 사건에서 2016. 9. 29. C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D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 선고받았다. 이에 C와 D가 서울고등법원 2016노3226호로 항소하자, 위 항소심 법원은 2019. 2. 12. ○○감정과 □□감정이 얻은 이익을 C, D가 얻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임수재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C, D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C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D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C와 D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 2019도3595호로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다.

2) B, E의 행정소송

가) ○○○○ 감정평가를 수행한 감정평가사 B는 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6076호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5. 6. 25. 위 업무정지처분의 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7. 10. 확정되었다.

나) ●● 감정평가를 수행한 E는 업무정지 2개월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6090호로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5. 4. 23.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서울고등법원 2015누41908호로 항소하여 2015. 12. 18. 위 업무정지처분의 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 2016두31975호 사건에서 2016. 5. 12. 심리불속행 기각판결로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각 기사 보도 내용¹⁶⁾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상·하한 가격 차이 10%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가격 산정기준으로서 그 적용대상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이고, 민간 임대주택인 △△△△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 타당성 조사는 사후검증 성격이므로 복수 감정평가액의 10% 차이가 발생할 경우 재평가하는 규정은 타당성 조사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허위 내용의 보도 내지 제보를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기사는 ‘비록 민간 임대주택인 △△△△에 관하여 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원고가 타당성 조사에서 제시한 적정가격의 상·하한이 18%에 달하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등 통상적인 감정평가의 경우 상·하한 격차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고, 이러한 고무줄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임대주택법의 적용대상에 민간 임대주택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다소 과장하거나 또는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보도의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5. 판단

가. 이 사건 기사가 허위 사실인지 여부

위 기초사실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적정가격 범위의 상한 가격은 1조 9,800억원, 하한 가격은 1조 6,800억원이고, 그 격차율은 약 18%((1조9,800억원/1조 6,800억원)-1)의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기사에서 언급되는 법령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

16) 이 사건 각 기사 보도 내용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이나,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 내용은 서로 관련이 있으므로 그 내용을 기재한다.

전환가격의 산정기준(제9조 관련) 2. 나. 3)항 부분인데, 이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있어 임대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정하고, 여기서 감정평가액은 임대주택법¹⁷⁾ 제21조 제9항에 따라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 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이 때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평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원고(부동산공시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¹⁸⁾ 제81조 제2항 제9호, 제82조 제3항)에게 재평가 이전의 감정평가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적용대상인 공공건설 임대주택이 아니고, 위 100분의 110 비율의 적용은 타당성 조사의 대상인 감정평가업체의 감정평가금액의 비교 비율을 의미하는 것일 뿐, 타당성 조사에서 제시한 적정가격의 상·하한의 범위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적정가격 범위의 상·하한의 차이가 18%나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는 허위 사실의 적시로 봄이 타당하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1) 관련 법리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대신하여 이 사건 각 감정평가결과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A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정당한 보도활동의 범위 내의 것으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①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임대주택제도의 취지를 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분양전환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분양전환가격의

17) 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18) 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산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임대사업자와 입주자들 사이에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야기하게 된다.

- ② 이와 관련하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하기 위해 그 기초가 되는 감정평가금액 중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 사이에 10%를 초과하는 편차가 발생하게 되면 재평가를 거치게 함으로써 분양전환가격이 자의적으로 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 ③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결과 사이에 10%를 넘는 편차가 발생하더라도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임대사업자와 입주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만을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 ④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을 대신해 감정평가결과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는 주식회사 A가 제시한 적정가격의 상·하한 사이에 편차가 커지게 되면 이는 자의적으로 산정된 분양전환가격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 ⑤ 피고는 ㉠ 2014. 7. 10.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감정평가금액 가운데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를 초과하게 되면 재평가를 하게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 2014. 7. 21. ‘감정원이 제시한 적정가격조차 하단 대비 18% 격차를 보인 데 따른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다. 통상 범위가 10% 이상이면 재검정을 한다는 점에서 감정원이 내놓은 적정가격 역시 고무줄이란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제1기사를, ㉢ 2014. 7. 29. ‘감정원이 제시한 적정가격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상·하한 가격차 범위 10%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원은 이 사건 아파트 600가구 총액 적정가로 1조 6,800억 원~1조 9,800억 원을 제시했다. 상·하한 가격차가 무려 18%에 달한다. 특히 전용면적 243㎡~245㎡ 적정가는 3.3㎡당 4,600만 원~6,000만 원으로 제시, 30%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제6기사를 순차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피고는 주식회사 A가 제시한 적정가격에 위와 같은 문제가 있음을 순차적으로 지적하는 과정에서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 감정평가금액 사이에 10%를 초과하는 편차가 발생하게 되면 재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감정원이 제시한 적정가격의 상·하한은 지나치게 폭이 넓다.’라고 표현하였어야 하는 것을 ‘감정원이 제시한 적정가격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상·하한 가격차 범위 10%를 위반하였다.’고 잘못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 ⑥ 피고가 주식회사 A가 제시한 적정가격의 상·하한 사이에 상당한 편차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기초로 삼은 사실관계 자체는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전체 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아 보인다.

다. 소결

결국 원고의 이 사건 기사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원인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주위적 청구가 위와 같이 위법성이 조각되어 이유 없는 이상 예비적 청구 또한 이유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6. 결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피고 패소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이 부분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1〉 환송 전 당심의 주위적/예비적 청구취지 생략

〈별지2〉 대상기사 생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0. 선고 2017가단514746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8나47501 판결

언론사 기사를 링크하며 기사의 제목과 본문 중 일부를 발췌하여 트위터에 게시했다면 해당 매체의 특성상 링크된 기사와는 달리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

- 원고 : A
- 피고 : 주식회사 여성신문사

[사실관계]

피고는 2017년 7월 25일 <인터넷 여성신문>에 “[기고] 제가 바로 A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공동으로 출간한 대담집 내용을 비판하는 취지의 기사를 게시하였으며 피고의 트위터 계정에도 같은 기사를 “제가 바로 A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피고가 게시한 기사의 제목이 내용과는 별도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그러나 2심 법원은 피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사는 그 제목이 본문으로부터 현저히 일탈하고 있지 않아 그 제목 자체만으로 독립된 기사로 여기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트위터에 제목을 게시하고 원 보도의 링크를 붙여 게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체의 특성상 독자들이 본문을 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점, “[기고]”라는 표현을 붙이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허위사실 적시로 보아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결요지]

□ 피고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기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40자 이내의 단문으로 생각이나 의견 등을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매체인 트위터에서는 사용자가 언론사의 기사를 접하는 일반 독자와 달리 링크를 통하여 이 사건 홈페이지 기사 내용까지 확인하지 않고 트위터에 게재된 글 자체만 확인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홈페이지 기사의 제목과 달리 머리말에 [기고]라는 표현을 덧붙이지 않았고, 비록 트위터에서 한 번에 쓸 수 있는 글자 수가 최대 140자라고 하더라도 “너무나 아픈 상처라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제 스스로도 애써 잊고 살려했지만...이렇게 털어놓아 봅니다”라는 부분만 발췌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발언에 등장하는 여중생과 실제로 성관계를 하였고, 이 사건 트위터 기사에 링크된 글의 기고자가 그 여중생이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암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심 판결문

사	건	2017가단5147460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여성신문사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5. 15.
			2018. 7.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8.부터 2018. 7.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 가. 원고는 공연기획·연출자 겸 ○○○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하다가, 2017. 5.경부터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재직중이다. 피고는 1988년경 창간한 이래 여성의 권익 향상을 주요 목적으로 주 1회 지면을 발행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온라인 기사를 게재하는 신문사이다.
- 나. 원고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단독 또는 공동 출간으로 총 9권의 저서를 발간하는 등 왕성한 집필활동을 하였는데, 2007. 9.경 30대 직장인 남녀 4명(남성 2명, 여성 2명)이 성적 취향과

이성 관계, 직장 스트레스, 결혼과 출산, 육아 등을 주제로 ‘세상의 금기에 도전한다’는 목표하에 자유롭게 이야기를 한 후 그 대화 내용을 대화집 형식으로 엮어 발간한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 - 수상한 남녀들의 오만방자 폭로담(지은이 D, E, F, A. 퍼넨곳 △△출판사)』라는 책(이하 ‘이 사건 책’이라 한다)의 대화참여자 겸 공동저자 중 1명으로 참여하였다.

- 다. 이 사건 책에서 대화참여자들 이 성적 취향을 주제로 첫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별지1] 기재와 같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생 3학년 여자애랑 자랐다고 자랑하는 친구의 말을 듣고 그 여학생에게 요구하여 성관계를 하였는데, 나는 첫 경험이었으나 상대 여학생은 친구들이 섹스 대상으로 공유했던 쿨한 여자였고, 나는 그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친구들 중 4번째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마치 자신의 경험인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 라. 이후 원고가 2017. 5.경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임명되자, 2017. 5.경부터 국회의원, 여성단체, 여성기고가 등이 위 다.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발간했던 저서 중 ‘남자 마음 설명서’,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 ‘상상에 권력을’ 등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 중 일부가 왜곡된 성인식 및 여성관, 여성비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와대에 근무하는 공직자로서 의 적합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를 계기로 2017. 6. 20.자 경향신문 등 여러 일간지와 인터넷 언론을 통하여 원고가 저서를 통하여 언급한 내용들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알게 된 적지 않은 시민들은 원고를 비난하며 공직자로서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
- 마. 이와 같이 원고의 저서에 수록된 내용으로 인하여 파문이 일자, 원고는 2017. 7. 14.자 경향신문 인터뷰를 통하여 2017. 6. 20.자 경향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해명 및 사과를 하면서, 이 사건 책에서 언급한 고교시절 여중생과의 성경험 이야기는 전부 꾸며낸 내용(픽션)이라는 점을 밝혔고, 이와 같은 원고의 해명 및 사과 내용은 그 무렵 경향신문은 물론 다른 언론사를 통하여 보도되었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책의 발간시, 원고가 직접 쓴 이 사건 책의 말미에 있는 에필로그를 통해 “대부분의 수다가 그러하듯 실컷 쏟아낸 말들 중에는 때로는 새빨간 거짓말도 있고, 다소 과장하거나 아예 숨김 것들도 있고, 차마 못할 말도 있고, 꼭 했어야 하는데 빠진 말들도 있다. 그래서 정리된 말들을 읽으면서 느끼는 기분은 당혹스러움이다. 이런 말도 했나 싶고, 이런 말을 왜 했는지 싶은 것들이 자꾸만 거슬린다”라고 기재한 바 있다.
- 사. 피고는 2017. 7. 24. 호주 시드니에 거주한다는 C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기고자가 [별지2] 피고 홈페이지 기사 중 본문에 해당하는 기고문(이하 ‘이 사건 기고문’이라 한다)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체 공개로 올린 다음 2017. 7. 25. 02:23경 피고 담당자와의 메시지 연락을 통해 피고 인터넷 신문에의 게재를 수락하자, 2017. 7. 25. 11:30경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고] 제가 바로 A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별지2] 피고 홈페이지 기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아울러 피고는 피고의 트위터 계정에도 [별지3] 기재와 같이 『제가 바로 A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제목과 그에 연이은 “너무나 아픈 상처라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제 스스로도 애써 잊고 살려 했지만... 이렇게 털어놓아 봅니다.”라는 요약 인용 문구를 사용하여 기사(이하 ‘이 사건 트위터 기사’라 한다)를 게시하고 본문 내용은 링크(womennews.co.kr/news/115883)를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 기사와 트위터 기사를 통합하여 언급할 경우에는 ‘이 사건 기사’라 한다).

- 아. 피고는 이와 같은 기사의 제목이 논란이 되자 2017. 7. 25. 20:13경 피고 홈페이지 인터넷 기사의 제목과 내용에서 “제가 바로 A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문구를 삭제한 다음 제목을 『[기고] 그 ‘여중생’은 잘못이 없다 - ‘A 논란’에 부쳐』라는 문구로 바꾸고, 기사 초입 부분에 “기고자가 글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제목으로 인해 잘못 읽힐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목과 내용 일부를 수정했습니다.”는 안내 문구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트위터 계정에는 아직도 [별지 3]과 같은 최초 기사 게시물이 그대로 게시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13호증, 제14호증 내지 16호증, 을 제6호증 내지 제13호증, 제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피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인터넷 언론의 특성상 독자 대부분이 언론 기사를 접할 때 기사의 제목만을 보고 구체적인 내용을 잘 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기사 제목으로 “A의 그 ‘여중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단순한 비유적이고 압축적인 표현의 한계를 벗어난 악의적인 보도로서 그 자체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기사에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원고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인격권 침해의 손해는 원고 자신이 발간한 여러 저술 내용으로 인한 것일 뿐 이 사건 기사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기사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없다. 또한 이 사건 기사의 게재·게시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법리

언론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적인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독자들이 보통의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통상 기사를 읽는 방법에 의하여 그 기사로부터 받을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한편, 언론기사의 제목은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단적으로 표시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본문을 읽게 하려는 의도로 붙여지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목만을 따로 떼어 본문과 별개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고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기사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제목이 본문의 내용으로부터 현저히 일탈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별개의 독립된 기사로 보지 않을 수 없거나 일반 독자가 그에 대하여 일정한 고정관념을 가지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목의 게재행위 자체만으로도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4624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참조).

또한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1) 우선, 이 사건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책에 언급된 여중생과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사건 기고문의 내용을 끝까지 읽어보면, 기고자는 단순히 기고자 자신이 중학생 때 성폭행당한 경험을 언급하면서 성범죄 피해자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내용의 책을 펴낸 원고에 대한 사과 촉구와 성범죄 피해 여성의 보호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기고자는 원고가 이 사건 책을 통하여 첫 성경험 대상으로 지목하였던 여중생과는 동일인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피고는 이 점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기고문을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트위터 계정에 기사로 게재하면서 제목을 『[기고] 제가 바로 A의 그 ‘여중생’입니다』라고 붙였는바, 이와 같은 기사의 제목은 기고자가 바로 이 사건 책에서 언급된 원고와 첫 경험을 가진 여학생인 것처럼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목은 본문의 내용으로부터 현저히 일탈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허위사실을 기재한 별개의 독립된 기사로 볼 수 있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홈페이지 기사에 대하여 본다.

또한 이 사건 홈페이지 기사를 제목과 본문을 함께 보더라도, 이 사건 홈페이지 기사의 본문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기고문은 “제가 바로 A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문장을 제목에 갈음하는 첫 문장으로 시작하면서, 첫 단락에서 ‘A 사건’과 이 사건 책에서 원고가 이야기한 내용과 원고에 대한 비판적 칼럼 등을 언급한 다음 이어서 기고자가 중학생 때 여러 고등학생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경험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읽는 일반 독자들로서는 주의를 가지고 끝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보지 않는다면, 이 사건 기사의 제목과 본문 초반부의 내용을 통하여 이 사건 기고문의 기고자가 바로 이 사건 책에서 언급된 여중생이라는 인상을 받을 여지도 있는바, 이 점에서도 이 사건 기사의 제목과 본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나아가 이 사건 트위터 기사에 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트위터 기사는 본문 내용을 볼 수 있는 피고 트위터 계정 링크(womennews.co.kr/news/115883)를 기재하고 있긴 하지만, 트위터 계정 초기 화면에는 『제가 바로 A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제목과 그에 연이은 “너무나 아픈 상처라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제 스스로도 애써 잊고 살려 했지만... 이렇게 털어놓아 봅니다.”라는 본문 인용 문구를 사용하여 이 사건 트위터 기사를 게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트위터 기사는 제목 자체만으로도 별개의 독립된 기사로서의 의미와 기능을 하고 있고, 이를 제목 아래 덧붙여진 위 인용문구와 함께 보면, 이 사건 트위터 기사를 본 일반 독자로 하여금 기고자가 이 사건 책에서 언급된 여중생이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게 할 우려가 이 사건 홈페이지 기사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높다. 그렇다면 이 사건 트위터 기사 역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마지막으로 공공의 이익에 의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언론 매체의 기사제재 등 보도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기고문의 기고자가 이 사건 책에서 원고가 언급한 여중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어느 모로 보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의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기사는 원고가 이 사건 책에서 언급한 여중생과의 성경험이 꾸며낸 이야기라는 점을 이미 수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독자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원고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거짓 해명인양 인상을 받도록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허위사실의 적시는 특히 공직에 취임하게 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의 사건 기사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다만, 일반 독자에 의하여 이 사건 기고문이 작성되고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기사가 게재·게시된 것은, 원고가 양성평등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꾸며낸 허위 내용을 소재로 하여 상업적인 목적으로 마치 사실인양 포장하여 책자 형태로 발간함으로써 여성관에 대한 비판을 스스로 자초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과 원고의 사회적 지위, 이 사건 기사가 게재·게시된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기사가 게재·게시된 이후의 피고의 대응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액은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분이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7. 8. 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7. 1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대상저서 발췌 생략

〈별지2~3〉 대상기사 생략

2심 판결문

사 건 2018나47501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여성신문사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0. 선고 2017가단5147460 판결
변 론 종 결 2019. 9. 5.
판 결 선 고 2019. 11. 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8.부터 2019. 11. 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원고는 공연기획자로서 ○○○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하다가 2017. 5.경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별정직공무원 2급)으로 임명되었고, 2019. 1.경 퇴임하였다.
- 피고는 여성의 권익 향상 등을 목적으로 주간지 여성신문을 발행하고, 여성신문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womennews.co.kr>)를 운영하는 언론사이다.

나. 원고의 저서

- 원고는 2007. 9.경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 - 수상한 남녀들의 오만방자 폭로담』이라는 저서(이하 ‘이 사건 저서’라 한다)를 공동으로 출간하였다. 이 사건 저서는 공동저자 4명이 30대 직장인 남녀(남성 2명, 여성 2명)의 성적 취향과 이성 관계, 직장 스트레스, 결혼과 출산, 육아 등의 주제에 관하여 자유롭게 이야기를 한 내용을 대화집 형식으로 발간한 것이다.
- 이 사건 저서 중 저자들이 성적 취향을 주제로 첫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부분에는 원고가 [별지1] 기재와 같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여자애랑 자랐다고 자랑하는 친구의 말을 듣고 그 여학생에게 요구하여 성관계를 하였는데, 나는 첫 경험이었으나 상대 여학생은 친구들이 섹스 대상으로 공유했던 쿨한 여자였고, 나는 그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친구들 중 4번째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내용(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다.
- 이 사건 저서 중 말미에 있는 에필로그 부분에서 원고는 “대부분의 수다가 그러하듯 실컷 쏟아낸 말들 중에는 때로는 새빨간 거짓말도 있고, 다소 과장하거나 아예 숨긴 것들도 있고, 차마 못할 말도 있고, 꼭 했어야 하는데 빠진 말들도 있다. 그래서 정리된 말들을 읽으면서 느끼는 기분은 당혹스러움이다. 애초에 말을 글로 옮긴다고 했을 때부터 염두에 두었어야 했던 것이다. 그러니 독자들은 모조록 이 글을 글로 읽지 말기 바란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책의 독법은 글을 말로 바꾸는 데서 시작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발언 및 저서 관련 논란 및 그 해명

- 원고가 2017. 5.경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임명되자 그 즈음부터 국회의원, 여성단체 등이 이 사건 저서의 이 사건 발언 등을 포함하여 원고가 그간 발간했던 저서의 내용들이 원고의 왜곡된 성인식 및 여성관을 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고가 청와대에 근무하는 공직자로서 적합한지 여부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 2017. 5.경부터 피고가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한 2017. 7. 25.경까지 경향신문 등 여러 일간지와 인터넷 언론은 원고가 그간 발간했던 저서를 통하여 언급한 내용을 보도하였고, 특히 이

사건 발언과 관련하여는 그 내용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전제한 후 원고의 성인식 등을 비판하였다. 특히 B라는 기고자는 2017. 6. 22. 허핑턴포스트 코리아라는 인터넷 언론사에 원고의 이 사건 발언 관련 논란에 대하여 “그 중3 여학생은 그때 정말 쿨했을까”라는 제목의 기고를 하였다.

- 위와 같이 원고의 저서에 수록된 내용으로 인하여 논란이 일자 원고는 2017. 7. 14.자 경향신문 인터뷰를 통하여 2017. 6. 20.자 경향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해명 및 사과를 하면서, 이 사건 발언은 전부 꾸며낸 내용(픽션)이라는 점을 밝혔고, 이와 같은 원고의 해명 및 사과 내용은 그 무렵 경향신문은 물론 다른 언론사를 통하여 보도되었다.

라. 이 사건 각 기사의 게재

- 피고는 2017. 7. 25. 11:30경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C라는 필명을 사용한 기고자(이하 ‘기고자’라고만 한다)가 위 다.항 기재 B의 기고문을 읽고 2017. 7. 24.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재한 글(이하 ‘이 사건 기고문’이라 한다)을 [별지2] 기재와 같이 게재(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 기사’라고 한다)하면서 그 제목을 『[기고] 제가 바로 A의 그 ‘여중생’입니다.』라고 붙였다.
- 또한 피고는 그 무렵 피고의 트위터 계정에 [별지3] 기재와 같은 글을 게재(이하 ‘이 사건 트위터 기사’라 하고, 이 사건 홈페이지 기사와 함께 칭할 경우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하고 링크(wommenews.co.kr/news/115883)를 클릭하면 이 사건 홈페이지 기사를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사건 트위터 기사에는 별도의 제목을 붙이지는 아니하였다.

마. 이 사건 각 기사의 수정 및 삭제

- 피고는 이 사건 각 기사의 제목에 관하여 논란이 일자 2017. 7. 25. 20:13경 이 사건 홈페이지 기사의 제목과 내용에서 『제가 바로 A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문구를 삭제한 다음 제목을 『[기고] 그 ‘여중생’은 잘못이 없다 - ‘A 논란’에 부쳐』라는 문구로 바꾸고, 기사 초입 부분에 “기고자가 글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제목으로 인해 잘못 읽힐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목과 내용 일부를 수정했습니다.”는 안내 문구를 추가하였다.
- 이 사건 트위터 기사는 2019. 1. 9.경 삭제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13호증, 을 제6 내지 13,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 원고는 이 사건 발언에 등장하는 여중생과 성관계를 하거나 집단으로 성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발언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자 위 발언이 꾸며낸 이야기(픽션)라는 점을 밝혔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기사의 제목을 『제가 바로 A의 그 ‘여중생’입니다』라고 사용하였는데, 정작 그 본문의 내용은 기고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관계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기사의 제목과 전혀 별개의 내용이다.

- 피고는 이 사건 각 기사의 제목을 위와 같이 적시함으로써 마치 원고가 이 사건 발언에 등장하는 여중생과 실제로 성관계를 하였고, 기고자가 그 여중생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암시하였다.
- 이는 피고의 언론사로서의 지위를 감안하더라도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써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기 때문에, 피고의 이 사건 각 기사의 게재행위는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

- 이 사건 각 기사의 제목 내지 본문에는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고자가 사용한 기고문의 제목을 그대로 기사의 제목으로 사용한 것일 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암시한 것이 아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인격권 침해의 손해는 원고가 기존에 발간하였던 저서들의 내용으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 각 기사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한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 이 사건 각 기사의 게재행위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3. 이 사건 홈페이지 기사의 제목이 별개의 독립한 기사인지 여부

- 언론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적인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독자들이 보통의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통상 기사를 읽는 방법에 의하여 그 기사로부터 받을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한편, 언론기사의 제목은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단적으로 표시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본문을 읽게 하려는 의도로 붙여지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목만을 따로 떼어 본문과 별개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고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기사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제목이 본문의 내용으로부터 현저히 일탈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별개의 독립된 기사로 보지 않을 수 없거나 일반 독자가 그에 대하여 일정한 고정관념을 가지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목의 게재행위 자체만으로도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고(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4624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참조), 언뜻 보기에는 이 사건 홈페이지 기사의 제목과 내용이 다소 동떨어진 것으로 보일 여지도 있기는 하다.
-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기고자는

자신의 성폭력 피해 경험과 이 사건 발언의 내용이 유사한 것에 주안점을 두고, 원고의 이 사건 발언 등 원고의 저서에 대한 내용을 비판하고, 기고자와 비슷한 유사한 경험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성범죄 피해 여성들의 보호 필요성과 그들과의 연대의식을 표현하는 기고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단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제목을 『제가 바로 A의 그 ‘여중생’입니다』라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기고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기고문인 취지를 밝히기 위하여 기고자가 사용한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되 제목 앞부분에 “[기고]”라는 표현을 덧붙여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홈페이지 기사를 읽은 일반적인 독자들이 그 제목과 본문의 내용이 전혀 별개의 내용으로서 관련이 없다거나 그 제목이 본문으로부터 현저히 이탈하여 그 제목 자체만으로 독립된 기사로 여길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각 기사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도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 한편 언론, 출판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

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명예훼손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 29379 판결).

나. 이 사건 홈페이지 기사

- 이 사건 홈페이지 기사에는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 물론 이 사건 홈페이지 기사의 제목 부분만을 한정하여 보면 독자들이 마치 원고가 이 사건 발언에 등장하는 여중생과 실제로 성관계를 하였고, 이 사건 각 기사의 기고자가 그 여중생인 것처럼 오해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서 나타나는 이 사건 홈페이지 기사 게재공간의 특성,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홈페이지 기사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홈페이지 기사는 피고의 오피니언란 부분에 기고자의 글을 소개한 것으로 기사 말미에도 외부기고문임을 밝히고 있다. 통상 신문이나 잡지에서 오피니언란에는 개인이나 단체의 주장이나 의견을 적은 글이 실리고, 일반 독자들 또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사의 내용을 접하게 된다.
- 기고자는 자신의 성폭력 피해 경험과 이 사건 발언의 내용이 유사한 것에 주안점을 두고, 원고의 이 사건 발언 등 원고의 저서에 대한 내용을 비판하고, 기고자와 비슷한 유사한 경험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성범죄 피해 여성들의 보호 필요성과 그들과의 연대의식을 표현하는 기고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단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제목을 “제가 바로 A의 그 ‘여중생’입니다”라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른바 “내가 ○○○이다”라는 표현은 범죄 피해자, 사회적 약자 내지 소수자 사이의 연대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통용되고 있는 문구이다.
- 일부 독자들은 이 사건 홈페이지 기사를 읽은 다음 피고에 대하여 기사의 제목과 본문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비판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바로 제목을 수정하기까지 하였는바, 위와 같은 비판이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일반 독자들이 통상의 방법으로 이 사건 홈페이지 기사를 접하였을 때 위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고가 이 사건 발언에 등장하는 여중생과 실제로 성관계를 하였고, 이 사건 각 기사의 기고자가 바로 그 여중생이다’의 의미로 받아들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 원고는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서 이 사건 발언을 포함한 원고의 저서들

중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은 공직자의 가치관, 도덕성 내지 성 인식에 관하여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사건 홈페이지 기사의 본문의 내용이 비록 원고의 이 사건 발언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내용이기도 하나, 기고자가 원고의 위 발언과 유사한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발언 등 원고의 저서의 내용에 비추어 추단할 수 있는 원고의 성인식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또한 위와 같은 기고자의 의도가 피고의 편집 방향 내지 정체성과 부합한다는 판단 하에 이를 기고문 형식으로 게재한 이상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형식의 비판에 다소 경솔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바로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아니 되며, 찬반 토론 내지 비판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라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트위터 기사

- 그러나 이 사건 트위터 기사의 경우 그 매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앞서 살핀 이 사건 홈페이지 기사와 달리 보아야 한다.
- 이 사건 홈페이지 기사가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오피니언란에 게재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트위터 기사는 트위터라는 매체에 게재되어 있다. 이 사건 트위터 기사에는 이 사건 홈페이지 기사로 연결되도록 링크되어 있어, 트위터 사용자가 위 링크를 통하여 이 사건 홈페이지 기사까지 접하면 오해의 여지가 해소될 여지가 있기는 하나, 140자 이내의 단문으로 생각이나 의견 등을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매체인 트위터에서는 사용자가 언론사의 기사를 접하는 일반 독자와 달리 링크를 통하여 이 사건 홈페이지 기사 내용까지 확인하지 않고 트위터에 게재된 글 자체만 확인할 가능성이 크다.
-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홈페이지 기사의 제목과 달리 머리말에 [기고]라는 표현을 덧붙이지 않은 채 단순히 “제가 바로 A의 그 ‘여중생’입니다.”라고 글을 시작하며 그 다음 부분에는 이 사건 홈페이지 기사 중 극히 일부분인 “너무나 아픈 상처라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제 스스로도 애써 잊고 살려했지만...이렇게 털어놓아 봅니다”라는 부분만 발췌하여 기재하였고 [별지3] 기재와 같은 그림까지 덧붙인 점, 이 사건 트위터 기사 그 자체에는 기고문이라는 취지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비록 트위터에서 한 번에 쓸 수 있는 글자 수가 최대 140자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기고자의 기고문에서 위와 같은 부분만 발췌, 인용하여 트위터 사용자로 하여금 오해할 여지가 커지도록 한 점, 당시 원고가 일반 시민들 혹은 언론사들로부터 이 사건 발언과 관련하여 그 내용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면 그러한 일에 대하여,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원고의 인식 내지 태도에 대하여 상당한 비판을 받아 왔고, 원고의 해명 인터뷰에도 이 사건 발언에 관한 의혹 내지 오해가 해소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트위터 기사는 ‘원고가 이 사건 발언에 등장하는 여중생과 실제로 성관계를 하였고, 이 사건 트위터 기사에 링크된 글의 기고자가 그 여중생이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암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암시된 사실은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다.

5. 위법성 여부

- 어떠한 표현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는 위법성이 없고(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고위공직자로서 원고의 가치관, 도덕성, 성인식 등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트위터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 그러나 이 사건 트위터 기사를 통하여 암시된 사실, 즉 원고가 이 사건 발언에 등장하는 여중생과 실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트위터 기사에 링크된 글의 기고자가 그 여중생이 아니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또한 이 사건 트위터 기사가 그러한 암시를 주고 있지 아니하다고 다투고 있을 뿐 원고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트위터 기사 게재 전에 확인하였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트위터 기사에 관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6.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앞서 본 바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트위터 기사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피고의 행위는 기고자가 작성한 이 사건 기고문을 자신의 트위터에 요약하여 게재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지 스스로 취재를 통하여 악의적으로 작성한 기사는 아닌 점, 피고가 이 사건 각 기사의 게재에 이르게 된 것은 원고가 성인식 내지 양성평등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저서들을 발간하여 이에 대한 비판을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는 뒤늦게나마 이 사건 트위터 기사를 삭제하였고, 이 사건 홈페이지 기사에 대하여는 게재 당일 그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여 제목을 수정함으로써 이 사건 트위터 기사의 링크를 통하여 위 홈페이지 기사를 접한 일반 독자들에게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한 점 등 이 사건 각 기사의 게재 경위, 그 내용, 파급력, 위 각 기사의 게재 이후 피고의 대응, 원고의 사회적

지위를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기사 게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7. 8.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시 판결 선고일인 2019. 11. 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별지1〉 대상저서 발췌 생략

〈별지2~3〉 대상기사 생략

초상권 침해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8. 9. 선고 2018가단215568 판결

일반인의 얼굴이 담긴 제보영상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공개한 보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 원고 : A
- 피고 : B 외 2명

[사실관계]

피고 C와 D는 2018년 3월 3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피고 B가 촬영한 원고의 얼굴이 담긴 영상을 방송하였다. 이에 원고는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이 사건 방송이 원고의 공표거절권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C와 D에게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로 2심 계류 중이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나38288).

[판결요지]

□ 이 사건 방송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들(피고 C, D)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동영상의 공표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그러한 요청을 받더라도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며, 피고들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들은 원고가 국제적인 규모인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한 이 사건 합창단을 운영하는 이 사건 센터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특정 정치인의 팬클럽 대표로서 공적인 인물이라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피고들의 위 주장 사실과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공적인 인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설령 원고가 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어느 정도 공적인 인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 얼굴까지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위 피고들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고도 의도하는 대로 공익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는 방송을 할 수 있는 경우였다고 보인다. 달리 원고의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 C, 피고 D에 의한 이 사건 방송은 원고의 공표거절권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판결문

사	건	2018가단215568	손해배상
원	고	A	
피	고	1. B	
		2. C	
		3. D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6. 14.
			2019. 8. 9.

주 문

1. 피고 C, 피고 D는 각자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4.부터 2019. 8. 9.까지는 연 5%의, 2019.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C,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는 20,000,000원, 피고 C, 피고 D는 각자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내 최초의 어린이 다문화합창단인 ○○○○ 합창단(이하 ‘이 사건 합창단’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단법인 한국다문화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대표로 있는 사람이다. 피고

B는 이 사건 합창단의 단원이었던 E의 아버지이고, 피고 C는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문화방송’이라고만 한다)의 기자이며, 피고 D는 문화방송의 탐사보도부장이다.

- 나. 이 사건 합창단은 2018. 2. 9.에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의 애국가 제창(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에 초대를 받고 2017. 12. 27. 소속 단위들의 학부모들에게 “2018. 1. 31.부터 2018. 2. 10.까지 10박 11일의 일정에 단원들 식사 및 간식의 일부 비용 지원을 요청드리고자 한다”며 2018. 1. 20.을 납부 마감일로 하여 300,000원(이하 ‘이 사건 참가비’라 한다)의 입금 요청을 하는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 다. 피고 B는 2018. 1. 15.경 이 사건 센터에 방문하여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센터의 직원들에게 ‘평창에 우리 E는 왜 못 가냐, 이 사건 합창단이 개런티 받아서 어디에 쏘느냐, 아이들이 그 동안 공연하여 벌어들인 돈으로 사용하면 안 되느냐’ 등의 질문과 항의를 하고, 함께 있던 다른 단원의 학부모인 F는 ‘올림픽 조직위원회 개폐회식 운영팀이 이 사건 합창단 단원들 개인별 참가비 전액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지급한다고 답변하였고 2018. 1. 12. 이 사건 합창단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동계올림픽 관련 서류에 단원들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등 단원들 개인에게도 개런티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메일에 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이 사건 합창단의 계약서가 누락되어 있으니 이를 보여 달라’는 취지 등의 요구를 하였으나,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센터의 직원들로부터 거부를 당하였고, 그 과정에 피고 B는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센터의 직원들이 제지를 하는데도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상황을 약 4분 48초간 동영상(갑 제23호증, 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으로 촬영하였다. 이 사건 동영상에는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센터 직원들의 제지 모습 역시 촬영되어 있고, 피고 B에 대하여 학부모들을 촬영하는 것과 같은 이 사건 센터 직원들의 모습과 이러한 이 사건 센터 직원들의 촬영을 말리는 원고의 모습 역시 촬영되어 있으며 그 직후에 이 사건 동영상의 촬영이 종료되었다. 같은 날 이 사건 합창단은 피고 B의 자녀 E 등 단원 3명에 대하여 퇴단결정을 하고, 2018. 1. 16. 단원들의 학부모들에게 그 사실 및 경위에 관하여 문자메시지로 알렸다.
- 라. 피고 B는 일자 불상경 문화방송 측 기자와의 인터뷰 과정 중에 불상의 방법으로 이 사건 동영상을 전달해 주었고, 담당기자인 피고 C, 그 상급자인 피고 D는 2018. 3. 3.경 별지와 같은 기사(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그 무렵 MBC 뉴스데스크에서 3분 13초 분량의 방송(갑 제12호증)을 하도록 하였는데, 위 방송 중 18초 부분에서 50초 부분까지 약 32초간 이 사건 동영상 일부를 편집하여 사용하면서, 원고의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드러나게 하였다(이하 위 약 32초간의 방송 부분을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8, 12, 2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G,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이해

원고는, 피고 B는 이 사건 센터 직원들의 만류에도 불법적으로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나머지 피고들에게 넘기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동영상이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촬영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도 원고의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방송을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에게, 피고 B는 20,000,000원을, 나머지 피고들은 각자 2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초상권의 내용은 촬영·거절권(초상이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지 않을 권리), 초상이 공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초상이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 등으로 분류되는데,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초상권 중 촬영·거절권과 공표거절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으로,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초상권 중 공표거절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항목에 따라 판단한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촬영·거절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에 따라 개인은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한편, 위와 같은 침해행위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가해자의 이익이 있고, 이는 피해자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충돌하는 이익이 된다. 이처럼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위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 B가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센터의 직원들이 제지를 하는데도 휴대폰을 이용하여 이 사건 동영상 촬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비록 민사소송의 증거 등을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을 침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① 이 사건 합창단의 어린 단원들은 그 동안 정상적으로 활동한 경우에도 이 사건 센터 내지 이 사건 합창단에 이 사건 참가비를 내지 않으면 국제적인 규모의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일생의 기회를 잃게 되는 상황이었던 점, ②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이 사건 행사의 참여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는 정보를 접한 이 사건 합창단 단원들의 학부모들로서는 이 사건 합창단의 이 사건 참가비 요구의 정당성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보이는데, 피고 B가 2018. 1. 15. 이 사건 센터에 방문한 당일까지도 위와 같은 의문 등이 오해라면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한 이 사건 센터의 충분한 조치가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원고는 이 사건 센터가 학부모회의 등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7. 12. 9., 같은 달 23., 2018. 1. 6. 세 차례 학부모회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017년도의 두 차례 학부모회의는 이 사건 참가비의 입금 요청을 알리는 가정통신문이 발송된 2017. 12. 27. 이전에 개최된 것이다. 2018. 1. 6.자 마지막 학부모회의는 위 가정통신문 발송 이후에 개최되었으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9. 1. 11.부터 같은 달 19.까지 사이에 올림픽조직위원회 계약서를 작성하며 ‘학부모님들에게 계약서의 상세 내용은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도록 안내한다’고 이 사건 센터의 지침이 정해져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안내기간 이전에 개최된 2018. 1. 6.자 학부모회만으로도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한편, 피고 B가 이 사건 센터 방문은 위 안내기간 중인 2019. 1. 15.에 있었던 것이다), ③ 만약 이 사건 참가비의 요구가 정당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 사건 참가비의 납부 자체나 미납으로 인한 이 사건 행사에서의 참여 배제 등의 조치는 민사소송 등 분쟁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서 그 과정에 관한 증거수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초상권의 내용 중 원고의 이 부분 피해영역은 다른 초상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낮고, 피고 B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를 촬영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센터에 방문한 시점부터 전 과정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언쟁이 격화되는 과정에 원고 개인의 사적인 생활관계를 탐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와 같은 언쟁 상황에 대하여 촬영 사실 자체를 숨기지 아니한 상태에서 촬영을 시작한 것이고, 원고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곧 이 사건 동영상의 촬영을 종료하여 그 분량은 약 4분 48초에 불과하였으며, 당시 이 사건 센터의 직원들 역시 피고 B의 촬영에 대항하여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촬영하고자 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B의 이 사건 동영상 촬영 행위는 증거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부득이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동영상 촬영으로 원고의 촬영·거절권이 침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는 그 행위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 등을 참작할 때 원고가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이므로, 피고 B의

이 사건 동영상 촬영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나. 공표거절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가 문화방송 측 기자에게 이 사건 동영상을 전달해주어 나머지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는 이 사건 방송을 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방송을 함에 있어 얼굴 노출 여부 등의 문제는 정보제공자가 관여할 수 없는 방송에 전문성이 있는 방송사의 전적인 결정 영역에 속하는 점, 피고 B가 문화방송 측 기자에게 이 사건 동영상을 전달해 줄 당시에는 그 상황과 정보의 전달에 주된 목적이 있었지 원고의 얼굴 노출 등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B가 문화방송 측 기자에게 이 사건 동영상을 전달해 줌에 있어 이를 사용하는 언론보도가 있을 수 있다고 예견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원고의 얼굴까지 방송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방송 중 원고의 얼굴이 노출된 점에 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표거절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보듯이 이 사건 동영상은 촬영·거절권 침해로 생성된 위법한 동영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공표거절권은 촬영·거절권과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위법하지 않은 동영상이라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공표함에 따라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 피고 D에 의한 이 사건 방송은 원고의 공표거절권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방송의 대상 및 그 영향력, 이 사건 방송의 경위와 목적,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의 얼굴이 노출된 분량, 이 사건 방송의 전후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위자료의 수액은 10,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 (1)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동영상의 촬영을 제지하였고 이 사건 동영상에 그러한 장면까지 담겨 있다. 이 사건 동영상은 원고에게 부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동영상의 공표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그러한 요청을 받더라도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며, 피고들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2) 위 피고들은, 원고가 국제적인 규모인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한 이 사건 합창단을 운영하는 이 사건 센터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특정 정치인의 팬클럽 대표로서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공적인 인물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한 공표거절권 침해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피고들의 위 주장 사실과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공적인 인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설령 원고가 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어느 정도 공적인 인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 얼굴까지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 (3)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의 공익적인 목적에 비추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피고들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고도 의도하는 대로의 공익적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는 방송을 할 수 있는 경우였다고 보인다. 달리 원고의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 사건 보도가 원고의 얼굴을 공개한 것은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에 비하여 피해법익의 중대성,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가 더 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5. 선고 2014가합577116 판결 참조).

나. 소결론

결국 피고 C, 피고 D는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8. 5. 24.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9. 8. 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인 2019.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대상기사 생략

사생활 침해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8가합5527, 2018가합5534(병합) 판결

성희롱 피해사실을 공개하여 사생활을 침해한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필요최소한의 정보만을 공개하였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 원고 : A
- 피고 : 주식회사 SBS 외 1명

[사실관계]

피고 주식회사 SBS는 2018년 4월 1일 <SBS 8시 뉴스> 등에서 ‘원고를 비롯한 여성 직원들이 회사에서 성희롱 피해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퇴사하였다’는 취지의 방송을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원고와 관련된 성희롱 피해 사실을 적시한 것이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기사의 취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라고 보아 사생활 침해 역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심 법원 역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51100).

한편 원고는 소 제기애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여 피고에게 기사열람차단과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으나 피고가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2018서울조정1286, 2018서울조정1287).

[판결요지]

□ 원고가 언론사나 국민권익위원회에 피해사실을 제보한 적이 없음에도 제보한 것처럼 보도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
는지 여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뉴스에서 원고에 의한 위와 같은 제보나 인터뷰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하
다는 사정을 함께 적시한 것이 아닌 이상, 단순히 국가기관에 제보하였다거나 공중파 방송과 인터뷰를 했다는, 진실
과 다른 사실의 적시만으로 원고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성희롱 피해 사실을 보도하여 사생활을 침해한 이 사건 기사의 위법성 조각 여부

이 사건 각 뉴스의 주된 보도 취지는, ○○자동차그룹의 임원으로서 여직원들을 술자리 접대에 동원한 가해자인
여성임원과 이러한 성희롱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동차그룹의 행태를 비판하는데 있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각 뉴스에서 밝힌 정보들은 ○○자동차 그룹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것으로 보이고, 이외에 원고의 관련 정보들을 노출한 바 없다. 한편 이 사건 각 뉴스에서는 성희롱 문제를 다루면서 원고나 다른 피해 당사자들에 대하여 원인제공자로 묘사하거나 비난하는 논조를 보이고 있지 아니하고, 성희롱 행위만을 상세하게 묘사하여 선정적이고 흥미위주의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뉴스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그 표현의 방법 등에 있어서도 상당성을 갖춘 것으로 보여 그 공개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문

사	건	2018가합5527 손해배상 청구의 소 2018가합5534(병합)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1.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2.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아이엔엠
변	론	2019. 8. 21.
판	결	2019. 10.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그룹 소속의 □□자동차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8. 2.경 퇴사한 사람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이하 ‘피고 에스비에스’라고 한다)는 2018. 4. 1. ‘SBS 8시 뉴스’ 프로그램에서 『○○차 임원, 상급자 술 접대에 부서 여직원 억지 동원』이라는 제목으로 아래 ① 내지 ⑦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별지1 기재 뉴스, 『‘술자리 동원’ 비난·우려 있었는데...회사는 ‘몰랐다’』라는 제목으로 아래 ⑧, ⑨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별지2 기재 뉴스를 각 보도하였다.

①	○○자동차 그룹에서 근무하던 대리급 여성 직원 A씨는 올해 초 갑자기 퇴사하였습니다.
②	A씨는 퇴사 과정에서 같은 부서 상관인 여성 고위 임원 B씨가 접대 성격의 술자리 참석을 강요했기 때문이라고 털어놨습니다.
③	B 임원은 자신의 남성 상사들을 만나는 자리에 부서 여직원들을 동석시켰고 술도 따르게 했습니다. 노래방에도 데려가 노래와 함께 남성 임원들과 춤을 추도록 강요했다는 겁니다.
④	지난 2014년과 2016년에도 B 씨의 부서에서 일하던 다른 여성 직원 2명이 비슷한 이유로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⑤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큰 문제가 있다는 불안이 퍼졌지만, 그룹 차원의 감사나 조치는 없었습니다.
⑥	피해자 A씨가 퇴사 전 면담에서 인사담당자에게 문제를 털어냈지만, 사안이 공론화되는 것을 본인이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⑦	피해자 A씨는 최근 자신이 겪었던 일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⑧	고위 임원 술자리에 여성 직원이 동원된 것은 수년 전부터였고 특히 B 이사가 승진한 그룹 인사 발표 전에 이런 자리가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퇴직한 3명 외에도 비슷한 피해를 본 직원들이 더 있고....
⑨	피해자 A씨가 퇴사 전 면담에서 인사담당자에게 문제를 털어냈지만 사안이 공론화되는 것을 본인이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피고 에스비에스는 2018. 4. 1. 위 프로그램의 “오늘의 주요뉴스”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별지3 기재와 같이 가항 기재 뉴스의 요지를 보도하였다.

⑩	○○자동차그룹에서 여성 직원들이 억지로 임원 술 접대 자리에 동원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고위 임원이 자신의 상급자 접대 자리에 여직원들을 데려가 술을 따르게 하고 노래방에도 함께 가도록 했다는 겁니다.
⑪	참다 못한 피해 직원 일부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⑫	단독 취재했습니다.

라. 피고 에스비에스는 2018. 4. 2. ‘SBS 모닝와이드’ 프로그램에서 『[단독] 상사 술 접대에 여직원 억지 동원...○○차 ‘몰랐다’』라는 제목으로 아래의 내용 및 위 ① 내지 ⑦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별지4 기재 뉴스를 보도하였다.

⑬	○○자동차에서 임원들 술자리에 여직원들을 불러서 술을 따르게 하고 노래방에서 춤도 추게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	---

마. 피고 에스비에스는 2018. 4. 3. ‘SBS 8시 뉴스’ 프로그램에서 『회식 때 임원 옆에 여직원 지정... ○○차, 이어지는 폭로』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별지5 기재 뉴스를 보도하였다.

⑭	○○자동차그룹의 한 여성 임원이 여직원들에게 상급자와 술자리에 참석하라고 강요했다는 소식 지난 주말 전해드렸는데,
⑮	○○자동차그룹에서 몇 년 전 퇴사한 A씨는 회식 때문에 매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⑯	[전직 ○○차 직원 : 주요 임원분들 옆이나 앞에는 반드시 여성 신입 사원이나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나갈 여자 대리급 정도를 앉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바. 피고 에스비에스는 2018. 4. 4. ‘SBS 나이트라인’ 프로그램에서 『○○차 여직원 ‘술 접대 동원’ 해당 임원 사표...추가 조사 어려울 듯』이라는 제목으로 위 ⑮, ⑯과 같은 내용(이하 해당 부분을 ‘① 부분’ 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별지6 기재 뉴스(이하 각 뉴스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뉴스’라 한다)를 보도하였다.

사. 한편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아이엔엠은 나향 내지 바향 기재 뉴스를 SBS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9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명예훼손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뉴스에서 아래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1) 원고는 □□자동차 주식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당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사실(이하 ‘이 사건 피해사실’이라 한다)을 피고들에게 제보한 바 없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① 부분을 통하여 이 사건 피해사실의 피해자가 원고임을 특정하면서 ② 부분에서 원고가 피해사실을 털어놓은 대상을 생략하고, ⑫ 부분에서 ‘단독’이라고 언급하며, ⑬ 부분에서 ‘증언이 나왔다’고 함으로써 마치 원고가 피고들 소속 기자에게 직접 이 사건 피해사실을 제보하거나 인터뷰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였다.
- (2) 원고 외에 ○○자동차그룹을 퇴사한 여성직원 2명은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였음에도 ④ 부분을 통하여 마치 퇴사한 여성직원 2명도 원고와 비슷한 사유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가 ○○자동차그룹 내부에 만연한 성희롱 피해자 중 한 명으로 오인하도록 하였다.
- (3) ○○자동차는 2014년 말 또는 2015년 초순경 술자리 접대에 대한 자체적인 감사가 있었고 그 이후로 이러한 피해가 없었으며, 원고는 2016. 3.경 마지막으로 술자리 접대를 거부함

으로써 성희롱 피해는 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⑤ 부분을 통하여 마치 현재까지 성희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피해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바 없음에도 ⑦ 부분에서 원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피해사실을 제보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5) ⑧ 부분을 통하여 원고가 술자리 접대 참석을 이용해 승진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였다.

(6) 원고는 이 사건 피해사실로 인하여 퇴사한 것이 아님에도 ⑪ 부분을 통하여 마치 원고가 이 사건 피해사실을 참지 못하여 퇴사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이 사건 뉴스는 ②, ③, ⑥, ⑧, ⑨, ⑩, ⑭, ⑮, ⑯ 부분을 통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이 사건 피해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다. 손해배상청구

피고들은 위와 같은 명예훼손 및 사생활 비밀 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각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해자의 특정 여부

(1) 관련 법리

방송보도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에 의한 피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적어도 그 사람을 알고 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있어서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특정의 정도는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같은 업계에 있거나, 피해자의 지인·주변인이 해당 보도가 피해자에 관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들, 즉 ○ 이 사건 각 뉴스는 원고를 ‘○○자동차그룹’ 소속으로 ‘2018년 초 퇴사한 대리급 여성 직원’이라고 표현하여 원고의 직장장과 성별, 퇴사시기 및 퇴사 당시 직급을 특정한 점, ○

한편 가해자인 같은 부서 상관 여성임원 B씨는 ‘○○자동차그룹 공채 출신 여성 임원으로 2017년 말 이사 대우에서 이사로 승진하여 본사에서 재직 중’이라고 표현하였는바, ○○자동차그룹 내에 여성 임원은 32명 내외에 불과하고 2017년 말 이사로 승진한 자는 극소수일 것으로 보여 가해자가 특정되고, 가해자가 특정됨에 따라 피해자인 같은 부서의 2018년 초에 퇴사한 대리급 여성 직원도 특정될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각 뉴스의 자료화면에는 원고의 당시 소속인 □□자동차 주식회사의 건물과 원고의 당시 소속팀이 실제로 근무하던 ○○자동차 주식회사의 건물을 보여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뉴스에서 원고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각 뉴스를 본 사람 중 적어도 원고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사건 각 뉴스가 원고를 지목하는 것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뉴스에 의하여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명예훼손 여부

(1)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는 것이며,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참조).

한편,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고 하여 그 고발사실 자체만으로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에 고발인의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참조).

(2) 판단

먼저 원고의 (1), (4) 주장과 관련하여 보건대, 이 사건 뉴스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피해사실을 말한 대상을 생략함으로써 마치 원고가 피고들에게 직접 이 사건 피해사실을 제보하거나 인터뷰를 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사실을 적시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피해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적이 없음에도 원고의 사례를 다루는 뉴스에서 동일한 영문자(A)를 사용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피해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뉴스에서 원고에 의한 위와 같은 제보나 인터뷰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하다는 사정을 함께 적시한 것이 아닌 이상, 단순히 국가기관에 제보하였다거나 공중파 방송과 인터뷰를 했다는, 진실과 다른 사실의 적시만으로 원고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언론기관이 시청자를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그 보도내용의 신빙성을 높이려한 행위에 대한 취재·보도 윤리위반

등 다른 차원에서의 평가나 제재는 별론으로 한다).

다음으로 원고의 (2), (3) 주장과 관련하여 보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뉴스에서 ○○자동차그룹에서 퇴사한 다른 여성 직원 2명은 다른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였음에도 성희롱 피해사실로 인하여 퇴사하였다고 하거나, 원고에게 2016. 3.경 이후로 성희롱 피해사실이 없음은 물론 ○○자동차그룹 차원에서도 2015년 초순경의 자체감사 이후 성희롱 피해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성희롱 피해사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퇴사한 여성 직원들이나 ○○자동차그룹에 대한 명예훼손적 내용임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의 (5) 주장과 관련하여 보건대, 이 사건 뉴스에서는 ⑧ 부분을 통하여 ○○자동차그룹 소속의 여성임원 B 이사가 자신의 승진을 위하여 소속 여성 직원들을 동원하여 접대성 술자리에 참석시켰고,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여성 직원들 중 한명이 원고라는 사실을 적시하였을 뿐, 원고가 접대성 술자리를 통하여 승진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6) 주장과 관련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피해사실의 발생 후 타인들이 근거 없이 비방하는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퇴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피해사실로 인하여 원고가 퇴사하였다는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원고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각 뉴스의 전체적인 취지는 ○○자동차그룹 소속의 여성 임원이 여성 직원들을 술자리 접대에 참석하도록 강요하는 소위 직장 내 성희롱을 가하였고, ○○자동차그룹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실상을 고발하는 것인데, 이러한 내용의 보도가 피해 여성 직원인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 사실의 보도로 보기 어려운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생활 비밀 침해 여부

(1) 관련 법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16조, 제317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개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공표된 사항이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개인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아울러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그 개인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 등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뉴스에는 원고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당하였다는 점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에 대하여 잘못 가해질 수 있는 사회의 선입견이나 선정적 호기심 등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위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피고들이 이를 공개한 것은 일응 원고의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위법성 조각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뉴스는 원고를 포함한 ○○자동차그룹 소속 여성 직원들이 당한 직장 내에서 성희롱 피해사실을 알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향후 위와 같은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뉴스에서 원고의 이 사건 피해사실을 게재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 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뉴스 중 원고의 이 사건 피해사실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그 표현내용·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그 공개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각 뉴스가 다루는 내용은 상급자인 임원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에게 술자리

접대참석을 강요한 것에 관한 것으로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해당한다.

- ② 이 사건 각 뉴스의 주된 보도 취지는, 원고를 포함한 피해자들이 아닌 ○○자동차그룹의 임원으로서 여직원들을 술자리 접대에 동원한 가해자인 여성임원과 이러한 성희롱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동차그룹의 행태를 비판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각 뉴스 보도 당시는 미투 열풍으로 직장이나 학교 등 조직 내의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시기였다. 이 사건 각 뉴스에서 적시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보도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③ 이 사건 각 뉴스에서는 원고를 익명으로 처리하였고, 원고와 관련하여 언급된 정보들인 ‘대리급 여성 직원’은 가해자인 여성 임원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것이고, ‘올해 초 퇴사’는 성희롱 피해의 정도가 심각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위와 같은 정보들은 ○○자동차그룹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필요최소한 것으로 보이고, 이외에 원고의 관련 정보들을 노출한 바 없다.
- ④ 한편 이 사건 각 뉴스에서는 성희롱 문제를 다루면서 원고나 다른 피해 당사자들에 대하여 원인제공자로 묘사하거나 비난하는 논조를 보이고 있지 아니하고, 성희롱 행위만을 상세하게 묘사하여 선정적이고 흥미위주의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또한 원고가 당한 성희롱 피해사실을 원고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다룬 것이 아니라 ○○자동차그룹이라는 대기업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문제 및 회사의 대처방안에 관하여 다룸으로써 심층적인 보도를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뉴스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그 표현의 방법 등에 있어서도 상당성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 ⑤ 실제로 이 사건 각 뉴스의 보도 이후 ○○자동차그룹은 진상조사에 착수하였고, 가해자인 여성 임원과 그 상급자였던 계열사 대표가 사임하였다. 원고 역시 이 사건 각 뉴스의 보도 이후 □□자동차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금전적 보상을 받는 등 원만한 합의를 하였다.
- ⑥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피해사실의 공론화를 원하지 않았고 피고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의 진실 여부나 공개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뉴스를 보도한 것은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는바[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 425(병합)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피해사실은 원고의 동의를 얻어 공개해야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언론이 취재·보도 등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4호).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이 허위사실적시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고의 사생활 비밀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5〉 대상기사 생략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가합10320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1. 22. 선고 2019나2003743 판결

공적 인물이라 할지라도 8년 전 결별한 내연관계까지 공개한 것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로 보기 어렵다

- 원고 : A
- 피고 : B 외 1명

[사실관계]

피고 B는 2018년 3월 21일 <미디어스>에 원고가 과거 내연 관계를 맺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보도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원고의 사적인 남녀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2심 법원 역시 1심 법원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3심에서 심리불속행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다300408).

[판결요지]

□ 이 사건 기사에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언론사의 대표이사로서 공인이다. 그러나 원고가 D와 교제하고 결별한 것은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기 8년 전의 일로, 원고가 8년 전에 부적절한 교제를 한 사실이 현시점에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어 검증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기사를 통해 공개된 원고의 과거 남녀관계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일반 대중의 관심사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관심이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인격적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볼 수도 없다.

1심 판결문

사	건	2018가합103205	손해배상(언)
원	고	A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1. 22.	
		2018. 12. 20.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2018.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 가. 원고는 2017. 12. 28.부터 2018. 5. 4.까지 종합 뉴스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 나. 피고 C는 인터넷신문 ‘미디어스’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고, 피고 B는 미디어스 소속 취재기자이다.
- 다. 피고 B는 2018. 3. 21. 미디어스 홈페이지(<http://mediaus.co.kr/>) 초기화면 하단에 『A □□□ 사장, 간통죄 폐지 이전 ‘불륜’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2010년 머니투데이방송 보도본부

장으로 재직할 무렵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한 여성(이하 'D'라 한다)과 내연 관계를 맺어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별지 기재 기사, 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작성·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 1) 헌법 제10조 제1문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7조,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형법 제316조, 제317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개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등 참조).
- 2) 이 사건 기사는 원고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2010년 6월경부터 6개월간 D와 동거를 했고, 2010년 12월경 D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는 원고의 사적인 남녀관계를 공개하는 내용이다. 원고의 사적인 남녀관계는 원고의 입장에서 공개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고,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원고가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가 이 사건 기사를 통해 원고의 사적인 남녀관계를 공개한 것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명예훼손에 대하여

1)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

- 가) 피고 B는 이 사건 기사에서 D의 진술을 자세히 인용하면서 원고와 교제한 경위, 결별 과정에서 원고가 보인 태도 등을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반면, D의 주장에 대한 원고의 반박 주장에 대하여는 구체적 내용의 기재 없이 원고의 개괄적인 입장을 짧게 소개하는 것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는 이 사건 기사를 통해 “① 원고가 2010년 6월 무렵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D와 교제하면서 6개월간 동거를 했고, ③

2010년 12월경 D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기사를 통해 “원고가 유부남인 것을 숨긴 채 D에게 접근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B는 이 사건 기사 of 본문 중간에 원고 또는 D의 지인들이 트위터에 게시한 글들을 그대로 캡처해 삽입하였고, 삽입된 트위터 게시글에는 ‘싱글로 위장 여자를 유혹’, ‘솔로인척 하고 여자를 꼬시고 다닌 사건’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사 본문에 “원고의 이혼과 재혼을 전제로 원고와 동거하였다”, “원고와 교제를 시작할 무렵 원고에게 ‘유부남이랑 이러는 건 내 스타일이 아니다’고 말했다”는 D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사에 삽입된 트위터 게시글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고 B가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가 유부남인 것을 숨긴 채 D에게 접근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D는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2010년 12월 중순경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었을 뿐이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 등 D를 배신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 중 원고와 D의 결별 과정에 관한 부분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1) D는 2010. 12. 18. 원고가 게시한 트위터 글에 “상처와 죄는 다릅니다”는 내용으로 리트윗을 하였고, 2010. 12. 24. 원고에게 “모두 용서하고 이해하기로 했다, 나쁜 기억들은 모두 지우겠다”는 내용의 트위터 메시지를 보냈다. D가 결별 과정에서 원고가 보인 태도에 불만을 느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2) D는 이 사건 기사 작성 이전에 피고 B와 만나 “원고가 어느 날 갑자기 사무적으로 존댓말을 하였고, 그 후 연락을 끊었다”고 말하였다.

(3) 이 사건 기사의 주된 내용은 유부남인 원고가 D와 동거를 하였다는 것이고, 그 결별 과정에 관한 부분은 교제가 끝날 무렵의 부수적인 사실관계를 덧붙인 것이다. 원고가 D와 교제하면서 동거한 것이 사실인 이상 그 결별 과정에 관한 내용에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3)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 B가 이 사건 기사에서 보도한

‘유부남인 원고가 D와 교제하면서 6개월 동안 동거하였고, 결별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는 내용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사실의 적시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B가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한 행위는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다. 위법성 조각에 대하여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국내 유수 언론사인 ◇◇◇◇의 대표이사로서 공인의 지위에 있고, 원고의 과거 불륜 행적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다. 피고 B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으므로, 피고 B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 보도내용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유수 언론사의 대표이사로서 건전한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는 공인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반 사인보다 그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좀 더 폭넓게 공개될 수 있다. 그러나 공적인 인사에게도 사생활 영역이 존재한다. 사적인 영역도 유형화가 가능하고, 공인에 대한 비판과 감시가 필요한 영역이나 통상의 가족관계 등에 대하여는 일정한 경우 공개가 널리 허용된다. 그러나 남녀 간의 성적 교섭과 같은 당사자들 사이에서만 공유될 수 있는 영역은 보호되어야 한다. 이 사건 기사에서 보도된 내용은 유부남인 원고가 D와 동거하였다는 것으로 절대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영역에 속하는 것은 아니나, 그 주된 내용은 남녀 간의 성적교섭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그 보호의 정도가 높은 영역에 속한다.

나) 원고가 D와 교제하고 결별한 것은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기 8년 전의 일이다. 유부남인 원고가 D와 교제하면서 동거한 행위가 법적·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의 배우자 등으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법적 책임을 추궁당하는 것은 감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8년 전에 부적절한 교제를 한 사실이 원고가 현시점에서 언론사의 대표이사로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그 사실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어 검증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기사의 게재는 원고의 부적절한 교제로 인한 진정한 피해자인 원고의 배우자 등에게 새로운 피해와 상처를 줄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한 이상 언론사 대표이사의 자격 검증을 위해 원고의 과거 범죄행위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 사건 기사를 통해 공개된 원고의 과거 남녀관계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일반 대중의 관심사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관심이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인격적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원고가 유부남인 것을 알리고 D와 교제를 시작하는 것과 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D에게 접근하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나 비난가능성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피고 B는 이 사건 기사 작성 과정에서 D가 원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원고와 교제를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였다. 그런데도 피고 B는 이 사건 기사의 본문 중간에 ‘싱글로 위장 여자를 유혹’, ‘솔로인척 하고 여자를 꼬시고 다닌 사건’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트위터 게시글을 삽입하였고, 그 글자 크기는 이 사건 기사의 본문 글자 크기보다 훨씬 크다. 이 사건 기사를 접하는 일반 독자들로서는 자연스럽게 기사 본문에 삽입된 트위터 게시글에 주목하게 되고, 원고가 유부남인 것을 숨긴 채 D에게 접근하였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기사 전체의 맥락에 비추어 보면, 굳이 잘못된 사실을 암시하는 트위터 게시글을 그대로 캡처하여 본문 중간에 삽입할 필요가 없다. 피고 B는 본문 내용과는 별도로 트위터 게시글에 기재된 원고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부각하여 원고를 비방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가 피고 B가 작성한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피고 B는 이 사건 기사를 작성·게재한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C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기사의 게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 1) 원고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언론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기사로 인해 그 명예가 훼손되었고, 8년 전의 사생활이 여과 없이 공개되어 현재의 가정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는 ◇◇◇◇의 노조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는 등 언론인으로서의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도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었다.
- 2) 피고 B는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의 실명과 지위를 그대로 보도하였고, 트위터 게시글을 삽입하여 원고와 D의 교제 경위에 관한 일반 독자의 오인을 유발하였다.

마. 소결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날 다음 날인 2018. 3. 2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대상기사 생략

2심 판결문

사	건	2019나2003743	손해배상(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1. B	
		2. C	
제 1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가합103205 판결
변 론 종 결		2019. 9. 20.	
판 결 선 고		2019. 11. 22.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가 2010. 6. 무렵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D와 교제하면서 6개월간 동거를 하였고 2010. 12.경 D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는 사실이 적시됨으로써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사생활의 비밀 등 침해의 관점에서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거나 명예훼손의 관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법성조각 항변을 배척하면서, 피고 B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C가 그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피해자인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러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들의 주된 항소이유는 사생활의 비밀 등 침해와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데에 있다. 그런데 먼저 ① 사생활의 비밀 등 침해 측면에서,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은 보도 당시로부터 약 8년 전 원고가 머니투데이 보도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원고와 D 사이에 일어난 개인적인 남녀관계에 관한 일로서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이 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는 원고가 보도 당시 국내 유수의 방송사인 주식회사 ◇◇◇◇의 사장으로서 공적 인물에 해당하더라도, 원고의 비밀영역에 속하여 강하게 보호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려면 극히 예외적으로 공개의 이익이 더 커야 하나, 원고의 사생활이 비밀로서 보호되는 이익보다 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보기에 넉넉한 자료도 없으며, 그 표현 내용과 방법 또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한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② 명예훼손의 측면에서, 원고가 국내 유수의 방송사 사장으로서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에까지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방송사 사장으로서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더라도, 원고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되거나 공공적·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공적인 관심 사안이라기보다 원고의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일에 해당하고 원고를 비방하려는 의도에서 작성된 부분 또한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 사건 기사에서 적시된 사실이 공익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③ 이 사건 기사 보도의 경위와 기사의 취재 및 게재 방식, 게재된 기사의 내용과 사생활의 비밀 등 침해 및 명예훼손 부분의 비중, 원고의 사회적 지위, 이 사건 기사의 보도로 인한 원고의 행동상 제약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제1심 법원이 정한 원고에 대한 위자료 액수 또한 적정하다고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피고들의 주된 항소이유에 관하여 나항과 같이 추가로 살펴본 것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산권 침해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가합54130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9. 20. 선고 2018나2037343 판결

의료 관련 기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언론사에서 의도적으로 특정 내용을 누락한 채로 중대한 약물 부작용이 발생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 원고 : A 주식회사
- 피고 : 주식회사 엠케이그룹 외 1명

[사실관계]

피고 주식회사 엠케이그룹은 피고보조참가인(뉴스)이 2017년 4월 13일 기사를 게시한 후 같은 날 <메디컬투데이>에 원고 회사의 제품에서 중대한 이상사례가 보고되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 재산상 손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전문용어인 '이상반응'과 '약물이상반응'의 차이를 피고가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아 3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였다. 이어 2심 법원 역시 손해배상책임(다만, 손해배상액을 2억5백24만원으로 감액)을 인정하였으며, 3심 법원에서 심리불속행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다279917).

[판결요지]

□ 이 사건 기사에 허위성에 대한 판단

피고 B가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기 전에 작성하였던 다른 약물에 관한 허가사항에 대한 동종 기사에는 각 이상사례 발현에 관한 내용에 약물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이상반응 확인여부 및 비율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왔던 점, 피고 회사는 전문적으로 의료 관련 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 점, 피고들의 취재원에는 이 사건 제품에 관한 허가사항도 포함되어 있어 위 이상사례 발현과 위 약물이상반응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B는 적어도 2014. 7.경부터는 피고 회사의 소속 기자로서 동종 보도를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에서는 위 중대한 이상반응에 대한 이 사건 제품과의 인과관계 배제 여부에 관한 내용이 의도적으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품에 관한 허가사항 중 이 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이 보고된 이상사례 중 새로 확인된 것들은 없었다는 내용도 의도적으로 누락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내용을 앞서 본 이 사건 기사의 제목과 다른 본문 내용과

결합하여 보면, 동종의 다른 제품과 달리 이 사건 제품으로 인한 약물이상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 제목 및 이 사건 기사의 본문 중 ‘이 사건 제품에서 척추골절 등 중대한 이상사례가 보고되었다’는 부분은 일반 독자들에게 동종 제품과 달리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척추골절·패혈증 등 중대한 결과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암시를 강하게 주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심 판결문

사	건	2017가합541309 손해배상(기)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1. 주식회사 엠케이그룹 2. B
변 론 종 결		2018. 5. 11.
판 결 선 고		2018. 6. 20.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5.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보툴리눔 독소 A형을 활용한 보툴리눔 독소 제제(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등 바이오 의약품의 연구·개발 및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엠케이그룹(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인터넷의료정보제공업 등을 영위하면서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라는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에 의료 관련 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며,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소속 기자이다.
- 나. 피고 B는 2017. 4. 13. 이 사건 사이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시하였다.

A 'OOOO'....척추골절·패혈증 등 중대한 이상사례 발현

A의 보툴리눔독신 제제에서 척추골절·힘줄파열·패혈증·자궁섬유종 등 중대한 이상사례가 보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의 OOOO 주 등 3품목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약사법에 의거해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공지했다.

국내에서 6년 동안 본태성 눈꺼풀 경련을 가진 6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 결과, 이상사례 발현율은 21.2%(147명, 215건)로 확인됐다.

이중 본제와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이상반응 발현율은 12.2%(85명, 106건)로 안구건조 2.6%(18명, 18건), 눈꺼풀 처짐 1.9%(13명, 13건), 안통, 눈꺼풀부종이 각 1.6%(11명, 11건)로 보고됐다. 그 밖에 토끼눈증, 눈물분비이상, 안구자극, 유루, 눈꺼풀소양증, 피부진무름, 피부주름, 안근마비, 얼굴부종, 안검외반 등의 약물이상반응도 1% 미만으로 보고됐다.

중대한 이상사례 발현율은 0.9%(6명, 8건)로 척추골절, 힘줄파열, 갑상선기능저하증, 패혈증, 자궁섬유종, 위염, 불면증, 폐색전증이 각 0.1%(1명, 1건)가 보고되기도 했다.

미간주름을 가진 임상시험 대상자 10명 중 3명에서 중등증 이상의 이상사례가 관찰됐다. 감염과 인과계 장애가 각 7.5%에서 발생했고, 일반적 장애와 주사부위 상태가 4.5%, 피부 및 피하조직 장애가 4.5%로 파악됐다.

이는 기존 미간주름 사용상 주의사항을 통해 보고된 내용이다.

또 만 2세 이상 10세 이하의 소아뇌성마비 환자에서는 73명 중 73.97%가 이상사례를 경험했다.

총 152건의 이상사례 중 비인두염(43.84%)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기관지염(15.07%), 알레르기 비염(6.85%), 천식(2.74%) 등도 각각 보고됐다.

OOOO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OOOO주2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OOOO주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OOOO주1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등이 변경 대상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기사를 보고 피고 B에게 기사에 정정 내지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 B는 이 사건 기사의 제목과 내용을 수정한 후, 다시 “A ‘○○○○’ 재심사...척추골절 등 중증 부작용 논란”이란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라.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라 2017. 3. 27. 이 사건 제품에 관한 허가사항(사용상 주의사항)을 변경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변경 부분은 밑줄 처리).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2. 다음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4. 이상사례(가. 일반사항, 나. 눈꺼풀 경련, 다. 미간주름, 라. 근육경직, 마. 소아뇌성마비), 5. 일반적주의, 6. 약물상호작용, 7. 임부, 수유부에 대한 투여, 8. 소아에 대한 투여, 9. 발암성, 돌연변이 유발성, 기형유발성, 10. 과량투여시의 처치, 11. 적용상의 주의사항, 12. 부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3. 환자를 위한 정보

4. 이상사례

나. 눈꺼풀 경련

국내 시판 후 조사결과

국내에서 6년 동안 본태성 눈꺼풀 경련을 가진 6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사용성적조사결과, 이상사례 발현율은 21.2%(147명/695명, 215건)이었고 이 중 본제와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이상반응 발현율은 12.2%(85명/695명, 106건)로 안구건조 2.6%(18명/695명, 18건), 눈꺼풀 처짐 1.9%(13명/695명, 13건), 안통, 눈꺼풀부종이 각 1.6%(11명/695명, 11건)이며 그 밖에 1% 미만으로 보고된 약물이상반응을 기관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시각장애: 시야흐림, 유루증, 복시, 토끼눈증, 눈물분비증가, 눈의 이상감각, 눈물분비이상, 안구자극, 유루, 빨간눈, 안정파로, 각막병증, 각막염, 각막이 얇게 벗겨짐, 결막염, 시력감소

중추 및 말초신경계 장애: 두통, 어지러움, 안근마비

피부와 부속기관 장애: 눈꺼풀소양증, 피부진무름, 눈꺼풀피부질환, 피부주름

혈소판, 출혈, 응고장애: 멍

비뇨기계질환: 얼굴부종

기타: 안검외반

중대한 이상사례 발현율은 0.9%(6명/695명, 8건)로 척추골절, 힘줄파열, 갑상선기능저하증, 패혈증, 자궁섬유종, 위염, 불면증, 폐색전증이 각 0.1%(1명, 1건)가 보고되었다. 이 중 본제와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 미간주름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중등증 이상의 미간주름을 가진 임상시험대상자를 대상으로 국내임상결과 이 약을 투여받은 임상시험대상자의 28.4%에서 이상사례가 관찰되었다. 이상사례는 정도에 있어 경증, 중등증이었으며 중증으로 보고된 이상사례는 없었다.

신체기관별로 가장 많이 보고된 이상사례를 보면, 감염과 인과관계 장애가 각각 10명(7.5%)에서 발생하였고, 일반적 장애와 주사부위 상태가 6명(4.5%), 피부 및 피하조직 장애가 6명(4.5%) 발생하였다.

마. 소아뇌성마비

만 2세 이상 10세 이하의 소아뇌성마비 환자에 있어서 강직에 의한 척축기형의 치료에 대해 안전성이 평가되었다. ○○○○주를 투여받은 73명 중에 이상사례를 경험한 임상시험대상자 54명(73.97%, 54/73명)에서 총 152건의 이상사례가 발생하였다.

이상사례들은 정도에 있어서 경증 93건, 중등증 58건, 중증 1건으로 대부분의 이상사례는 경증 및 중등증으로 나타났다. 가장 흔히 보고된 이상사례를 살펴보면, 비인두염이 32명(43.84%, 32/73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기관지염이 11명(15.07%, 11/73명)에서 나타났다. 또한 ○○○○주와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된 약물이상반응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

1) “A ○○○○... 척추골절·패혈증 등 중대한 이상사례 발현”이라는 제목 부분

가) 신문기사의 제목은 일반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단적으로 표시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본문을 읽게 하려는 의도로 붙여지는 것이므로, 신문기사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목이 본문의 내용으로부터 현저히 이탈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별개의 독립된 기사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목만을 따로 떼어 본문과 별개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고,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기사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2. 용어의 정의’에 의하면, 이상반응(타목)이란,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투여한 시험대상자에게 발생한 모든 유해하고 의도하지 않은 증후(症候, sign, 실험실 실험 결과의 이상 등을 포함한다), 증상(症狀, symptom) 또는 질병을 말하며, 해당 임상시험용 의약품과 반드시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닌 것을 의미하고, 약물이상반응(파목)이란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임의 용량에서 발생한 모든 유해하고 의도하지 않은 반응으로서 임상시험용 의약품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나, 의학 지식이 없는 일반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상반응이나 약물이상반응의 위와 같은 차이에 관하여는 별도의 설명 없이 알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일반 독자들이 이 사건 기사의 제목에 나타난 ‘이상사례의 발현’이라는 용어를 접했을 때, 이 사건 제품과 인과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중대한 사례가 발생할 것

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큰 점,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이상반응과 약물이상반응에 대한 어떠한 정의나 구분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제품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생략하여 일반 독자들에게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중대한 결과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암시를 강하게 주고 있는 점,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 본문에서도 이 사건 제품과 인과관계가 없는 이상반응에 관한 사례만을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제목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중대한 이상사례 보고 부분

앞서 본 이 사건 제품에 관한 허가사항에 의하면, 이 사건 제품의 이상사례 중 하나인 눈꺼풀 경련을 가진 자(695명) 중 중대한 이상사례 발현율은 0.9%인데, 그 중 척추골절, 힘줄파열 등이 각 0.1%라는 것이고, 이 사건 제품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제품의 사용과 위 이상사례와는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이 사건 기사에는 ‘이 사건 제품에서 척추골절 등 중대한 이상사례가 보고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처럼 강하게 암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3) 미간주름 환자 이상사례 발현 부분

앞서 본 이 사건 제품에 관한 허가사항에 의하면,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중등증 이상의 미간주름을 가진 임상시험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임상결과 이 약을 투여 받은 시험대상자의 28.4%에서 이상사례가 관찰되었고, 그 정도는 경증, 중등증이었으며 중증으로 보고된 바는 없었다는 것임에도, 이 사건 기사에는 ‘미간주름을 가진 임상시험대상자 10명 중 3명에서 중등증 이상의 이상사례가 관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상사례가 관찰된 시험대상자의 수, 정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었음이 명백하다.

또한 이 사건 제품에 관한 허가사항에 의하면, 이 사건 제품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된 약물이상반응은 주사부위반응, 안검하수일 뿐임에도 이 사건 기사는 ‘감염과 안과계 장애가 각 7.5%에서 발생했고, 일반적 장애와 주사부위 상태가 4.5%, 피부 및 피하조직 장애가 4.5%로 파악됐다’고 기재하여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4) 소아뇌성마비 환자 이상사례 발현 부분

앞서 본 이 사건 제품에 관한 허가사항에 의하면, ○○○○를 투여 받은 소아뇌성마비 환자 73명 중 이상사례를 경험한 임상시험대상자는 54명이었고, 총 152건의 이상사례가 발생하였는데, 가장 흔히 보고된 이상사례는 비인두염이 32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기관지염이 11명으로 나타났으나 이 사건 제품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된 약물이상반응은 없었다는 것임에도, 이 사건 기사는 ‘만 2세 이상 10세 이하의 소아뇌성마비 환자에서는 3명 중 73-97%가 이상사례를 경험했고, 총 152건의 이상사례 중 비인두염이 가장 많이 나타

났으며, 그 다음으로 기관지염, 알레르기비염, 천식 등도 각각 보고됐다'라고 하여 이상사례를 경험한 임상시험대상자의 수에 대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한 소아뇌성마비 환자에서 비인두염 등의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처럼 암시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 1)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는 이 사건 제품에 관한 허가사항의 내용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어서 허위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가 이 사건 제품에 관한 허가사항의 일부분을 발췌하여 기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하지만 앞서 거시한 증거들, 이 법원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제품에 관한 허가사항은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한 후 나타난 이상사례에 관하여 눈꺼풀 경련, 미간주름, 근육경직, 소아뇌성마비로 항목을 나눈 후 각 항목에서 이 사건 제품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약물이상반응, 인과관계와 무관하지만 대상자 중에 나타난 이상사례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는 점,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중요한 정보는 의약품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이상반응의 발생인 점, 따라서 인과관계가 없는 이상반응의 경우는 이 사건 제품 사용자에게 나타난 증상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제품의 사용과는 인과관계가 없어 이 사건 제품의 위험성을 드러내는 부작용으로 보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사에서는 이 사건 제품에 관한 허가사항에서 기재하고 있는 약물이상반응에 대한 내용은 누락한 채 이상사례에 관한 내용만을 적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이 사건 제품에 관한 허가사항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위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는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고, 이 사건 제품의 위험성을 정확히 고지하여 신중하게 시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이 명백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될 무렵 뉴시스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보도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산정함에 있어 이러한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면 족할 뿐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

위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영업상의 손해

원고는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매출액이 최소 46억 원이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뉴시스 부분을 고려하여 23억 원을 주장), 갑 제7, 8, 15, 16, 17, 18,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뢰회복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원고는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에 따라 이 사건 기사에 대한 대응자료의 마련 등으로 지출한 3,303,890원을 피고들이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뉴시스 책임 부분을 반영한 1,651,945원 주장), 갑 제19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가 원고가 주장하는 위 판결은 부정적 광고에 대하여 효율적인 구제수단인 사죄광고가 허용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한 대응광고비용을 손해로 인정한 것으로, 손해방지의 필요성,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 적절성 등을 감안할 때,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부적당하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아래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다. 위자료

피고들의 이 사건 기사로 원고의 명예, 신용 등이 훼손됨으로써 보톡스 제조업체로서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낮아지고 그 사업수행에 악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고가 입은 손해의 종류 및 성격, 원고의 지명도, 영업상의 신용도, 회사의 규모 및 영업실적의 규모, 피고들의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성, 이 사건 기사의 허위성, 비방성, 악의성의 정도, 이 사건 제품의 특성, 이 사건 기사가 미치는 영향의 즉각성 및 지속성, 부정적 영향으로부터의 회복의 곤란성, 원고가 이 사건 기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소요한 비용 및 노력, 이 사건 기사가 있는 후 원고의 주가가 급락하였고 원고의 매출액도 급감하였다가 원고의 이 사건 기사에 대한 해명이 있는 후 회복되기 시작하였던 점, 원고의 이 사건 기사에 대한 항의 등에 대하여 피고들이 대응한 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30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7. 7. 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판결문

사	건	2018나2037343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주식회사 엠케이그룹 2. B
피 고 보 조 참 가 인		주식회사 뉴시스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가합541309 판결
변 론 종 결		2019. 8. 30.
판 결 선 고		2019. 9. 20.

주 문

-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5,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5.부터 2019. 9.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소송총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포함)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의 액수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단순히 합산하여 청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적극적 손해를 3,303,890원, 소극적 손해 4,600,000,000원 중 일부인 496,696,110원 및 위자료 500,000,000원을 각 청구하는 것으로 특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보툴리눔 독소 A형을 활용한 보툴리눔 독소 제제(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등 바이오 의약품의 연구·개발 및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엠케이그룹(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인터넷의료정보제공업 등을 영위하면서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라는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에 의료 관련 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며,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소속 기자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의 보도

피고보조참가인은 2017. 4. 13. 11:53경 뉴시스 홈페이지(www.newsis.com) 등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였다.

[단독] A 보톡스 제제, ‘중대 부작용’ 발생…사용자 ‘10명 중 한 명꼴’

미간주름 개선 등 주로 미용성형에 쓰이는 국내 보툴리눔독소 제제에서 중대한 약물 이상반응 사례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보툴리눔독소는 독소가 주사 부위에서 다른 부위로 퍼져 호흡곤란이나 삼킴곤란 등의 보툴리눔 중독을 일으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약물이다. 실제로 독소가 퍼져 사망한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의 ‘○○○○’를 상대로 시판후 6년 동안 ‘사용성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눈꺼풀경련으로 ○○○○를 맞은 환자 10명 중 1명꼴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된 약물 이상반응을 보였다고 13일 밝혔다.

○○○○는 18세 이상 성인의 양성 본태성 눈꺼풀경련, 18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의 눈썹주름근·눈살근 활동과 관련된 미간주름의 일시적 개선, 20세 이상 성인의 뇌졸중과 관련된 상지 경직, 2세 이상 소아뇌성마비 환자 침묵기형 치료 등 4가지 적응증을 가지고 있다.

우선 본태성 눈꺼풀경련을 가진 환자 6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후 사용성적조사결과 147명에게서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등 약물이상반응 발현율이 21.2%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환자 85명에게서 ○○○○와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이상반응이 나타나는 등 ○○○○로 인한 약물 이상반응 발현율은 12.2%로 확인됐다.

나타난 약물 이상반응은 안구건조, 눈꺼풀처짐, 시력감소, 복시, 각막염, 안근마비, 마비, 얼굴부종, 다리 골절, 가려움 등이다.

특히 척추골절, 힘줄파열, 갑상선기능저하증, 패혈증, 자궁섬유종, 위염, 불면증, 폐색전증 등 중대한 이상사례 발현율도 0.9% 나타난 것으로 보고됐다.

또 미간주름에 대한 국내임상결과 이 약을 투여 받은 임상시험대상자의 28.4%에서 이상사례가 관찰됐다. 이상사례는 감염과 안과계 장애가 각각 7.5% 발생했고, 일반적 장애와 주사부위 상태(4.5%), 피부 및 피하조직 장애(4.5%)가 발생했다.

뇌졸중 후 상지 근육경직 치료에 대한 임상에서는 ○○○○주를 투여 받은 95명 중 20%인 19명에게서 비인두염, 빈뇨 등 이상반응이 발생했다.

특히 소아뇌성마비 환자에 대한 이상반응은 가장 심각했다. 만 2세 이상 10세 이하의 ○○○○를 투여 받은 소아뇌성마비 환자 73명 중 74%인 54명에게서 총 152건의 이상반응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비인두염이 43.8%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기관지염(15.1%), 알레르기 비염(6.9%), 만성 부비동염(2.7%), 다래끼(2.7%), 대상포진(1.4%)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툴리눔독소의 마비효과는 눈꺼풀경련과 관련된 과도한 비정상적인 수축을 감소시키는데 유효하다”면서도 “하지만 보툴리눔독소 A형에 대한 항체가 존재하면 보툴리눔독소 치료법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는 눈꺼풀경련 치료 시 어떤 경우든 한 달 동안 200U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 이 사건 기사의 보도

- 1) 피고 B는 2017. 4. 13. 14:40경 이 사건 사이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시하였다.

A ‘○○○○’....척추골절·패혈증 등 중대한 이상사례 발현

A의 보툴리눔독소in 제제에서 척추골절·힘줄파열·패혈증·자궁섬유종 등 중대한 이상사례가 보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의 ○○○○ 주 등 3품목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약사법에 의거해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공지했다.

국내에서 6년 동안 본태성 눈꺼풀 경련을 가진 6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 결과, 이상사례 발현율은 21.2%(147명, 215건)로 확인됐다.

이중 본제와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이상반응 발현율은 12.2%(85명, 106건)로 안구건조 2.6%(18명, 18건), 눈꺼풀 처짐 1.9%(13명, 13건), 안통, 눈꺼풀부종이 각 1.6%(11명, 11건)로 보고됐다. 그 밖에 토끼눈증, 눈물분비이상, 안구자극, 유루, 눈꺼풀소양증, 피부진무름, 피부주름, 안근마비, 얼굴부종, 안검외반 등의 약물이상반응도 1% 미만으로 보고됐다.

중대한 이상사례 발현율은 0.9%(6명, 8건)로 척추골절, 힘줄파열, 갑상선기능저하증, 패혈증, 자궁섬유종, 위염, 불면증, 폐색전증이 각 0.1%(1명, 1건)가 보고되기도 했다.

미간주름을 가진 임상시험 대상자 10명 중 3명에서 중등증 이상의 이상사례가 관찰됐다. 감염과 인과계 장애가 각 7.5%에서 발생했고, 일반적 장애와 주사부위 상태가 4.5%, 피부 및 피하조직 장애가 4.5%로 파악됐다.

이는 기존 미간주름 사용상 주의사항을 통해 보고된 내용이다.

또 만 2세 이상 10세 이하의 소아뇌성마비 환자에서는 73명 중 73.97%가 이상사례를 경험했다.

총 152건의 이상사례 중 비인두염(43.84%)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기관지염(15.07%), 알레르기 비염(6.85%), 천식(2.74%) 등도 각각 보고됐다.

○○○○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주2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주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주1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등이 변경 대상이다.

- 2) 원고는 이 사건 기사를 보고 피고 B에게 기사의 정정 내지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 B는 이 사건 기사의 제목과 내용을 수정한 후, 다시 “A ‘○○○○’ 재심사...척추골절 등 중증 부작용 논란”이란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재심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라 2017. 3. 27. 이 사건 제품에 관한 허가사항(사용상 주의사항)을 변경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변경 부분은 밑줄 처리).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2. 다음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4. 이상사례(가. 일반사항, 나. 눈꺼풀 경련, 다. 미간주름, 라. 근육경직, 마. 소아뇌성마비), 5. 일반적주의, 6. 약물상호작용, 7. 임부, 수유부에 대한 투여, 8. 소아에 대한 투여, 9. 발암성, 돌연변이 유발성, 기형유발성, 10. 과량투여시의 처치, 11. 적응상의 주의사항, 12. 부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13. 환자를 위한 정보

4. 이상사례

나. 눈꺼풀 경련

국내 시판 후 조사결과

국내에서 6년 동안 본태성 눈꺼풀 경련을 가진 6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사용성적조사결과, 이상사례 발현율은 21.2%(147명/695명, 215건)이었고 이 중 본제와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이상반응 발현율은 12.2%(85명/695명, 106건)로 안구건조 2.6%(18명/695명, 18건), 눈꺼풀 처짐 1.9%(13명/695명, 13건), 안통, 눈꺼풀부종이 각 1.6%(11명/695명, 11건)이며 그 밖에 1% 미만으로 보고된 약물이상반응을 기관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시각장애: 시야흐림, 유루증, 복시, 토끼눈증, 눈물분비증가, 눈의 이상감각, 눈물분비이상, 안구자극, 유루, 빨간눈, 안정피로, 각막병증, 각막염, 각막이 얇게 벗겨짐, 결막염, 시력감소

중추 및 말초신경계 장애: 두통, 어지러움, 안근마비

피부와 부속기관 장애: 눈꺼풀소양증, 피부진무름, 눈꺼풀피부질환, 피부주름

혈소판, 출혈, 응고장애: 멍

비뇨기계질환: 얼굴부종

기타: 안검외반

중대한 이상사례 발현율은 0.9%(6명/695명, 8건)로 척추골절, 힘줄파열, 갑상선기능저하증, 패혈증, 자궁섬유종, 위염, 불면증, 폐색전증이 각 0.1%(1명, 1건)가 보고되었다. 이 중 본제와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약에 대한 국내 재심사 이상사례 및 자발적 부작용 보고 자료를 국내 시판 허가된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보고된 이상사례 보고자료(1989-2016.8)와 재심사 종료시점에서 통합 평가한 결과, 다른 모든 의약품에서 보고된 이상사례에 비해 이 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이 보고된 이상사례 중 새로 확인된 것들은 없었다.

다. 미간주름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중등증 이상의 미간주름을 가진 임상시험대상자를 대상으로 국내임상결과 이 약을 투여받은 임상시험대상자의 28.4%에서 이상사례가 관찰되었다. 이상사례는 정도에 있어 경증, 중등증이었으며 중증으로 보고된 이상사례는 없었다.

신체기관별로 가장 많이 보고된 이상사례를 보면, 갑염과 인과계 장애가 각각 10명(7.5%)에서 발생하였고, 일반적 장애와 주사부위 상태가 6명(4.5%), 피부 및 피하조직 장애가 6명(4.5%) 발생하였다.

마. 소아뇌성마비

만 2세 이상 10세 이하의 소아뇌성마비 환자에 있어서 강직에 의한 침족기형의 치료에 대해 안전성이 평가되었다. ○○○○주를 투여받은 73명 중에 이상사례를 경험한 임상시험대상자 54명(73.97%, 54/73명)에서 총 152건의 이상사례가 발생하였다.

이상사례들은 정도에 있어서 경증 93건, 중등증 58건, 중증 1건으로 대부분의 이상사례는 경증 및 중등증으로 나타났다. 가장 흔히 보고된 이상사례를 살펴보면, 비인두염이 32명(43.84%, 32/73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기관지염이 11명(15.07%, 11/73명)에서 나타났다. 또한 ○○○○주와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된 약물이상반응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26호증, 을 제4, 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기사는 원고의 회사명과 이 사건 제품명을 노출하고, 이 사건 제품과 관련하여 중대한 이상사례가 발현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제목의 기사를 게시하였고, 기사 본문에도 이 사건 제품으로 인하여 중대한 이상사례가 발현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였으며, 이 사건 제품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된 약물이상반응이 없는 이상사례 발현에 대하여도 마치 이 사건 제품으로 인하여 발현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 허위보도이다.

원고는 이 사건 보도로 매출 하락, 불가피한 대응비용의 지출, 원고의 명예와 신용훼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또는 동종의 허위 보도를 한 피고보조참가인과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허위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로서 대응보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303,890원, 매출 하락 손해 4,600,000,000원 중 일부인 496,696,110원 및 위자료로 50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

가) 중대한 이상사례 보고 부분

앞서 거시한 증거들, 갑 제32호증, 을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의 제목 및 이 사건 기사의 본문 중

‘이 사건 제품에서 척추골절 등 중대한 이상사례가 보고되었다’는 부분은 일반 독자들에게 동종 제품과 달리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척추골절·폐혈증 등 중대한 결과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라는 암시를 강하게 주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2. 용어의 정의’에 의하면, 이상반응(타목)이란,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투여한 시험대상자에게 발생한 모든 유해하고 의도하지 않은 증후(症候, sign, 실험실 실험 결과의 이상 등을 포함한다), 증상(症狀, symptom) 또는 질병을 말하며, 해당 임상시험용 의약품과 반드시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닌 것을 의미하고, 약물이상반응(파목)이란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임의 용량에서 발생한 모든 유해하고 의도하지 않은 반응으로서 임상시험용 의약품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나, 의학 지식이 없는 일반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상반응이나 약물 이상반응의 위와 같은 차이에 관하여는 별도의 설명 없이는 알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② 이 사건 기사의 제목은 피고 B가 작성한 다른 약물에 관련된 동종 기사의 제목과 별다른 차이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제품에 관한 허가사항에 의하면, 이 사건 제품의 이상사례 중 하나인 눈꺼풀 경련을 가진 자(695명) 중 중대한 이상사례 발현율은 0.9%인데, 그 중 척추골절, 힘줄파열 등이 각 0.1%라는 것이고, 이 사건 제품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제품의 사용과 위 이상사례와는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이 사건 기사에는 ‘이 사건 제품에서 척추골절 등 중대한 이상사례가 보고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품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생략하였는바, 위 제목과 본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일반 독자들이 위 내용을 접했을 때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중대한 결과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 ③ 이 사건 기사 본문에는 본태성 눈꺼풀경련을 가진 6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 결과 이상사례 발현율이 21.2%(147명, 215건)로 확인되었고, 그 중 이 사건 제품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이상반응 발현율은 12.2%(85명)로 보고되었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위 중대한 이상사례 발현에 관하여는 이러한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 바, 전후의 문맥에 의하여도 이 사건 제품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 ④ 피고 B가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기 전에 작성하였던 다른 약물에 관한 허가사항에 대한 동종 기사에는 각 이상사례 발현에 관한 내용에 약물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이상반응 확인여부 및 비율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왔다. 나아가 피고 회사는 전문적으로 의료 관련 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 점, 피고들의 취재원에는 이 사건 제품에 관한 허가사항도 포함되어 있어 위 이상사례 발현과 위 약물이상반응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B는 적어도 2014. 7.경부터는 피고 회사의 소속 기자로서 동종 보도를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에서 위 중대한 이상반응에 대한 이 사건 제품과의 인과관계 배제 여부에 관한 내용이 의도적으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 ⑤ 앞서 본 이 사건 제품에 관한 허가사항에 의하면,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다른 모든 의약품에서 보고된 이상사례에 비해 이 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이 보고된 이상사례 중 새로 확인된 것들은 없었다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피고 B가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기 전에 작성하였던 다른 약물에 관한 허가사항에 대한 동종 기사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분명하게 기재하여 왔음에도, 이 사건 기사에서는 미간주름 환자 이상사례 발현 부분에 관하여만 위와 같은 취지로 이해될 수 있는 ‘이는 기존 미간주름 사용상 주의사항을 통해 보고된 내용이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위 중대한 이상반응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이 역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러한 내용을 앞서 본 이 사건 기사의 제목과 다른 본문 내용과 결합하여 보면, 동종의 다른 제품과 달리 이 사건 제품으로 인한 약물이상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나) 미간주름 환자 이상사례 발현 부분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에 이상사례가 관찰된 시험대상자의 수, 정도와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① 앞서 본 이 사건 제품에 관한 허가사항에 의하면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중등증 이상의 미간주름을 가진 임상시험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임상결과 이 약을 투여 받은 시험대상자의 28.4%에서 이상사례가 관찰되었고, 그 정도는 경증, 중등증이었으며 중증으로 보고된 바는 없었다. 그런데 이 사건 기사에는 ‘미간주름을 가진 임상시험대상자 10명 중 3명에서 중등증 이상의 이상사례가 관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상사례가 관찰된 비율에 관하여는 ‘10명 중 3명’이라는 표현이 그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는 보기는 어려우나, 위 기사의 문언이 가지는 통상적인 의미에 비추어 임상시험대상자 10명 중 3명에서 중등증과 중증의 이상사례가 관찰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경증과 중등증으로 보고된 이상사례가 관찰되었다는 위 허가사항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그 표현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② 앞서 본 이 사건 제품에 관한 허가사항에 의하면, 이 사건 제품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된 약물이상반응은 주사부위반응, 안검하수일 뿐임에도 이 사건 기사에는 ‘감염과 안과계 장애가 각 7.5%에서 발생했고, 일반적 장애와 주사부위 상태가 4.5%, 피부 및 피하조직 장애가 4.5%로 파악됐다’고만 기재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들의 지위, 피고 B가 이전부터 작성하여 왔던 동종 기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는 이 사건 제품과의 인과관계 배제 여부에 관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인식되게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보인다.

다) 소아뇌성마비 환자 이상사례 발현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이 사건 제품에 관한 허가사항에 의하면, ○○○○를 투여 받은 소아뇌성마비 환자 73명 중 이상사례를 경험한 임상시험대상자는 54명이고, 총 152건의 이상사례가 발생하였는데, 가장 흔히 보고된 이상사례는 비인두염이 32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기관지염이 11명으로 나타났으나 이 사건 제품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된 약물이상반응은 없었다는 것임에도, 이 사건 기사는 ‘만 2세 이상 10세 이하의 소아뇌성마비 환자에서는 73명 중 73.97%가 이상사례를 경험했고, 총 152건의 이상사례 중 비인두염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기관지염, 알레르기비염, 천식 등도 각각 보고됐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제품과의 인과관계 배제 여부 및 다른 모든 의약품에서 보고된 이상사례에 비해 이 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이 보고된 이상사례가 새로 확인된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누락시킨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는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한 소아뇌성마비 환자에서 비인두염 등의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그것이 마치 이 사건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증상인 것처럼 암시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기사는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고, 이 사건 제품의 위험성을 정확히 고지하여 신중하게 시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설령 이 사건 기사의 허위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기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이 명백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의학에 관련된 전문적인 보도를 주된 업무로 하는 점, 피고들의 취재원 중 이 사건 제품에 관한 허가사항이 있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들은 위 허가사항의 내용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제품과 관련하여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들의 다른 보툴리눔 독소 제제 등 다른 모든 의약품에서 보고된 이상사례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이 보고된 이상사례 중 새로 확인된 것이 없었음에도, 굳이 기사 제목과 본문에 원고의 제품만을

적시하면서 위와 같이 다른 동종 기사에서는 정확하게 기재하여 왔고 약물의 위험성 여부에 관하여 중요성이 매우 높은 일부 사항을 누락시켜 보도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목적이 일반 국민에게 이 사건 제품의 위험성을 정확히 고지하여 신중하게 시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피고보조참가인과의 공동불법행위 인정 여부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 행위가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8, 35, 36, 3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이 사건 기사 보도와 피고보조참가인의 보도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① 피고보조참가인의 기사와 이 사건 기사는 같은 날에 불과 약 3시간의 간격으로 보도된 점, 인터넷 기사를 통한 보도의 특성상 행위의 장소적 구별은 별 의미가 없는 점, 위 각 기사의 구체적인 표현이 다소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제품에 관한 허가사항을 일부 발췌하여 왜곡, 보도한 내용은 대부분 동일한 점, 피고들도 피고보조참가인의 기사에 영감을 받아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의 기사 보도행위와 피고들의 이 사건 기사 보도행위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 ② 피고보조참가인의 기사와 이 사건 기사가 있는 후 원고의 주가가 급락하였고, 원고의 매출액도 급감하였다가 원고의 이 사건 기사에 대한 해명이 있은 후 회복되기 시작하였는바, 피고보조참가인이 작성한 기사의 주된 구독층은 다수의 일반인이고, 피고들이 작성한 기사의 주된 구독층은 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인 점, 실제로 일부 의사들이 스스로 이 사건 제품을 처방하지 않거나, 환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의사가 다른 제품을 처방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의 기사와 이 사건 기사의 보도는 경합하여 원고의 매출액 급감 등의 단일한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동일한 내용의 허위 기사와 경합하여 원고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는 등 손해를 가한 것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가) 대응보도를 위해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적극적 손해)

(1) 기자간담회를 위한 대관비용 480,000원

갑 제22, 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기사와 이 사건 기사에 대응보도를 하기 위하여 2017. 4. 14. 조찬간담회를 열어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이를 위하여 기자회견 장소 대관비용 등으로 48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기사는 원고의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이 사건 기사의 보도 직후 원고의 주가가 상당히 하락하고 매출이 감소된 점, 원고가 언론을 통하여 이 사건 기사에 대하여 즉시 반론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제품의 부정적 인식이 장기화되어 원고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어 즉시 반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기자회견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기사와 이 사건 기사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막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이 사건 기사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에 해당한다.

(2) 원고 직원들의 야근으로 인한 추가수당 1,102,750원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인 △△△, ****가 2017. 4. 13. 각 초과근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반드시 초과근무가 필수적이라는 점과 그에 상응하는 초과근무비용이 원고의 주장과 같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택시비용 등 지출비용

갑 제2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택시비 등 카드 결제내역상 지출된 비용이 결제일자와 이용내역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기사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영업상의 손해(소극적 손해)

갑 제7, 8, 15, 16, 17, 18, 24, 39호증, 을 제3, 11 내지 14,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기사와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영업상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상 손해액을 국내 매출액 감소분을 기준으로 하여 약 20%정도인 350,000,000원으로 산정한다.

①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될 무렵부터 원고의 매출액이 다시 회복된 2017년 5월 중순경까지 원고의 매출액과 2017년 4월 2주차 대비 매출감소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매출액(원)	수출(원)	국내(원)	4월 2주 대비 전체 감소(원)	4월 2주 대비 국내 감소(원)
4월2주	3,009,919,867	1,633,022,862	1,376,897,005		
4월3주	2,446,721,297	1,405,732,967	1,040,988,330	563,198,570	335,908,675
4월4주	2,428,185,225	1,255,000,000	1,173,185,225	581,734,642	203,711,780
4월5주	1,522,871,055	630,248,313	892,622,742	1,487,048,812	484,274,263
5월1주	1,244,723,125	601,586,760	643,136,365	1,765,196,742	733,760,640
5월2주	2,771,157,221	1,393,260,644	1,377,896,577	238,762,646	감소 X
합계				4,635,941,412	1,757,655,358

- ②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C의 경우 원고의 매출이 하락한 시기인 2017년 2분기 영업이익이 248억 원으로 31.8% 가량 증가하였고, 그중 보툴리눔 매출액은 235억 원으로 59.3%가 증가하였는데, 수출이 162억 원으로 93.2%가 증가하였고, 내수는 73억 원으로 14.6%가 증가한 점, 당시 국내 보툴리눔 시장의 대부분을 원고와 C가 점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되기 전까지는 원고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C의 국내시장 점유율을 넘어섰던 점, 이 사건 기사의 보도시기와 원고의 매출액 하락 시기 및 대응보도와 매출액 회복시기의 간격 등에 비추어 피고보조참가인의 기사 및 이 사건 기사의 보도와 원고의 매출액 감소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보인다.
- ③ 2018년 8월경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제품을 포함한 한국 기업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는 중국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의 정식 허가를 받은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중국이 무허가 의약품을 단속하는 등의 원인으로 원고 등의 매출이 상당히 감소하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바, 감소된 매출액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수출로 인한 매출액 감소 부분은 해외의 개별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규제와 단속, 판매 허가 여부 및 해외의 동종 제품과의 경쟁 등 다양한 변수가 원고의 매출액 감소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④ 원고는, 원고의 매출액 감소가 주로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일반 국민과 전문의료인이 이 사건 제품 대신 동종의 다른 제품을 구매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바, C의 국내 매출 증가 비율 14.6%는 수출 증가비율 93.2%와 대비하여 매우 적은 수치이고, 위 표상 원고의 국내 매출감소 합계액은 약 17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는 점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의 기사와 이 사건 기사의 보도가 원고의 매출액 감소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⑤ 매출에는 매출을 올리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이 존재하므로, 매출액 감소로 원고가 지출하지 않게 된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손해액의 산정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는 “A ‘○○○○’ 재심사...척추골절 등 중증 부작용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수정되었는바, 이 사건 기사가 일반에 노출된 기간이 길지는 않았다.
- ⑦ 수정된 기사는 원고의 반론을 적시하고, 중대한 이상사례 발현 중 이 사건 제품과 인과 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용과 다른 의약품에서 보고된 이상사례에 비해 통계적으로 많이 보고된 이상사례 중 새로 확인된 것들은 없었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미간주름 환자의 사례와 소아마비 환자의 사례에 대한 내용은 제외하여 대부분의 허위사실이 더 이상 적시되지 않았다. 다만 인터넷 기사의 특성상 수정된 기사가 게재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기사가 상당히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정된 기사의 제목 중 ‘척추골절등 중증 부작용 논란’ 부분, 본문 말미에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중대한 이상사례가 발현된 만큼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전문가의 시각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는 내용이 존재하여 원고의 이 사건 제품에 대한 부작용 논란이 계속 중인 것처럼 오해될 내용이 있어 이 사건 기사로 인한 가해행위가 수정된 기사로 인하여 완전히 종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기사가 원고의 손해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감소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⑧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작성한 기사의 주된 구독자는 의학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들이 항상 자신이 처방하는 약물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시하는 자료를 확인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이를 확인하여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믿지 않고 이 사건 제품이 안전하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이 사건 제품의 안전성을 우려하여 이 사건 제품 외의 제품을 처방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환자가 있을 수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품을 처방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도 이 사건 기사를 접하고 나서 환자들에게 다른 제품으로 처방을 한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의 주된 구독층이 의학에 전문지식이 있다는 사정이 이 사건 기사와 원고의 손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방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들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의 산정

-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바, 공동불법행위자들은 각자 독립하여 동일한 내용의 손해배상채무 전부를 급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지위에 있고(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도 책임제한 등으로 채무액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책임제한 등 채무액수를 달리할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생긴 사유 중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 등과 같은 사유 이외에는 다른 채무자에게 그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 (2)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에 앞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의 보도로 인하여 입은 손해 부분에 관하여 합의를 하고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어떠한 명목으로 얼마의 액수를 손해배상 합의금으로 지급받았는지에 대하여 석명명령을 받았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합의서를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을 받았음에도 피고보조참가인과의 비밀준수약정을 이유로 이에 모두 불응하였다.
- (3) 원고의 손해와 관련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보조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의 내부 분담비율에 관하여 보면, 다수의 일반인들이 접하는 피고보조참가인의 기사에 비하여 이 사건 기사의 주된 구독자는 제한적이어서 이 사건 기사를 접한 사람들의 수가 피고보조참가인의 기사를 접한 사람들의 수보다 현저히 적을 것으로 보이는 한편, 의료 관련 기사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피고 회사의 특성상 의약품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직접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보조참가인의 기사가 이 사건 기사에 앞서 보도되었고, 그 내용도 거의 비슷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책임 분담 비율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그것과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이므로 50%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 (4) 원고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손해와 관련하여 합의금을 지급받았음이 인정됨에도 그 구체적 액수에 대한 석명 답변을 거부함으로써 변제로 소멸한 손해배상액을 확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와 민사소송법 제349조, 제350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앞서 인정한 피고보조참가인의 손해배상책임 분담비율만큼의 손해배상금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므로(원고도 이와 같은 계산방식에 동의하였다),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피고보조참가인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고 남은 재산상 손해배상금 175,240,000원 $\{(480,000\text{원}+350,000,000\text{원})\times 1/2\}$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자료

피고들의 이 사건 기사로 원고의 명예, 신용 등이 훼손됨으로써 보톡스 제조업체로서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낮아지고 그 사업수행에 악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고가 입은 손해의 종류 및 성격, 원고의 지명도, 영업상의 신용도, 피고들의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성, 이 사건 기사의 허위성, 비방성, 악의성의 정도, 이 사건 제품의 특성, 이 사건 기사가 미치는 영향의 즉각성 및 지속성, 부정적 영향으로부터의 회복의 곤란성,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의 가담정도 및 피해변제, 앞서 인정된 재산상 손해배상액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소결

그러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합계 175,240,000원과 위자료 30,000,000원의 합계 205,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7. 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 청구로 각 나누어 앞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재산상 손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일부 항소와 위자료 부분에 대한 피고들의 일부 항소를 각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저작권 침해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나57023 판결

SNS에 사진을 공개, 게시했다고 하여 언론사의 사용까지 허락한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

- 원고 : A
- 피고 : 국민일보 주식회사

[사실관계]

피고 국민일보 주식회사는 2017년 7월 21일 <인터넷 국민일보>와 7월 24일 <국민일보>에 “B 목사, 잘못된 신론 구원론 갖고 있다”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원고가 촬영한 B목사의 사진을 동의 없이 사용하며 사진 출처를 ‘페이스북 캡처’로 표기하였다. 이에 원고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기사에 게재된 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소61059), 2심 법원 역시 언론사가 페이스북 캡처라고 출처를 밝히며 게시한다고 하여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페이스북 사진을 기사에 사용하는 행위를 공정한 관행으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소 제기 전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여 원고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으나 피고가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2017서울조정1264).

[판결요지]

□ SNS에 공개된 사진을 동의 없이 전재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진을 공개로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같은 언론사의 사용까지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다수의 언론사가 페이스북 캡처라는 형태로 출처를 밝히고 기사를 서술한다고 하여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을 캡처해서 기사를 작성하는 공정한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사진을 원고의 동의 없이 사용하면서 게재한 기사의 주된 내용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나 공공의 이익보다는 B 목사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 등을 비판하는 피고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내용이다. 피고의 B 목사에 대한 비판적인 논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 사진이 사용된 이상 그 비중이 결코 적지 아니하고, 피고가 신문판매를 통한 이윤추구나 인터넷 국민일보의 광고수익을 얻는 상업상 회사로서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문

사 건 2018나57023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국민일보 주식회사
제 1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7가소61059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1. 16.
판 결 선 고 2019. 1.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아래의 ① 내지 ④사건에 관한 피고의 행위로 말미암아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2,000,000원,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1,200,000원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저작권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000,000원’을 인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당심에 이십된 부분 중 피고가 불복신청한 한도로 제한된다(다만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원인을 선택적으로 추가한 것에 관하여는 아래 제4의 다.항에서 살펴본다).

2. 기초사실

- 가. 원고는 ○○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디지털이미지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대학교 일반대학원 디지털이미지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현재 ‘XXXX’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다큐멘터리 전문 사진작가이다. 피고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언론사이다.
- 나. 원고는 □□□□교회측 인사로부터 2015년 6월에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는 퀴어문화축제에 교인들이 참가하는 모습을 촬영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사진을 촬영하였다.
- 다. 원고는 위 퀴어문화축제에서 □□□□교회 이름으로 휘날리는 깃발을 촬영하였는데, 그 사진 원본은 갑 제9호증과 같고, 그 사진 중 깃발의 모습만을 떼어 □□□□교회 페이스북의 표지 사진(이하 ‘①사진’이라 하고, 원고의 2017. 12.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별지 1’과 같음)으로 올려주었다.¹⁹⁾
- 라. 또한 원고는 위 퀴어문화축제에서 □□□□교회 소속 B 목사가 발언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B 목사에게 그 사진을 전달하였다(이하 ‘② 사진’이라 하고,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별지 2’사진과 같다)²⁰⁾.
- 마. 한편, 원고는 2014년 □□□□교회 소속 B 목사로부터 국민일보 신문에 실릴 인터뷰의 배경 초상사진 촬영을 부탁받아 초상사진 촬영 후 B 목사에게 전달한 적이 있는데, 그 사진 원본은 갑 제10호증과 같다. B 목사는 당시 원고로부터 건네받은 사진을 피고 소속 종교기획부 C 기자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피고는 2014. 6. 7.자 국민일보 18면(주말기획면)에 “교회 밖으로 나온 동성애 논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하면서 갑 제10호증 사진 중 여백을 제거하고 B 목사의 얼굴 부분만을 게재하였다(을 제1호증).
- 바. 피고는 2017. 7. 21.자 인터넷 국민일보 <미션> 섹션에 “B 목사, 잘못된 신론 구원론 갖고 있다” 제하의 기사²¹⁾를 게재하면서 ‘①사진’과 ‘②사진’을 □□□□교회와 B 목사의 동의 없이 사용하였고, 그 출처에 관하여 ①사진의 경우 ‘□□□□교회 페이스북 캡처’라고 표기하고, ②사진의 경우 ‘B 목사 페이스북 캡처’라고 표기하였다.
- 사. 피고는 2017. 7. 24.자 국민일보 22면(기독교뉴스면)에 “B 목사, 반성경적 주장 … 정통교회와 신학 공격”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갑 제10호증 사진의 오른쪽 여백 일부를 자르고 B 목사의

19) 원고의 2018. 4. 13.자 준비서면 제3면에 원본 및 ①사진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20) 원본도 동일한 것으로 보임

2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630280&code=61221111&sid1=mis>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하여 수정한 사진을 사용하였다(원고의 2017. 12.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별지 3’과 같고, 이하 ‘③사진’이라고 한다).

아. 이에 원고는 2017. 7. 23. 언론중재위원회에 2017서울조정1263, 1264호로 피고가 저작권자인 동의 없이 원고가 저작권자인 ①사진, ②사진 및 ③사진을 인터넷 기사 및 지면 기사에 사용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언론조정 신청을 하였다.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제8중재부는 2017. 8. 18. 조정기일을 진행한 다음 같은 날 피고가 원고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2017. 8. 30.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고의 이의신청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22조 4항, 제26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자. 또한 피고는 2017. 9. 24.자 인터넷 국민일보에 “예장합동, B 목사 참여금지·D씨 예의주시 결의”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하면서 갑 제10호증 사진의 여백을 모두 자르고 B 목사의 얼굴에 둥근 모양으로 모자이크 처리하여 수정한 사진을 사용하였다(원고의 2017. 12.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별지 4’와 같고, 이하 ‘④사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4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①사진(원본은 갑 제9호증 중 일부임), ②사진(원본과 동일), ③사진(원본은 갑 제10호증), ④사진(원본은 갑 제10호증) 대상물은 B 목사이지만 사진저작권은 사진을 촬영한 원고에게 귀속되므로, 그 사진들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초상이용에 관한 B 목사로부터의 허락과 별도로 사진저작권자인 원로로부터 그 이용에 관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진들에 대하여 B 목사는 물론 원고로부터 어떠한 허락을 받지 않고 사진저작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피고의 단말기에 복제하거나 이를 인쇄하고 이어 복제된 원고의 사진저작물을 자신의 인터넷 기사와 지면 기사에 임의로 게시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복제권, 전송권과 배포권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의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로 인하여 받은 손해액은 1,200,000원이므로(사진 1점당 40만 원이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사진 3점에 해당하는 금액임),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2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선택적으로, 이 사건 사진들에 관하여 저작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저작권침해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가 사전 협의나 양해 없이 무단으로 자신의 뉴스 제작에 이 사건 사진을 사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원고가 받아야 할 인센티브의 부족을 초래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조 제1호 차.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① 내지 ④사진은 촬영자인 원고의 사상이나 감정이 이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창작성이 없어 사진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다. 가사 사진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사진저작물은 유체물이 아닌 이상 배포권이 침해될 여지가 없고 ③사진의 경우 지면 기사에 사용된 것으로 공중송신권(전송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보도를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다수의 언론사가 페이스북 캡처라는 형태로 출처를 밝히고 기사를 서술함)에 합치되게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고 출처명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③, ④사진은 B 목사가 저작재산권자인 줄 알고 포괄적 이용을 허락했다는 판단 아래 출처를 표시하지 아니한 것임)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다. 가사 손해가 인정되더라도 손해액은 사진저작물당 각 15만 원 합계 45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데,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 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등 참조).

(2) ① 내지 ④ 사진이 사진저작물인지 여부

①사진(원본은 갑 제9호증 중 일부로서 원고가 갑 제9호증을 편집한 사진이 ①사진과 동일함)은 서울광장임을 짐작할 수 있는 배경에 □□□□교회 이름이 써진 깃발의 펄럭임과 그 하단부에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깃발이 함께 걸려있는 모습을 피사체로 선정하여 교회 이름이 제대로 드러나도록 깃발이 펄럭이는 시간대와 각도를 선택하여 촬영함으로써 □□□□교회가 성소수자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한 촬영자의 창작적인 고려가 나타나 있고, ②사진은 B 목사가 실외에서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색깔의 목도리를 걸치고 손으로 무지개 색깔의 부채와 마이크를 들면서 부드러운 표정으로 발언하는 순간을 선택하여 촬영함으로써, ③사진과 ④사진(원본은 갑 제10호증으로 같음) 역시 B 목사가 실내에서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문양이 들어간 목도리를 걸치고 오른손을 가볍게 쥐면서 발언하는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교회 목사가 성소수자와 관련된 긍정적인 발언을 하는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한

촬영자의 창작적인 고려가 나타나 있다.

결국 ① 내지 ④ 사진은 촬영자의 의사 개입 없이 촬영 목적 자체가 대상물의 충실한 재현에 있다고 볼 수 없고(□□□□교회 깃발이나 B 목사를 언제 어떠한 각도에서 촬영하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누가 촬영하여도 같거나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성소수자와 관련된 □□□□교회나 B 목사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① 내지 ④ 사진은(①사진의 경우 원고가 편집한 사진을 지칭함)은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원고가 위와 같이 개성과 창조성을 발현하여 ① 내지 ④ 사진을 촬영하였으므로 그 저작권자는 원고이다(저작권법 제35조 제4항은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초상본인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위한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 조항과 저작자 추정 규정에 불과한 저작권법 제8조 제1, 2항만으로 초상본인인 B 목사 또는 □□□□교회가 저작권자라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저작권이 B 목사나 □□□□교회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증거가 없다).

(3)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저작권자인 원고로부터 사진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이나 동의 받지 아니한 채 ①사진과 ②사진을 □□□□교회 페이스북과 B 목사 페이스북에서 캡처한 다음 피고의 컴퓨터 저장장치에 복제하고 이어 복제된 원고의 사진저작물을 자신의 인터넷 기사에 게시함으로써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하였고, ③사진과 ④사진 원본인 갑 제10호증을 원고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모자이크 처리하여 임의로 수정한 다음 피고의 컴퓨터 저장장치에 복제하거나 이를 인쇄하고 이어 복제된 원고의 사진저작물을 자신의 지면 기사와 인터넷 기사에 게시함으로써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B 목사가 ③사진과 ④사진 원본인 갑 제10호증을 2014. 6. 7.자 국민일보 18면 기사에 함께 게재하기 위하여 피고 소속 C 기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당시의 동의는 위 일자 신문 기사 게재에 관한 일회적인 동의에 불과하므로, 그 이후의 사용에 관하여는 저작권자인 원고나 초상권자인 B 목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는 ①사진, ②사진 및 ④사진의 경우 인터넷 국민일보 구독자가 수신할 수 있도록 ①사진, ②사진 및 ④사진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송신하였으므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전송권 침해에도 해당한다(저작권법상 배포의 개념은 전송의 개념과 대비되어 무체물이 아닌 유체물의 형태로 저작물이나 복제물이 양도 또는 대여되는 것을 뜻하므로, 원고의 배포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보도를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다수의 언론사가 페이스북 캡처라는 형태로 출처를 밝히고 기사를 서술함)에 합치되게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고 출처명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③, ④사진은 B 목사가 저작재산권자인 줄 알고 포괄적 이용을 허락했다는

판단 아래 출처를 표시하지 아니한 것임)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저작권법 제35조의3 제1항은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348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진을 공개로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같은 언론사의 사용까지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다수의 언론사가 페이스북 캡처라는 형태로 출처를 밝히고 기사를 서술한다고 하여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을 캡처해서 기사를 작성하는 공정한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① 내지 ④ 사진을 원고의 동의 없이 사용하면서 게재한 기사의 주된 내용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나 공공의 이익보다는 B 목사의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 등을 비판하는 피고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내용이다. 피고의 B 목사에 대한 비판적인 논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 사진이 사용된 이상 그 비중이 결코 적지 아니하고, 피고가 신문판매를 통한 이윤추구나 인터넷 국민일보의 광고수익을 얻는 상업상 회사로서 ① 내지 ④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③, ④ 사진의 경우 B 목사가 포괄적 이용을 허락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가 초상권자인 B 목사나 □□□□교회에 사진 사용에 관한 어떠한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사정을 보태어보면,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데에는 원고의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저작재산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그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조항으로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이 있지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조항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① 내지 ④ 사진을 사용함으로써 받은 이익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나, 원고가 사진작가로서 1회적인 사진 이용이나 3일간의 행사를 촬영하는 대가로 1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은 증거로서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 내지 18, 21호증을 제출하고 있다(그 중 갑 제3호증의 1 협약서의 보수가 200만 원으로 가장 크다고 할 것인데, 저작권을 양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언론사로부터 사진 사용에 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대가가 얼마인지 참고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경우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에 어려운 때에 해당하므로,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그 손해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의 사진작가로서의 경력 및 인지도, 피고가 원고의 사진저작권에 대한 침해기간 및 고의·과실의 정도 등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복제권 침해에 대하여 80만 원, 전송권 침해에 대하여 20만 원 합계 100만 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8. 1.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5.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당심에서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으나, 원고의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위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2장

정정 · 반론 · 추후보도 청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8가합672 판결

제척기간이 도과된 시점에서 반론보도청구가 추가되었더라도 소송계속 중이라면 언론중재법 제26조제2항에 의거,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 원고 : 조달청
- 피고 : 아시아투데이 주식회사

[사실관계]

피고는 2018년 1월 29일 및 같은 해 2월 9일 <아시아투데이닷컴>에 원고가 내부 감사의 지적에도 공공기관의 입찰 위법 행위를 방관하여 7개월째 이를 개선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정정보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예비적으로 반론보도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했다. 1심 법원은 이 사건 기사가 진실하며 구하는 반론보도 또한 이미 원 기사에서 적시되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소 제기 전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여 반론보도를 명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으나 피고가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2018서울조정284).

[판결요지]

□ 반론보도청구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

언론중재법 제26조 제2항은 “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소송계속 중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상회기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의 소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 등에 관한 실효성 있는 구제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임에 비추어 보면, 당초 정정보도청구등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그 후 다른 정정보도청구등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2018. 2. 13. 이 사건 각 기사에 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취지의 조정신청을 한 후,

2018. 6. 11.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을 통하여 예비적 반론보도청구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기사에 관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이상 추가된 예비적 반론보도청구가 제척기간을 초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판결문

사	건	2018가합672	정정청구
원	고	조달청	
피	고	아시아투데이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3. 28.
			2019. 4. 11.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일주일 이내에 아시아투데이 홈페이지(<http://www.asiatoday.co.kr>) 초기 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별지 3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3 기재 내용이 표시되도록 하되, 별지 1, 별지 2 기재 각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제목 및 본문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09:00부터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며, 각 정정보도 대상 기사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고, 네이버, 다음 등 검색 제휴된 포털사이트에도 전송하며, 피고가 위 기간 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아시아투데이 홈페이지(<http://www.asiatoday.co.kr>) 초기 화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별지 4 기재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4 기재 내용이 표시되도록 하되, 별지 1, 별지 2 기재 각 반론보도 대상 기사의 제목 및 본문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09:00부터 48시간 동안 게재하고,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며, 각 반론보도 대상 기사 본문 하단에도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고, 네이버, 다음 등 검색 제휴된 포털사이트에도 전송하며, 피고가 위 기간 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인터넷 신문 아시아투데이를 발행한다.

나. 피고는 아시아투데이 홈페이지(<http://www.asiatoday.co.kr>)에 2018. 1. 29. 『공공조달 진입 장벽에 막힌 스타트업..손놓은 A 조달청장』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공공기관의 입찰 위법 행위를 방관하여 스타트업 회사들이 공공 조달시장 진입에 애를 먹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별지 1 기재 기사, 이하 ‘이 사건 1 기사’라 한다)를, 2018. 2. 9. 『조달청, 공공조달 위법행위 개입 못한다더니...내부 감사선 지적』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2017년 7월 내부감사에서 공공기관 입찰 제안서 평가 항목을 조달청 평가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원고가 7개월째 이를 개선하지 않고, 입찰실적 제한에 관한 공공기관의 위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별지 2 기재 기사, 이하 ‘이 사건 2 기사’라 하고, 위 각 기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를 각 게재하였다. 이 사건 각 기사는 B가 취재·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관리·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게재된 입찰공고 중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이 자체 조달하는 물품 등의 입찰공고가 위법하다면 관계 계약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이 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는 발주기관이 설정한 입찰조건에 감독권을 행사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이 사건 제 2 기사에서 다뤄진 원고 내부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발주기관, 수요기관의 계약 요건에 따라 원고가 직접 조달업무를 대행한 경우에 한정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발주기관, 수요기관이 원고에 요청하지 아니하고 자체 조달하는 물품 등의 입찰공고 등에 대하여도 원고가 위법행위를 방치 내지 묵인하고, 내부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시정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하였다. 따라서 피고에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위적으로 별지 3 기재 정정보도문의 게시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별지 4 기재 반론보도문의 게시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은 사실적 주장이 아닌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여 정정·반론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실의 적시로 보더라도 원고는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이 설정한 입찰 자격 조건에 관여할 권한이 있으므로 원고가 위법행위를 방치·묵인하였다는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원고의 반론보도 청구는 언론중재법상 제척기간을 초과하여 부적법하고, 원고가 반론을 구하는 핵심 내용이 이미 원 보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에게 반론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도 없다.

3. 주위적 정정보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기사가 사실의 적시에 관한 것인지

앞서 든 증거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이자 원고가 정정 내지 반론을 구하는 내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전체 사업 예산이 2억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없음에도 원고가 운영하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을 진행하는 공공기관들이 실적 제한을 걸고 있는데, 이에 개입할 권한을 가진 원고가 공공기관의 위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 ‘2017년 7월 있었던 원고 내부감사에서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입찰 및 계약을 일임한 중앙조달의 경우 해당 기관과 협의해 원고 내부의 평가 기준에 맞추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원고는 여전히 2억 1,000만 원 미만 물품 및 용역 입찰에서 실적 제한을 거는 공공기관의 위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이 사건 각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전체적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문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내용은 피고 등의 주관적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공공기관의 입찰 위법행위를 방지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함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이 사건 각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기사에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위적 정정보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 1) 전자조달법 제12조 제2항은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호는 조달청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경쟁입찰의 참가자격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제3호는 입찰 참가자격의 사전심사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제4호는 계약 이행 능력의 심사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책임을 지는 원고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요기관 등 관계 기관에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받아 전자조달시스템상 입찰이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조율할 책임을 부여한 조항으로 해석된다.
- 2) 원고가 관계 기관에 입찰자격 제한과 관련한 감독권을 직접 행사할 근거가 없더라도, 해당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이나 해당 기관의 감독부서에 통제권 행사를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관리영역인 전자조달시스템 운영의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 존재한다.
- 3) 이 사건 각 기사의 주된 취지는 원고가 해당 기관의 입찰공고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전자조달시스템상 입찰자격 제한과 관련한 위법이 방지되어 신생기업의 공공기관 조달시장 참여가 사실상 차단되어 있는 점을 비판하여 문제의식을 공유함과 동시에 그 해결을 위한 원고의 적극적 조치를 촉구하려는 데 있다. 이와 같이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함에 비추어 원고에게 공공기관의 입찰 내용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원고가 입찰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이 명백히 허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4)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2 기사에 ‘원고에게 공공기관 입찰 전반에 개입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입찰을 방지하였다는 내부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2 기사는 원고 내부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수요기관이 원고에 입찰·계약을 일임한 중앙조달’의 경우 해당 기관과 협의해 원고의 기준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임을 명시하였고, 이어 중앙조달로 진행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절반 이상이 수요기관 평가이고, 정보기술계약과의 협상에 의한 계약 중 조달청 평가가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0.6%포인트 하락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을 뿐이다.

4. 예비적 반론보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언론중재법에 따른 반론보도청구의 소는 피해자가 해당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언론보도가 있는 후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동법 제26조 제3항,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3항).

원고가 2018. 2. 13. 이 사건 각 기사에 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취지의 조정신청을 한 사실, 2018. 6. 11.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을 통하여 예비적 반론보도청구를 추가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언론중재법 제26조 제2항은 “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소송계속 중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상호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의 소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 등에 관한 실효성 있는 구제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임에 비추어 보면, 당초 정정보도청구등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그 후 다른 정정보도청구등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기사에 관한 원고의 2018. 2. 13.자 조정신청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의 2018. 3. 28.자 직권조정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함에 따라 언론중재법 제22조 제4항에 의하여 제소된 것으로 간주된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이상 원고의 2018. 6.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써 추가된 예비적 반론보도청구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반론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기사에는 해당 사항에 관한 원고의 주장과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는 반론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이 인정된다. 원고의 예비적 반론보도 청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1) 이 사건 1 기사는 ‘조달청은 공공기관이 직접 발주한 경우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해명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조달청에 요청한 입찰 건은 관련 법령에 맞는지 검토한다”면서도 “수요기관이 나라장터에 자체 발주한 경우 법령을 지키지 않더라도 조달청이 간섭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이 사건 2 기사도 ‘조달청 관계자는 “수요기관이 나라장터에 자체 입찰할 때는 조달청이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빌려준 것뿐”이라며 “수요기관이 직접 올린 공고는 해당 기관에서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입찰 참가업체가) 위법 공고를 올린 수요기관 구매 부서에 시정요구를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해당 기관의 감사 부서나 감독하는 부처 및 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는 내용을 각 기재하여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문의 취지와 동일한 내용의 원고 측 해명 내지 주장을 적지 않은 지면을 할애하여 그대로 적시하였다.

- 2) 이 사건 2 기사는 원고 내부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입찰·계약을 일임한 중앙조달일 때 해당한 사항임을 명시하였다. 이는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문 중 원고 내부감사 결과에 관한 부분의 반론 내용과 일치한다.
- 3) 달리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문에 이 사건 각 기사에 적시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반론보도문의 말미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가 창업 기업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는 등의 내용은 평소 중앙행정기관인 원고가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충분히 알려 온 내용에 불과하다(갑 제2호증).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2〉 대상기사 생략

〈별지3〉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4〉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생략

청구된 반론보도 내용이 원보도와 다르지 않거나 명백히 허위인 경우 또는 청구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 원고 : A
- 피고 : 주식회사 문화방송

[사실관계]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2018년 4월 22일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원고가 폭식 투쟁 집회의 주요 참가자라는 취지의 방송을 보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반론보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원보도에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 내용과 다른 사실적 주장이 적시되어 있지 않고 또 원고가 허위임을 알고 있음에도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고 보아 반론보도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후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소 제기에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여 반론보도를 명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으나 피고가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2018서울조정922).

[판결요지]

□ 반론보도청구의 거부사유

청구할 수 있는 반론보도의 내용이란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는 것이다. 한편 반론보도청구권이 원칙적으로 보도내용의 진실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반론보도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면서도 그 허위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라 하여 예외적으로 반론보도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허위의 '명백성'이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을 탈락시킨다는 관념에 기초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와 마찬가지로 그 허위성을 반론보도청구인 스스로 인식한 경우에는 허위성을 '인식'하고서도 감연히 반론보도청구를 한다는 점이 정당한 이익을 탈락시켜 반론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를 묻지 않는 원칙에 대한 또 하나의 예외를 구성하게 된다.

판결문

사	건	2018가합1001	반론청구
원	고	A	
피	고	주식회사 문화방송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4. 10.
			2019. 5.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이 사건 판결선고 후 최초로 방영되는 MBC 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방송시작 직전에 별지1의 반론보도문이 화면에 표시되도록 하고, 그 내용을 나레이터가 낭독하여 시청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스토리’ 등을 제작한 탈북 영화감독이고, 피고는 ‘MBC TV’를 방영하는 지상파 방송사이다.

나. 방송 보도 내용

피고는 2018. 4. 22.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프로그램 제8회차 방송에서 “단독, 폭식 투쟁의 배후를 밝힌다”라는 제목하에,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 이 사건 보도 중 폭식 투쟁을 주도하였다고 알려져 있는 △△△△연합 B 대표와 함께 연단에

서 있는 원고의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20여 초간 방송되었다.

다. 시청자들의 반응

이 사건 보도를 접한 시청자들은 원고가 폭식 투쟁 집회 참가자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원고에 대한 악성댓글과 원고가 경영하는 음식점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이 시작됐으며, 위 음식점 창문에 세월호 리본을 스프레이로 그리고 비난 벽보를 붙인 사람이 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폭식 투쟁 집회 당시 시민단체 대표가 새로운 형식의 콘서트를 한다고 해서 공연티켓을 나눠주고 노래 몇 곡을 부른 것이 전부였을 뿐이므로, 집회를 주도하거나 세월호 유가족을 폄훼하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보도에서 원고를 20여 초간 노출시킴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마치 폭식 투쟁 집회의 배후자 또는 주요 참가자인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방송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보도로 인해 대중으로부터 폭식 투쟁 관련자로 오해받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경영하는 음식점 창문에 세월호 리본을 스프레이로 그리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당하고, 온라인을 통해 근거 없는 공격을 당하는 등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재산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요지의 별지1 기재 반론보도문의 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 ① 원고는 폭식 투쟁 집회 당시 시민단체 대표가 새로운 형식의 콘서트를 한다고 해서 공연티켓을 나눠주고, 노래 몇 곡을 부른 것이 전부였을 뿐이다.
- ② 원고는 집회를 주도하거나 세월호 유가족을 폄훼하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 ③ 원고는 이 사건 보도의 폭식 투쟁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다.

3. 판단

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의 적시 여부

- 1) 언론중재법 제16조 제1항이 규정한 반론보도청구요건인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라 함은 원보도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원보도에서 지명된 사람이라도 그가 청구할 수 있는 반론보도의 내용은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는 것이지만, 여기서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에는 원보도에서 직접적으로 기술한 사항은 물론 원보도가 직접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사실이라도 전체적인 보도의 취지, 경위, 내용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등 참조).

- 2)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도 중 폭식 투쟁을 주도하였다고 알려져 있는 △△△△ 연합 B 대표와 함께 연단에 서 있는 원고의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20여 초간 방송되었고,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시청자들은 원고가 폭식 투쟁 집회의 주요 참가자인 것으로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도를 통하여 ‘원고가 폭식 투쟁 집회의 주요 참가자이다’라는 사실을 적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사회적 평판 저하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도에 ‘원고가 폭식 투쟁 집회의 배후자이다’라는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3) 결국, 원고가 구하는 ‘원고는 집회를 주도하거나 세월호 유가족을 폄훼하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반론보도의 내용은 이 사건 보도에 그와 다른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보도에 대한 반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반론보도청구 거부사유의 존부

- 1)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등에는 언론사등은 반론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6조 제3항, 제15조 제4항). 그런데 반론보도청구인이 스스로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청구하는 경우는 반론보도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헌법적 보호 밖에 있는 것이어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반론제도가 본래 반론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어서 허위반론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반론보도청구인에게 거짓말할 권리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반론보도청구인 스스로 허위임을 인식한 반론보도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반론보도청구권이 가지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라는 주관적 의미나 올바른 여론의 형성이라는 객관적 제도로서의 의미 어느 것에도 기여하지 못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한 헌법적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를 정당화할 아무런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반면, 이러한 반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언론기관의 이익은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화로운 해결책을 찾는다면 위와 같이 허위임을 인식한 반론보도청구는 마땅히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반론보도청구권이 원칙적으로 보도내용의 진실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반론보도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면서도 그 허위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라 하여 예외적으로 반론보도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허위의 ‘명백성’이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을 탈락시킨다는 관념에 기초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와 마찬가지로 그

허위성을 반론보도청구인 스스로 인식한 경우에는 허위성을 ‘인식’하고서도 감연히 반론보도청구를 한다는 점이 정당한 이익을 탈락시켜 반론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묻지 않는 원칙에 대한 또 하나의 예외를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허위성의 인식은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반론보도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그 존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반론보도청구 당시에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고, 한편 이를 입증할 책임은 허위성의 인식을 주장하는 사람이 지게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참조).

- 2) 위 법리에다가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구하는 ‘원고는 폭식 투쟁 집회 당시 시민단체 대표가 새로운 형식의 콘서트를 한다고 해서 공연티켓을 나눠주고, 노래 몇 곡을 부른 것이 전부였을 뿐이다’, ‘원고는 이 사건 보도의 폭식 투쟁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반론보도의 내용은 허위이고, 이는 원고가 직접 관련되거나 원고 본인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진실 여부에 대하여 원고가 몰랐을 수가 없는 것들이어서 원고가 허위임을 알고도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가) 원고는 트위터 등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폭식 투쟁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혀 왔는데, 이 사건 보도에 노출된 원고의 폭식 투쟁 집회 참석 이전에 폭식 투쟁의 취지에 공감하여 동참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나) 원고는 위 집회 참석 이후에는 자신의 집회 참가와 후원 사실을 밝히면서 계속하여 진행될 폭식 투쟁에 대한 참가와 후원을 독려하였다.

다) 원고는 위 집회 참석 이후에 인터넷 방송 진행자와 한 인터뷰에서 행사(집회)를 주도하였다고 알려진 주체(B 대표 등)에게 향후 이어질 행사(집회)의 방향까지 제언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요구하는 반론보도문 생략

〈별지2〉 대상기사 생략

당사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과거 경영진’으로 표시했어도 사건 발생 당시 임원으로 재직한 사람이라면 보도와의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된다

- 원고 : A
- 피고 : 한국프로듀서연합회

[사실관계]

피고는 2018년 6월 12일 <인터넷PD저널>에 ‘2017년 당시 MBC 경영진이 6월 항쟁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인 PD에게 제작 중단을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명예훼손에 따른 반론보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과거 경영진”이라는 표현이 원고를 특정하며 원고가 구하는 반론 또한 명백히 사실과 다르지는 않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소 제기 전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여 반론보도를 명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으나 피고가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2018서울조정1182).

[판결요지]

□ “과거 경영진” 표현이 원고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기사 내용과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 중 “과거 경영진”, “당시 경영진” 표현은 ‘어머니와 사진사’ 제작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던 날 다큐멘터리 제작 업무를 관장하는 편성제작본부에서 다큐멘터리 제작 및 중단 여부를 결정·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일부 임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당시 원고는 편성제작 본부장으로 재임하였으므로 위 “경영진”에 포함되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판결문

사 건 2018가합1330 반론보도청구
원 고 A
피 고 한국프로듀서연합회(인터넷PD저널)
변 론 종 결 2019. 5. 2.
판 결 선 고 2019. 5. 30.

주 문

1. 피고는,
 - 가.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PD저널 홈페이지(<http://www.pdjournal.com>) 인터넷
뷰면 기사목록 첫 부분에 별지 1 기재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반론보도문 본문이 표시되도록 하여 24시간 동안 게재하며, 이후로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
관하여 검색되도록 하고, 반론보도문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http://www.naver.com>)
와 다음(<http://www.daum.net>)에 전송하며,
 - 나. 가.항 기재 기간 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8. 6. 12. 피고가 발행하는 인터넷 신문인 인터넷PD저널 홈페이지(<http://www.pdjournal.com>)에 『“제작 중단 1년 만에 ‘어머니와 사진사’ 방송, 기적 같아”』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당시 경영
진의 탄압으로 제작이 중단된 MBC스페셜 ‘어머니와 사진사’ 다큐멘터리가 우여곡절 끝에 방영됐다는

내용의 MBC B PD에 대한 인터뷰 형식 기사(별지 2 기재 기사, 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MBC 편성제작본부장으로 근무한 원고는 B PD가 제작 중인 ‘어머니와 사진사’ 다큐멘터리가 C 콘텐츠제작국장의 지시 등에 의하여 제작 중단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MBC 경영진이 위 다큐멘터리의 제작 중단을 지시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판이 저하되는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에 따라 별지 1 기재와 같은 반론보도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기사의 표현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불과하여 사실적 주장을 요건으로 하는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과거 경영진”이라는 표현이 원고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 내용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고 원 보도에 적시된 사실과 무관하므로 원고에게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기사 내용이 객관적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언론중재법 제16조에 의한 반론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 이어야 한다. 사실적 주장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하고, 논평이나 논설 등 가치평가나 의견표시를 하는 주장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전제 혹은 예시 등을 위한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실적 주장은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128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사 중 원고가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은 “지난해 당시 경영진의 탄압으로 제작이 중단된 MBC스페셜 <어머니와 사진사>가 우여곡절 끝에 방영됐다”, “B PD는 과거 경영진의 석연치 않은 제작 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이어 왔다”, “그 당시 이미 MBC 경영진이 제작 중단

지시를 내리지 않았나(질문)”, “2월 28일에 제작을 중단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D 사장이 취임하고, 본부장 인사가 있던 날 아침이었다(답변)”라는 부분이다.

위 부분 어휘의 통상적 의미, 전체적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문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위 내용은 주관적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2017년 당시 MBC 경영진이 6월 항쟁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인 B PD에게 제작 중단을 지시하였다’는,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함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과거 경영진” 표현이 원고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앞서 든 증거, 갑 제2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2. 28.부터 2017. 12. 13.까지 MBC 편성제작본부장으로 재임한 사실, MBC의 업무 집행기구로 기획본부, 편성제작본부, 보도본부, 드라마본부, 예능본부, 경영본부, 방송인프라본부, 미디어사업본부가 있으며, 다큐멘터리 제작을 담당하는 콘텐츠제작국은 편성제작본부의 하부 기구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기사 내용과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 중 “과거 경영진”, “당시 경영진” 표현은 ‘어머니와 사진사’ 제작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던 날 다큐멘터리 제작 업무를 관장하는 편성제작본부에서 다큐멘터리 제작 및 중단 여부를 결정·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일부 MBC 임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당시 원고는 편성제작본부장으로 재임하였으므로 위 “경영진”에 포함되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원고가 제작 중단 지시에 관여하였는지는 사회적 평판을 달리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다.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지

원고는 당시 ‘어머니와 사진사’ 다큐멘터리는 전임 편성제작본부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되던 도중 제작이 중단되었고, 그로 인하여 자신은 관련 기사가 날 때까지 제작 중단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내용의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다.

피고는 PD가 프로그램 기획의도를 국장과 부장에게 구두로 보고하고 승인을 얻으면 방송국이 해당 프로그램 제작을 승인했다고 보는 것이 MBC의 제작관행이라는 점, 설령 B PD가 ‘어머니와 사진사’ 프로그램 제작에 대하여 최종승인이 아닌 사전 승인만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작이 중단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점을 들어 반론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는 자신은 이 사건 기사 내용과 달리 해당 프로그램 제작이나 중단에 관여하지 않았고, 제작 중단 사실 역시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해당 프로그램 제작 중단에 관여하였음이 명백하게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소결론

반론보도는 원보도가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원보도 내용과 반대되거나 다른 사실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균형 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원고가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 중단에 관여하였음이 명백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제작 중단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사회적 평판이 저하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보도 내용과 다른 사실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별지 기재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반론보도문

[MBC스페셜 〈어머니와 사진사〉 다큐멘터리 제작 기사 관련 반론보도문]

본지는 2018년 6월 12일자 『“제작 중단 1년 만에 ‘어머니와 사진사’ 방송, 기적 같아”』 제하의 기사에서 지난해 당시 경영진의 탄압으로 MBC스페셜 〈어머니와 사진사〉 다큐멘터리 방송의 제작이 중단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MBC 편성제작본부장이던 A씨는 당시 〈어머니와 사진사〉는 전임 본부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되던 도중 제작이 중단되었고, 본인은 2017년 3월 17일 미디어오늘에 관련 기사가 날 때까지 제작이 중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공직자의 발언과 관련한 보도에서 정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요 부분’은 발언이나 영향력 행사의 유무일 뿐 발언 및 영향력 행사의 장소는 아니다

- 원고 : A
- 피고 :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사실관계]

피고는 2019년 4월 3일 <한겨레신문>과 <인터넷 한겨레신문>에 당시 국회 건설교통위원이었던 원고가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국가지원지방도 22호선 ○○-△△ 구간 노선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고 이후 노선 변경이 결정되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에 원고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을 이유로 정정보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해당 발언이 주민설명회에서 이뤄진 것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원고가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보도의 주된 내용은 진실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후 2심에서 강제조정되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9나 2055287).

한편 원고는 소 제기예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여 반론보도를 명하는 조정을 같은하는 결정을 받았으나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2019서울조정862, 863).

[판결요지]

□ 이 사건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사는 당시 국회 건설교통위원이던 원고가 자신의 지역구나 인근 지역, 또는 자신이나 주변인들이 소유한 토지 인근의 도로 노선 결정과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원고의 발언이나 영향력 때문에 공정한 업무 수행이 방해되는 않았는지, 공직자로서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은 아닌지 등, 이해 충돌 방지 의무 위반이 없었지가 주된 내용으로 그러한 원고의 발언이나 영향력의 유무가 더 중요하지, 그러한 발언이나 영향력이 주민설명회에서 있었는지, 다른 장소에서 있었는지는 비교적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또한, 원고가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하였다고 피고가 보도한 근거는, 비록 피고 소속 기자의 ‘주민설명회에 원고가 참석하였더라’는 말에 원고가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시인하는 답변을 한 이후의 것이긴 하나, 원고가 스스로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여 발언하였다고 인정한 진술이다.

판결문

사 건 2019가합821 정정청구
원 고 A
피 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9. 10. 2.
판 결 선 고 2019. 1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가 최초로 발행하는 인터넷사이트(<http://www.hani.co.kr>)의 정치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통상의 기사 제목과 동일한 크기로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위 제목을 클릭하면 위 해당 정정보도문이 통상의 기사제목 및 본문과 동일한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되도록 하며, 그 후에는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 위 해당 정정보도문을 같은 형식으로 이어서 게재하여 위 정정보도 대상 기사를 검색할 때 위 해당 정정보도문이 함께 보이도록 하라.
2. 피고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기한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국회부의장이고, 피고는 일간지 ‘한겨레신문’을 발행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ani.co.kr/>)를 운영하는 언론사이다.

나. 기사의 게재

피고는 2019. 4. 3. “1676억 도로 노선이 의원 땅 옆으로 바뀌었다”라는 제목의 별지2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한겨레신문 제1면, 제4면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12. 14. 당시 □□지방국토관리청이 마련한 주민 간담회 내지 설명회(이하 ‘주민설명회’라 한다)에 참석하지 않았고, 따라서 주민설명회에서 “국가지원지방도 22호선 ○○-△△ 구간이 기존 XX리 도로를 확장하지 않고 뒷산으로 새 길을 내면 국가 예산 낭비”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 노선도 3가지 안 중 기존 국지도 22호선을 확장하는 안으로 결정된 것은 노선 결정에 불과할 뿐 노선 변경이 아님에도, 피고는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원고가 2006. 12. 14. 당시 □□지방국토관리청이 설계 노선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였고, 참석한 주민설명회에서 ‘국가지원지방도 22호선 ○○-△△ 구간이 기존 XX리 도로를 확장하지 않고 뒷산으로 새 길을 내면 국가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으며, □□지방국토관리청은 원고가 반대 의견을 낸 주민설명회 이후 애초 노선을 폐기하고 노선 변경을 결정했다”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아울러 원고는 정정보도에 대한 간접강제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일 때 인정되며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참조). 왜냐하면, 자유로운 견해의 개진이나 공개된 토론과정에서 다소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 없고 무릇 표현의 자유에는 그것의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하므로, 진실에 부합하는지는 표현의 전체적 취지가 중시되어야 하고 세부적인 문제에서 객관적 진실과 완전히 일치할 것이 요구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나. 사실적시 여부

별지2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당시 국회 건설교통위원이던 원고는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이 설계 노선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국가지원지방도 22호선 ○○-△△ 구간이 기존 XX리 도로를 확장하지 않고 뒷산으로 새 길을 내면 국가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고, □□지방국토관리청은 이후 노선 변경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적시사실의 허위 여부

갑 제1 내지 4,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시 주민설명회는 2006. 12. 14. 개최되었고 참석자 명단에 원고의 이름이 없는 사실, 원고는 당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등에 참석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기사 중 ‘원고가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발언하였다’는 부분은 진실과 다른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러나 위 법리에다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1) 이 사건 기사는 탐사기획보도인 ‘여의도 농부님, 사라진 농부들’의 일부로서 전체적인 취지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관련 이해 충돌에 관한 법령 또는 제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주민 요구사항 반영 등의 명목으로 자신의 토지가 있는 쪽으로 도로 노선을 정하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는 원고의 사례를 통해, ‘공직자의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 방지의 제도화와 검증’이라는 공익적 관심사항에 대하여 보도한 것이다.
- 2) 결국 이 사건 기사는 당시 국회 건설교통위원이던 원고가 자신의 지역구나 인근 지역, 또는 자신이나 주변인들이 소유한 토지 인근의 도로 노선 결정과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원고의 발언이나 영향력 때문에 공정한 업무 수행이 방해되지 않는지, 공직자로서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은 아닌지 등, 이해 충돌 방지 의무 위반이 없었는지가 주된 내용으로 그러한 원고의 발언이나 영향력의 유무가 더 중요하지, 그러한 발언이나 영향력이 주민설명회에서 있었는지, 다른 장소에서 있었는지는 비교적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더욱이 원고는 피고 소속 기자와의 대화에서 원고 스스로 지역구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하여 도로 노선이 XX리 마을로 통과하도록 앞장섰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그러한 발언이나 영향력이 공개적인 장소인 주민설명회에서 있었던 것이 다른 장소에서 있었던 것보다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가 아니라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볼 여지가 더 크다. 또한, 원고가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하였다고 피고가 보도한 근거는, 비록 피고 소속 기자의 ‘주민설명회에 원고가 참석하였더라’는 말에 원고가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시인하는 답변을 한 이후의 것이긴 하나, 원고가 스스로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여 발언하였다고 인정한 진술이다.
- 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스스로 지역구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하여 도로 노선이 XX리 마을로

통과하도록 앞장섰다고 밝히고 있다.

- 4) □□지방국토관리청은 2006. 7. 14. 전라남도과 ☆☆☆시 등에 ‘○○-△△간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노선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바 있고, 이에 전라남도는 2006. 9. 8. ‘☆☆시와 협의결과 ○○-△△ 구간 노선계획을 기존 국지도 22호선(△△면 소재지 통과노선)으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시는 처음에는 ‘△△면 XX리를 우회하는 계획은 도로기능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XX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개발촉진을 위하여 XX 시가지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선정하여 달라’는 의견이 있으므로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가, 2006. 10. 2.에는 ‘국도 17호선과의 원활한 접속 등 장래 도로기능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국토관리청 선정안대로 XX 시가지를 우회하는 노선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XX 시가지를 우회하는 노선이 선정되었다가 XX 시가지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 5) 한편, 이 사건 기사에는 “□□지방국토관리청은 원고가 반대 의견을 낸 주민설명회 이후 애초 노선을 폐기하고 3개의 대안 노선과 사업비를 각각 비교했다. XX리 시가지 기존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 통과하는 1, 3안과 XX리 뒷산을 통과하는 2안 등 총 세 개 안이다. 사업비를 추산한 ‘비교노선 검토안’을 보면, XX리 시가지를 통과하는 1안 사업비는 1,250억 6,000만 원(보상비 280억 1,000만 원, 공사비 970억 5,000만 원), 뒷산을 통과하는 2안은 1,769억 9,000만 원(보상비 273억 8,000만 원, 공사비 1,496억 1,000만 원)이다. □□지방국토관리청은 XX리 시가지를 통과하는 ‘1안의 총사업비가 적절하다’며 설계안을 바꿨다”고 기재하여 3가지 안 중 1안을 결정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 2〉 대상기사 생략

제3장

기사삭제청구 등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8가합3273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4. 12. 선고 2018나2057545 판결

공직자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은 이상 위법하다 할 수 없다

- 원고 : A
- 피고 : 주식회사 엠탐 외 1명

[사실관계]

피고 주식회사 엠탐은 2017년 9월 18일 <업다운뉴스>에 '□□공사 사장 후보인 원고가 과거 7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과 기사삭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원고에게 과거 뇌물 수수 의혹이 있었음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또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심 법원 역시 1심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3심에서도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다233225).

한편 원고는 소 제기에 앞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취하한 바 있다(2017서울조정1742·1743).

[판결요지]

□ 이 사건 기사의 위법성 조각 여부 판단

공직자의 생활이나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의혹을 가질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론보도의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러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1심 판결문

사	건	2018가합32739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1. 주식회사 엠탐	
		2. 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8. 17.	
		2018. 8.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엠탐은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업다운뉴스(<http://www.updownnews.co.kr>)의 홈페이지 및 기사 DB에 보관된 별지 기재 기사를 삭제하고, 만약 위 기한 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1일당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2017. 11.경 □□□□공사의 사장으로 임명된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엠탐(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인터넷신문 업다운뉴스(<http://www.updownnews.co.kr>, 이하 ‘이 사건 인터넷신문’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언론사이며, 피고 B는 피고 회사 소속 기자이다.
- 나. 피고들은 2017. 9. 18. 이 사건 인터넷신문에 ‘신임 □□공사 사장 하마평 A... 7억 뇌물 의혹에

노무현 비난까지 과연'이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이 사건 기사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서 아래 표의 '보도의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원고가 7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현재까지도 존재하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취지의 사실적 주장'이라 한다)을 보도하였는데, 위와 같은 허위사실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처분으로서 이 사건 기사를 삭제하고(원고는 아울러 이에 대한 간접강제도 구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액 2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표]

순번	보도의 내용
1	최근 신임 □□□□공사 사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원고가 과거 7억 원 뇌물혐의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 전력 이 재조명되면서 부정적 기류를 형성하고 있어 그 임명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	원고가 정무수석에서 물러난 직후 청와대 추천으로 1999년 ◇◇ XX을 재선거에 공천을 받았으나 당시 여당이었던 ○○ ○○○○의 반발로 후보 교체 당한 바 있다. 당시 ○○○○○○가 원고에 대해 반발한 이유 중 하나가 원고가 모 의원이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검찰 수사가 들어오자 그 수사를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7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 됐기 때문이다.
3	기본적으로 □□□□공사 사장의 자격 요건에는 대규모 조직관리 경험 및 비전 제시 능력을 갖추는 것, 최고경영자가 지녀야 할 결단력, 리더십 및 위기관리 능력을 갖추는 것, 도로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능력을 갖추는 것 등이 있다. 이명을 요구한 여권 관계자는 '실질적 자격요건에도 미달이고, 비리를 눈감아주기 위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있는 사람이 장관급으로 분류되는 □□□□공사 사장에 임명된다면 도덕성이건 명분상이건 큰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3. 판단

가. 원고가 주장하는 취지의 사실적 주장 적시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에 위 표의 '보도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7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과거에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넘어 '그러한 의혹이 현재까지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취지의 사실적 주장이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고의 위 주장에는 '원고가 7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과거에 존재하였다’는 사실(이하 ‘이 사건 적시사실’이라 한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에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이 사건 적시사실의 허위 여부

갑 제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① 1999. 3. 1.자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원고가 ◇◇ XX을 후보로 공천되었다가 교체된 것과 관련하여 당시 당내에서 소문과 의혹이 있었는데, 교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7억 원의 비리설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유포했냐는 것이 그 중 하나이다’라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위 기사의 주된 취지는 ‘원고가 7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비리설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유포했는지 당내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지만, 위 기사에 의하면 당시 원고가 7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 ② 원고는 피고 B를 ‘이 사건 기사를 통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해당 형사소송에서는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허위임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B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8983).

다. 이 사건 기사의 위법성 여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되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 ① 이 사건 기사는 □□□□공사 사장 후보로 원고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공직 인물의 도덕성 및 자격을 지적하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다.
- ②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표현 방식, 내용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공사 사장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공직 인물의 자격에 관한 의견 내지 평가에 해당하고, □□□□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합리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기사 게재행위는 진실한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이 사건 기사 게재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대상기사 생략

2심 판결문

사 건	2018나2057545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엠탐 2. B
제 1 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8가합32739 판결
변 론 종 결	2019. 3. 15.
판 결 선 고	2019. 4.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엠탐은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업다운뉴스(<http://www.updownnews.co.kr>)의 홈페이지 및 기사 DB에 보관된 별지 기재 기사를 삭제하라. 만약 피고 주식회사 엠탐이 이행기까지 기사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에게 이행기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당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중점적으로 펼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중점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2017. 9. 15. □□□□공사 사장직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건설업체로부터 검찰수사 무마 명목으로 7억 원을 수수하였고, 그로 인하여 ○○○○○○○로부터 반발을 당하여 국회의원 후보에서 교체되었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그리고 피고 B가 그와 같은 7억 원 뇌물 수수설에 관한 기사를 작성할 때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종전 동아일보의 해당 기사를 왜곡하여 인용한 사실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고, 피고들이 원고가 □□□□공사 사장직에 지원한 직후 비난 취지 일색인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기사 작성 및 보도 행위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의 적시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기사에서 “신임 □□공사 사장 하마평 A … 7억 뇌물 의혹에 노무현 비난까지 과연”이라는 제목 아래, “(A 전 의원이) 정무수석에서 물러난 직후 청와대 추천으로 1999년 ◇◇ XX을(乙) 재선거에 공천을 받았으나 당시 여당이었던 ○○○○○○○의 반발로 후보 교체 당한 바 있다. 당시 ○○○○○○○가 A 전 의원에 대해 반발한 이유 중 하나가 A 전 의원이 모 의원이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검찰 수사가 들어오자 그 수사를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7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라고 보도된 사실, 이 사건 기사에서 동아일보의 1999. 3. 1.자 “‘A 낙마파동’ 궁금증 갈수록 확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인용하였는데, 그중 “비리설의 내용은 ‘A 전 수석이 여당입당파인 모의원의 수사를 봐주는 조건으로 7억 원을 받았다’는 것”이라는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사실, 이 사건 기사에서 “익명을 요구한 여권 관계자는 ‘실질적 자격요건에도 미달이고, 비리를 눈감아주기 위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있는 사람이 장관급으로 분류되는 □□□□공사

사장에 임명된다면 도덕성이건 명분상이건 큰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는 내용 또한 함께 보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이 사건 기사에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기사에서 보도한 원고의 이른바 7억 원 뇌물 수수설 부분의 보도 요지는 제목과 해당 본문의 내용에 따르면 원고가 1998년 ◇◇ XX을 재선거 공천 과정에서 모의원의 검찰수사 무마 대가로 7억 원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당시 여당의 반발로 후보자 교체를 당한 적이 있다는 것으로서 이른바 7억 원 뇌물 수수설에 관하여 당시에 존재하던 소문 또는 의혹을 인용한 형태이고 단정적인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기사 본문에서 “지난 1999년 A 전 의원이 모 의원을 검찰수사를 봐주는 대가로 7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작성한 동아일보 기사”라고 소개하면서 동아일보의 1999. 3. 1.자 해당 기사 전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해당 의혹부분에 밑줄을 그었는데, 이는 해당 의혹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고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 기사에서 해당 의혹 바로 다음에 “당에서는 A 전 수석 음해를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고 보도한 부분 등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또 이 사건 기사에서 7억 원 뇌물 수수설에 따른 후보자 교체 보도 다음에 그와 같은 의혹 등이 있는 원고가 □□□□공사 후임 사장에 임명될 경우 도덕적으로나 명분상 큰 문제가 예상된다는 여권 관계자의 비판적인 발언을 인용하고 있으나, 7억 원 뇌물 수수설에 관하여 앞서 본 동아일보 기사의 보도내용에서 나아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라) 이와 같이 이 사건 기사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기사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까지 아울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의 7억 원 뇌물 수수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뿐이지, 이를 넘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여 그 표현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가 7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언론보도의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생활이나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의혹을 가질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의혹사항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행위는 언론자유와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러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이러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가 7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이 적시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의 여러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를 통한 7억 원 뇌물 수수설 등에 관한 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대상기사 생략

공기업의 부실투자에 대한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속하는 사항으로 문제제기와 공개토론을 허용하여야 한다

- 원고 : A
- 피고 : 제이티비씨 주식회사 외 2명

[사실관계]

피고 제이티비씨 주식회사는 2018년 4월 17일 <뉴스룸> 및 같은 달 18일 <아침>에서 '원고가 한국□□□□공사 이사회가 투자를 결의하는 데 영향을 미쳤으며, 실적 부진을 이유로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였다'는 취지의 방송을 보도하며 원고의 실명과 초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공개하였다. 이에 원고는 명예훼손 및 성명권,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기사삭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공적 인물인 원고에 대한 비판으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기사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후 2심에서 조정성립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27558).

[판결요지]

□ 이 사건 기사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내용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 제이티비씨 주식회사는 한국□□□□공사가 볼레오 사업으로 인해 막대한 부채를 지게 되었고 이 중 상당액을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였으므로 결국 이 빚은 국민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점, 상황이 이러하데 정작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위 부실투자와 무관하지 않은 원고가 볼레오 사업 참여 업체 중 하나인 H와 같은 그룹 계열사인 △△전기의 경영 고문으로 취업한 점 등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갖고, 한국□□□□공사의 부실투자는 국가의 부채로 이어지고 결국 전 국민의 부담이 된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생리상 그 누구 하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비판을 함으로써 공기업 및 정부에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이 사건 각 보도를 하고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서 이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내용이다.

판결문

사	건	2018가합35417	정정보도청구 등
원	고	A	
피	고	1. 제이티비씨 주식회사	
		2. B	
		3. C	
변론종결		2019. 5. 8.	
판결선고		2019. 6. 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제이티비씨 주식회사는,
 - 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 제이티비씨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JTBC 뉴스(<http://news.jtbc.joins.com>)’의 초기화면의 중앙 ‘HOT’ 표시 기사의 화면과 제목을 나열하는 부분에, 해당 기사의 화면 및 제목들과 동일한 화면 및 글자 크기로 “2018. 4. 17.자 전 한국□□□□공사 A 사장 관련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과 위 제목이 기재된 화면으로 이루어진 기사 링크를 최초 등재 시부터 72시간 연속하여 게재하고, 위 기간 동안 위 기사 링크를 클릭하면, 통상의 기사 본문에 쓰는 글자 크기로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하나의 페이지에 표시되도록 하라.
 - 나. 위 72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별지2 정정보도 대상기사가 피고 제이티비씨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JTBC 뉴스(<http://news.jtbc.joins.com>)’의 뉴스 기사 서버에 남아있는 한, 별지2 정정보도 대상기사 본문 하단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이 위 정정보도 대상기사 본문과 동일한 글자 크기로 이어서 게재되도록 하라.
 - 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방송하는 JTBC ‘뉴스룸’ 프로그램의 최후 순서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3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되, 낭독하는 동안

-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계속 표시하라.
- 라.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방송하는 JTBC ‘아침&’ 프로그램의 최후 순서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3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되,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계속 표시하라.
- 마. 위 1.의 가. 나. 다. 라. 기재 기간 내에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각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각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1일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제이티비씨 주식회사는,
- 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피고 제이티비씨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JTBC 뉴스 (<http://news.jtbc.joins.com>)’에 게재되어 있는 별지2 기재 기사를 삭제하라.
- 나. 2018. 4. 17. 방송된 ‘뉴스룸’ 프로그램 중 “‘부실투자’ 책임은커녕...사장은 유관기업 계열사 임원으로” 부분을 재방송하거나 피고 주식회사 제이티비씨가 관리하는 ‘JTBC 뉴스 (<http://news.jtbc.joins.com>)’에서 ‘다시보기’서비스에 제공하거나 제3자에 임대, 양도, 공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2018. 4. 18. 방송된 ‘아침&’ 프로그램 중 “‘부실투자’ 밀어붙인 ☆☆☆ 사장...책임은커녕 임원 취업” 부분을 재방송하거나 피고 제이티비씨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JTBC 뉴스 (<http://news.jtbc.joins.com>)’에서 ‘다시보기’서비스에 제공하거나 제3자에 임대, 양도, 공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라. 위 2.의 가. 나. 다. 기재 기간 내에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1일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2. 8. 8.부터 2015. 6. 25.까지 한국□□□□공사 사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 제이티비씨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종합편성채널 JTBC를 방송하는 방송사로 인터넷 뉴스 홈페이지(<http://news.jtbc.joins.com>)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보도국 사회3부 부장으로,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기자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나. 볼레오 사업의 경과

- 1) 멕시코에 소재한 볼레오 광산을 거점으로 본래 캐나다 소재 D사가 운영하던 복합광(동, 코발트 등) 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E, F, G, H 그리고 한국□□□□공사는 2008. 4. 24. 컨소시엄을 이루어 특수목적법인인 I를 설립하였다.
- 2) 이후 I는 2008. 5. 30. D사가 볼레오 사업 개발을 위해 멕시코에 설립한 자회사인 J사로부터 지분의 30%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를 하였다. 한편, I는 특수목적법인으로서 30%의 J 지분을 내부적으로 한국□□□□공사가 10%, E가 8%, F가 5%, G가 5%, H가 2%의 지분 비율로 갖고 있었다.
- 3) 볼레오 사업 주채권은행인 미국수출입은행(USEXIM)은 2012. 4. 약정액 4억 불 중 불과 1억 불 정도만 실제 대출되어 융자잔액이 3억 불이나 남아있는 상태임에도 위 사업이 계획된 투자비로는 완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더 이상의 자금 융자를 중단하겠다고 운영사인 D사에 통보하였다.
- 4) 미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P/F 자금인출 중단을 통보받은 D사는 2012. 4. 18. I에 사업비 증액을 통보하고, I와 D사는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2012. 7. 25. 향후 예상되는 투자비 증액분 전액을 I가 부담키로 하며, 그 대가로 D사가 보유하고 있던 J 지분 70% 중 10%를 제외한 60%를 I에 넘겨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에 도달케 되고, I를 대표하여 한국□□□□공사가 서명하였다.
- 5) 한국□□□□공사는 2012. 8. 2. 이사회에서 볼레오 사업의 투자비 납입을 위해 1단계 자금 9,000만 불은 한국□□□□공사가 그중 1/3인 3,000만 불을 투자하고, 2단계 자금 4억 4,600만 불에 대해서는 한국□□□□공사가 그중 1/2인 2억 2,300만 불을 투자하면 I의 나머지 민간주주들이 나머지 2억 8,300만 불(1단계 6,000만 불 + 2단계 2억 2,300만 불)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증액투자를 한다는 의결을 하였고, 이는 I가 기존의 30% 지분을 갖는 투자자 지위에서 나아가 60%의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여 위 사업의 운영권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 6) 그러나 2012. 7. 25. I와 D사 간 운영권인수 합의가 있는 이후 위와 같은 2012. 8. 2.자 이사회 의결이 있기 전에 이미 I 민간 참여 기업 중 H는 2012. 7. 26., G는 2012. 7. 27.에 각각 증자 불참을 한국□□□□공사에 통보하였고, 나머지 민간 참여 기업들도 2012. 8. 2.자 이사회 의결 이후 증자 불참을 한국□□□□공사에 통보하였다. 결국 2012. 7. 25. D사와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I는 증액투자비를 J에 투자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I 민간 참여 기업들은 주주 간 약정에 따라 투자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공사가 단독으로 투자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 7) 이에 2012. 10. 9.에 열린 한국□□□□공사 이사회에 사업을 중단하는 안과 공사가 증액분을 단독투자해서 사업을 계속하는 안건이 모두 상정되어 논의되었으나 결국 이사회는 증액분 단독투자 의결을 하였다.

8) 볼레오 플랜트는 2014. 12. 건설이 완공되고 그 후 전기동, 코발트, 황산아연 등을 채광, 생산 및 판매되고 있으나 그 실적은 현재까지 미미한 수준이다. 한편 한국□□□□공사는 위와 같은 운영권 인수 및 투자와 관련하여 미국수출입은행 등에 막대한 규모의 외화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다. 방송 보도 및 기사의 게재

피고들은 2018. 4. 17.경 방송된 ‘뉴스룸’ 프로그램에서 “‘부실투자’ 책임은커녕…사장은 유관기업 계열사 임원으로”라는 제목하에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고, 2018. 4. 18.경 방송된 ‘아침&’ 프로그램에서 “‘부실투자’ 밀어붙인 ☆☆☆ 사장…책임은커녕 임원 취업”이라는 제목하에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각 보도’라 한다),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인터넷 뉴스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도 및 기사를 통하여 아래 표와 같은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고 원고의 얼굴과 성명을 그대로 방송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 초상권, 성명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정정보도, 기사삭제 및 재방송 금지 등을 할 의무가 있고(아울러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정정보도, 기사삭제 및 재방송 금지 등에 대한 간접강제도 구한다), 피고들은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표]

번호	적시사실
①	전 한국□□□□공사 사장 A 씨가 현재 유관 민간기업의 계열사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②	☆☆☆ 내부 자료에 따르면 당시 실무진들이 ‘즉시 추진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지식경제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③	A 사장이 이사회에서 ‘민간 기업이 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면서도 ‘우리가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조직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황당한 논리를 펼쳤다.
④	이사회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실무진에게 사표까지 중용했다.

3. 관련 법리

가.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일 때 인정되며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

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참조). 왜냐하면, 자유로운 견해의 개진이나 공개된 토론과정에서 다소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 없고 무릇 표현의 자유에는 그것의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하므로, 진실에 부합하는지는 표현의 전체적 취지가 중시되어야 하고 세부적인 문제에서 객관적 진실과 완전히 일치할 것이 요구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 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 등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피고들이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는 될지언정 기사삭제 등을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로는 될 수 없다.
- 다.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언론 보도에 의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원고가 그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4. 피고 회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표]의 ① 부분

1) 사실적시 여부

별지2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보도 및 기사를 통하여 ‘전 한국□□□□공사 사장 원고가 현재 유관 민간기업의 계열사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음이 인정된다.

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각 보도 및 기사에 ‘원고가 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H에게 어떠한 특혜를 주어 현재 △△전기에 취업하였다’는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보도 및 기사에 위와 같은 표현이 간접적으로라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적시사실의 허위 여부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위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도 △△전기의 비상임 경영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 나) ‘고문’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조언을 하는 직책’으로 민간기업은 임원이나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을 경영 고문으로 재직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 다) 피고 회사는 △△그룹 홍보부장으로부터 계열사 △△전기의 경영 고문은 정식 임원이라는 취지의 답을 듣고 이 사건 각 보도를 하고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
- 라) △△전기의 경영 고문이 정식 임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공사의 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원고의 이력 등을 고려하여 경영 고문을 임원으로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표]의 ② 부분

1) 사실적시 여부

별지2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보도 및 기사를 통하여 “☆☆☆ 내부 자료에 따르면 당시 실무진들이 ‘즉시 추진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지식경제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음이 인정된다.

2) 적시사실의 허위 여부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K, L, M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위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한국□□□□공사에서 공사 창립 50년을 맞아 ‘한국□□□□공사 50년사’의 발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원고(갑 제7호증의 2, 볼레오 사업 전임 실무책임자이자 투자운영처장이었던 N이 작성한 초고, 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에는 볼레오 사업과 관련하여 “2012. 10. 8. 투자심의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회 모두 부정적 … 추가투자비를 대부분 부담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입장 … 감사실장은 ‘볼레오 사업의 투자비 증액은 리스크가 극히 크다고’ … 탐사사업처장은 ‘우리가 꼭 70% 지분을 가져야만 합니까? 리스크가 극히 큰 사업인데 1안(즉시 추진 중단) 등 다른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진행될 필요’”라는 기재와 “(지식경제부) 정 국장은 다시 한 번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나중에 감사원 감사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잘 검토하라.’고 하였다”는 기재가 있다.

나) 실제로 2012. 10. 8.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감사실장은 ‘볼레오 사업의 투자비 증액은 리스크가 극히 크다고 생각함’이라고, 탐사사업처장은 ‘우리가 꼭 70% 지분을 가져야만 하는가? 비현실적일 수 있으나 리스크가 극히 큰 사업인데 1안 등 다른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이라고 발언하였고, 2012. 10. 9. 이사회에서 원고도 ‘우리 감독기관인 지경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다’고 발언하였다.

다. [표]의 ③ 부분

1) 사실적시 여부

별지2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보도 및 기사를 통하여 “원고가 이사회에서 ‘민간 기업이 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면서도 ‘우리가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조직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는 사실을 적시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황당한’ 논리라는 표현은 피고 회사의 의견 또는 논평에 불과하다.

2) 적시사실의 허위 여부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위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2012. 10. 9. 이사회에서 사업을 중단하는 안과 공사가 증액분을 단독투자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안(원안)이 모두 상정되어 논의가 있었다.

나) 원고는 위 이사회에서 ‘우리 민간 파트너사들이 출자를 더 늘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을 했다. … 비즈니스라는 것이 안 될 것 같으면 늘릴 수가 없는 것이다. … 이것을 Default 한다면 앞으로 공사는 아마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정부로부터의 지원도 받을 수 없어 우리 조직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원고가 CEO로서 여러 이사들 또 감사의 그런 충정에 따른 고민들을 정말 모든 것을 다 Share 하지만 원고의 지금 위치가 이것을 또 뚫고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했다’고 발언하였다.

다) 원고의 위 발언은 이사 O의 ‘사장이나 본부장 등 집행부가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살릴 수밖에 없다, 하면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면서 도와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의지가 없다면 당연히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사장님이나 감사님 의견을 들어보라고 한 것이다’, 이사 P의 ‘민간기업들이 수익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요인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모르는 리스크가 상당히 크지 않은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 … 자신의 생각에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감사와 사장이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발언과 의장 Q의 ‘그러면, 1억 6,300만 불의 투자비를 지금 이 시점에서 중단을 하고 손해 보는 것이 나은지, 앞으로 13, 4억 불까지 부담을 안고, 리스크를 안고 계속 투자를 해야 좋은지는 지금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어떠한 희생과 어려움을 감내 하더라도 살려서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이나 세계적인 광산경영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으면 리스크를 안고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자신의 생각은 가슴이 아프지만 접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든다’는 발언 뒤에 나온 것이다.

라) 또한 원고는 마지막 발언으로 ‘여기서 이것을 그만둘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Consensus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이것을 성공시키느냐, 그것만 남았기

때문에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 바쳐서 일을 성사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였고, 그 직후 의장 Q가 ‘사장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 이 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믿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기 때문에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하여 의결되었다.

마) 위 이사회회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은 이사회에서 한국□□□□공사의 증액분 단독투자를 결의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 회사는 여러 사람이 리스크가 커서 중단도 검토해야 한다는 사업을 원고가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황당한’ 논리라는 의견을 밝히고, ‘부실투자 책임은커녕’, ‘부실투자 밀어붙인 ☆☆☆ 사장’ 등의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라. [표]의 ④ 부분

1) 사실적시 여부

별지2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보도 및 기사를 통하여 ‘이사회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실무진에게 사표까지 종용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음이 인정된다.

2) 적시사실의 허위 여부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0, 11호증(가치번호 있는 것은 가치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위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도 2012. 10. 9. 이사회 이후 소집한 간부 회의에서 볼레오 사업에 관한 신·구 담당 간부들 모두에게 사업을 성공시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표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여 이를 제출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자료에는 “2012. 10. 이사회 시 전임 처장이 부정적인 의견 내자 사표 강요 … 동년 10월 9일, Q 이사회 의장은 볼레오 안건 심의 중에 전임 담당 처장인 N을 불러 ‘전임자로서 볼레오 투자 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N은 ‘투자지분을 70% 다 떠안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여건이 된다면 민간사들하고 협상을 해서 부담을 줄이는 것이 맞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 A 사장은 ‘어제 이사회에서 볼레오 관계자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치열함이 부족하다. 책임지고 한다는 의미로 모두 사표를 내라.’고 지시하였다”는 기재가 있다.

다) 실제로 2012. 10. 9. 이사회에서 N은 ‘개인적으로 보면 저희가 투자지분을 70% 다 떠안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일단 해왔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협상할 여건이 된다 그러면 민간사들 하고 협상을 해서 부담을 줄이는 쪽이 맞겠다, 하는 생각은 했다’라고 발언하였다.

라) 원고가 볼레오 사업을 성공시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표를 제출하라고 하였다고 하면서 볼레오 사업의 현재 담당 간부가 아닌 이전 담당 간부 N에게도 사표를 제출하라고 한 것은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N은 사표가 수리될까봐 바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다가 2012. 12. 28.경 반성문과 함께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5. 피고 회사에 대한 기사삭제 및 재방송 금지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보도 및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원고의 명예가 기사삭제 및 재방송 금지 등의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가. 피고 회사는 2019년도에 한국□□□□공사의 볼레오 사업 관련 약 8,000억 원 상당의 해외채권의 만기가 돌아오고 2018년 3월 말 기준 위 공사의 총 금융부채가 5조 2,783억 원인데 이 중 상당액을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였으므로 결국 이 빚은 국민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상황이 이러하든 정작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위 부실투자와 무관하지 않은 원고가 볼레오 사업 참여 업체 중 하나인 H와 같은 그룹 계열사인 △△전기의 경영 고문으로 취업한 점 등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갖고, 한국□□□□공사의 부실투자는 국가의 부채로 이어지고 결국 전 국민의 부담이 된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생리상 그 누구 하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비판을 함으로써 공기업 및 정부에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이 사건 각 보도를 하고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서 이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내용이다.
- 나. 이 사건 각 보도 및 기사의 내용이 구체적인 정황의 뒷받침 없이 원고에 대하여 터무니없는 비판을 가하는 것이거나, 악의적으로 원고를 모함하거나 모멸적인 표현으로 원고에게 모욕을 가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6.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명예훼손 부분

이 사건 각 보도 및 기사가 허위 내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설령 이 사건 각 보도 및 기사에 의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0호증, 을 제1, 3 내지 5, 9, 11, 12,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보도 및 기사의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들로서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도 및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내용이다.
- 2) 피고들은 더불어민주당 R 의원실로부터 이 사건 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각 보도를 하고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
- 3) 이 사건 자료의 내용이 ‘한국□□□□공사 50년사’의 최종본에서는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현재 볼레오 사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것과 달리 볼레오 사업과 관련하여 성과 위주로 기술하고 공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최종본보다 볼레오 사업 및 원고 등에 대한 비판이 담겨있는 이 사건 자료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4) 피고들은 사실확인 및 반론청취를 위해 원고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잘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초상권, 성명권 침해 부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보도 및 기사에 원고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사용하거나 원고의 실명을 그대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보도 및 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초상권, 성명권이 위법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공익적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보도를 하고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
- 2) 원고는 한국□□□□공사 사장으로 재직한 공인으로 볼 수 있고, 위 공사에 근무하면서 자신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의혹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문제제기를 허용하고 공개토론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별지2〉 대상기사 생략

〈별지3〉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생략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0. 31. 선고 2018가합3275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6. 14. 선고 2018나2068088 판결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당사자의 반론을 충분히 취재하지 않고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따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원고 : A
- 피고 :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외 1명

[사실관계]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는 2018년 1월 23일 <인터넷 한겨레>에 '건축가인 원고가 설계와 시공을 계획보다 미뤄 의뢰인인 피고 B가 손해를 입었으며 과거에도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과 기사삭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기사의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2심 법원에서는 이 사건 기사가 피고 B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상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변경,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와 기사삭제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후 피고의 상고에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다247866).

[판결요지]

□ 이 사건 기사의 위법성 조각 여부 판단

이 사건 기사는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원고의 건축사사무소 운영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내용임에도, 피고 B의 일방적 제보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고, 피고 B 외에 복수의 건축사들의 말을 인용하기도 하였으나 그 역시 모두 피고 B의 일방적 주장에 기초한 것이다. 비록 피고 회사의 기자가 원고를 비롯한 관계자에게 전화나 문자로 몇 차례 연락을 취하고 건축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건축관련 답변을 듣기는 했으나 그것만으로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1심 판결문

사	건	2018가합32753 손해배상(기) 등
원	고	A
피	고	1.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2. B
변	론	2018. 10. 12.
판	결	2018. 10. 3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한겨레신문 사이트(www.hani.co.kr)에 게재되어 있는 별지 기재 기사를 삭제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 다음(www.daum.net), 야후(www.yahoo.com), 구글(www.google.co.kr), 네이트(www.nate.com), 줌(www.zum.com), 코리아닷컴(www.korea.com), MSN(www.msn.com/ko-kr), 드림위즈(www1.dreamwiz.com), 천리안(www.chol.com)에 대하여 위 기사의 삭제를 요청하라.
3.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가 제2항 기재 기간 내에 제2항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위 기간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이른바 ‘땅콩집’(한 개의 필지에 두 가구가 나란히 지어진 형태의 집)으로 이름이 알려진 건축가이고,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일간지 ‘한겨레신문’을 발행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ani.co.kr/>)를 운영하는 언론사이며, 피고 B는 과거 한겨레신문에 ‘△△△’이라는 이름으로 시사만화(한겨레 그림판)를 게재했던 화백이자,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이하 주식회사들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와 다가구주택 설계 등 계약을 체결한 C의 남편이다.

나. 기사의 게재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토지와 구옥을 매입하고 그곳에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미 수년 전부터 땅콩주택 건축으로 널리 알려진 건축설계사인 원고의 명성을 믿고 원고에게 설계를 의뢰하고, 또 원고가 소개해 준 시공사와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시공사가 너무도 불성실하게 일하여 큰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바탕으로 2018. 1. 23. “[단독] ‘땅콩집’ 건축가 A씨 또 소송 휘말려”라는 제목의 별지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이 사건 기사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표]

번호	문구
①	“한 달이면 설계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이 씨의 말에 지난해 2월 설계·감리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한 달이면 되던 설계는 7월이 돼서야 완료됐다”고 한다. B 씨는 “그마저도 허가 접수를 바로 하지 않아 8월 중순께가 돼서야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②	시공도 지연되고 있다. B 씨는 “이 씨가 계약을 권한 시공업체 ☆☆☆산업개발은 건축허가를 받고도 두 달 뒤인 지난해 10월까지 철거만 진행하였을 뿐 공사를 진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③	피해는 쌓여만 갔다. B 씨는 “매달 은행 대출 이자 등으로 수백만 원씩 내고 있다. A 씨가 알려진 사람이라 믿을 만하다고 여겨 맡긴 공사였는데 파산하게 생겼다”며 “심지어 A 씨는 설계도면을 달라는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④	복수의 건축사들은 김 씨의 계약 내용이 정상적이라고 보기 힘든 “사기 계약”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건축 경력 7년의 한 건축사는 “보통 계약을 할 때 공사 완료 날짜, 해당 날짜에 완공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한 이행보증증권 등을 걸게 돼 있는데 그게 빠졌다”며 “내실이 튼튼하지 않은 업체들이 자금을 ‘돌려막기’할 때 흔히 쓰는 수법”이라고 말했다.

번호	문구
⑤	○○건축과 ☆☆☆산업개발은 XX 주택단지 시공 당시에도 의뢰인으로부터 민형사상 고소를 당한 바 있다.
	또 A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산업개발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냈다.
	또 다른 10년차 건축사도 “계약을 맺어 돈을 받았다면 당연히 설계도면을 의뢰인한테 줘야 한다. 안 줬다면 사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피고 회사에 아래와 같은 허위 또는 왜곡된 사실을 제보하여 기사화되도록 하였고,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제보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여 아래와 같은 허위 또는 왜곡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상 손해의 일부로서 5,000만 원, 합계 1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민법 제764조,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 등에 근거하여 침해배제청구로서 이 사건 기사의 삭제와 그 간접강제를 구한다.

가. ① 문구

피고 B의 과도한 설계 수정 요구로 인하여 건축허가가 지연된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고, 마치 원고가 설계 업무를 불성실하게 하여 건축허가가 지연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어 있다.

나. ② 문구

시공업체가 공사를 시작하고 터파기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부지의 지하에서 지하수가 다량 발견되었고, 이로 인하여 공사비가 증가하게 되자 피고 B와 시공업체 사이에 공사비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시공이 지연된 것일 뿐, ‘시공업체가 철거만 진행하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다. ③ 문구

원고는 C와 건축 “설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 건축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건축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피고 B는 마치 원고와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공사를 담당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있고, 또한 피고 B는 본인이 은행 대출 이자 등을 내는 것과 원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고의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원고는 피고 B의 요구에 따라

관련 설계도면을 전달하였음에도, 원고가 피고 B에게 설계도면을 주지 않았다고 허위로 주장하고 있다.

라. ④ 문구

원고는 건축설계업자이지 공사업자가 아님에도 마치 원고가 공사업자이거나 또는 공사에 대하여 관계가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④ 문구에서 인용한 말들이 전부 원고에게 해당하는 것처럼 오인되게 하였다.

마. ④, ⑤문구

2015년 XX 땅콩집단지와 관련된 고소 사건은 전부 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되었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원고가 피고 B로부터 고소당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고소인인 피고 B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 없이 인용하여 부각시키거나 주변 사정을 무리하게 연결시키며 “복수의 건축사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수차례 “사기”를 언급하여, 마치 피고 B의 말이 사실이고 원고는 상습적으로 계약을 불이행하여 계속적으로 소송을 당하거나 고소를 당하는 사기꾼인 것처럼 일반 독자들이 오해하도록 악의적으로 기사를 작성하였다.

3.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허위사실 적시 여부

1) ① 문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사실적시 여부

① 문구를 이 사건 기사에 언어와 문맥 등 전체적 정황과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기사는 ‘원고가 설계 업무를 늦게 완료하여 건축허가가 지연되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① 문구만으로는 원고가 설계 업무를 ‘불성실하게 하였다’는 점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기사에 “원고가 불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잇달아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는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불성실한 계약 이행”이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막연하고 추상적이며 ① 문구에서 설계 업무가 늦게 완료되었다는 것 이외에 그 이유가 제시된 바도 없어서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의견 또는 논평으로 볼 수 있을 뿐 그에 의하여 어떠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적시사실의 허위 여부

갑 제8,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원고에게 여러 차례 설계 수정을 요구한 사실, 피고 B가 C의 명의로 원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은 2018. 2. 20. 원고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9호증,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① 원고가 피고 B에게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최종 도면이 완성되었다고 알린 것은 2017. 4. 24.이다.
- ② 원고의 직원 G는 2017. 5. 8. 피고 B에게 건축허가와 건축허가 접수 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설계중도금 500만 원에 관한 안내문을 이메일로 보냈다.
- ③ 피고 B는 2017. 5. 29. 원고의 □□□ 하나은행 계좌로 설계중도금 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 ④ 그럼에도 2017. 8. 4.이 되어서야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2017. 8. 11. 건축허가가 되었다.

2) ② 문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사실적시 여부

② 문구를 이 사건 기사와 문맥 등 전체적 상황과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기사는 ‘시공업체가 철거만 진행하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적시사실의 허위 여부

원고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위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5,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의 처 C는 2017. 7. 6. 원고의 소개로 ☆☆☆산업개발과 5억 8,000만 원에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으로 8,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2017. 8. 11. 건축허가가 났음에도 시공사인 ☆☆☆산업개발은 2017. 9.경 구역을 철거하고, 2017. 10. 24.에서야 착공신고서(신고서에는 C가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다)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③ 문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실적시 여부

③ 문구를 이 사건 기사와 문맥 등 전체적 상황과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기사는 ‘피고 B가 원고로 인하여 많은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고, 원고가 피고 B에게 설계도면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② 문구의 ‘원고가 계약을 권한 시공업체 ☆☆☆산업개발이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내용에 비추어 ③ 문구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에 ‘피고 B가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공사를 담당하였다’는 표현이 간접적으로라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적시사실의 허위 여부

원고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위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은행 대출이자와 월세 수입 감소 등 이 사건 건축공사의 지연으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었던 점,

허가된 설계도면의 일부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고 B는 더 이상 원고에게 설계변경을 맡길 수 없어 도면의 변경을 다른 곳에 맡기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 시 원고가 구청에 제출한 도면을 CAD파일로 보내줄 것을 원고에게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원고의 지적재산권 등을 이유로 피고 B에게 도면 파일의 전달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4) ④ 문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사실적시 여부

앞서 본 ② 문구의 ‘원고가 계약을 권한 시공업체 ☆☆☆산업개발이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내용에 비추어 ④ 문구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에 ‘원고가 공사업자이거나 또는 공사에 대하여 관계가 있다’는 표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적시사실의 허위 여부

가사 ② 문구와 “☆☆☆산업개발은 2015년 이 씨가 설계한 XX 땅콩집 주택단지를 시공한 업체로, ○○건축과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다”는 문구에 비추어 이 사건 기사에 ‘원고가 공사에 대하여 관계가 있다’는 표현이 간접적으로 있어서 ④ 문구에서 인용한 말들이 원고에게 해당하는 것처럼 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위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시공사 ☆☆☆산업개발은 D를 대표로 하여 ‘□□□미디어’라는 상호로 운영되다가 2016년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면서 E가 대표가 되었는데, □□□미디어는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땅콩집으로 유명한 건축가 A 소장의 □□□ 자회사’라고 자기 회사를 소개하고 있었다.

□□□는 원고와 D가 공동대표이사로 있다가 2015.경 원고의 사임으로 현재는 D만 1인 이사로 등재된 회사이고, ○○건축사사무소는 원고와 D가 2015.경 공동대표이사를 맡고 있다가 사임하고 현재는 원고와 F가 공동대표이사를 맡고 있는데, D는 얼마 전까지 ☆☆☆산업개발의 이사였고, F는 ☆☆☆산업개발과 피고 B의 처 C 사이의 시공계약서에 ☆☆☆산업개발의 변경된 대표로서 날인하였다.

위 세 회사(□□□, ○○건축사사무소, ☆☆☆산업개발)는 모두 ‘서울 XX구 ○○○○○1로 168, ○동 905(△△동, □□□□□□□□)’를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2015. 3. 3. 같은 건물 △동 1307호로 함께 이전하였다.

C와 ☆☆☆산업개발 사이의 시공계약에는 준공 예정 연월일이 ‘착공 후 6~7개월’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이행보증증권 내용은 없다.

5) ④, ⑤ 문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사실적시 여부

④, ⑤ 문구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에 ‘피고 B의 말이 사실이고 원고는 상습적으로 계약을

불이행하여 계속적으로 소송을 당하거나 고소를 당하는 사기꾼이다’는 표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에 “원고가 불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잇달아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는 표현이 있어서 ‘원고가 잇달아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불성실한 계약 이행”이라는 표현은 의견 또는 논평에 불과하다.

나) 적시사실의 허위 여부

원고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 위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도 피고 B와의 소송 외에 2015년 XX 땅콩집단지와 관련된 소송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가사 이 사건 기사를 통해 원고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기사는 현재 주택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어려운 여건에서 대출까지 받아가며 주택을 건축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건축설계와 시공을 맡은 회사들이 부당하게 일정을 지연함으로써 인하여 서민들의 피해가 커져가는 사례를 고발하고 서민들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보도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초 제보자인 피고 B에게는 분쟁의 상대방 당사자인 원고를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소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기사 보도의 주요 목적과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은 진실이거나 적어도 피고들로서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기사 게재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 회사에 대한 기사삭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때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피고가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는 될지언정 기사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로는 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내용인 점,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구체적인 정황의 뒷받침 없이 원고에 대하여 터무니없는 비판을 가하는 것이거나, 악의적으로 원고를 모함하거나 모멸적인 표현으로 원고에게 모욕을 가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기사삭제의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대상기사 생략

2심 판결문

사	건	2018나2068088 손해배상(기) 등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1.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2. B
제 1 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0. 31. 선고 2018가합32753 판결
변 론 종 결		2019. 5. 17.
판 결 선 고		2019. 6. 1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2019. 6.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나.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한겨레신문 사이트(www.hani.co.kr)에 게재되어 있는 별지 기재 기사를 삭제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 다음(www.daum.net), 야후(www.yahoo.com), 구글(www.google.co.kr), 네이트(www.nate.com), 줌(zum.com), 코리아닷컴(www.korea.com), MSN(www.msn.com/ko-kr), 드림위즈(www1.dreamwiz.com), 천리안(www.chol.com)에 대하여 위 기사의 삭제를 요청하라.
 - 다. 만일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가 나.항 기재 기간 내에 나.항 기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그 기간만료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1의 나, 다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1) 원고는 한 필지에 두 채의 집을 나란히 짓는 이른바 ‘땅콩집’의 설계로 이름이 알려진 건축가로,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이하 ‘○○건축사사무소’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 2)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일간지 ‘한겨레신문’을 발행하면서 그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ani.co.kr>)를 운영하는 신문사이다. 피고 B는 과거 한겨레신문의 ‘한겨레 그림판’ 코너에 ‘△△△’이라는 필명으로 시사만화를 게재했던 만화가이다.

나. 건축설계계약의 체결 등

- 1) 피고 B의 처인 C는 2017. 2. 25. ○○건축사사무소와 서울 △△구 □□동 633-6 지상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설계 및 자문계약을 대금 40,000,000원에 체결하였다.
- 2) C와 ○○건축사사무소는 2017. 3. 24. 공사감리계약의 대금을 10,000,000원으로 정하는 대신, 설계 및 자문계약의 대금을 30,000,000원으로 조정하기로 하여, 설계 및 자문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 3) 원고는 2017. 6.경 C와 피고 B에게 시공사로 주식회사 ☆☆☆산업개발(이하 ‘☆☆☆산업개발’이라고 한다)을 소개하였고, C는 2017. 7. 6. ☆☆☆산업개발과 위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4) 원고는 2017. 8. 4. C를 대리하여 △△구청장에게 위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7. 8. 11. 건축허가를 받았다.
- 5) ☆☆☆산업개발은 2017. 9. 중순부터 말경까지 서울 △△구 □□동 633-6 지상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였다.
- 6) 원고는 2017. 10. 24. C를 대리하여 △△구청장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2017. 10. 25. 수리되었다. 그러나 이후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다. 피고 B의 제보 및 피고 회사의 기사 게재

- 1) 피고 B는 2018. 1.경 피고 회사에게 “토지와 구옥을 매입하고 그 곳에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미 수년 전부터 땅콩집 건축설계로 널리 알려진 원고에게 설계를 의뢰하고, 원고가 소개해 준 시공사와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한 달이면 설계가 완성된다고 하였으나, 원고의 불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인하여 설계 및 건축허가가 지연되었고, 시공사의 업무 태만으로 인하여 시공도 지연되었다. 본인은 그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었다.”고 제보하였다.
- 2) 피고 회사는 2018. 1. 23. 한겨레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단독] ‘땅콩집’ 건축가 A씨 또 소송 휘말려”라는 제목 아래 별지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 3) 이 사건 기사는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한겨레신문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ani.co.kr>)에 게재되어 있고, 각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 다음(www.daum.net), 야후(www.yahoo.com), 구글(www.google.co.kr), 네이트(www.nate.com), 줌([zum.com](http://www.zum.com)), 코리아닷컴(www.korea.com), MSN(www.msn.com/ko-kr), 드림위즈(www1.dreamwiz.com), 천리안(www.chol.com)의 검색창에 ‘땅콩집 A’를 입력하면, 이 사건 기사가 검색 결과로 표출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20호증, 을 제3, 4, 5, 15,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위자료 청구

피고 B는 고의로 피고 회사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하였고, 피고 회사는 그 제보 내용에 관하여 충분히 조사하지 아니한 채 아래 표와 같은 허위사실이 포함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표]

번호	적시된 허위사실
①	원고의 귀책으로 인하여 설계 및 건축허가가 지연되었다.
②	☆☆☆산업개발의 귀책으로 시공이 지연되었는데, 원고는 ☆☆☆산업개발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도 그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③	☆☆☆산업개발은 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에게 이행보증증권을 제공하지 않았고, 원고는 설계 업무 완료 후에 피고 B에게 설계도면을 제공하지 않았는데, 이는 사기이다. 또한 원고는 유사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수차례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당하였다.

2) 기사 삭제 청구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으므로, 인격권에 기한 침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기사의 삭제 및 삭제 요청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 1)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 및 게재된 것이고,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기사를 삭제하거나 기사 삭제를 요청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2)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공익적 보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설령 이 사건 기사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피고 회사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명예훼손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756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다가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표현행위의 경우에도 적시된 기초 사실만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사실의 적시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이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또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가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등을 인용하여 기사화한 것이고 그 보도내용에 단정적 표현이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 전체의

취지가 그 사실의 존재를 암시한다면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등 참조).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보도의 내용이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의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비위혐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 등으로 인하여 그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조사자로 거론된 자나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사혐의사실을 보도하는 언론기관으로서 그 보도에 앞서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기사의 작성 및 보도시에도 당해 기사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인하여 일반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에 대하여도 주의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기사를 신문 지상에 게재하느냐의 여부는 신문 편집인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편집인이 신문 지상에 게재한 이상 기사의 게재는 기사 재료를 제공한 자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기사 재료의 제공행위는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어(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5370 판결 참조),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표 ①항의 허위사실 적시 여부

가) 사실의 적시 여부

(1) 이 사건 기사의 부제에는 “한 달이면 설계 마친다더니 차일피일”이라는 표현이 있고, 서두에는 “건축가 A씨가 불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잇달아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는 표현이 있으며, “본문에는 “‘한 달이면 설계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A씨의 말에 지난해 2월 설계·감리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한 달이면 된다던 설계는 7월이 돼서야 완료됐다’고 한다”는 표현이 있다. 이는 원고가 설계 업무를 지체하여, 설계가 원고의 당초 약속과 달리 늦게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또한, 이 사건 기사의 본문에는 “B씨는 ‘그마저도 허가 접수를 바로 하지 않아 8월 중순계가 돼서야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건축허가가 지연된 것이 원고가 설계 업무를 완료한 후 건축허가 접수를 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나타낸다.

- (2)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가 피고 B의 말을 인용하여 기사화한 것이고 설계 및 건축허가의 지연이 원고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 기사를 접하는 일반 독자로서는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하에서 기사의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에 의하여 설계와 건축허가의 지연이 모두 원고의 업무태만 등 귀책으로 인한 것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기사가 단순히 ‘원고가 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했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와 건축허가가 지연되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적시사실의 허위성

- (1) C가 2017. 2. 25. 원고와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설계 및 자문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7. 7.경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설계도면 작성을 완료한 사실, 원고가 2017. 8. 4. C의 명의로 관할행정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2017. 8. 11.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계와 건축허가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 B의 반복되는 설계 수정 요구 및 피고 B의 이익을 위한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것이지,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 및 건축허가가 지연되었다’는 사실은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아니하여 허위라고 할 수 있다.
- ① 원고는 C와 다가구주택 설계 및 자문 계약을 체결한 2017. 2. 25.로부터 약 한 달이 경과한 2017. 3. 27. 피고 B에게 그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한 설계도면과 조감도를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 ② 피고 B는 그로부터 2017. 6. 말경까지 원고에게 수차례 설계 수정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그때마다 피고 B의 요청을 최대한 수용하여 설계도면과 조감도를 수정하였다. 피고 B가 2017. 3. 말경부터 2017. 6. 말경까지 원고에게 설계 수정을 요청하며 보낸 이메일은 총 29통에 이르고, 이메일 이외에 대면 회의, 전화를 통하여도 설계 수정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인다.
- ③ 원고는 2017. 7. 초경 설계에서 가각전제(街角剪除, 도로의 교차 부분에서 시야를 확보하고 차선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교차 부분에 면하는 가각의 돌출부 일부를 완곡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를 제외하기로 하여 그에 따라 설계를 전면 재조정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설계 완성과 건축허가 신청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었다. 그러나 이는 △△구청 측의 요청 또는 △△구청과의 협의 결과에 따른 것이어서 원고의 귀책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 내용도 용적률 산정 면적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져 오히려 피고 B의 이익에 부합한다.

- ④ 원고와 피고 B는 2017. 8. 11.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2017. 10.경까지 함께 설계를 수정하였고, 원고는 최종적으로 설계도면 및 조감도를 완성하였다.
- ⑤ C가 원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원고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C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6개월 가량 수시로 설계도면을 수정하고 변경하였다’고 시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8. 2. 20.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3) 표 ②항의 허위사실 적시 여부

가) 사실적시 여부

- (1) 이 사건 기사에 본문에 “A씨가 계약을 권한 시공업체 ☆☆☆산업개발”, “☆☆☆산업개발은 2015년 A 씨가 설계한 XX 땅콩집 주택단지를 시공한 업체로, ○○건축과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다”, “○○건축과 ☆☆☆산업개발은 XX 주택단지 시공 당시에도 의뢰인으로부터 민형사상 고소를 당한 바 있다”는 표현이 있다. 이는 원고가 운영하는 ○○건축사무소와 ☆☆☆산업개발이 이전부터 설계와 시공 업무를 함께 맡아오는 등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산업개발의 시공 관련 문제도 원고에게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또한, 이 사건 기사에 본문에 “시공도 지연되고 있다. B씨는 ‘☆☆☆산업개발은 건축허가를 받고도 두 달 뒤인 지난해 10월까지 철거만 진행했을 뿐 공사를 진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표현이 있다. 이는 ☆☆☆산업개발의 업무 태만 등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공이 지연되었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 (2)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는 피고 B의 말을 인용하여 기사화한 것이고, 원고가 ☆☆☆산업개발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거나 ☆☆☆산업개발의 귀책으로 시공이 지연되었다고 직접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기사를 접하는 일반 독자로서는 이 사건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하에서 이 사건 기사의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에 의하여 원고와 ☆☆☆산업개발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산업개발의 귀책으로 시공이 지연되었으므로, 원고도 그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기사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여 ‘☆☆☆산업개발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시공이 지연되었는데, 원고가 ☆☆☆산업개발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도 그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적시사실의 허위성

- (1) 우선 원고가 ☆☆☆산업개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산업개발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① ☆☆☆산업개발은 D를 대표로 하여 ‘주식회사 □□□ 미디어’라는 상호로 운영되다가, 2016. 2.경 상호가 현재와 같이 변경되면서 E로 대표가 변경되었다. 그런데 주식회사 □□□ 미디어는 취업포털 ‘△△△’에서 스스로를 ‘땅콩집으로 유명한 건축가 A 소장의 □□□의 자회사’라고 소개하였다.
 - ② 주식회사 □□□는 ‘주식회사 ○○○○○○연구소’라는 상호로 운영되다가 2015. 8. 7. ‘주식회사 □□□’로 상호 변경되었고, 2015. 12. 24. 주식회사 XX와의 흡수합병으로 해산되었다. 원고는 D와 함께 주식회사 □□□의 공동대표이사를 맡다가 2015. 8. 7. 사임하였다.
 - ③ D는 원고와 함께 ○○건축사사무소의 공동대표이사를 맡다가, 2016. 7. 29. 사임하였는데, 현재는 원고와 F가 ○○건축사사무소의 공동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 ④ F는 C가 ☆☆☆산업개발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산업개발의 변경된 대표로서 날인하였다.
 - ⑤ ○○건축사사무소, ☆☆☆산업개발, 주식회사 □□□는 모두 ‘서울 XX구 ○○○○ ○1로 168, ○동 905(△△동, □□□□□□□□)’를 본점으로 사용하다가 2015. 3. 3. 같은 건물 △동 1307호로 함께 이전하였다.
- (2) 다음으로 ☆☆☆산업개발의 귀책으로 시공이 지연되어 원고가 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지 살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건축허가 이후 시공이 지연되다가 끝내 중단되기는 하였으나 원고와 ☆☆☆산업개발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시공이 지연 및 중단된 것이 아니므로, ‘☆☆☆산업개발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시공이 지연되었는데, 원고는 ☆☆☆산업개발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도 그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아니하여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 ① 2017. 8. 11. C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산업개발은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2017. 9. 중순경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였고, 원고는 2017. 10. 24.에서야 C를 대리하여 △△구청장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건축허가 이후에 감리자 지정 및 감리계약 체결, 하도급업체 지정 및 하도급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를 고려하면 건축허가와 착공신고 및 착공 사이에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바로 시공이 지연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 ② ☆☆☆산업개발은 2017. 9. 중순경부터 말경까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추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공사 감리의 요청으로 지질 조사를 한 결과 지하에 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설계 변경 및 공사금액 조정이 필요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③ 원고와 ☆☆☆산업개발의 대표이사인 E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인 C 역시 ‘지하에 물이 나오게 되자 설계도면 중 지하공사를 하지 않기로 하여 설계도면을 변경해야 되었다’고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④ 설계변경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C는 ☆☆☆산업개발에게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면서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은 건설회사에게 공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였다.

4) 표 ③항의 허위사실 적시 여부

가) 사실적시 여부

- (1) 이 사건 기사에의 부제에는 “대출이자 등 피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경찰, ‘검찰 송치여부 판단할 것’이라는 표현이 있고, 본문에는 “피해는 쌓여만 갔다. B씨는 ‘매달 은행 대출 이자 등으로 수백만 원씩 내고 있다. A씨가 알려진 사람이라 믿을 만하다고 여겨 맡긴 공사였는데 파산하게 생겼다’며 ‘심지어 A씨는 설계도면을 달라는 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복수의 건축사들은 B씨의 계약 내용이 정상적이라고 보기 힘든 ‘사기 계약’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건축경력 7년의 한 건축사는 ‘보통 계약을 할 때 공사 완료 날짜, 해당 날짜에 완공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한 이행보증증권 등을 걸게 돼 있는데 그게 빠졌다’며 ‘내실이 튼튼하지 않은 업체들이 자금을 돌려막기 할 때 흔히 쓰는 수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10년차 건축사도 ‘계약을 맺어 돈을 받았다면 당연히 설계도면을 의뢰인에게 줘야 한다. 안줬다면 사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는 표현이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 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기사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기사는 ‘☆☆☆산업개발이 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에게 이행보증증권을 제공하지 않았고, 원고는 설계업무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 B에게 설계도면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나아가 ‘☆☆☆산업개발과 원고의 그와 같은 행위가 사기이다’라는 사실까지 적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이 사건 기사가 ‘원고가 ☆☆☆산업개발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산업개발의 행위에 원고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는 전체적으로 보아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2)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의 제목에 “‘땅콩집’ 건축가 A씨 또 소송 휘말려”라는 표현이 있고, 서두에 “건축가 A씨가 불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잇달아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으며, 본문에 “○○건축과 ☆☆☆산업개발은 XX주택단지 시공 당시에도 의뢰인으로부터 민형사상 고소를 당한 바 있다”, “(B씨는)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산업개발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냈다”는 표현이 있다. 이는 ‘원고가 수차례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이 사건 기사가 더 나아가 ‘원고가 피고 B에게 한 것과 유사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수차례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당하였다’는 사실까지 적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적시사실의 허위성

(1) 민형사 피소 관련 부분

먼저 민형사 피소 사실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2015.경에 XX 땅콩집 주택단지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산업개발이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당한 사실 및 C가 원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산업개발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수차례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당하였다’는 이 부분 적시사실은 중요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볼 수 있다(이 사건 기사는 단순히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가 있었음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XX 땅콩집 주택단지 공사 관련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가 원만하게 해결되었고, C의 고소에 따른 원고에 대한 사기피의사건이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부분 사실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이행보증증권과 설계도면 관련 사기 부분

다음으로 이행보증증권과 설계도면 관련 사기 사실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산업개발이 C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C 또는 피고 B에게 이행보증증권을 제공하지 않았고 피고 B가 원고에게 설계도면의 CAD 파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산업개발이 피고 B에게 이행보증증권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이미 피고 B에게 설계도면의 PDF 파일을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가 설계도면의 CAD 파일까지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원고가 피고 B에게 설계도면의 CAD 파일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적시사실은 모두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 ① ☆☆☆산업개발이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B에게 이행보증증권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 ② 원고는 2017. 3.경부터 10.경까지 피고 B와 수시로 설계를 수정하면서 피고 B에게 수회에 걸쳐 설계도면과 조감도의 PDF 파일을 이메일로 보냈고, 2017. 10. 중순경 최종적으로 완성된 설계도면과 조감도의 PDF 파일을 피고 B에게 전달하였다.
- ③ 피고 B는 설계도면 변경을 다른 건축사에게 맡기려는 목적에서 원고에게 설계도면의 CAD 파일을 달라고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와 C 사이에 작성된 다가구 주택 설계 및 자문계약서 제7조 제2항은 ‘설계도서는 이메일로 전달 가능한

파일 등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수록 내용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작성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3조는 ‘이 계약과 관련한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을(원고)에게 귀속되며, 갑(C)은 을(원고)과 협의 없이 이 설계도서를 사용하여 다른 곳에 건축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계약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에게 설계도면과 조감도의 PDF 파일을 제공하는 것 외에 CAD 파일까지 제공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5)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는 ‘원고가 수차례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당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①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와 건축허가가 지연되었다’, ② ‘☆☆☆산업개발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시공이 지연되었는데, 원고는 ☆☆☆산업개발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그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③ ‘☆☆☆산업개발은 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에게 이행보증증권을 제공하지 않았고, 원고는 설계 업무 완료 후에 피고 B에게 설계도면을 주지 않았는데, 이는 사기이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있고, 이는 원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사실 내지 허위사실의 적시로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기사의 제보자인 피고 B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1) 관련 법리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진실한 사실’이라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2) 공공성

이 사건 기사는 주택의 건축설계와 시공을 맡은 회사들이 부당하게 일정을 지연함으로써 건축주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례를 고발하고 그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성 및 게재된 것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 아닌 상대방을 음해하기 위한 악의에 의한 것임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다.

3) 진실성 내지 상당성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의 적시사실 중 ‘원고는 수차례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당하였다’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적시사실, 즉 ①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와 건축허가가 지연되었다’, ② ‘☆☆☆산업개발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시공이 지연되었는데, 원고는 ☆☆☆산업개발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그에 대하여 시공 지연이 책임이 있다’, ③ ‘☆☆☆산업개발은 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에게 이행보증증권을 제공하지 않았고, 원고는 설계 업무 완료 후에 피고 B에게 설계도면을 주지 않았는데, 이는 사기이다’는 부분은 허위이다.

나) 또한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 B

피고 B는 설계, 건축허가, 시공이 지연된 경위와 원고가 설계도면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원고에게 설계도면의 CAD 파일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실질적 계약당사자로서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제외하고 모두 원고의 잘못된 것처럼 피고 회사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하였는데, 이러한 제보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 B는 원고에게 해를 가하려는 악의적 목적으로 제보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고, 그 제보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 회사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기사 중 허위사실 적시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기사는 ‘땅콩집’ 설계로 이름을 널리 알려진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원고의 건축사무소 운영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내용임에도, 피고 B의 일방적 제보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고, 피고 B 외에 복수의 건축사들의 말을 인용하기도 하였으나 그 역시 모두 피고 B의 일방적 주장에 기초한 것이며, 달리 피고 B의 제보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뚜렷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 ② 이 사건 기사는 당시 수사기관에 의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에 관한 것이고 피의자인 원고의 실명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에게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더 높은 진실확인 의무가 요구된다. 더욱이 제보자인 피고 B는 피고 회사와 특별한 인적관계(피고 B는 1997년부터 2016년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에 있었고, 피고 B가 계약분쟁의 피해자로서 제보한 것이어서 이 사건 기사 내용이 피해자의 입장을 내세운 일방적 진술일 가능성이 매우 컸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충실한 조사를 통하여 상대방의 관점을 반영한 공평한 기사를 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 피고 B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존하였을 뿐 원고의 반론을 충분히 균형 있게 다루지 않았고, 피고 B의 주장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지 않았으며,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원고를 비난하는 논조를 보였다.
- ③ 피고 회사는 원고의 해명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취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무응답으로 일관하여 원고의 반론을 담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 측은 원고에게 2회 정도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취하였을 뿐이고,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마저도 1번은 원고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 연락을 취한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적절한 반론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 회사 측은 ☆☆☆산업개발의 대표이사인 E와 ○○건축사사무소의 공동대표이사인 F에게 전화로 연락을 취하기도 하였으나, 이들이 취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취재를 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④ 피고 회사의 기자가 원고를 비롯한 관계자에게 전화나 문자로 몇 차례 연락을 취하였다거나 건축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건축관련 답변을 들은 것만으로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피고 회사 측의 해명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피고 B의 일방적인 제보 내용에 의존해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도 없다.
- ⑤ 피고 B가 피고 회사에게 제보할 당시 피고 B의 처인 C는 원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 회사는 분쟁의 한 쪽 당사자인 피고 B의 제보 내용을 크게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신뢰한 후, 피고 B의 편에 서서 원고를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이 사건 기사를 작성·게재하였다.
- ⑥ 이 사건 기사의 게재로 인하여 ‘땅콩집’ 설계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정도가 매우 심한 반면, 이러한 보도가 추가적인 사실 확인 없이 속보를 요할 만큼 시급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 ⑦ 이 사건 기사는 한겨레신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는데,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각종 정보서비스를 통해 그 기사를 쉽게 열람하거나 조회할 수 있어 전

파성이 어느 매체에 비하여 강하고, 기사 하단에 설치된 댓글 창을 통하여 그 내용에 대한 의견도 덧붙일 수 있어,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광범위하고 급속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사의 제보자나 게재자로서는 단순히 풍문이나 억측, 일방적인 제보가 아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신빙성 있는 자료나 근거에 의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 ⑧ 이 사건 기사는 피고 B의 사례만 다루고 있고 그 적시사실도 모두 피고 B와 관련된 내용인데다가, 피고 B 외에 다른 피해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기에 앞서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사실을 확인한 바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4) 소결론

이 사건 기사 중 '원고가 수차례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진실이고 공공성이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으나, 나머지 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허위이고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위자료 액수

이 사건 기사의 제목과 내용, 구성, 이 사건 기사에서 사용된 표현 형식, 이 사건 기사에서 허위 사실이 차지하는 비중, 피고들의 이 사건 기사의 제보 및 게재 이전에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이 사건 기사 게재 이후 피고들의 태도, 이 사건 기사의 게재가 원고에게 미치는 영향,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매체의 영향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3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기사 게재일인 2018. 1. 2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6.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기사 삭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 참조).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면 될 것이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기사의 삭제와 삭제 요청을 명함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 중 ‘원고가 수차례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위법성이 조각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실 적시 부분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그런데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부분만을 분리하여 삭제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하고, 설명 분리하여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일부만을 삭제할 경우 원고에 대한 침해상태의 해소가 완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기사 전체의 삭제 및 삭제 요청을 명함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한겨레신문 사이트(www.hani.co.kr)에 게재되어 있는 별지 기재 기사를 삭제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 다음(www.daum.net), 야후(www.yahoo.com), 구글(www.google.co.kr), 네이트(www.nate.com), 줌(www.zum.com), 코리아닷컴(www.korea.com), MSN(www.msn.com/ko-kr), 드림위즈(www1.dreamwiz.com), 천리안(www.chol.com)에 대하여 위 기사의 삭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다.

4) 나아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현재까지의 분쟁상황을 보면, 피고 회사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회사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기간만료일 다음 날부터 위 삭제 및 삭제요청 의무를 모두 이행하는 날까지 이행강제금 지급을 명하되, 그 액수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1일 500,000원으로 정한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이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원고가 이 법원에서 종전 청구인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함으로써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별지〉 대상기사 생략

허위의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면 관련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

- 원고 : 주식회사 A
- 피고 : 주식회사 시사저널사 외 2명

[사실관계]

피고 시사저널사는 2015년 9월 21일 및 2016년 8월 10일 <인터넷 시사저널>에 원고가 관리·운영하는 □□□이 친일파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매수된 것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에 원고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기사삭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이 사건 기사의 보도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원고에게 지속적인 명예 내지 인격권에 대한 침해상태를 야기할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기사삭제를 명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결요지]

□ 피고 언론사에게 기사를 삭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때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표현행위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피고들이 그 표현행위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는 될지언정 방해배제 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로는 될 수 없다.

이 기사는 “□□□은 친일파인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형성된 친일재산임에도 그 소유자가 법인화되어 현행법상 국가에 귀속시킬 수 없다”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은 □□□을 소유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라 할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하지도 아니하며, 위 각 문구가 이 사건 사이트에 계속 게재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 내지 인격권에 대한 침해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그 침해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피고들은 위 내용과 관련된 문구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

판결문

사	건	2018가합545698	기사삭제 등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1. 주식회사 시사저널사	
		2. B	
		3. C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5. 29.
			2019. 6. 26.

주 문

1. 피고들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사저널 웹사이트(<http://www.sisajournal.com/journal/article/143245>)에 게재되어 있는 2015. 9. 21.자 『친일재산에 휩싸인 ‘국민관광지’』라는 제목의 별지1 기재 기사 중
가. 소제목 「친일파 D 후손 소유 □□□ 논란 SNS에서 확산...“내가 쓰는 돈이 친일파 주머니에?”」라는 부분을,
나. 「□□□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친일재산조사위)가 활동하던 2006년부터 2010년 당시 국가에 귀속될 수 없었던 재산이다. 친일재산이라도 법인화가 되거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할 수 없다는 친일조사위의 활동근거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한계 때문이었다.」 부분을
각 삭제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시사저널사, B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사저널 웹사이트(<http://www.sisajournal.com/journal/article/156505>)에 게재되어 있는 2016. 8. 10.자 『유명 관광지에 뿌리박힌 친일의 잔재들』이라는 제목의 별지2 기재 기사 중 「친일 행적으로 쌓은 재산으로 매입했다는 심증이 충분하더라도 우리나라 현행법상 그것을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때문에 □□□처럼 친일재산이라는 판명은 받지 않았지만 친일파가 거주했거나 조성했거나 혹은 그들의 행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이 아직 적지 않다.」라는 부분을 삭제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들은 시사저널 웹사이트(<http://www.sisajournal.com/journal/article/143245>)에 게시되어 있는 2015. 9. 21.자 『친일재산에 휩싸인 ‘국민관광지’』라는 제목의 기사 중 「그러나 이곳이 친일파 후손 소유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아는 관광객은 많지 않다. □□□은 친일파 D의 후손들이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곳이다.」라는 부분을, 「그러나 이런 친일 행각에도 불구하고 D의 자손들은 현재까지도 □□□을 비롯한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D의 자손들은 대부분 미국 △△△△△에 거주하고 있는데, 현지에서 대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에서는 노른자위 땅인 서울 ##동 일부 부동산을 비롯해 h 고등학교, p 여고 등 학교도 소유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기사에 포함된 □□□ 관련 사진(“수많은 관광객이 강원 ○○시의 대표 관광지인 □□□을 오가는 배를 타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라는 설명이 들어가 있는 사진) 1매를 각 삭제하라. 피고 주식회사 시사저널사, B는 시사저널 웹사이트(<http://www.sisajournal.com/journal/article/156505>)에 게시되어 있는 2016. 8. 10.자 『유명 관광지에 뿌리박힌 친일의 잔재들』이라는 제목의 기사 중 「수많은 관광객이 오가는 강원도 ○○시의 대표 관광지인 □□□. ‘##### 공화국’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아름다운 곳은 지난해 아베 정부의 우경화, 그리고 이에 따른 반일 감정이 악화되면서 ‘친일 재산 논란’에 휩싸였다. □□□은 대표적인 친일파로 알려진 D의 후손들이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곳이다.」라는 부분을, 기사에 포함되어 있는 □□□ 관련 사진(“○ ○ □□□”이라는 설명이 들어가 있는 사진) 1매를, 기사에 포함되어 있는 인포그래픽 지도 중 “○ ○ □□□ 친일파 D의 후손들이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기사 말미 해시태그 중 “#□□□” 부분을 각 삭제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관광휴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시 ◇◇리 소재 □□□ 관광휴양지를 관리·운영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시사저널사(이하 ‘피고 시사저널사’라 한다)는 주간지 시사저널을 발행하고 인터넷신문 시사저널닷컴(<http://www.sisajournal.com/>,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는 언론사이며, 피고 B, C는 피고 시사저널사의 소속 기자이다.
- 나. 피고 시사저널사는 2015. 9. 21. 이 사건 사이트에 피고 B, C가 작성한 『친일재산 논란에 휩싸인 ‘국민관광지’』라는 제목의 별지1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제1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고, 2016. 8. 10. 이 사건 사이트에 피고 B가 작성한 『유명 관광지에 뿌리박힌 친일의 잔재들』이라는 제목의 별지2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제2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 다. 제1, 2 기사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이하 아래 문구들을 ‘이 사건 각

문구'라 하고, 개별 문구를 '① 문구' 등으로 특정한다).

제1기사	
①	소제목「친일파 D 후손 소유 □□□ 논란 SNS에서 확산...“내가 쓰는 돈이 친일파 주머니에?”」
②	그러나 이곳이 친일파 후손 소유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아는 관광객은 많지 않다. □□□은 친일파 D의 후손들이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곳이다.
③	그러나 이런 친일 행각에도 불구하고 D의 자손들은 현재까지도 □□□을 비롯한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D의 자손들은 대부분 미국 △△△△△△에 거주하고 있는데, 현지에서 대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에서는 노른자위 땅인 서울 ##동 일부 부동산을 비롯해 h 고등학교, p 여고 등 학교도 소유하고 있다.
④	□□□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친일조사위'라 한다)가 2006년~2010년 당시 국가에 귀속할 수 없었던 재산이다. 친일 재산이라도 법인화가 되거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할 수 없다는 친일조사위의 활동근거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한계 때문이었다.
⑤	□□□ 관련 사진(“수많은 관광객이 강원 ○○시의 대표 관광지인 □□□을 오가는 배를 타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라는 설명 포함)
제2기사	
⑥	수많은 관광객이 오가는 강원도 ○○시의 대표 관광지인 □□□. '#### 공화국'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아름다운 곳은 지난해 아베 정부의 우경화, 그리고 그에 따른 반일감정이 악화되면서 '친일재산논란'에 휩싸였다. □□□은 대표적인 친일파로 알려진 D의 후손들이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곳이다.
⑦	친일 행적으로 쌓은 재산으로 매입하였다는 심증이 충분하더라도 우리나라 현행법상 그것을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때문에 □□□처럼 친일재산이라는 판명은 받지 않았지만 친일파가 거주했거나 조성했거나 혹은 그들의 행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이 아직 적지 않다.
⑧	□□□ 관련 사진(“○○□□□”이라는 설명 포함)
⑨	인포그래픽 지도 중 ○○ □□□ 친일파 D의 후손들이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⑩	해시태그 중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을 매수하여 원고를 설립한 E는 친일행위자인 D의 손자이기는 하나 D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으로 □□□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급여 및 퇴직금 등을 모아 □□□을 매수한 것이므로 □□□은 친일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 B, C는 이 사건 각 문구를 포함한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하고, 피고 시사저널사가 이를 게재함으로써 마치 ‘□□□은 친일파 D의 재산이 후대에 상속되어 형성한 친일재산이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

이로써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으므로,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문구의 삭제를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은 친일파의 후손들이 다수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가 □□□을 소유하고 있는데, E가 친일파인 D의 손자로서 D의 재산을 상속받았고 그 돈의 일부로 □□□을 매입하였을 가능성이 커 □□□이 친일재산일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이 아니다.

이 사건 각 문구의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문구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원고가 아닌 친일파의 후손으로 지칭된 E의 후손들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 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 764조)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 참조). 한편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문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

(가) 먼저 ①, ④, ⑦ 문구를 보건대, 위 문구들은 “□□□은 친일파인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형성된 친일재산임에도 그 소유자가 법인화되어 현행법상 국가에 귀속시킬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은 □□□을 소유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문구가 포함된 이 사건 각 기사가 이 사건 사이트에 계속 게재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에 대한 침해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②, ③, ⑥, ⑨ 문구를 보건대, 위 문구들은 ‘친일파 D의 후손들이 □□□을 소유한 원고의 다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이러한 내용만으로 ‘□□□은 친일파 D의 후손들이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으로 형성한 친일재산’이라는 사실이 곧바로 유추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문구들의 내용은 가치중립적인 표현으로 사회통념상 원고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 마지막으로 ⑤, ⑧, ⑩ 문구를 보건대, 이들은 사진이나 해시태그에 불과하여 그에 의하여 어떠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①, ④, ⑦ 문구만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①, ④, ⑦ 문구의 진실성 또는 공익성 여부

갑 제4 내지 15,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는 자신이 모은 재산으로 □□□을 매입한 것이지, D로부터 상속 내지 증여받은 재산으로 □□□을 매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 각 문구에 적시된 □□□이 친일파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형성된 친일재산이라는 사실은 허위라고 할 수 있다.

(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 전쟁 개전 시부터 1945. 8. 15.까지 일본제국주위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러·일 전쟁 개전시부터 1945. 8. 15.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호). 그런데 피고들이 제출한 인터넷 기사나 인터넷 게시물(을 제1 내지 2호증)만으로는 E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인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을 매입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함에도 피고들은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의혹제기를 넘어서 □□□은 E가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매입한 친일재산이라고 단정적으로 인상지우는 표현을 하였다.

(나) E는 친일조사위에서 지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이나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1938년 □□은행에서 은행원 생활을 시작하여 1965년 ◆◆은행 총재직에서 퇴임할 때까지 25년간 금융기관에서 종사하였다.

(다) E는 ◆◆은행 총재에서 퇴직한 해인 1965년 그동안 자신이 받은 급여와 퇴직금 등을 모아 □□□을 매입하였고, □□□에 종합휴양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1966년 □□□의 소유자를 XX관광개발 주식회사로 법인화하였으며, 2000. 4. ‘주식회사 A’로 상호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라) E가 □□□을 매입할 당시 □□□의 매입가격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는 없다. 그러나 □□□의 일부인 ○○시 ◇◇리 198 토지의 1972년 당시 토지등급은 35등급이고, 35등급의 토지는 ㎡당 35원이며, □□□ 전체 면적이 460,000㎡인바, 당시 □□□의 매입가격은 16,100,000원(= 35원 × 460,000㎡) 정도로 추정된다. 이를 2018년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약 611,059,400원 정도인바, 당시까지 E가 쌓아온 사회적 경력과 이에 수반하여 축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자력을 고려하면, E가 스스로 구입가능하였을 금액으로 보인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설령 이 사건 각 문구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피고들은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취재를 통해 이 사건 각 문구를 보도하는 등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때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표현행위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증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피고들이 그 표현행위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는 될지언정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로는 될 수 없으므로(위 대법원 2010다60950 판결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①, ④, ⑦ 문구의 삭제 청구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①, ④, ⑦ 문구의 게재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그 내용이 진실하지도 아니하며, 위 각 문구가 이 사건 사이트에 계속 게재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 내지 인격권에 대한 침해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그 침해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피고들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①, ④, ⑦ 문구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2〉 대상기사 생략

제4장 기타 판결²²⁾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이나 교양·오락 프로그램의 객관성·공정성을 평가할 때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원고 : 재단법인 시민방송(RTV)
- 피고 : 방송통신위원회

[사실관계]

원고는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백년전쟁〉을 방송하였는데, 해당 다큐멘터리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통해 이승만 대통령을 재평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다큐멘터리가 객관성, 공정성, 사자 명예존중에 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방송법에 따라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명하고 이러한 제재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시방송하도록 명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과 2심에서는 법정제재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다큐멘터리가 시청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이고 뉴스가 아닌 교양 프로그램이므로, 방송사업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이나 뉴스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제재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판결요지]

□ 이 사건 보도에 대해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시청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은 방송내용의 진실성과 신뢰도에 대한 기대의 정도나 사회적 영향력의 측면에서 방송사업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과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청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심사를 할 때는 방송사업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에 비하여 심사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22) 이 장에서 소개하는 판례는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과 무관하므로 참고용일 뿐 분석의 대상이 아님을 밝혀 둔다.

다큐멘터리, 지식·생활·문화 강좌 등 국민의 교양 향상과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교양에 관한 프로그램(이하 ‘교양 프로그램’이라 한다)이나 드라마, 영화, 스포츠 등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 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하 ‘오락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여론을 형성하는 데 보도 프로그램과 같은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교양 프로그램이나 오락 프로그램이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보도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판결문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시민방송(RTV)
피고, 피상고인	방송통신위원회
원 심 판 결	서울고법 2015. 7. 15. 선고 2014누613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참고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및 쟁점

가.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1) 원고는 방송법에서 정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퍼블릭 액세스(Public Access, 시청자 제작 영상물 방송) 전문 텔레비전 채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위 채널을

통해 2013. 1.경 시청자인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명칭 1 생략)’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1 방송’이라 한다)과 ‘(프로그램 명칭 2 생략)’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2 방송’이라 한다)을 수십 회에 걸쳐 방송하였다(이 사건 1 방송과 이 사건 2 방송을 함께 언급할 때에는 이하 ‘이 사건 각 방송’이라 한다).

- 2) 이 사건 1 방송은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된 13개 정도의 에피소드를 삽입하여 이를 토대로 이승만 대통령을 재평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2 방송은 미국에서 작성된 프레이저 보고서의 내용에 기초하여 한국의 경제발전이 주로 미국의 동아시아 반공정책에 의해 수출 주도형으로 전환됨에 따른 결과라는 견해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재평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3) 피고는 2013. 8. 2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방송이 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2014. 1. 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심의규정’이라 한다) 중 객관성과 공정성에 관한 제9조 제1항, 제2항, 제14조 및 사자(사자) 명예존중에 관한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명하고 이러한 제재조치를 받은 사실에 대한 고지방송을 명하였다(이하 피고의 제재조치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제재처분’이라 한다).
-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각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원용하고 일부 판단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제재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1) 방송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하도록 위임한 것이지, 객관성과 공정성의 심의대상을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하 ‘보도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한정하여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각 방송을 심의할 수 있다.
- 2) 이 사건 각 방송은 그 구성, 내용, 편집 등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관점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특정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을 편집하거나 재구성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하였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희화화함으로써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3) 이 사건 각 방송은 특정 자료만을 근거로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전직 대통령들을 폄하하였고, 그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퍼블릭 액세스 채널이라고 하더라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원고의 방송법상 공정성과 객관성 준수에 대한 책임이 경감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제재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그로 인하여 침해받는 원고의 언론의 자유, 퍼블릭 액세스 및 국민의 알권리의 침해가 훨씬 커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상고이유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방송법상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심의대상 프로그램이 보도 프로그램에 한정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② 이 사건 각 방송내용이 구 심의규정에서 정한 객관성(제9조 제1항, 제14조)과 공정성·균형성(제9조 제2항)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상고이유 제2점), ③ 이 사건 각 방송내용이 구 심의규정상 사자 명예존중 조항(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상고이유 제3점), ④ 이 사건 각 제재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상고이유 제4점)이다.

2. 방송의 역할과 방송심의제도의 취지

가.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립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 제1항의 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조건 중 하나이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출판의 자유에는 방송의 자유가 포함되는데,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인 자유권으로서의 특성을 가질 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언론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한다는 특성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서, 이러한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은 물론 사회의 다양한 세력들로부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1566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방송이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에 따라 사실을 왜곡하거나 특정 입장에 편파적인 방송이 초래하는 부정적 파급효과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방송내용을 규제할 필요는 부정할 수 없다. 다만 다양한 견해가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경쟁할 때 비로소 올바른 여론이 형성될 수 있고, 사회는 자율적인 규제와 정화작용을 통하여 국가의 발전과 공공복리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방송내용에 대한 개입을 최대한 자제함으로써 방송의 본질적 역할을 부당하게 위축시켜서는 아니 된다.

나. 방송법 제32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및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방송된 후 심의·의결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방송법 제33조 제1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제정·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송법 제33조 제2항 각호는 심의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방송법 제100조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3항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내용이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

회는 이에 따라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3항은 제재조치의 종류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과징금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와 같은 방송심의제도는 민주사회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방송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나, 방송사업자 등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스스로 표현행위를 자제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나아가 건강하고 올바른 여론형성을 저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발전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방송의 내용 심의를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등 관련 규정의 해석·적용은 언론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 공정성·공공성 심의대상 프로그램의 범위

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체계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방송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분야 전반에 대하여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하도록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심의규정은 방송분야 전반에 대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요구하며 이를 심의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므로, 심의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이 보도 프로그램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1) 방송법은 방송분야를 불문하고 모든 방송에 대하여 공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제1조, 제5조, 제10조 제1항 제1호). 방송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은 방송의 공적 책임에서 파생되는 요청이므로, 이를 보도 프로그램에만 요구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보도 프로그램은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한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 또는 해설 등을 통해 여론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므로, 그 요구 정도가 다른 방송분야보다 더 강할 뿐이다.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제6조 제1항 역시 교양, 오락 등 다른 방송분야보다 보도 프로그램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더 강하게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2) 방송법이 심의 범위를 보도 프로그램으로 한정하지 않은 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하여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부여하고(제32조),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규정을 제정·공표하도록 규정하고(제33조 제1항)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방송법 제33조 제2항은 심의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나열한 다음 일반조항으로 제16호를 두어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0호의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사항 중 대표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예시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구 심의규정은 제9조와 제14조에서 보도 프로그램으로 한정하지 않은 채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요구함으로써 방송분야 전반을 심의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3) 최근 보도, 교양, 오락 등과 같은 방송분야의 구분은 그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 뉴스쇼 등 서로 다른 분야의 융합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심의대상을 보도 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면 방송심의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년 출범한 이래 줄곧 모든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공정성·공공성 심의를 해왔다.

나. 그렇다면 방송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분야 전반에 대한 공정성·공공성을 심의하도록 위임한 것이고, 심의대상을 보도 프로그램으로 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공정성·공공성 심의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 위반 여부

가. 구 심의규정상 객관성·공정성·균형성의 의미

방송법 제6조 제1항은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심의규정 제9조는 ‘공정성’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라고, 제2항에서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4조는 ‘객관성’이라는 표제 아래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심의규정 제9조 제1항은 ‘공정성’이라는 표제 아래 위치하고 있으나, 그 문언상 표현은 오히려 방송의 객관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심의규정 제14조와 유사하고, 그 내용 또한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하여 의견의 다양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방송의 공정성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있는 그대로 가능한 한 정확하게 방송한다는 방송의 객관성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결국 객관성에 관한 규정이다. 위 각 조항의 입법 취지, 문언적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객관성’이란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증명 가능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있는 그대로 가능한 한 정확하게 사실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공정성’이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전달함에 있어 편향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균형성’이란 각각의 입장에 대하여 시간과 비중을 균등하게 할애해야 한다는 양적 균형이 아니라 관련 당사자나 방송 대상의 사회적 영향력, 사안의 속성, 프로그램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평하게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이란, 사회 구성원의 입장이나 해석이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나뉘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된 사안이나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을 의미한다.

나.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고려한 심의 필요성

1) 매체, 채널, 프로그램의 구분

언론매체는 인쇄매체, 방송매체, 통신매체로 나눌 수 있고, 그중 방송매체에 대하여 방송법은 방송사업을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방송채널사용사업 등으로 구분한다(제2조 제2호).

방송법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해서 연속적인 흐름 또는 정보체계의 형태로 제공되는 방송의 단위를 ‘채널’로 정의하고(제2조 제20의2호), 방송분야를 보도, 교양, 오락 등 프로그램으로 분류한다(제2조 제16호).

2)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

방송법 제32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할 때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 심의규정 제5조는 제1항에서 “위원회는 방송매체와 방송채널별 창의성, 자율성,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에서 “위원회가 이 규정에 따라 심의를 할 때는 방송매체와 방송채널별 전문성과 다양성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매체 또는 채널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형태로 정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방송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는 매체별, 채널별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프로그램별로도 차이가 있다.

방송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구체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객관성·공정성·균형성을 심사한다면, 방송법이 매체와 채널 및 방송분야를 구별하여 각 규율내용을 달리하고, 각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목적을 추구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방송의 다양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 및 이로써 공정한 여론의 장을 형성하고자 하는 방송의 역할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방송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심의할 때에는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주파수는 한정된 자원으로써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주파수를 무상으로 지정받아 사용함에 따라 시청자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방송매체와 채널이 있는 반면, 시청자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대가를 지불하여야만 접근할 수 있는 방송매체나 채널도 있다. 이러한 접근가능성의 차이에 따라 방송매체나 채널이 국민의 생활이나 정서 및 여론형성 등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나 범위는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을 심사할 때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방영한 방송매체나 채널이 국민의 생활이나 정서 및 여론형성 등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나 범위를

충분히 고려하여, 방송매체나 채널의 자율성, 전문성, 다양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당 방송프로그램을 방영한 방송매체나 채널이 국민의 생활이나 정서 및 여론 형성 등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나 범위가 크지 않은 한편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데에 주로 기여하는 것이라면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에 관한 심사기준을 완화함이 타당하다. 여기에서 심사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내용이 심의규정상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을 준수하였는지를 심사하는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결국 방송내용의 심의규정상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 위반은 엄격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통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자율성, 전문성, 다양성을 최대한 존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방송과 언론의 자유 보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나) 방송법에 의하면,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제3조), 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하며(제69조 제7항, 방송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매월 100분 이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방송하여야 한다(제70조 제7항).

이와 같은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은 소수의 이해와 관점을 반영하여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형성하는 방송의 공적 역할을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시청자가 제작한다는 점에서 기술이나 자본, 접근 가능한 정보의 양에 한계가 있고 그 결과 전문성이나 대중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데, 이와 같은 한계는 각각의 다른 의견을 가진 시청자가 각자의 관점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그 특성이 있다. 따라서 시청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은 방송내용의 진실성과 신뢰도에 대한 기대의 정도나 사회적 영향력의 측면에서 방송사업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과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청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심사를 할 때는 방송사업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에 비하여 그 심사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 다) 뉴스 등 보도 프로그램은 국민의 개별적 의견 형성과 사회적 여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방송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정성과 객관성이 더 강하게 요구된다. 그에 반하여 다큐멘터리, 지식·생활·문화 강좌 등 국민의 교양 향상과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교양에 관한 프로그램(이하 ‘교양 프로그램’이라 한다)이나 드라마, 영화, 스포츠 등 국민정서의 함양과 여가 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하 ‘오락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여론을 형성하는 데 보도 프로그램과 같은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교양 프로그램이나 오락 프로그램이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보도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각 방송의 특성 및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 위반 여부

1) 이 사건 각 방송의 특성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방송은 다음과 같은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가진다.

가) 원고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와 채널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방송은 비지상파방송이자 유료방송에 해당하는 위성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을 통해 방영되어 소정의 대가를 지불한 시청자들만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다.

나) 원고는 퍼블릭 액세스 전문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시청자가 제작한 이 사건 각 방송은 대중적 지명도나 접근성이 낮은 채널을 통해 방영되었다.

다) 이 사건 각 방송은 역사 다큐멘터리로서 방송분야 중 교양 프로그램에 해당한다(방송법 제2조 제16호,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일반적으로 역사 다큐멘터리는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에 관한 특정한 인식과 평가를 전달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는데, 이 사건 각 방송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비교적 덜 알려진 사실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2) 이 사건 각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 위반 여부

가) 이 사건 각 방송을 방영한 매체와 원고가 운영하는 채널의 성격 및 사회적 영향력의 정도, 이 사건 각 방송이 다룬 주제와 내용 및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에 따른 심사기준의 상대적 적용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방송은 시청자의 자유로운 접근이 제한된 유료의 비지상파 방송매체 및 퍼블릭 액세스 전문 채널을 통해 방영되었고, 시청자가 제작한 역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므로, 방송내용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심사를 할 때는 무상으로 접근 가능한 지상파방송이나 방송사업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 또는 보도 프로그램과 달리 상대적으로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각 방송내용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송의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반영하여 그 방송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성·공정성·균형성을 심사하면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각 방송은 공적 인물과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데,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반된 역사적·사회적 평가가 존재하고, 이들의 친일 여부나 업적과 관련된 논쟁은 지금도 정치적 견해 차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등 현재 우리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역사 다큐멘터리는 사료를 선택하고 평가할 때 주관적 관점의 개입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방송내용의 사실관계는 신빙성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송의 기초가 되는 그 자료 내용의 진위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 활동을 거쳐야 함이 원칙이다. 이 사건 각 방송은 제작자가 기획에서 방송에 이르기까지 사실 확인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사료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방송의 내용과 구성, 인터뷰 대상자의 지위나 경력 등 이 사건 각 방송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은 기존에 입론된 역사적 사실과 그 전체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역사에 관한 사실관계나 그에 대한 평가는 각자의 역사관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제작자의 관점과 다른 관점을 가진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모두 반영한 역사 다큐멘터리만 방송하여야 한다면, 주류적 통념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다큐멘터리는 방송에서 다루기 힘들 뿐만 아니라 자칫 역사적 관점에 대한 단순한 나열에 그칠 수 있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각 방송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려져 사실상 주류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과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다양한 여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또한 역사 다큐멘터리의 경우에는 방송의 균형성을 선거방송이나 보도방송과 같이 한 프로그램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나 관점에 대해 각각 동등한 정도의 기회를 기계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사건 각 방송이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인 점을 감안하면 다른 의견을 가진 시청자에게 접근 가능한 방송 기회가 보장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 사건 각 방송과 관련 있는 당사자에게도 원고와 같은 시청자 제작 영상물 방송 전문 채널을 통한 방송뿐 아니라 방송법 제69조 제7항이나 제70조 제7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에의 참여 등을 통해 여러 상반되는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열려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방송이 진실을 왜곡하거나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아니하여 구 심의규정상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

원심은 언론매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인쇄매체와 비교하여 방송매체의 특수성만 강조하였을 뿐 이 사건 각 방송의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방송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전혀 소개하지 않은 채 부정적인 사례와 평가만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그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였으며, 단정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삽입하였다는 이유로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구 심의규정상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심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충분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사자 명예존중 조항 위반 여부

가. 구 심의규정의 사자 명예존중 조항에 관한 해석

- 1) 방송법 제5조 제3항은 “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구 심의규정 제20조는 ‘명예훼손 금지’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방송은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제2항에서 “방송은 사자(사자)의 명예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제308조에서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경우에 한하여 사자명예훼손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 심의규정 제20조 제2항은 이와 달리 단순히 사자의 명예도 존중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같은 조 제3항의 규정 내용까지 종합해 보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방송의 경우에도 사자 명예존중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그 해석이 문제 된다.

- 2)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등 참조). 특히 적시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사자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하고, 또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도 한계가 있어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도8564 판결).

한편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875 판결 등 참조).

- 3)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에 대하여는 후대에 의한 평가가 따르고, 이러한 평가는 각자의 가치관이나 역사관에 따라 다양하게 때로는 상반되게 나타난다. 상반되는 평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일방의 타방에 대한 비판이 따르기 마련이며 이와 같은 논쟁을 거쳐 역사에 대한 주류적 평가가 자리 잡고, 다시 주류적 평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하여 재평가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장하고 이를 반박하는 논쟁이 이어진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논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인류의

삶과 문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건전한 추진력이 된다. 따라서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에 대한 논쟁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은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하고, 부분적인 오류나 다소의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선불리 명예훼손을 인정하여 역사에 관한 논쟁을 막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역사적 관심사에 관한 비판이나 문제제기를 널리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악의적인 모함이나 사실의 왜곡까지 방송에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 4)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방송내용 중 역사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인에 대하여 그 명예가 훼손되는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심의규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 심의규정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제재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3다34013 판결 등 참조).

또한 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은 구분해서 다루어야 한다. 사실의 적시가 없는 모욕적 표현이나 저속한 표현은 “방송은 저속한 표현 등으로 시청자에게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구 심의규정 제27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할 여지는 있을지언정, 명예훼손 금지를 규정한 구 심의규정 제20조 위반으로 포섭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각 방송의 구 심의규정 제20조 제2항 위반 여부

- 1) 피고가 구 심의규정 제20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제재사유로 삼은 내용은, 이 사건 1 방송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사적인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독립운동을 했다거나 독립투사로서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여대생 및 백인 여자와 데이트를 즐기며 독립자금을 횡령한 것 등으로 묘사하고, 이 사건 2 방송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동료들을 밀고해 살아남았거나 무고한 언론인을 재판을 통해 살해하였고 일본으로부터 검은돈을 받거나 주가조작을 통해 부정한 자금을 모았으며 경제성장의 공로를 가로챈 것 등으로 묘사함과 동시에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 2) 먼저 이 사건 1 방송 중 ‘악질 친일파, A급 민족반역자, 돌대가리, 썩은 대가리’ 등과 같은 표현이 사용된 부분과 이 사건 2 방송 중 박정희 대통령을 ‘SNAKE PARK(스네이크 박)’으로 표현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을 뱀 사진과 나란히 편집한 부분은 위 제재사유에서도 언급

된 바와 같이 저속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할 여지는 있지만 사실 적시를 요하는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는 없다.

- 3) 이 사건 1 방송은 CIA문서(1948. 10. 28.자), 호놀룰루 스타블러틴 신문, 워싱턴포스트 기사, 신한민보 기사 등을, 이 사건 2 방송은 프레이저 보고서, 케네디 종합보고서(1961. 6. 6. “Presidential task force on Korea”), 휴필리 보고서, 미국 제483차 국가안보회의 자료, CIA 스페셜 리포트 등을 인용하였는데, 피고가 제재사유로 삼은 위와 같은 내용은 모두 이러한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서, 표현 방식이 다소 거칠고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방송 전체의 내용과 취지를 살펴볼 때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1 방송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독립운동가라는 평가와 관련하여, 이 사건 2 방송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인물이라는 평가와 관련하여 역사적 자료에 근거한 의혹을 제기하려는 것으로서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인 관심 사안을 다루고 있다. 이 사건 각 방송은 역사적 사실과 인물에 대한 논쟁과 재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외국 정부의 공식 문서와 신문기사, 관련자 및 전문가와의 인터뷰 등을 기초로 하였다는 점에서 진실과 다소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 4) 따라서 이 사건 각 방송은 사자 명예존중을 규정한 구 심의규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구 심의규정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소결

원심은 이 사건 각 방송의 내용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평가를 저하시켜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원고가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자 명예존중을 규정한 구 심의규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심의규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6.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 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였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의 보충의견과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김상환의 보충의견, 그리고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박상옥의 보충의견이 있다.

* 지면 관계상 반대의견 및 보충의견을 생략하오니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URL : <https://glaw.scourt.go.kr>) 판례검색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의 칼럼, 기고 등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사실관계]

□□당의 공동운영위원장인 청구인은 인터넷언론사 <허핑턴포스트코리아>의 블로거로 활동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칼럼을 게재하고 있었다. 청구인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청구인이 게재한 칼럼 중 일부가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 명의 칼럼 게재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조 및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제1항을 위반하였다며 '공정보도협조요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언론사 담당자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칼럼 게재를 중단한 후,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6항 및 구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관련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판결요지]

□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의 기고, 칼럼 게재를 금지한 시기제한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인터넷 선거보도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해당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를 불공정한 선거보도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 결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보도까지 광범위하게 제한될 수 있다.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이 선거나 정치적 의사표현과 상관없는 내용인 경우에도 그 게재를 제한한다. 설령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이 게재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홍보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대중이 중요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사안으로서 후보자가 직접 해명할 필요가 있거나 후보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특유한 지식 등을 갖고 있어, 이에 관한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칼럼 등을 게재하는 것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이 선거보도의 공정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선거보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대신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 제도를 통해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심의하여 사후적으로 교정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율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으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보도까지 광범위하게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판결문

【심판대상조문】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5 제6항

구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1. 12. 2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훈령 제9호로 제정되고, 2017. 12. 8.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훈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본문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7. 12. 8.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훈령 제10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

【참조조문】

헌법 제2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직선거법(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8조의5, 제8조의6, 제256조 제2항 제4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2016. 1.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44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2조의2, 제17조, 제20조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1. 12. 2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훈령 제9호로 제정된 것) 제1조, 제2조, 제8조 제1항

【참조판례】

가. 헌재 2013. 6. 27. 2011헌마475, 판례집 25-1, 584, 588

나. 헌재 2016. 4. 28. 2012헌마630, 판례집 28-1하, 87, 96

다. 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등, 판례집 23-2하, 739, 755헌재 2016. 10. 27. 2015헌마1206등, 판례집 28-2하, 1, 18

【당 사 자】

청 구 인 하○○(변호사)

【주 문】

1. 구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1. 12. 2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훈령 제9호로 제정되고, 2017. 12. 8.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훈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본문,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7. 12. 8.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훈령 제10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 가. 인터넷언론사인 <허핑턴포스트코리아>는 저명인사에게 블로그를 개설하여 블로거로 활동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기사를 생산하고 있다. 청구인은 □□당의 공동운영위원장으로 <허핑턴포스트코리아>의 블로거로 활동하면서, 2014. 12. 18.부터 2016. 1. 29.까지 15회에 걸쳐 <허핑턴포스트코리아>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청구인 명의의 칼럼을 게재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6. 1. 11.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구선거구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 게재된 청구인 명의의 2016. 1. 20.자 및 2016. 1. 29.자 칼럼이 선거일 전 90일부터 제한하고 있는 후보자 명의의 칼럼을 게재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1. <허핑턴포스트코리아>에게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언론사 담당자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칼럼 게재를 중단하였다.
- 다. 이에 청구인은, 위와 같이 인터넷언론사에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것을 제한하는 근거규정인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6항 및 구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1. 12. 2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훈령 제9호로 제정되고, 2017. 12. 8.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훈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위 규정 제8조 제2항 단서는 본문에 대한 예외로서

일정한 경우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7. 12. 8.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훈령 제10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2항은 구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 본문이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보도를 제한하는 것과 달리 후보자 명의의 칼럼, 논평, 기고문, 저술 등을 게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양자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동종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의 위헌 여부는 구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 본문과 결론을 같이 할 것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법질서의 정합성과 소송경제를 위하여 위 현행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조항도 이 사건 심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5 제6항(이하 ‘이 사건 공선법조항’이라 한다), 구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1. 12. 2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훈령 제9호로 제정되고, 2017. 12. 8.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훈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심의기준 규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본문,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7. 12. 8.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훈령 제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⑥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선거보도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권리구제 기타 선거보도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구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1. 12. 2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훈령 제9호로 제정되고, 2017. 12. 8.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훈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시기에 따른 특별제한) ②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계속 연재하였고 후보자의 명의를 드러나지 않는 저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7. 12. 8.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훈령 제10호로 개정된 것)

제8조(시기에 따른 특별제한) ②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논평, 기고문, 저술 등을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공선법조항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한계를 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또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은 후보자가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고문을 게재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4. 이 사건 공선법조항에 대한 판단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률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법률의 직접성은 부인된다(헌재 2013. 6. 27. 2011헌마475 참조).

이 사건 공선법조항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하여금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인터넷언론사에 일정 기간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선법조항 자체가 직접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선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에 대한 판단

가.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 제도 개관

(1) 공직선거와 선거보도

(가) 현대민주국가에 있어서 선거는 국가권력에 대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민을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중요한 방식이다. 그런데 선거의 결과는 여론의 실체인 국민의 의사가 표명된 것이기 때문에 민주국가에서 여론의 중요성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헌재 1995. 7. 21. 92헌마177등 참조). 오늘날 언론기관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적인 담론을 제시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민은 선거보도를 통해 중요한 선거쟁점이나 후보자의 정책, 정치이념 등을 파악하여 선거권을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선거보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토대가 되므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헌재 1995. 7. 21. 92헌마177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언론기관이 정치적·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언론기관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자칫 정치적·사회적 여론을 왜곡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공정한 선거보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선거에 관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다(헌재 2015. 7. 30. 2013헌가8 참조).

- (나)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은 언론기관에 대해 포괄적으로 공정보도의무를 부담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제8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거기사심의위원회·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심의하여 사후적으로 교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제8조의2 내지 제8조의6).

다만 입법자는 공직선거법에 어떠한 선거보도를 불공정하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기 보다는, 각 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함으로써(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4항, 제8조의3 제6항, 제8조의5 제6항), 선거보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면서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중립적인 기관으로 하여금 심의하여 교정하도록 하였다.

- (다) 더불어 공직선거법은 언론기관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언론기관 종사자는 실제로 특정 후보자에 대하여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선거운동 목적 등으로 제공되는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97조 제3항, 제235조 제1항). 언론기관 종사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논평·보도 등을 할 수 없으며,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96조 제2항, 제252조 제1항). 언론기관은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불공평하게 중계방송하거나 토론회 등을 편집하여 중계방송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71조 제12항, 제82조의2 제13항 후단, 제252조 제4항).

또한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방송시설이나 구내방송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98조, 제99조, 제252조 제3항).

나아가 언론기관이 해당 매체나 그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나서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경우 그 행위 태양에 따라,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51조), 여론조사 결과 왜곡 보도(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제252조 제2항), 탈법적인 광고(공직선거법 제82조의7 제5항, 제94조, 제252조 제3항),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제252조 제3항),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 등의 배부 등(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255조 제2항 제5호),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나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제255조 제1항 제9호),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또는 유사기관의 설치 등(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 제89조 제1항,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13호)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다(헌재 2016. 6. 30. 2013헌가1 참조).

(2)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 제도

(가)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운영된다(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1항).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2항). 이를 통해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민주성과 전문성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심의하는데, 선거보도의 심의는 관련 법규 및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심의기준 등에 따른다[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심의위원회 규칙'이라 한다) 제17조].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가장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직접 제정하여 공표하고 있는 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이다. 공직선거법은 이 사건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제8조의5 제6항), 이에 따라 인터넷 선거보도의 심의를 위해 이 사건 심의위원회 훈령으로 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선거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경고문 게재, 경고, 주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8조의6 제1항, 이 사건 심의위원회 규칙 제20조 제1항).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경고문의 게재를 결정한 때에는 해당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재하도록 하여야 하며, 선거보도의 내용과 관련하여 경고문의 게재 또는 경고를 결정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해당 선거보도에 그 처분이 있음을 표시하게 할 수 있다(이 사건 심의위원회 규칙 제20조 제2항). 그 경고문의 게재기간은 3일로 하되, 그 위반시기 또는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7일까지 연장할 수 있고(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 제12조), 경고문의 게재 또는 경고 조치에 대한 알림문의 게재는 해당 기사가 게재되어 있는 동안으로 한다(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 제13조).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종류와 내용을 이 사건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되, 정정보도문 또는 경고문 게재의 조치를 받은 언론사명을 이 사건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공개한다(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 제15조 제1항).

만일 해당 인터넷언론사가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명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4호).

나. 쟁점의 정리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인터넷언론사에 청구인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데 제한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은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이 법률유보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다.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1) 법률유보원칙의 의의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가능하고, 제한의 정도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여기서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 따라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하위법령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헌재 2016. 4. 28. 2012헌마630 참조).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공선법조항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선거보도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권리구제 기타 선거보도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직접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9항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심의위원회 규칙 제17조는 “선거보도의 심의는 관련 법규 및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심의기준 등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은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과 이 사건 심의위원회 규칙 조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공선법조항과 관련 규정은 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에 규정될 내용에 대해 다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을 포함한 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은 대외적으로 공표되어 인터넷언론사가 선거보도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규범으로 작용한다. 그렇지만 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은 일차적으로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기준으로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으로 인하여 후보자

명의를 칼럼 등을 게재하는 것이 직접 금지되거나, 인터넷언론사가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바로 법률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을 위반한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해 심의를 거쳐 위반의 정도에 따라 경고문 게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인터넷언론사는 경고문을 게재하거나 해당 선거보도에 경고 등의 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표시하여야 할 뿐이고, 해당 선거보도의 게재를 철회하거나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해당 인터넷언론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비로소 형사처벌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은 인터넷언론사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후속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데 따라 인터넷언론사로 하여금 이를 자발적으로 준수하게 하고, 사후적으로 교정하도록 하는 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을 뿐이다.

공직선거법이 이와 같이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 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선거보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면서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구성에 있어서 민주성과 전문성이 조화를 이루는 중립적인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공직선거법은 민주적·전문적·중립적인 이 사건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직접 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을 제정·공표하도록 하여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이 최대한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의 효과와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 제도의 취지,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선법조항 등 모법에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을 포함한 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에 포함될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한편, 선거일에 임박한 기간 동안 인터넷언론사에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이 게재될 경우 해당 보도는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에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선거보도의 심의는 관련 법규 및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심의기준 등에 따르므로(이 사건 심의위원회 규칙 제17조),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내용을 고려하게 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어느 시기부터 인터넷언론사에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것을 제한할 것인지를 정할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내용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라면, 이를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공직선거법은 다음과 같이 선거일 전 90일을 기준으로 다양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등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을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방법 외로 광고할 수 없고, 후보자는 방송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93조 제2항).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103조 제5항).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을 제외하고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111조 제1항). 정당이 선거일 전 90일부터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41조 제2항).

이와 같이 선거일 전 90일을 기준으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자가 위 기간이 선거에 임박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제가 필요한 기간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 심의위원회도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에도 선거일 전 90일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라.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민은 선거보도를 통해 중요한 선거쟁점이나 후보자의 정책, 정치이념 등을 파악하여 선거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언론기관은 선거보도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정한 선거보도를 통해 선거에 관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언론사는 다른 언론기관에 비하여 적은 자본력과 시설만으로 설립될 수 있는데(헌재 2016. 10. 27. 2015헌마1206등 참조), 이로 인해 객관적인 보도기능을 확보하지 못한 일부 인터넷언론사를 통해 불공정한 선거보도가 양산되어 확산되거나, 선거보도를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사실상의 선거운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공직선거의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에 임박한 기간 동안 인터넷언론사에 자신의 명의로 칼럼 등을 게재할 경우 선거의 공정성과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의 입법목적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인터넷 선거보도를 금지함으로써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또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은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선거보도를 제한함으로써 공직선거의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인터넷언론사에 칼럼 등을 게재하려는 것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므로,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인터넷 선거보도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해당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를 불공정한 선거보도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 결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보도까지 광범위하게 제한될 수 있다.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이 선거나 정치적 의사표현과 상관없는 내용인 경우에도 그 게재를 제한한다. 설령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이 게재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홍보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대중이 중요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사안으로서 후보자가 직접 해명할 필요가 있거나 후보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특유한 지식 등을 갖고 있어, 이에 관한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을 게재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칼럼 등을 게재하는 것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이 선거보도의 공정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선거보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대신 인터넷 선거제도 심의 제도를 통해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심의하여 사후적으로 교정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율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으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보도까지 광범위하게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나)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를 심의대상으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5 제1항은 인터넷언론사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등록된 인터넷신문 외에도 등록되지 않고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다양한 인터넷홈페이지도 인터넷언론사에 포함될 수 있다.

이 사건 심의위원회 규칙 제2조 제1항은 인터넷언론사를 다음의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라고 정의하면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5호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제1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신문사업자(제2호 가목), 방송법 제2조 제3호의 방송사업자(제2호 나목),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정기간행물사업자(제2호 다목),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뉴스통신사업자(제2호 라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제3호)가 각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와 함께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로서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제4호)를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심의위원회 규칙 제2조 제2항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제1호), 선거운동을 하는 기관·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제2호), 그 밖에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보도내용 및 운영양태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언론사로 인정하지 않는 인터넷홈페이지(제3호)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 제10조 제1항은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법인·단체 등의 홍보 또는 소속원에게 동정 등을 알릴 목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정치에 관한 보도 등이나 여론형성의 목적 없이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6개월간 최소 1회 이상 새로운 보도를 게재하지 않은 인터넷홈페이지를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언론사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다. 선거방송 심의나 선거기사 심의는 허가·승인·등록·신고 등 공적으로 관리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보도만을 대상으로 한다. 반면,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는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인터넷언론사로 지정할 경우 공적으로 관리되지 않지만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다양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 결과 여론형성이나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블로그, 단순히 링크로 뉴스를 제공하는 개인 홈페이지도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지정 여부에 따라 인터넷언론사에 포함될 수도 있다. 인터넷이 그 자체로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제공을 위해 활용되고 있고, 오늘날 인터넷을 이용한 1인 미디어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관련 법제상 언론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은 다수의 인터넷홈페이지도 공직선거법상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이 정하고 있는 일률적인 규제가 위와 같이 광범위한 인터넷언론사의 개념과 결합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제한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다) 인터넷은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한 매체로서,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고, 정보의 제공을 통한 의사표현뿐만 아니라 정보의 수령, 취득에 있어서도 좀 더 능동적이고 의도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니므로, 인터넷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 가장 가깝게 접근한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종이신문과 비교할 때 인터넷언론은 훨씬 적은 자본력과 시설만으로 발행할 수 있고, 인터넷이라는 매체 자체에서 잘못된 정보에 대한 반론과 토론·교정이 이루어지며, 정보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인터넷언론은 국민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확장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등; 헌재 2016. 10. 27. 2015헌마1206등 참조). 이와 같은 인터넷언론의 특성으로 인해 인터넷언론이 점차 언론 소비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고, 인터넷언론의 높은 접근성·개방성·자율성·자발성 등의 특성이 정보기술의 발달 및 인터넷 포털(portal) 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방송 플랫폼(platform) 서비스 등의 확산과 결합하여 대중이 전통적인 언론과 다른 방식으로 언론을 활용하고 인터넷언론을 보다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언론의 영향력은 단순히 개별 언론기관의 공신력 등으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한 언론 소비 지형이나 인터넷언론을 확산하고 담론을 형성하는 개인의 대중적 영향력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인터넷언론의 이와 같은 특성과 그에 따른 언론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비추어 볼 때, 인터넷언론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서 위주의 사고로 인터넷언론을 지나치게 규제할 경우 언론의 자유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언론매체에 관한 기술의 발달은 언론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불러오고 있으므로,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 수단 또한 헌법의 틀 안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한다(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등; 헌재 2016. 10. 27. 2015헌마1206등 참조).

- (라) 한편 구 심의기준 규정 제8조 제2항 단서는 “다만,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계속 연재하였고 후보자의 명의를 드러나지 않는 저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런데 위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계속 연재하였고 후보자의 명의를 드러나지 않는 저술은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에 의해서도 금지되지 않는다. 또한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익명표현은 기명표현과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이고, 인터넷언론사에 기고하여 대중에게 공표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2017. 12. 8. 개정된 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 제8조 제2항에서도 위 단서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다.

따라서 위 단서에 따라 익명표현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된다고 할 수 없다.

- (마) 물론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선거에 임박한 기간 동안 인터넷언론사에 자신의 명의로 칼럼 등을 게재하여 선거운동에 탈법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덜 제약적인 다른 방법들이 이미 충분히 존재한다.

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은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 외에도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예를 들어, 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견·주장·공약 등을 일방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재하는 보도(제3조 제1호),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럼·기고 등의 반복적 보도(제3조 제6호), 선거와 관련하여 인터뷰하거나

인용함에 있어 유권자 등의 상반된 견해나 반응을 균형 있게 다루지 않은 보도(제6조 제2호) 등을 불공정한 보도로 보고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 제8조 제1항은 “인터넷언론사는 선거기간 중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기획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이 아니더라도 위 규정들에 따라 해당 인터넷 선거보도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은 언론기관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언론기관이 해당 매체나 그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나서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경우 그 행위 태양에 따라 다수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나아가 인터넷언론사가 불공정한 선거보도를 한다면 결국 독자로부터 외면 받아 퇴출될 수밖에 없다. 인터넷의 특성상 독자들은 수동적으로 인터넷 선거보도를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기사를 선택하여 읽고 판단하며 반응하고, 매체 자체에서 잘못된 보도에 대한 반론과 토론·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헌재 2016. 10. 27. 2015헌마1206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법적 규제 등을 통해 입법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바) 그러므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한다.

(3) 법익의 균형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보도까지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고, 광범위한 인터넷언론사의 개념과 결합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은 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의 다른 조항들과 비교하여 그 내용이 일의적이고 명백하여 그 위반 여부를 손쉽게 판단할 수 있다. 그 결과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해 조치를 명한 사례 중 약 30%가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 위반을 이유로 한 것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실무적으로도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의 표현의 자유 제한 효과가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본권 제한은 중대하다.

반면,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의 내용이 인터넷언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그 효과가 반감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의 수준은 그리 높지 않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본권제한이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원칙에도 반한다.

(4) 소결

결국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은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7.과 같은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아래 8.과 같은 재판관 이은애의 이 사건 시기제한조항에 대한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 지면 관계상 반대의견 및 보충의견을 생략하오니 헌법재판소 홈페이지(URL : <https://www.ccourt.go.kr/>) 판례검색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안내

서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15층
대표전화 : 02) 397-3114
상담전화 : 02) 397-3000, 3010, 3100
F A X : 02) 397-3089

지역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39, 6층
전화 051) 759-7083~4 / FAX 051) 759-7093

대구사무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대구무역회관1402호
전화 053) 763-0020~1 / FAX 053) 763-0242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5층
전화 062) 676-0360~1 / FAX 062) 676-0362

대전사무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61 대전MBC 8층
전화 042) 525-0778~9 / FAX 042) 525-0768

경기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8층
전화 031) 211-9027, 9022 / FAX 031) 212-0223

강원사무소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8층
전화 033) 255-2878~9 / FAX 033) 255-2872

충북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4, 404호
전화 043) 286-8083, 8081 / FAX 043) 286-8084

전북사무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405호
전화 063) 288-0010, 0981 / FAX 063) 288-0980

경남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번길 5, 601호
전화 055) 263-1787, 1780 / FAX 055) 263-1769

제주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복5길 6, 4층
전화 064) 722-3328, 3352 / FAX 064) 726-3201

2019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2020년 7월 30일 인쇄

2020년 7월 31일 발행

발 행 인 이석형

발 행 언론중재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5층

편 저 언론중재위원회 교육본부 연구팀

전 화 02) 397-3041~5

팩 스 02) 397-3049

홈페이지 <http://www.pac.or.kr>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이 책에 수록된 글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